연구총서 17-AA-04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on the law about the deportation of foreign countries
: mainly focused on China, Philippine and Indonesia

김경찬 • 장레이 • Amelya Gustina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간사

오래전부터 세계의 많은 지역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장소를 떠나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삶의 터전을 바꾸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1세기 이후 지역 또는 국가 사이의 경제적 교류증가 및 통합화나 몇몇 국가에서의 전쟁이나 분쟁 또는 삶의 기본적 여건이 부족함으로 인한 이동은 이러한 지역 또는 국가 사이의 이주를 더욱 촉진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나 거주지를 이전하든 그 지역에서 다시금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과 삶의 조건이 제공되거나 이주하는 자신 역시 새로운 국가나 장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그 지역이나 국가의 법률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구촌 시민으로서 매우 필요하고 요청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또는 국가 사이의 교류의 증가에 따라 관련 다양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범죄인 역시 범죄 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도피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 보이스 피싱범죄, 돈세탁,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가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에 걸친 국제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나날이 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한 지역이나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지역이나 국가가 금하는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한 지역 또는 한 국가만의 정책이나 노력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 정책입안자와 관련 담당기관들 사이의 공동의 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정책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논의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공조의 다각화 방안 및 각 국 법제에 대한 기본 상호공동 교육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각 국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미래의 아시아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형사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이고 이민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행정법, 난민법 등 관련 법률과 법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과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강제추방 내용 역시 하나의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많은 힘을 써 주신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법학원의 장레이(张磊) 교수와 쉬지엔룽(徐建龙) 석사생, 인도네시아 대검찰청 연구개발센터의 아멜리아(Amelya) 연구부장 및 형사정책연구원의 김경찬(金倞燦) 부연구위원에게 심심한 감사 및 격려와 함께 한국이 함께할 아시아 미래 비전을 기대하고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진 환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 서 론 • 김경찬(Kim, Kyoung Chan) ·····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1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한계 ····· 13

| 제2장 | 아시아인의 공동생활과 범죄대응
• 김경찬(Kim, Kyoung Chan) ····· 17

제1절 아시아인의 공동생활 ····· 19

1. 아시아의 차이와 과제 ····· 19
2. 아시아의 역사와 법교육 ····· 20

제2절 범죄인 송환과 범죄인 인도 ····· 21

제3절 강제추방과 인권 ····· 24

| 제3장 | 중국의 강제추방 • 장레이(張磊) ····· 27

제1절 중국 강제추방 연구의 의의 ····· 29

제2절 중국의 강제추방 입법 ····· 30

1. 행정법에 있어서의 강제추방 ····· 30

가. 중국 반간첩법 ····· 30
나. 중국 출입국관리법 ····· 31
다.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등 ····· 31
라. 중국 지진방지와 재난경감 관련법 ····· 32
마.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 33
바. 중국 국경외 비정부단체의 국경내 활동관리법 ····· 33
사. 중국 측량법 ····· 33

2. 형법에서의 강제추방 ····· 34
3. 그 외의 해석과 통지 및 법률 ····· 35
제3절 중국의 강제추방 성격 ····· 36
1. 행정적 강제성격 ····· 36
2. 형법적 성격 ····· 37
3. 법률적 구분 ····· 37
제4절 중국의 강제추방 적용과 사례 ····· 39
1. 행정법에서의 강제추방 적용 ····· 39
2. 형법에서의 강제추방 적용 ····· 39
가. 강제추방 적용범죄 ····· 40
나. 강제추방 비적용 ····· 45
제5절 중국의 강제추방 대상 ····· 48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 후 중국으로 도주한 경우에 강제추방 ····· 48
2. 외국인이 제3국에서 강제추방 후 중국의 재 강제추방 ····· 50
3.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강제추방 ····· 51
제6절 중국의 강제추방 담당기관 ····· 52
1. 행정법상 강제추방 담당기관 ····· 52
가. 중국 출입경 관리법 ····· 52
나. 중국 방진·재해경감법 ····· 53
다. 중국 치안관리처법법 ····· 53
라. 중국 국경외의 비정부 단체 경내활동 관리법 ····· 54
마. 중국 측량법 ····· 54
2. 형법상 강제추방 담당기관 ····· 54
제7절 중국의 강제추방 구제관련 ····· 55
1. 행정재심법에서의 구제관련 ····· 55
가. 신청범위 ····· 56
나. 신청방식 ····· 57
다. 신청기관 ····· 57
라. 행정재심과 행정소송 ····· 57
2. 형정소송법에서의 구제관련 ····· 58
가. 신청범위 ····· 58

나. 소송의 시간적 제한 ····· 59
3. 형사법에서의 구제관련 등 ····· 60
가. 상소관련 ····· 60
나. 관련 사례 ····· 60
제8절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변호관련 ····· 63
제9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체포와 구금 등 ····· 64
1.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체포 ····· 65
2.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구속과 구금 ····· 66
가. 관련 규정 ····· 66
나. 영장 관련 ····· 66
제10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문제점 ····· 67
1. 중국 행정법 관련 강제추방 문제점 ····· 67
2. 중국 형법관련 강제추방 문제점 ····· 68
가. 강제추방 적용관련 ····· 68
나. 홍콩·마카오·타이완 관련 ····· 68
3. 추방 후 재입국 관련 ····· 70

| 제4장 | 필리핀의 강제추방 • 김경찬(Kim, Kyoung Chan) ····· **73**

제1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연구의 의의 ····· 75
제2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법제 ····· 77
제3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현황 및 사례 ····· 78
1.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현황 ····· 78
2.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사례 ····· 79
가. 한국인 관련 사례 ····· 79
나. 중국인 관련 사례 ····· 83
다. 소결 ····· 85
제4절 필리핀 강제추방 담당기관 ····· 86
1. 필리핀 이민국의 변천과정 ····· 86
2. 필리핀 이민국의 구조 ····· 87

3. 이민국의 기능과 권한 ····· 88
제5절 필리핀 강제추방 사유 ····· 89
1. 약식 강제추방명령 ····· 91
2. 자발적 강제추방 ····· 92
3. 입국금지(Excluded Classes) 관련 ····· 92
가. 필리핀 입국거부 현황 ····· 92
나. 필리핀 입국금지 사유 ····· 94
제6절 필리핀 강제추방 절차 ····· 97
1. 고소나 고발 ····· 98
2. 예비신문(Preliminary Investigation) ····· 98
3. 사건기록서(The Charge Sheet) ····· 98
4. 임무 명령서(Mission Order) ····· 99
5. 체포 공무원 임무 ····· 100
6. 특별검사 할당(Special Prosecutor) ····· 100
7. 이민국 관리실(BI Warden Facility) ····· 101
8. 특별청문 위원회 전 절차 ····· 101
9. 특별청문 위원회(Board of Special Inquiry) ····· 102
10. 강제추방 명령과 결정 ····· 103
제7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체포와 구금관련 ····· 103
제8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보석 ····· 104
제9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이의 및 항소관련 ····· 106
제10절 필리핀 강제추방에서의 변호관련 ····· 107

| 제5장 |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 아멜리아(Amelya) ····· **109**

제1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연구의 의의 ····· 111
제2절 인도네시아의 이민의 역사 ····· 112
1. 식민시대 이전 ····· 112
2. 식민시대 ····· 113

3. 독립혁명 시대 ····· 114
4. 인도네시아 연방 공화국 시대 ····· 116
5. 의회민주주의 시대 ····· 117
6. 새로운 질서(Orde:네델란드어로 질서) 시대 ····· 119
7. 개혁시대 ····· 120
가. 법령과 규칙의 향상 ····· 121
나. 관리(Management) ····· 122
다.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 122
라. 시설과 인프라 ····· 123
마. 출입국 통제(Immigration Control) ····· 123
제3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주요사유 ····· 124
1.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사유 ····· 124
2. 입국허가와 강제추방 ····· 125
3. 국익과 입국허가 ····· 126
4. 평온, 도덕성, 공공복리 ····· 127
5. 외국인 문제에 대한 평가와 강제추방 ····· 128
6. 선별적 정책원칙과 강제추방 ····· 129
7. 강제추방 집행 관련 문제점 ····· 130
제4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통계와 사례 ····· 131
1.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강제추방(국외추방) 통계 ····· 132
2.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사례와 검토 ····· 139
가. 2013년 3월 한국 강○○ 허위정보 관련 사례 ····· 139
나. 2017년 8월 1일 중국 전화사기 사례 ····· 140
다. 2017년 5월 일본감독 관광비자 관련 사례 ····· 141
라. 2017년 3월 디카프리오 관광비자 관련 사례 ····· 142
마.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인 체류기간 관련 사례 ····· 142
바. 2016년 9월 호주 대학교수 관광비자 관련 사례 ····· 142
사. 2016년 1월 35인 중국인 거주허가 관련 사례 ····· 143
아. 2016년 11월 인도 갱스터 도피관련 사례 ····· 143
자. 2014년 6월 호주 20인 교사 체류허가 관련 사례 ····· 144
차. 2013년 3월 중국 회사원 거주허가 관련 사례 ····· 144
카. 2010년 11월 칠레운동 선수 체류기간 관련 사례 ····· 145
타. 2010년 1월 중국인 거주허가 관련 사례 ····· 145

제5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관련기관과 체계 ····· 146
1.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담당기관 ····· 146
가. 법무인권부의 조직 ····· 148
나. 출입국관리총국 ····· 149
다. 출입국 및 강제추방구금과 ····· 151
제6절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련 비자와 체류 ····· 152
1. 출입국관리법 관련 비자 ····· 152
2.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비자(Visa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153
3. 비자의 거절(Rejection of the Visa) ····· 153
4. 비자 사용 기간(Period of Visa Use) ····· 154
5. 비자 면제 정책(Visa Free Policy) ····· 154
6. 체류 허가(Stay Permit) ····· 155
7. 체류 허가의 거절=체류 불허(Rejection of Stay Permit) ····· 156
8. 체류 허가의 취소(Cancellation of Stay Permit) ····· 156
가. 방문 체류허가 무효 ····· 156
나. 제한적 체류허가 무효 ····· 157
다. 영구적 체류허가 무효 ····· 157
제7절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련법상 행정처분과 범죄 ····· 158
1.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의 행정처분(제재)
(Immigration Administrative Action) ····· 158
2. 출입국관리법상 범죄관련 ····· 158
가. 인도네시아 입출국 심사 ····· 159
나. 출입국심사소를 거치지 않은 이송수단의 책임자 ····· 159
다. 의무 불이행 외국인(Foreigner Undertake No Obligation) ····· 159
라. 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160
마. 보증인(Guarantor) ····· 160
바. 여행증명서 미소지(No Legal Travel Document) ····· 160
사. 사람 밀송(Human Smuggling) ····· 160
아. 법적 비자, 입국 허가, 체류 허가 미소지 ····· 161
자. 고의적인 오용과 활동 ····· 161
차.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한 부정확한 정보 ····· 162
카. 불법체류의 지원, 보호 또는 숙소의 제공 ····· 162

타. 특정지역에 대한 무허가 체류 ····· 162
파. 인도네시아공화국 불법여행증명서 ····· 162
하. 허위의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 소지 ····· 163
거. 인도네시아 백지 여행증명서식의 인쇄, 소유, 보유, 영리적 이용 ····· 163
너.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의 손괴, 변경, 추가, 삭제 ····· 164
더. 여행증명서의 불법적 통제 ····· 164
러. 출입국자료의 불법적 소유, 보유, 손괴, 삭제, 변경, 재생산 ····· 164
머. 출입국 공무원의 위법행위 ····· 164
버. 피억류자(피구금자) ····· 165
서. 위장혼인(Quasi Marriage) ····· 165
제8절 인도네시아 영역에서의 출입국 관리통제 ····· 166
1. 행정적 관리통제 ····· 166
2. 외국인에 대한 지역관리 ····· 166
3.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절차 ····· 167
4.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 168
5. 보증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 168
6. 외국인 관리팀(Foreigner Control Team) ····· 169
제9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절차 ····· 170
1. 정보수집과 소재파악 ····· 170
가. 당국(Agency) 또는 기업(Company) ····· 170
나. 일반사회(Society) ····· 170
다. 미디어 ····· 171
라. 진정서와 인터넷 ····· 171
마. 정보제공자 ····· 171
2. WASDAKIM ····· 171
3. 보고와 대응조치 ····· 172
4. 소환장과 체포 ····· 172
5. 출두와 조사 ····· 172
6. 범죄여부 결정 ····· 172
7. 질서위반범과 범죄 ····· 172
8. 형사제재와 관련처분 ····· 173
9. 경미한 출입국사범 ····· 173
제10절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련 행정처분의 이의제기 ····· 173

제11절 인도네시아 출입국사범 구류 ····· 174
1. 인도네시아 출입국사범 구류소 ····· 174
2. 승인과 유치기간 ····· 176
3. 즉시이송 ····· 177
4. 유치명령서 ····· 177
5. 다른 장소로 이치 ····· 178
6. 강제추방 구류기간 상한 ····· 178
7. 피구류자 이송 ····· 178
8. 피구류자 석방 ····· 178
9. 피구류자 임시석방 ····· 179
10. 구류기간 만료와 외부체류 ····· 179
제12절 인도네시아 입국금지와 제지 ····· 180
1. 입국금지와 제지 ····· 180
2. 입국금지 제지사유(The Reason of Deterrence) ····· 181
3. 추가적 입국금지 제지사유 ····· 181
4. 출입국 관리정보체계 기입 ····· 181
5. 입국금지 제지기간 갱신 ····· 182
6. 입국금지 제지의 해지(Expiration of Deterrence) ····· 182
제13절 인도네시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 사례 ····· 183
제14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변호관련 ····· 184
제15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개혁 및 관련 국제협력 ····· 184
1.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관련 개혁 ····· 184
2.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강제추방/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 187
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187
나. 범죄목록 ····· 187
다. 범죄인 인도 청구의 거부 ····· 188
라. 시민권자 스스로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 188
마. 이중범죄원칙(Dual Crime Principles) 적용의 예외 ····· 188
바. 사형 ····· 189
사. 단순 범죄인 인도(Simple Extradition) ····· 189
아. 수감자 송환(Transfer of Prisoners) ····· 189
자. 범죄인 인도의 연기 ····· 189

차. 당사국의 관할(territory) ····· 190
3.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강제추방과 범죄인 인도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 · 190
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요청절차 ····· 190
나. 시간 도과의 원칙과 시간 경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lapse of time with the principle of passage of time) ····· 190
다. 사법절차 ····· 191
라. 이민법에 대한 무지 ····· 191
4.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범죄인 인도 관련 제안 ····· 191
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관계 강화의 필요성 ····· 191
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 192
다. 양국의 이민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화의 필요성 ····· 192

| 제6장 | 시사점과 과제 • 김경찬(Kim, Kyoung Chan) ····· 193

제1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시사점 ····· 195
제2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시사점 ····· 197
제3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시사점 ····· 200
제4절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 과제 ····· 202
1. 현황과 사례의 파악과 검토 ····· 202
2. 강제추방과 공동의 범죄대응 ····· 202
3. 이민법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 ····· 204

| 제7장 | 결 론 • 김경찬(Kim, Kyoung Chan) ····· 207

참고문헌 ····· 215

Abstract ····· 223

부록 ····· 225

표 차례

〈표 2-1〉 최근 4년간 도피사범 현황 ····· 22
〈표 2-2〉 최근 10년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현황 ····· 22
〈표 2-3〉 2016년 범죄인 도피 국가별 현황 ····· 23
〈표 2-4〉 2016년 도피사범 국가별 송환현황 ····· 23
〈표 2-5〉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현황 ····· 25
〈표 4-1〉 2016년 필리핀 현지 외국인 범죄자 체포현황 ····· 76
〈표 4-2〉 2016년 필리핀 현지 체포된 외국인 범죄자 범죄유형 ····· 76
〈표 4-3〉 2011-2012 필리핀에서 추방당한 사람의 국가별 현황 ····· 78
〈표 4-4〉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사람의 국가별 현황 ····· 79
〈표 4-5〉 필리핀 이민국 구조 ····· 88
〈표 4-6〉 2016-2017년 필리핀 입국거부 국가별 현황 ····· 93
〈표 4-7〉 필리핀 성범죄자 입국거부 현황 ····· 93
〈표 5-1〉 2015년 출입국관리부서 외국국적자 강제추방 개요 ····· 132
〈표 5-2〉 2016년 출입국관리부서 외국국적자 강제추방 개요 ····· 134
〈표 5-3〉 2017년 1-3월 출입국관리부서 외국국적자 강제추방 개요 ····· 136
〈표 5-4〉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외국인 강제추방 개요 ····· 137
〈표 5-5〉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대한민국 국적자 강제추방 개요 ····· 138
〈표 5-6〉 인도네시아에서의 국외추방에 관한 조직 체계 ····· 147

국문요약

1. 이민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며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들로 자신이 거주하거나 정착한 지역이나 장소를 떠나 다른 지역과 장소로 삶의 터전을 바꾸고 있다. 또한 21세기 한국은 그 이전보다 외국의 더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왕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하여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범죄 역시 국제적인 교류와 함께 초국가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협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시아 지역은 현재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인신매매, 돈세탁, 사이버 범죄 등 매우 다양한 범죄들이 양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형사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를 통하여 일정부분 관련 범죄에 대해 대응과 대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범죄수익 자산의 국가 간 환수도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현실적으로 국제적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현실적으로는 대개는 이민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추방이 범죄인 인도의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범죄인 인도가 외교부와 법무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이나 자산의 은닉으로 범죄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범죄대응과 대처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형사사법공조나 국제협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방이 하나의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강제추방이 갖는 범죄인 인도방식으로서의

성격은 현실적으로 강제추방이 살인과 같은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의 방식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강제추방이 범죄인 인도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형제폐지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또한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외국인으로서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이민법을 포함한 행정법규나 다른 사유로 강제추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강제추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후 대응과 관련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관련 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있는 강제추방 관련 사항과 관련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한국에서 현재 외국의 출입국관리법과 이민법제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선진국의 비교적 잘 정비된 출입국관리법이나 이민법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다국적 간 범죄가 이루어지는 국가나 이주자의 교류가 많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법이나 이민법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관련 강제추방 관련 현황과 사례 및 법제를 소개하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 등의 국가들의 현황과 법제에 대한 소개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 국가 간에 초국경적으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거나 범죄추적을 막기 위하여 여러 거점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하는 국제 이동성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인들이 아시아 지역의 범죄 대응이 국제적으로 매우 허술한 점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7.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기본적인 형사사법공조와 전통적인 범죄인 인도협력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출입국 관리법과 이민법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법제에 대한 소개와 현황과 사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파악이 기초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후에는 관련 사례와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중국의 강제추방은 행정법상 반간첩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의 출입국관리조례, 지진방지와 재난경감 관련법, 치안관리처벌법, 국경외 비정부단체의 국경내 활동관리법, 측량법에서 다루고 있고 형법상에서 별도 항목으로 강제추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강제추방이 적용되는 범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도, 절도, 사기, 상해, 여성이나 아동 등의 유괴나 매매, 공공질서 문란, 마약 밀수, 매매, 운송, 제조와 밀입국 조직, 개인정보 불법취득 등과 관련하여 강제추방이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사례는 일정부분 파악이 되었지만 관련 통계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은 공안부가 주로 담당하였다. 또한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일반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체포, 구금 역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9. 필리핀은 한국인 범죄자가 많이 체포되고 추방되는 국가이며 필리핀과의 협력을 위하여 베트남과 함께 코리안 데스크를 활용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강제추방은 필리핀 이민법, 인신매매 금지법 등에서 강제추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방 적용과 관련하여 주로 살인, 살인 탈주, 강도상해, 온라인 신용사기, 사기계약, 피라미드 다단계, 밀렵, 뇌물, 경제범죄,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기, 이민법 위반, 공공의 안전질서 위반, 인신매매, 성매매 등에 강제추방이 적용되기도 한다. 필리핀의 강제추방 담당기관은 필리핀 이민국이며 약식 강제추방, 자발적 강제추방도 활용되고 입국금지와 관련한 사유들도 강제추방에 적용될 수 있다. 필리핀 강제추방 절차는 고소나 고발, 예비심문, 사건기록서 발부, 임무명령서 집행, 특별검사

할당, 이민국 관리실 구금, 특별청문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제추방의 체포와 구금 및 보석과 관련한 사항 역시 이민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선임과 묵비권 역시 이민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다.

10.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수가 대략 연30여명으로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필리핀 및 그 외 아시아 국가와 다국적으로 지역을 연계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아시아에서 이러한 특징은 어느 범죄가 발생하는 어느 한 지역 또는 두 지역의 국가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 국적간의 범죄 대응에 대한 구상과 인식을 통하여 다국적간 관련 기관사이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존 형사사법공조와 전통적인 범죄인 인도방식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추가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는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사례는 주로 허위정보 사례 제공 거주허가 문제, 전화사기, 부적합한 비자, 체류기간 초과 등의 사유가 적용되었으며, 담당기관은 출입국관리총국과 출입국통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11.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절차는 정보수집과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데 WASDAKIM 분야의 공무원에 의해 보고되고 추적되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소환장 발부와 체포가 이루어지며 출입국 사무소에 출두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출입국 사무소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사가 진행 된 후 범죄여부를 결정하는데 형사범일 경우 형사절차에 의하여 형사제재를 받고 강제추방되며 재입국이 금지되나 경미한 출입국사범의 경우에도 강제추방은 될 수 있지만 재입국은 가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은 행정작용으로 파악하고 구제절차에서는 법적인 항소의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이민 행정처분의 반대나 이의제기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수용을 위하여 각급 출입국사무소 본부에 위치한 출입국사범 구류실과 함께 수도나 지방,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전역 13개 지역에 출입국사범구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강제추방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강제추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대응의 신속한 상호 국제협력에 참고가 필요할 수 있다.

12. 중국은 출입국관리법, 호적등기조례, 외국인 중국영주심사관리방안 등 여러 관련 법률에 이민과 관련한 내용이 산재해 있으며 통합된 이민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외국과의 교류증가와 재중국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된 이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등을 통합하여 통합 이민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역시 일정부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방식의 다각화된 상호협력이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상호 공동논의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13. 필리핀은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가 있는 국가인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많은 범죄인이 강제추방을 이루어지는 국가이기도 하며 또한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를 포함한 상호 협력지원이 추진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자산의 회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이 있다. 이는 범죄인 인도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강제추방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범죄수익과 자산에 대한 환수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상 범죄와 관련된 경우 별도의 절차로서 범죄와 관련된 증명과 환수절차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국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러한 범죄인 인도와 강제추방, 범죄수익 자산 환수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14.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방을 할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과 인터폴 적색수배 명령 역

시 강제추방 사유로 보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이민법 논의에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5. 한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 사례와 현황에 대한 파악은 범죄를 중심으로 인터폴 경찰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 이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교부와 대사관 및 영사관, 법무부와 경찰이 해외에서 한국인이 강제추방되는 사례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파악하며 관련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 국가 및 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범죄발생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관련한 공동의 인식을 통한 대안논의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더 나아가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과 해당 외국의 형사법에 대한 공동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이민법을 포함한 기초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죄발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이민관련 담당기관이 상호 협력적인 방식으로 관련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 아시아 지역의 교류와 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교류의 증가와 인적 물적 교역의 확대에 따라 관련된 범죄와 사람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범죄 대응이나 또는 그 해당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외국인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난민법 등을 검토하여 통합된 이민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으며 또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관련 기관은 아시아의 각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관련 강제추방과 범죄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외국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 론

김경찬(Kim, Kyoung Chan)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민의 역사는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자신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나 장소 또는 국가를 떠나 새로운 다른 곳으로 삶의 환경이나 거주지 또는 국가로 이동하는 일은 그 동기와 원인이 어떠하든 매우 생소하고 적응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한국 헌법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놓기는 하였지만, 국경을 넘어서도 이러한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국가 사이에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유럽 공동체와 같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이 역시 단기간에 논의의 결과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지속적인 상호이해를 통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간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동시에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국민이 유입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역시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과 국가로 여행이나 직업 활동 또는 거주지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의 이동과 교류는 한편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함께 역동적인 사회구성과 발전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같이 인종과 언어, 문화와 경제적 격차, 정치적 구조와 종교와 신념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는 지역은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를 넘어 생활을 하거나 거주하는 이민과 관련된 강제추방[1]의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 기본적 법의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강제추방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범죄 담당기구나 강제추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강제추방 관련 법적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여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강제추방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범죄인 인도 및 국가안보 차원에 대비하여 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강제추방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서로 상이한 법률체계와 내용 및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각국의 법제도와 법률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 국가 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대응이나 개인의 적절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과 출입국 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공동의 필요사항을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한국 출입국 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강제퇴거의 용어는 한국 출입국 관리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법령에 사용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구축출경(驅逐出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경 밖으로 추방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강제추방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이민법 관련 법령에 Deportation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이민법에서는 역시 Deportation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Removal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방관련 용어와 관련하여 미국은 Removal 또는 Deportation을 사용하고 있는데, Removal을 강제퇴거, 강제추방으로 Deportation은 퇴거강제, 강제추방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Deportation은 구어적 표현으로 Removal은 법적인 용어로 이해되기도 한다. 1997년 4월 이전에 미국은 Deportation과 Exclusion이 Removal 절차로 구분되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1997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오거나 허용된 외국인이 추방가능성에 기초한 removal에 종속된다고 하여 Removal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미국 이민법상에는 Deportation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file:///C:/Users/KIC/Downloads/Removal_vs_deportation%20(1).pdf(검색일: 2016.11.26) 캐나다의 경우는 Removal Order를 Departure Order(출국 명령), Exclusive Order(배제 명령), Deportation Order(추방 명령)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Removal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듯 보인다.

한국은 아직 통합된 이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관리법과 국적법, 난민법 등으로 관련 내용을 개별적 법률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국가간·지역간 외국인의 이동이 늘어 나는 상황에서 외국의 여러 출입국 관리법, 난민법과 이민법 내용과 체계를 참고하고 반영하여 통합된 이민법 체계를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한계

본 연구는 외국의 강제추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국가로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강제추방의 사례와 현황을 포함하여 강제추방의 법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의 범죄현상이 어느 한 국가 또는 양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의 여러 국가사이에 범죄인들이 상호 협력을 하거나 범죄거점 지역을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옮겨 가면서 조직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출입국 관련법이나 이민법 또는 강제추방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을 선정하여 살펴 보고 추후 연구로서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필리핀은 한국의 도피범죄인이 가장 많이 도피하는 국가이자 범죄인 송환이 가장 많은 국가들에 해당하며, 한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국가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중국과 범죄 거점을 수시로 바꾸거나 이동하는 등 범죄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초국가적 범죄가 한 두 국가에만 머무르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인의 아시아 각국으로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의 법제와 관련 담당

기관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권리보호와 함께 관련 범죄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이 범죄인 인도로서 활용되는 경우 인권침해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장은 서론으로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많은 현대 국가에서 이민과 관련된 법제 및 강제추방 관련 내용파악의 필요성과 함께 범죄의 국가 대응과 국가 간 공동대응의 필요성 및 강제추방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와 인권보호의 필요성 등 강제추방을 연구하게 된 목적과 의의를 주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이민과 출입국 관련법 및 강제추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범죄대응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역사와 교육이 개방적으로 공동으로 함께 인식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교육도 함께 수반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강제추방 법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행정법과 형법에 기술된 강제추방의 입법내용을 검토하고 중국의 강제추방 성격으로 행정적 성격과 형벌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강제추방의 행정법적 적용과 범죄와 관련한 형법적 적용을 살펴보았는데, 강탈죄, 살인죄, 상해죄, 월경죄, 절도죄, 여성 또는 아동 유괴죄, 공공질서 문란죄, 사기죄, 개인정보 불법취득죄 등이 주요 적용범죄들이고 그 관련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보았다. 그 외 강제추방 대상, 강제추방 담당기관, 강제추방 관련 체포와 구금, 강제추방 후 지정국가와 관련한 내용 및 관련 문제점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필리핀의 강제추방 법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필리핀의 강제추방 관련 기본 법제를 살펴보고 강제추방관련 현황 및 살인죄, 탈주죄, 강도상해죄, 온라인 신용사기죄, 금융피라미드 사기죄, 이민법 위반, 공공의 안전 질서위반, 경제범죄, 밀렵, 뇌물죄 등과 관련하여 한국인과 중국인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필리핀

강제추방 담당기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강제추방 관련 사유와 약식 강제추방명령, 자발적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보았다. 그 외에 필리핀 강제추방 절차, 필리핀 강제추방의 체포와 구금관련 내용 및 강제추방 이의 및 항소관련 내용, 강제추방 관련 변호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법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이민의 역사와 관련하여 식민시대 이전과 식민시대, 독립혁명시대, 연방공화국 시대, 의회민주주의 시대, 새로운 질서시대, 개혁시대 등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사유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통계 및 사례를 통하여 관련 현황과 구체적 사안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관련기관과 체계 및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련 비자와 체류허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관리통제와 강제추방 절차, 출입국관련 행정처분의 이의제기 및 강제추방 관련 구류, 입국금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 개혁과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보았다.

제6장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합된 이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와 상호교류에 따라 통합 이민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는 한국 역시 통합된 이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강제추방은 여러 행정법과 형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관련 범죄를 규정하여 놓고 있지 않으며 불복절차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일반적 행정법 또는 형사법 절차와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이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강제추방 관련 세부 절차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추방을 행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도네시아도 이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강제추방을 주로 행정적 작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 강제추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장에서는 결론으로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와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출입국 관리법 및 이민법 등에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양국의 형사법 기관과 출입국 관련 기관이 좀 더 원활할 상호협력과

상호이해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초국경적 범죄 대응을 위해 일반적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 이외에 출입국 관리법과 이민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 요청되며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본적으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기본 법제현황과 내용, 관련 담당기관, 강제추방 절차, 불복 절차, 변호인 선임 등과 관련한 기본적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나 3개 국가와 공동으로 범죄인 인도 방식으로서의 강제추방이나 강제추방이 미치는 개인의 자유침해 문제 또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관련 논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관련 담당기관 홈페이지나 관련 담당자를 통하여 관련 통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경우 사례 검토는 가능하나 관련 현황통계를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인신매매, 돈세탁, 범죄수익 자산 은닉, 사이버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다국적간 초국경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효율적인 공동협력을 통한 범죄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출입국 관리법과 이민법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법과 대책논의로 실효적인 범죄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 법제이해와 파악을 위한 기초적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아시아의 다국적 간 초국가적 범죄대응이외에도 아시아인의 교류와 상호이동에 따른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관련 법제와 문제점을 상호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의 공동생활과 범죄대응

김경찬(Kim, Kyoung Chan)

제2장

아시아인의 공동생활과 범죄대응

제1절 아시아인의 공동생활

1. 아시아의 차이와 과제

중국과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강제추방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서 각 국가의 헌법과 형법 및 행정법 등 기본적인 법제도의 차이가 큰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추방 관련 법제도에서도 법체계와 구성내용의 차이점이 많다고 하겠다.

강제추방과 이민법 등 관련 정책과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개별국가 자신의 법정책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떠한 이민정책과 강제추방 정책을 활용하는가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상황과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과 같은 일정한 공동의 법적 공동체를 구성한 지역에서는 한 국가를 넘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보장되기도 하고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지역에서는 외국 이민자에 대한 정책과 강제추방 관련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계속해서 삶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바꾸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시아 각 국가마다 각기 다른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이민관련 정책 및 강제추방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각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타이어

등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토속신앙, 무교 등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 정책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도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심하여 일종의 공동체성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공동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나 입장이 많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나 입장이 물론 부적절하거나 타당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논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손쉬운 일은 더더욱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 지역 국가들이 가지는 다양한 차이와 각 국가가 직면한 문제점을 개별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관련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문제를 방관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인 조직범죄, 보이스 피싱범죄, 인신매매 범죄, 돈세탁, 마약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동대응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강제추방과 개인의 인권보호 및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한 문제 역시 아시아 공동의 의제로 함께 살펴보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아시아의 공동의 논의와 공동의제 논의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어와 종교, 경제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 정치적 차이와 법정책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 및 인권 그리고 이민자 증가에 따른 공동생활 관련 문제와 대응은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의 차이와 과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아시아의 역사와 법교육

앞서 언급한 아시아의 다양한 차이극복과 함께 공동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거나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겪은 침탈과 전쟁 및 지배와 피지배의 기억은 공동의 과제인식과 공동의 논의 및 협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역사와 법에 대해 공동으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기회와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을 통하여 과거의 과오를 문제 삼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서로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점검해 보는 기회와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인식하는 방식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충분히 바꾸거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공동인식과 교육이 아시아에서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 국가 또는 몇몇 국가 사이에 당면한 초국가적 범죄나 이민과 강제추방 관련 문제 등의 과제에 지속적으로 함께 거시적 논의를 함께 이어가는 것은 기초적 과제로서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법제도입과 법제 개혁이 이른바 발전된 국가의 법제를 법적 모범이나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자신의 아시아 주변 국가나 관련된 문제가 있는 국가의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와 논의가 주체적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2] 이는 아시아 법에 대해서도 일정한 소개와 법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과 범죄대응 및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 등과 관련하여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국의 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하게 되는 국가의 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 및 교육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필요성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시아 지역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법질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범죄인 송환과 범죄인 인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와 다양한 측면의 국제관계가 확대되면서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해외 도피범죄인의 송환과 관련하여 범죄인 인도의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강제추방의 형식으로 범죄인이 송환되기도 한다.

---

2) 아시아의 현재 공동의 법적 논의 단계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거나 시작도 잘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민관련 법제의 상호소개와 관련 논의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 이민관련 문제의 협력을 위한 가능한 일정한 결의와 협의로 도출된 표준안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출된 협의를 바탕으로 일정한 지원을 위한 관련 공동기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아시아에서 아직은 상당히 요원한 일일 수 있지만 논의의 시작은 필요할 것이다. (Joel P. Trachman, *Multilayered Migration Governance, The promise of partnership, Coherence and the regime complex for international economic migration,* (Routledge, 2010), 52)

〈표 2-1〉 최근 4년간 도피사범 현황[3)]

연도	2013	2014	2015	**2016**
인원	254	349	433	**613**

해외 도피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3년 254명과 2014년 349명에 이어 2015년 433명, 2016년 613명이다. 이는 도피사범이 송환되는 수가 2013년 120명에서부터 2014년 148명 그리고 2015년 216명과 2016년 297명 등으로 도피하는 범죄인이 송환되는 범죄인에 비하여 매년 두 배정도의 많은 수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 최근 10년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현황[4)]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61	64	54	61	74	99	120	148	216	**297**

최근 10년간 국외 도피사범의 국내송환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부터는 매년 100여명이 넘는 수가 송환되고 있는데, 2013년 120명과 2014년 148명에서 부터 2015명 216명과 2016년 297명 등으로 강제송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피사범의 송환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인의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인의 강제송환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해외 도피방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의 대용수단으로 강제추방이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범죄인을 인도받는 경우와 관련하여 범죄인이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 범죄수익 및 범죄자산을 해외에 은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등 범죄

3)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9 (검색일: 2017.10.23.)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방이 범죄인 인도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반대되는 주장들[5]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추방이 신속한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다.[6]

〈표 2-3〉 2016년 범죄인 도피 국가별 현황[7]

2016	합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국
인원	613	209	180	56	40	30
비율	100%	34.1%	29.4%	9.1%	6.5%	4.9%

도피하는 국가로는 2016년 총 613명 중 중국이 209명에 34.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필리핀이 180명에 29.4%, 베트남이 56명에 9.1%, 태국이 40명으로 6.5% 등을 차지하였다.

〈표 2-4〉 2016년 도피사범 국가별 송환현황[8]

2016	합계	필리핀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원	297	84	65	49	28	23
비율	100%	28.3%	21.9%	16.5%	9.4%	7.7%

도피사범의 국가별 송환현황으로 송환 도피사범 총 297명 중 필리핀이 가장 많은 84명으로 28.4%, 중국이 65명으로 21.9%, 태국이 49명으로 16.5%, 베트남이 28명으로 9.4%, 캄보디아가 23명으로 7.7%를 각각 차지하였다. 도피사범이 도피하는 국가나 도피사범이 송환되는 국가가 중국과 필리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이규창,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67쪽.

6) 물론 강제추방 되어 온 범죄인을 신속하게 인도받는 경우에도 범죄수익 및 범죄관련 자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추가적인 협의나 증명이 있어야 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서도 이민법 또는 출입국법 차원에서도 함께 공동의 문제인식과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8)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 사이의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위반 및 테러범죄, 돈세탁, 조직범죄, 인신매매,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서도 아시아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 이외에도 테러범죄와 사이버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보호의 문제 역시 균형을 찾는 일정한 관련 논의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9)]

또한 강제추방을 통한 범죄인 강제송환의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 자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환수나 회수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10)] 범죄수익과 자산이 회수나 환수가 되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가 없는 경우[11)] 역시 범죄대응에 취약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여 출입국관리에서부터 입국금지와 강제추방 및 범죄수익 자산회수 등 이후 조치들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강제추방과 인권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2)]고 세계인권선언은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타국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강제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각 국가의 주권의 영역으

---

9) Tamar Meisels, *The Trouble with Terror*, (Cambridege, 2008), 58-59

10)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범죄수익 자산의 회수와 관련하여 관련 범죄수익이나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강제추방을 통해 범죄인을 강제송환 하는 경우에 해당 범죄인의 범죄수익과 자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를 법적 절차와 증명을 통해 회수나 환수를 하는데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 들은 아시아의 다 국가간 또는 양국가 간에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련 대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김경찬, "중국의 범죄수익 자산몰수 관련 문제점과 한중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4, 62면

12) 세계인권선언 제13조;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검색일: 2017.11.2.)

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강제추방 결정에 대한 일정한 이의신청[13]이나 불복구제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14] 이는 포괄적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유가 범죄로 인한 경우 강제송환 받는 국가에서 사형적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역시 범죄인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보호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일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의 논의나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논의 역시 이른바 서구사회가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온 바와 유사하게 처음에는 문제를 공유하는 국제화된 포럼형식에서 점차적으로 법제화로 나아간 것처럼 먼저 강제추방을 포함한 사형, 인신매매 등과 같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확대와 지속 후에 법제화로의 진행을 꾸준히 노력할 필요[15]가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서구의 인권논의에 개방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체적으로 관련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16]

본 연구는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강제추방의 주요 사유를 파악하

13) 한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이의 신청시 기각 또는 각하가 대부분이고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기각결정자 중 특별체류허가는 일정부분 있다고 하겠다.

〈표 2-5〉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현황

구분	강제퇴거자	접수	처리현황			기각중특별체류허가
			기각	각하	인용	
2013	18268	98	77	19	-	9
2014	18316	54	41	13	-	9
2015	21919	65	58	7	-	22
2016.8	18297	79	62	17	-	16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XII), 2016.9.26, 589면

14) 중국의 강제추방 관련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중국의 강제추방 관련 사례에서 항소를 통하여 강제추방 적용을 받지 않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15) Michael K. Addo, The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artinus Nihoff, 2010), 84-127

16) Rob Dickinson, Examining Critical Perspectives on Human Right, (Cambridge, 2012), 20-21

고 관련기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강제추방과 구제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강제추방 관련 사례들을 함께 다루어 보고, 앞으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기관과 함께 법체계와 절차 및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추방과 관련한 점진적인 공동논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강제추방

장레이(張磊)

제3장

중국의 강제추방

제1절 중국 강제추방 연구의 의의

한국과 중국의 인적·물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나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은 2017년 사드여파로 관광객 수가 급감한 점은 있지만,[17] 2015년 641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에 이른다.[18] 또한 중국을 찾는 한국인은 2015년도에 444만 4400명으로 중국의 전체 외국인 방문객 의 17%를 차지하는 2598만 5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이 다른 외국인보다 많은 1위를 차지하였다.[19]

이렇듯 한국과 중국의 상호 인적왕래와 교류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혀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도피자가 도피하는 국가 역시 중국으로 2016년도 해외도피자 613명 중 209명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20] 또한 2016년 도피범죄자 중 한국으로 송환된 범죄자 총 297명 중 중국이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여 65명에 이른다.[21] 이렇듯 강제송환이 하나의 신속한 방법으로 강제추방이 활용되기도 한다.

---

17) 외국인 관광객 감소관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2/0200000000AKR20170822126300030.HTML (검색일 2017.11.6.)
18) 법무부, 2015년 출입국 연감, 39면
19) 손진석, "중국 찾는 관광 1위는 한국, 중국의 수입 1위도 한국", 〈조선일보〉, 2017년 3월 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5/2017030501523.html (검색일: 2017.11.6.)
20)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21)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또한 한국에서 강제추방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국적 역시 중국으로 2009년도에는 총 강제추방자 29,043명 중 중국인이 11,661명에 이른다.[22]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교류의 증가와 확대에 따른 범죄자 송환과 강제추방의 활용문제 및 강제추방과 관련된 인권보호 문제가 함께 상호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강제추방 관련 법제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통하여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공동논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강제추방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이른 사례로는 1949년 11월 26일 미국의 심양주재 영사관이 간첩혐의를 받고 추방된 것이다.[23] 본 연구는 중국의 컴퓨터 인터넷 자료와 인터넷 문헌자료 선별 및 법학 관련 자료 선별을 거쳐 1979년부터 2017년까지 40년간의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검토한 것으로 형법, 행정법, 지방법치, 국제법, 법리법사, 소송법 및 사법제도 등을 포함한다.[24] 또한 중국 법원의 영향력 있는 강제추방 관련 사례를 중국 재판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검토하고 정리한 것이다.

아직 중국의 강제추방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는 전체 현황검토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역시 일정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중국의 강제추방 입법(驱逐出境立法)

1. 행정법에 있어서의 강제추방(行政法中的驱逐出境)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행정법에서는 하나의 행정적 강제방법(行政强制方法) 또는 행정적 처벌 방법(行政处罚方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중국 반간첩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反间谍法)》(2014년11월1일부터 실시) 제34조에는 "국

22) 법무부, 외국인 중 국가별 강제퇴거 현황,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11, 2010, 199면
23) 参见庞仕平：《建议修改和完善我国的驱逐出境制度》，载《法学杂志》1995年第1期，第43页
24) 数据来源 http://kns.cnki.net/kns/brief/default_result.aspx，最后访问时间 2017年7月3日17点

외의 인원이 해당 법을 어겼을 경우 기한 내에 출국시키거나 강제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중국 출입국관리법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2013년7월1일부터 실시) 제21조는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을 시에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항은 강제추방(驱逐出境)이나 국외 송환(遣送出境)처벌을 받고 아직 입국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 제49조 가운데서 규정했듯이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할 경우 공안부는 중국 경내에서의 영주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칠 경우, 강제추방당한 경우, 허위로 날조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불법적인 수법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 경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규정된 기간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 중국국내 거주에 적합지 않은 여타의 상황들이다.

또 해당 법 81조에서는《출입국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에서의 강제추방, 기한 내 출국 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응한 규정을 해 두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이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유와 합당치 않은 활동에 종사할 경우, 또는 그 외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어겨 중국 경내에서 계속 거주하기에 합당치 않은 상황일 경우 등은 기한 내 출국토록 할 수 있다.", "외국인이 법률법규를 어겨 그 정절(情节)이 심각하지만 범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尚不构成犯罪的) 등은 공안부에서 강제추방 할 수 있다. 공안부의 처벌 결정이 최종적 결정으로 된다(最终决定).", "강제추방 당한 외국인은 추방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25]

다.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

25)《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제81조 참조

条例)》(2013년 9월 1일부터 실행) 제29조에선, 공안기관이 필요할 경우 송환 대기 장소(遣返场所)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출입국 관리법 제 60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 조사(拘留审查)를 할 경우는 피 구인 조사 대상인 외국인을 24시간 안에 구인 또는 송환 대기 장소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날씨, 당사자의 건강 상황 등을 원인으로 즉시 송환출국이나 강제추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관련 법률 문서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구인 장소 또는 송환대기 장소에 머물게 하여야 한다. 제 34조에서는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 이를테면 기한 내 출국, 송환 출국, 강제추방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소지한 체류 증서가 아직 반납 또는 무효화 처리 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개인 사정으로 중국국민이 홍콩지역이나 마카오지역 왕래에 관한 임시적 관리 방법(中国公民因私事往来香港地区或者澳门地区的暂行管理办法)》과 《중국 국민의 타이완 지역 왕래에 관한 관리방법(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에서는 중국 대륙 거주민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거주민 사이의 왕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 중국 지진방지와 재난경감 관련법

《중화인민공화국 지진방지와 재난경감 관련법(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2009년5월1일부터 실시)제86조에서는 지진방지와 재난 경감 관련법을 어겼을 경우와 관련한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의 단체나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领域)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의 해역에서 지진 감측(监测)활동을 하는 경우는 국무원 지진 사업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위법행위를 막아야 하며 그 감측한 결과물과 관측 장비를 몰수함과 아울러 1만 위엔(元) 이상 10만 위엔의 벌금을 내리고 그 정절이 심각할 경우는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 만약 “외국인이 앞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앞 조항 규정대로 처벌하는 외에 또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율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머물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중국에서의 거주 자격을 말소해야 한다.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는 정한 기한 내 출국이나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2012년 개정) 제10조에서는 치안관리 처벌 유형을 경고, 벌금, 행정구류(行政拘留), 그리고 공안기관에서 발급해 준 허가증 사용정지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조항의 마지막에는 치안관리법을 어긴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외국인일 경우 추가적으로 기한내 출국 또는 강제추방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바. 중국 국경외 비정부단체의 국경내 활동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境外)의 비정부 단체가 중국 국경내 활동에 관한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제50조에서는 국경외(境外)인원이 이 법(本法)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관련 기관에선 법에 따라 기한 내 출국, 국외송환이나 또는 강제추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중국 측량법

《중화인민공화국 측량 관련법(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2017년7월1일부터 실행) 제51조에선 이 법의 규정을 어긴 외국의 단체나 개인이 허가 받지 않았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부서, 단위(单位)와의 합작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측량 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그 불법 소득(所得), 측량 결과물과 측량 도구를 몰수하며 아울러 10만 위엔(元)이상 50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엔, 50만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아울러 부과하고 기한 내 출국 또는 강제추방 한다.

범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법 제 66조에서는 측량 관련법 제 51조에서 규정한 기한내 출국과 강제추방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형법에서의 강제추방(刑法中的驱逐出境)

행정법에서의 강제추방과 형법에서의 강제추방은 그 문자의 표면적 의미에선 뚜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형법에서 설치한 이런 유형의 부가형 성격의 형벌 방법과 행정법에서의 행정적 강제조치 또는 행정처벌 방법 등 양자의 구분에 있어서는 형법에서 규정한 강제 추방은 행정법에서와 확연히 다르다.

형법에서의 강제추방은 주로 중국의 형법전(刑法典)에서 드러나기도 하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제추방의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한 효과적인 입법적 해석이나 사법적 해석은 없다.

현재 중국에선《형법(刑法)》제35조에서만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형법전에서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론적인 문제에 있어선, 이를테면 강제추방의 형벌적 지위, 강제추방의 적용 범위, 강제추방과 여타 부가형의 경합, 그리고 또 실천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부 현실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강제추방의 적용대상 등등 입법적인 지도(指引)를 결하고 있다.

2013년 10월 23일, 중국최고인민법원(中国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 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 사법부에선《미성년자 성적침해 범죄에 대한 법에 의한 처벌에 관한 의견 (关于依法惩治性侵害未成年人犯罪的意见)》을 인쇄배포하였다.

그 39조에선 외국인이 중국 영역(领域)안에서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외설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재판 처벌해야 하는데 형벌적 처벌을 할 때 독립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아직 범죄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치안관리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를 저질러 중국 경내에 계속 머물거나 거주하기엔 적합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선 법에 따라 기한 내 출국시키거나 강제추방 할 수 있다.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 검찰원, 공안부, 안전부, 사법부의 외국관련 사건 처리와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外交部、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安全部、司法部关于处理涉外案件若干问题的规定)》(1995년6월20일) 에서 다음의 상황 가운데 그 어느 하나와 같은 상황과 접했을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과 여타의 담당기관은 관련 사건의 정황과 처리관련 상황, 그리고

외부에 대한 태도표시를 사건처리접수 또는 조치를 취한 48시간 안에 바로 위 급별 담당기관에 보고 해야 함과 동시에 같은 급별의 인민정부 외사판공실(外事办公室)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적 구인을 실행, 형사적 구인, 사법적인 구인, 구류 조사, 체포, 거주감시, 불구속 조사(取保候审), 여권압수,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등 모두를 포함한다.

3. 그 외의 해석과 통지 및 법률

이외에도 일부 국무원 문건들에는 강제추방과 관련한 일부 기본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기도 하다. 그 예를 들자면 경(境)의 범위에 관한 문제 등이다. 이를테면 《국무원의 해안(海岸)과 국경의 중점 지역 개방과 개발 지원 관련 약간의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支持沿边重点地区开发开放若干政策措施的意见)[국발(国发)〔2015〕72번]》에선 국가는 국경지역공안기관과 주변 국가의 법집행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 금지, 도박금지, 반테러, 불법 출입국, 납치인신매매, 밀수 등 여러 면에서의 법집행상 협력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변국이란 단어를 제기하였는데 《국무원판공청의 국경지역을 활성화시켜 그 지역 서민을 잘 살게 하는 행동"십삼오" 계획에 관한 통지문(국판발(2017)50번)[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兴边富民行动"十三五"规划的通知（国办发〔2017〕50号）]》의 특별란 6에선 강도를 더욱 높혀 국경지역에서의 반테러, 밀수와 불법출입국 단속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변경 지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구분 지었는데 육지 변경지역(边境地区)을 주변국과 인접한 9개의 성시자치구의 변경현(시, 구, 기(旗)), 신강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의 변경 주재지 및 해남성(海南省)의 6개 민족자치현(民族自治县)이 그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 관련 법(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2016년 1월1일부터 실행) 제38조에선 국경(변경)에 도착, 출발, 그리고 국경(변경)을 통과시 검사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국경(변경)이란 용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또한 이 법 제69조에선 변경지역 인민정부와 주관 부서의 반테러리즘 국제공조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 하였고 그 가운데서 인접국가와 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3절 중국의 강제추방 성격(驅逐出境的性質)

강제추방의 성격과 관련한 학계의 토론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 당시 학자들은 강제추방이 형벌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 제각각 의견을 달리 하였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이 있었다.

1. 행정적 강제성격

첫 번째 주장은 강제추방은 다만 행정적 강제 조치일 뿐이라고 여긴다. 이런 관점을 지지한 학자들은 강제추방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공안기관 일 수 있기에[26] 이런 상황에서라면 강제추방 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령은 재판기관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된다. 이로부터 결론을 내리자면 강제추방은 행정적 강제조치일 뿐이지 형법적 징벌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 이론에 대한 지지자는 강제추방은 행정적 처벌방법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강제추방이 1979년 형법에서의 기본 함의에 근거한다. 이는 경제적 손실배상, 훈계나 잘못을 뉘우치는 서약서를 명령 받거나 사죄하는 등등의 조치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형벌적 처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27] 80년대 이후에도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다. 강제추방이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치라고 여기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강제추방 행위의 기본방식에서 강제추방 결정을 하는 주체의 특수한 성질로 볼 것 같으면 강제추방을 본국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자국 변경 바깥으로 추방하는 강제조치나 행정처벌 방법으로 정의한다.[28]

---

26) 参陈浩铨：《驱逐出境是行政强制措施》，载《政治与法律》1986年第5期，第35页。该作者当时是以1985年当时有效的《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中的规定作为判断的依据，根据该法第三十条规定"有本法第二十九条所列行为情节严重的，公安部可以处以限期出境或驱逐出境处罚"。以当时有效的法律的规定进行分析，该作者得出属于驱逐出境属于行政强制措施有一定的逻辑合理性

27) 参于志：《驱逐出境不属于刑罚》，载《政治与法律》，1985第3期，第14页。该文是对1979年刑法中规定的驱逐出境制度进行的分子。在中国1979年刑法中，第三十条规定的对犯罪的外国人在中国国内犯罪的可采取驱逐出境的方法，但是并没有明确的将驱逐出境规定为刑法的主刑或者是刑法的附加刑

28) 田刚：《我国驱逐出境制度的冲突与调适》，载《人民检察》2016年第17期，第17-21页

2. 형벌적 성격

두 번째 주장은 강제추방은 형벌적 방법이지 행정법적 의미에서의 조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 학자들은 강제추방은 행정적 강제조치와는 틀리며 또한 보통 말하는 형벌적 처벌 방법과도 틀리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강제추방은 하나의 특수한 부가형으로서[29] 특수한 범죄자, 즉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부가형으로 공안기관에서 강제추방의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이 형벌적 본질에 드는 것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30]고 하는 이런 표현방식은 강제추방이 부가형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논조에서 보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 한 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외국인(무국적자도 포함)이 중국국내에서 법을 어겼지만 아직 범죄에까진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은 알기 쉽게 명백히 해 두지 않은 것은 좀 미비점으로 남는다.

3. 법률별 구분

세 번째 주장은 강제추방이란 개념 속에 내포된 기본 뜻을 상당히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해석해 놓은 것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쉽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각기 다른 부서별 법에서 적용한 강제추방의 상황들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구분을 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형법적 성격의 강제추방, 그리고 행정법 성격에서의 강제추방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이다.[31]

또 한 예를 들면 치안관리 과정에서 외국인이니 무국적자 관련 범법행위를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경우, 이런 행위에 대한 강제추방 결정은 공안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때의 강제추방 결정 주체는 특수성을 띠기에 이 경우의 강제추방은 행정

---

29) 杜邈：《驱逐出境刑的司法适用：载《检察日报》2008年10月29日 第3版

30) 参冯艳蓉：《驱逐出境是一种刑罚方法》，载《政治与法律》1986年第2期，第4页.在该学者的文章中，对驱逐出境属于刑法处罚方法的论述，建立在对刑法法条的分析上，认为在1979年刑法关于外国人犯罪时适用的一些例如赔偿经济损失或者责令具结悔过的规定中没有驱逐出境的规定，所以驱逐出境就不是属于非刑法的处罚方法，但是在刑法法之中又有体现，在加上并不是属于主刑，就将其列为一种特殊的附加刑；参 李伟芳 ,王正超：《驱逐出境仅是一种刑罚吗?》 ，载《政治与法律》1986年 第6期

31) 参见赵春玮、朱斌斌：《 行政性驱逐出境制度研究》 ，载《中国青年政治学院学报》2010年第4期，第139-143页；蔡雅奇：《从理论分析与实践适用看驱逐出境：，载《检察日报》2013年1月9日

적 강제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가 범죄와 관련될 경우엔 또 틀린다. 범죄로 하여 심판 절차에 들어간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거쳐 죄를 확정한 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는 강제추방 하며 강제추방 할 때는 그것이 주형이냐 아니면 부가형이냐는 고려치 않는다.[32] 또 어떤 학자들은 강제추방이 주형이냐 부가형이냐 구분하는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은 연구 토론을 하기도 하지만 강제추방 제도를 서로 다른 부서별 법의 의미에서 구분해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33]

세 번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강제추방을 형법적 의미에서와 비형법적 의미에서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는 동시에 강제추방을 의당 특수한 부가형의 하나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1997년 형법전(刑法典)에서 강제추방제도를 규정할 때 채용했던 것은 특수 부가형적 처리방식이었다는 것이다.

형법전 제35조에선 강제추방을 적용할 때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부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강제추방은 어느 정도 부가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특별한 성격도 띠게 되었다.[34] 적용방식으로 볼 것 같으면 강제추방과 부가형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형법 세칙에서 규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다룰 때는 범죄인, 외국국적자와 그 어떤 국적도 없는 자 모두 포함하여 특수한 대상으로 하기에 형법전에서 특수하게 설명 해 둘 필요가 있었고 특수하게 설명을 곁들인다고 하여 형법전 자체의 완전성을 파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형법전에서 곁들인 특수한 설명과 특별한 규정을 보다 선시(宣示)적인 의미를 띠게 해주고 중국의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관련 범죄에 대한 중시를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준다.

그 밖에 강제추방이 형법적 의미에서의 개념이냐, 그 여부를 구분할 때,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적 조치 또는 형법의 부가형적 구성부분으로 봐야 하느냐는 강제추방

32) 参见赵永琛：《论驱逐出境——兼论我国驱逐出境制度的完善》，载《公安大学学报》1991年第4期，第41-45页

33) 参见庞仕平：《建议修改和完善我国的驱逐出境制度》，载《 法学杂志》1995年第1期，第43页

34) 附加刑是补充主刑适用的，其特点是既可以独立适用，也可以附加适用，参赵秉志主编：《刑法新教程》，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2版，第349页；贾佳：《驱逐出境刑的现状及完善》，载《人民论坛》2014年第 26期，第254-256页

개념이 등장한 후 일찍이 학계에서 논쟁이 일었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강제추방이 형법차원에서의 형벌적 조치이냐 여부, 또 강제추방이 보안적 처분(保安处分)이냐 그 여부와 관련한 문제 등도 포함한다.

강제추방은 보안적 차원에서의 처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현대 형법적 의미에서의 보안적 처분은 나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인신위험성이 있는 사람(具有特殊人身危险性的人: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벌 또는 보충적 형벌(补充刑罚)대신에 적용하는 조치로서 교정조치, 제한조치와 의료적 조치, 교육적 조치를 통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사회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안적 처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이는 범인의 재판받기 전의 행위인 것이 아니라 판결 후 범인의 재범 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다.

제4절 중국의 강제추방 적용과 사례

1. 행정법에서의 강제추방 적용

중국 행정법에서의 강제추방의 적용은 중국의 강제추방에 관한 규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출입국관리법, 측량법, 치안관리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으며, 주로 외국인이 중국의 관련 행정법 규정을 어겼으나 범죄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때 적용된다.

2. 형법에서의 강제추방 적용

중국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독립적으로 강제추방을 적용하거나 또는 죄를 확정, 그 양형을 언도, 그리고 그 형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 추방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세칙에서 강제추방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 관해 규정해 놓지 않았기에 형법에서의 강제추방 부분을 보다 완벽화하기 위한 일부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선 보다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강제추방이 적용되었거나 적용되지 않은 범죄와 사례들은 비교적 다양하게 있는데

강제추방이 적용된 범죄로는 강도죄, 절도죄,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사기죄, 밀입국 방조죄, 마약불법소지죄, 마약밀수죄, 마약운반죄, 여성·아동 유괴·매매죄, 공공질서 문란죄,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 개인정보 불법취득죄 등에 강제추방이 이루어졌다.

강제추방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의 관련 범죄로는 불법경영죄, 절도죄, 밀입국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추방이 논의 또는 검토된 후 적용되지 않았다.

가. 강제추방 적용범죄

중국 형법 제35조에선 강제추방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해 놓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강제 추방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독립적으로 강제추방이 적용된 사건들을 보면 흔히 그 정황(情节)이 상당히 경미한 범죄들이다.

다시 말하면 범죄요건은 충족시켰지만 사회관계를 침해한 정도는 그다지 심각치 아니하거나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치 아니한 것들이며 부가형으로 강제추방을 적용한 사건들은 흔히 그 정황이 심각한 범죄 사건들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중국 형법에서 정절의 경미 여부에 관해선 자세한 규정이 결여돼 있어 실무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선 그 지침의 결여로 실질적으로 강제추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중국 현재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다만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면 강제추방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만일 이미 형법에서의 국가안전에 피해를 입힌 범죄, 경제질서에 해친 범죄, 국민의 민주권리를 침해한 범죄 등 형법 세칙에서 규정해 놓은 범죄, 이를테면 사법적 실천 속에서 죄로 확정되어 강제추방 판결이 난 범죄들로는 강탈죄(抢劫罪), 고의 상해죄(故意伤害罪), 조직적으로 월경한 죄(组织他人偷越国边境罪)[35], 절도죄, 여성·아동 유괴 및 매매죄, 공공질서 문란죄, 사기죄, 개인정보 불법취득죄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서 강제추방을 부가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몇 가지

35) 길림성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의 김원의 강탈사건에 대한 1심 형사판결서.2014년 장간이초자제00008번(抢劫一审刑事判决书.2014年长刑二初字第00008号), 광서쫭족자치구흠주시중급인민법원, 배문장이 사람을 모아 월경한죄와 관련한 형사판결서.(2014)흠간이종자제67번(裴文庄涉组织他人偷越国（边）境罪一案刑事裁定书.（2014）钦刑二终字第67号)

사례만 우선 소개하고 관련 전체 세부적인 관련 사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1) 김○○ 강도 사건[36]

피고인 김○○, 남성, 국적불명. 2004년 3월 29일 그는 강도죄로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에 의해 유기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년 2월 28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그 후, 강도죄(抢劫罪) 혐의로 2013년 12월 18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 30일 구속(逮捕)되었다.

1심법원은 피고인 김○○가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김○○는 형벌집행 후 5년 이내의 재범이기에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죄와 재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김○○는 법정에서 스스로 죄를 시인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감형했다. 피고인 김○○에 대해《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3조 강도죄, 제65조 재범, 제35조 강제추방 및《중화인민공화국형사형소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95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김○○는 강도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5년, 10,000위엔(元)의 벌금 및 강제추방 판결을 받았다.

(2) 고(高) 모씨 절도사건[37]

피고인 고(高) 모씨, 남성, 1984년 3월 9일생, 현지 민행구(闵行区) 중춘로(中春路) XXX길 XXX골목 XXX번지 XXX호 임시 거주.

기소기관(公诉机关) 고소 혐의, 피고인 고(高) 모씨는 2015년 11월 22일 3시쯤, 상해시 연안 중로(上海市延安中路) XXX번지 MYST 술집 문 앞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위(魏)모씨가 맨 숄더백을 빼앗아 HSBC 및 농업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갔다. 그 후, 피고인 고 모씨는 훔친 카드로 상해시 여러 곳에 설치된 ATM기에서 총 38,000위엔(元)을 인출했다.

2015년 12월 2일 17시쯤, 피고인 고 모씨는 상해시 서회구 홍매로(上海市徐汇区虹梅路) XXX번지 의념(衣念, 상해)패션 무역유한공사에서 경찰에게 체포된다. 법정에 선 고 모씨는 상술된 범죄 모두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 위 모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면서 피해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도해 거액을 사용한 고 모씨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 고발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주관적 악질이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또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선고된 강제 추방은 면하고 집행 유예만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법원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사유재산침해보호(保护公私财产不受侵犯)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6조 제1항, 제264조, 제196조 제3항, 제67조 제35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 고 모씨에게 유기징역 3년, 벌금 1만위엔(元),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

36)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吉林省延吉市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4) 연형초자(延刑初字:延_연길시,刑_형사판결, 初_1심판결, 字_문서번호) 제111호

37)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정안구 인민법원 형사판결문(华人民共和国上海市静安区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6) 호0106형초85호(沪0106刑初85号)

(3) 송○○, 정○○, 배○○, 한○○ 등 4명의 사기사건[38]

피고인 배○○, 남, 1979년 4월 7일 길림성 연길시(吉林省延吉市) 출생, 조선족, 중졸, 무직, 현재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吉林省延吉市公园街)에 거주. 컴퓨터 정보 데이터 불법 취득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죄 혐의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하였다.

피고인 한○○, 남, 1983년 11월 18일 길림성 용정시(吉林省龙井市) 출생. 조선족, 중졸, 무직, 현재 길림성 용정시 용문가(吉林省龙井市龙门街)에 거주, 길림성 연길시 북산가(吉林省延吉市北山街)에 거주.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죄 혐의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하였다.

피고인 정○○, 남, 1985년8월4일 출생, 한국 국적, 고졸, 무직, 호적은 한국 인천 광역시 계양구.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住吉林省延吉市公园街) 거주.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죄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하였다.

피고인 송○○, 남, 1988년 4월 27일생. 한국국적, 고졸, 무직, 호적은 한국 대전광역시 중구.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吉林省延吉市公园街)거주.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취득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혐의로 2013년 11월 19일 법원 판결 내용: 피고인 배○○, 한○○,정○○, 송○○는 불법 점유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편취 액수도 거액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죄명이 성립함. 피고인 배○○, 한○○, 정○○, 송○○가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였으므로 정상참작하여 감량처벌함. 피고인 배○○, 한○○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66조 사기죄, 제25조 공범죄 규정에 따라, 피고인 정○○, 송○○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66조 사기죄, 제25조 공범죄, 제35조 강제추방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배○○, 사기죄, 유기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0위엔(元)
2. 피고인 한○○, 사기죄, 유기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0위엔(元)
3. 피고인 정○○, 사기죄, 유기징역 3년, 벌금 10000위엔(元), 강제추방
4. 피고인 송○○, 사기죄, 유기징역 3년, 벌금 10000위엔(元), 강제추방 구속.

(4) 오○○ 고의상해 사건[39]

피고인 오○○: '오영청'이라는 이름도 씀. 남성, 1994년 베트남 출생, 묘족, 초졸, 2013년 3월5일 베트남에서 사회(四會)로 밀입국(이상 기본 인적사항은 모두 스스로 밝힘).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6월 28일 형사구류 됐으며 같은 해 7월10일 체포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사회시 인민검찰원(廣東省四會市人民檢察院)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13년 6월26일 밤 22시경 피고인 오○○가 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말해 쌍방간에 갈등이 생겼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오○○가 재크나이프를 꺼내 이○○의 복부를 찔렀고 법의학 감정을 한 결과 중상이었다. 공소기관은 이에 피고인 오○○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중상을 입힌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의상해죄로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였다.

피고인 오○○는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형벌집행 완료 후 강제추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제2항, 제35조,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오○○는 고의상해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벌집행 완료 후 강제추방한다.

---

38)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4) 연형초자 제377호

39)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사회시 인민법원(廣東省四會市人民法院)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 (2014) 조사법형초자제54호(肇四法刑初字第54號)

(5) 도○○, 고(顧)○○, 고(古)○○ 여성, 아동 유괴·매매 사건[40]

피고인: 도○○. 남성, 1981년 11월9일 출생, 묘족, 운남성 마관현(馬關縣) 출신, 초졸, 농민. 여성, 아동 유괴·매매 범죄 혐의로 2014년 12월7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瑤族自治縣) 공안국에 붙잡혔다.

피고인 고○○. 남성, 1996년 4월1일 출생, 운남성 마관현 출신, 초졸, 농민. 여성, 아동 유괴 매매 범죄 혐의로 2014년 12월7일 하구요족자치현 공안국에 붙잡혔다. 같은 달 8일 형사구류되었고 2015년 1월 14일 체포됐다.

피고인 고(顧)○○. 남성, 1994년 출생, 묘족, 베트남 국적. 여성, 아동 유괴 매매 범죄 혐의로 2014년 12월7일 하구요족자치현 공안국에 붙잡혔다. 같은 달 8일 형사구류되었고 2015년 1월14일 체포됐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도○○, 고(顧)○○, 고(古)○○가 팔 목적으로 만 14세와 14세 미만의 베트남 국적 소녀 세 명을 유괴·매매한 행위는 모두 여성, 아동 유괴 ·매매죄를 구성한다.

1. 피고인 도○○는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2. 피고인 고(顧)○○는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3. 피고인 고(古)○○는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만기 석방 후 강제추방한다.

(6) 황(黃)모씨의 [41]공공질서 문란죄 사건(寻衅滋事案)

피고인 황 모씨(자가 신청(自报), 남성,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거주민, 초등 학력, 호적지: 베트남, 현재는 광동성 사회시(广东省四会)에 거주하였다.

본 사건 피고인은 2015년 7월 20일 붙잡혀, 2015년 7월 21일 사회시 공안국에 형사 유치, 같은 해 8일 7일 체포된다.

법원 판단: 피고인 황 모씨는 국가 법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다. 이런 행위는 공공질서 문란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황 모씨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 경내로 들어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 집행이 완료되면 강제 추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93조, 제67조 제3항, 제35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공질서 문란죄를 범한 피고인 황 모씨에게 1년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 집행 후 강제 추방한다.

---

40)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雲南省) 하구요족자치현인민법원(河口瑤族自治縣人民法院) 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2015) 하형초자제32호(河刑初字第32號)

41)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사회시 인민법원 형사판결문(中华人民共和国广东省四会市人民法院刑事判决书, 2015)조사법형초자 제422호(肇四法刑初字第422号)

(7) 라시디·망고·카와야 마약 밀수, 매매, 운송, 제조 사건[42]

피고인 라시디·망고·카와야. 마약 밀수 혐의로 2013년 12월 9일에 법에 따라 거주지 감시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10일에 형사 구속된 후 2014년 1월 14일에 체포된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밀수해 온 마약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는 사회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본 사건의 구체적 정황 등을 감안해 법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강제추방만(单处驱逐出境)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제347조 제1항, 제35조, 제64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마약 밀수죄를 범한 피고인 라시디·망고·카와야에게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2. 항주 소산 공항 세관 마약밀수 분국은 미수 건으로 법원으로 이송된 피고인의 범죄 소득 1700달러를 추징하여 국고로 납부한다. 범죄 도구인 삼성 핸드폰 1대도 몰수한다.

(8) 완○○의 타인 밀입국 조직 사건[43]

피고인 완○○, 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대학 졸업, 무직,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 거주.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로 2014년 11월 4일 형사 구류, 같은 해 12월 11일 구속되었다.

법원 판결: 피고인 완○○는 부당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비자를 편취하고 직접 입국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이 밀입국하도록 조직하였으며, 이는 중국 출입국관련규정을 어지럽혔으므로 그 행위는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다스려야 함. 피고인 완00는 타인과 외국인 여성의 밀입국을 조직하여 공동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중 완○○는 주범에 속함. 피고인 완○○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제 추방조치가 가능함. 변호인 허경혜(许景惠)는 피고인 완○○를 감형처벌하고 강제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동의견이 합당하므로 인정함. 공소기관은 완○○가 타인의 밀입국을 조직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충분하고 공소사실과 죄명 성립이 동일하다고 주장. 단, 피고인 완○○가 L비자를 소지한 베트남 여성 1명에게 미혼신분증을 만들어줬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증거도 부족하므로 기각.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80조[타인 밀입국 조직죄], 제67조3항[자신의 범죄 자백], 제35조 [강제추방]등의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 피고인 완○○는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로 강제 추방한다.

(9) ○○Humphrey 개인정보 불법취득 사건[44]

상해시제일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一中級人民法院)은 2014년 8월8일 (2014)호일중형초자제127호(滬一中刑初字第127號) 형사판결을 내렸다. ○○Humphrey의 개인정보 불법취득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만위엔(元)과 강제추방을 병과했다.

법원은 범죄자 ○○Humphrey가 형벌집행기간동안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 감형 조건에 부합하여 범죄자 ○○Humphrey에 대한 감형 및 강제추방 처분 불변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 제262조 2항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78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범죄자 ○○Humphrey에 대해 징역을 7개월 감형한다. 강제추방 처분은 불변한다.

---

42)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항주시 중급 인민법원 형사판결문(2014) 절항형초자제 91호(浙杭刑初字第91号)

43)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사평시 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5) 사형초자 제20호

44)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제일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一中級人民法院) 형사재정서(刑事裁定書) (2015) 호일중형집자제1041호(滬一中刑執字第1041號)

나. 강제추방 비적용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상기와 같은 범죄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꼭 강제추방을 추가했던 것만은 아니란 것이다. 중국의 사법적 실천 가운데에는 법원에서 타국국적의 범죄인이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정절, 범죄의 성격, 범죄 결과 범죄인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추방을 추가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45]

(1) 주○○, 반○○1, 오○○, 임○○2 등 도박장 개설 사건[46]

이를테면 법원에선 범죄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모두 국내에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범죄인이 부양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확정한 후 강제추방을 적용치 아니하였다[47].

그 구체적 예를 들면 중국 절강성 온주시 중급인민 법원(浙江省温州市中级人民法院)에서 판결한 도박장을 차린 외국인 범법자의 사건과 같은 것이다.

> 원 공소기관은 절강성 온주시 녹성구 인민검찰원(原公诉机关是浙江省温州市鹿城区人民检察院)이다. 사건의 상소인은 (원심 피고인-原审被告人)오모(吴某)씨, 중국국적이 아닌 범죄자,범인은 2013년 4월12일 잡혀서 4월14일부터 형사구류되었다.
>
> 원판결에선 2013년 3월 하순에서 4월 사이에 피고 주모(周某), 판모(潘)甲은 정모甲(郑某甲), 오○○(吴建丰)(모두 별도 사건으로 처리)와 작당하여 온주시 녹성구 당가교 남로 대자연 가든 Z1동 101호 실(温州市鹿城区汤家桥南路大自然家园Z1幢101室)에서 역전앞 신홍 카드 놀이실(站前新鸿盛棋牌室)을 차리고 사람을 모아 텍사스 포커(德州扑克) 방식의 도박판을 벌여 커미션을 챙겼다.
>
> 원심의 죄에 대한 확정은 정확하며 또 상소인 임모갑 및 함께 저지른 사람의 범죄 참여한 시간, 범죄의 정황, 구체적인 역할 등을 근거로 보면 그 양형이 적절하고 심판절차도 합법적이다. 오모 및 그 변호인이 요구한 강제추방 비적용의 의견은 받아들여져 이를 인용한다. 임모갑이 요구한 재심의 이유는 불충분하여 이를 인용치 아니한다.

---

45) 浙江省温州市中级人民法院 吴某、林某甲、周某、潘某甲、林某乙、李某甲、李某乙、邓某、李某丙、王某甲、彭某、李某丁、金某、谢某开设赌场、赌博二审刑事判决书 (2014) 浙温刑终字第353号

46)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浙江省溫州市中級人民法院) 형사판결문(刑事判抉書)(2014)절온형종자353호(浙溫刑終字第353號)

47) 절강성 온주시 중급인민 법원의 오모, 임모 갑, 주모, 판모 갑, 임모을, 이모 갑, 이모 을, 등모, 이모 병, 왕모 갑, 팽모, 이모 정, 김모, 사모 등이 도박장을 개설, 도박한 죄와 관련한 2심판결서(2014), 절온형종자제353번(浙江省温州市中级人民法院 吴某、林某甲、周某、潘某甲、林某乙、李某甲、李某乙、邓某、李某丙、王某甲、彭某、李某丁、金某、谢某开设赌场、赌博二审刑事判决书 (2014) 浙温刑终字第353号)

주모(周某), 판모갑은 공동범죄를 저지르는 그룹내에서 보다 어린 점을 감안, 모두 가벼운 처벌만 내린다. 사모는 그 범죄 정황이 가볍고 또한 회개하는 점이 있기에 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주모씨는 고의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무겁게 처벌하였다. 오모의 가속들은 모두 중국국적이고 중국국내에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있는 점에 따라 오모의 범죄정황, 성격, 결과 본인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방을 적용치 않는 것이 그가 가족을 돌보고 부양의 책임을 다하는데 보다 이롭겠다고 사료되어 원심에서 그에게 내려진 강제추방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2) 칼포와 알렉산드리아 절도사건

또 한 가지는 범죄 정황이 그렇게 특별히 심각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교육과 개조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죄를 확정한 후 강제추방을 적용치 않은 사례가[48] 있다. 그것은 칼 포와 알렉산드리아 등의 절도 사건이다.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은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검찰원이 고소한 원심 피고 XX. 예카제리나와 XX. 알렉산드리아가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원심에선 2014년 4월20일 16시 30분 경, 피고 XX. 예카제리나와 XX. 알렉산드라가 상해시 포동신구 육가취 서로168번 정대광장 핸스 모리스(상해)상업유한회사 HM 복장점(上海市浦东新区陆家嘴西路168号正大广场海恩斯莫里斯（上海）商业有限公司HM服装店)에서 HM브랜드의 여성용 신발 6컬레와 메리야스 캐쥬얼 상의, 그리고 헤어밴드 등 여러 가지 옷과 장식품 41p를 절도했는데 감정결과 그 가치는 도합 인민페 7,412위엔에 달했다. 두 명의 피고는 상기의 물품들을 지니고 HM복장점을 떠난 후 보안일군에게 잡혔다. 피고 XX. 예카제리나와 XX. 알렉산드라는 조사 과정에 상기의 사실을 실토하였다.

두 명의 상소인에게 강제추방을 적용해야하는냐 그 여부다. 법원에선 조사 판명을 거쳐 상소인 XX. 예카제리나와 XX. 알렉산드라는 원래 화동 사범대학에서 한어(汉语)를 연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현재 중국에 남아 그 학업을 계속할 의향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형벌의 목적은 징벌과 교육(교화)가 결합돼야 하며 양형시 의당 재판의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법원은 상소인 XX. 예카제리나와 XX. 알렉산드라가 불법적 점유를 목적으로 남몰래 회사의 재물을 절도했고 그 액수 또한 비교적 커 그 행위가 이미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사건의 정황과 두 명 상소인의 학구적 필요 등에 비추어 강제추방은 적용치 않아도 된다.

48) 상하이 시 제1중급인민법원, 칼 포바 . 알렉산드라 등등의 절도죄 사건에 관한 2심 형사판결서 (2014)호1중형종자제1792번(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卡尔波娃·亚历山德拉等盗窃罪一案二审刑事判决书. (2014) 沪一中刑终字第1792号)

(3) 범○○ 절도사건[49]

피고인 범○○, 남성, 1996년 1월 25일 출생, 경족(京族), 소학문화(小学文化),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越南社会主义共和国) 국적, 호적지 베트남. 절도죄 혐의로 2016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운남성 하구 요족자치현 (云南省河口瑶族自治县) (이하 하구현(河口县)) 공안국에 잡혀, 동월 18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1일 구속(逮捕)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범○○는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했으며, 그 금액도 비교적 큰 액수로서, 그 혐의는 이미 절도죄에 해당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증거가 충분하여 절도죄에 성립한다고 혐의사실을 명백히 했다. 피고인 범○○은 사건 이후 죄에 대해 뉘우칠 뿐만 아니라, 불법 취득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았기에 법에 기반하며 가벼운 형이 될 수 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의 형량은 합당했으며, 법원 역시 이에 대해 수용했다. 국선 변호인(指定辩护人) 성○○는 "피고인 범○○는 비교적 큰 액수를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고 변호를 했으며, 재판사실과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이외 그 변호에 대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범○○는 베트남의 오랜 변경지역 거주민으로서, 양국(중국-베트남) 변경지역을 빈번하게 왕래했으며, 게다가 범○○는 범행을 저지름으로서 유기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았다. 따라서 범○○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5조 "강제추방(驱逐出境)"조항에 적용이 불가하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4조, 제67조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범○○는 절도죄를 범한 죄로 유기징역 7개월과 인민폐 1,000위엔(元) 벌금으로 판결확정 후 15일 이내 납입한다.

(4) 농○○ 등 밀입국 사건[50]

피고인 농○○, 남, 1991년생, 다이(岱依)족, 베트남사회주의공산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피고인 범○○, 남, 1985년생, 징(京)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 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피고인 등○○, 남, 1965년생, 요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 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피고인 황○○, 남, 1971년생, 다이(대의)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 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법원 인정 내용: 농○○, 등○○, 범○○, 황○○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관리법을 위반하고 밀입국한 범죄 행위가 엄중하고, 이들 모두 밀입국죄에 해당하며, 공소기관이 제기한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므로 죄가 성립됨. 동 사건은 공동 범죄이며 주범과 방조범으로 구분되지 않음. 각 피고인은 입건 후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감형 처벌함. 동 사건의 피고인 4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거주지가 중국 국경에서 가깝고, 중국과 베트남 간 왕래가 빈번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조의 강제추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49)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운남성하구요족자치현인민법원(云南省河口瑶族自治县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7) 운2532형초(云2532刑初) 14호

50)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자치현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5) 하형초자 제30호

제5절 중국의 강제추방 대상

보통 말하면 강제추방은 외국인이 중국경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한다. 중국형법에서는 속지 관할 원칙에 대해 규정해 놓았기에 중국 사법기관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무국적자도 포함)에 대해서도 사법적 관할권을 갖는다.

이 심판결과에 기반하여 그 후에 다시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서 법리상에서의 또 다른 논의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 후 중국으로 도주한 경우에 강제추방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말하면 중국은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할권이 결코 없다. 따라서 강제추방제도의 적용의 필요란 더욱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가령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중국에 온 것이라면, 이를테면 이 범죄자가 국외의 공안기관에서 수배중인 사람일 경우나 또는 이미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법적 심판 절차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당 우선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련된 행위가 중국에선 범죄에 해당하는 건지 여부를 평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또 범죄의 심각한 정도, 등 이런 것들을 사건 처리 시에 마땅히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만약 중국에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외국인에 대한 정죄는 고려치 말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사법공조 협약에 따라 합법적 목적과 청구라면 국적 소재국이나 기타 나라에 이 외국인의 재중국 관련 일부 정보는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만약 중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고려하는데 만약 특수한 신분을 가졌을 경우, 이를테면 외교적 특권이나 면책권을 향유한 경우라면 의당 외교적인 루트로 해결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외교적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구비하지 않은 보통 사람일 경우는 그 범죄가 해치는 사회적 관계(犯罪侵害的社会关系)나 그 범죄의 심각성, 그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형법에서의 몇 가지 심각한 범죄행위, 전쟁죄, 반인류 범죄 등등 범죄를 포함해서는 중국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중국 형법에서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해 해당되는 범죄로 심판 가능하다. 이를테면 고의적 살인죄, 납치죄 등으로 이러한 범죄자를 재판에 넘겨 심판처리 한다. 보통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결과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를 확정하여 판결한 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이를테면 중국 호남성 고등 법원(中国湖南省高院)에서 심리한 외국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 밀매 사건에서 법원은 3심에서 1심 판결을 바꾸어 강제추방을 단독으로 적용한 재판결과를 이끌어 냈다. 밀수, 마약운송죄로 유기징역으로 판결한 후 일부 재산을 몰수하고 또 강제추방 하였다[51].

> 원심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죄에 대한 확정도 준확하고 심판절차도 합법적이었다.《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6조 제1관, 3관, 제347조 제1관, 제2관(일)항, 제4,7관, 제26조 제1,4관, 제27조, 제68조, 제35조, 제64조와《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225조제1관 (일), (이) 항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심군평의 상소를 기각하고 호남성 형양시 중급인민 법원(2014)형중법형3초자제2번 형사판결에서 피고 킹○○○, 심○○, 나○○에 대한 판결과 금지물품에 대한 몰수 판결은 그대로 인용한다. 이. 호남성 형양시 중급인민 법원(2014)형중초자 제2번형사판결에서의 피고 킹○○○와 심○○ 양형 분분에 관한 판결은 폐기한다. 삼. 원심 치고 킹○○○는 마약밀수, 운송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15년을 내림과 아울러 그 재산 15만위엔을 몰수하며 강제추방을 추가한다. 사. 상소인 심군평은 마약 밀수와 운송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10년 형을 내리며 아울러 인민페 3만 위엔의 벌금 형을 내린다.

위 사례는 중국에서 국제적 형법에서 규정치 않은 심각한 범죄와 관련한 범죄자를 다룰 때는 속지관할권에 따라 심판하며 또한 범죄자의 범죄 심각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죄, 양형하고 강제추방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타의 부가형을 적용할 때도 일부 주의 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 정죄, 양형 받고 강제추방 적용을 당한 외국인도 똑같이 중국의 공을 세우면 감형해 준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제추방 이전의 실제 양형 절차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법절차를 거쳤기에 중국에서 집행한다면 더욱 중국의 사법적 주권을 구현해 주게 된다.

---

51) 호남성고급인민법원, 킹스레이의 마약밀매 사건 관련2심 형사판결서(2015년)상고법형2종자제76번(湖南省高级人民法院，肯思雷贩毒案二审刑事判决书（2015）湘高法刑二终字第76号)

둘째, 강제추방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선 중국 현재의 행정법규의 규정과 관련 사법적 실천을 참고 해도 좋다. 집행주체가 공안기관이 책임지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 그것은 그 집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나름대로 그 사업적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기에 보다 편리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련 사업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집행 절차에 있어선 보통 말하면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의 집행절차를 끝낸 후에야 강제추방을 집행한다[52].

2. 외국인이 제3국에서 강제추방 후 중국의 재 강제추방

일반적으로 말하면 외국인의 국적 소재국에선 본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 추방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이 중국 이외의 여타의 나라에서(이 외국인의 모국이 아닌) 강제추방을 당한 후의 갈 곳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3국에서 강제추방 당한 외국인은 중국에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 입국 허가 기능 여부와 관련하여 중국은 마땅히 종합적으로 이 외국인이 추방당한 사유로서의 범죄가 국제형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정황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그것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는 중국은 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의 추방당한 사유로서의 범죄의 성격과 정황, 그리고 결과 등을 전반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이 중국에 온 후 초래 가능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검토하여 그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에게 다시 형법적 의미에서의 강제추방을 적용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똑같이 이 사람이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 국제형법에서 엄하게 단속하는 범죄일 경우, 이를테면 전쟁죄, 인종숙청죄 등등일 경우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여타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범죄의 정황, 결과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

52) 상하이시 제1중급임민법원. 피터. 윌리엄. 한프레이가 불법적으로 공민의 개인 정보를 손에 넣은 사건고소와 관련한 감형, 가석방형에 관한 재정서.(2015)호1중형집자제1041번(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诉彼特.威廉.汉弗莱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罪一案减刑假释刑事裁定书.（2015）沪一中刑执字第1041号)

며, 먼저 번 타국에 의해 강제추방 당했을 때의 범죄 정황을 중국에서 형법이 규정한 강제추방을 적용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참조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외국인이 중국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면 중국은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중국 사회에 적응할 가능성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검토를 거쳐 이 사람이 중국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회질서를 해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된다면 의당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타국에 의해 강제추방 당한 후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하여서도 중국은 여전히 그에 대해 중국형법에 규정된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3.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강제추방

이른바 난민이란 유엔의《난민 협약(关于难民的公约)》(1951)과《난민 의정서(难民议定书)》(1967) 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난민은 인종적, 종교적, 국적적, 정치적 원인이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박해를 우려, 국내에 계속 있기 두렵거나 또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기 싫어 그 나라를 떠나려 하거나 또는 그 사람 자체가 무국적자로서 현재 상기의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나라가 없거나 또는 그 어느 나라에 가기 싫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난민 신분을 갖게 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인도주의에 입각해 강제추방해서는 안 된다.

중국《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제46조에서는: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그 난민신분 부여, 심사 기간에는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을 소지, 중국에 머물고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중국은 중국에 있는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보호를 하고 있다. 때문에 그 난민 신분이 말소되기 전에는 이런 형사범죄와 관련된 외국인 범죄자에게 강제추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정황이 심각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제추방 해야 한다.

만약 이때 해당 외국인이 난민신분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강제추방 해야

한다. 범죄정황이 경미하고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는 법률규정대로라면 강제추방할 수도 있지만 그 난민 신분 때문에 그에 대해 강제추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가늠함에 있어서는 각 사례별로 분석해야 하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가늠한다.

제6절 중국의 강제추방 담당기관

1. 행정법상 강제추방 담당기관

강제추방은 행정법에서는 강제방법이나 행정적 처벌 방법의 하나이다. 중국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법 의미에서의 강제추방 담당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중국 출입경 관리법

《중화인민 공화국 출입경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2013년7월1일부터 실행) 제21조는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1관(第一款)에서는 외국인에게 강제추방이 적용됐거나 국외송환 결정이 났거나 입국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본법 제49조에는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있을 경우, 공안부는 중국에서의 영구 거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국가안전과 이익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강제추방을 당한 경우, 속임수를 써서 중국에서의 영구 거주 자격을 사취한 경우, 중국 경내에서 거주한 시간이 규정한 시간에 미달되는 경우, 중국경내에 영구 거주하기에 적합지 않은 기타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해당 법 제 81조에서《중화인민 공화국 출입경 관리법》에서의 강제추방이 기한을 정해 출국(限期出境)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인이 그 체류, 거주(停留居留) 사유와 맞지 않은 활동을 하거나 기타의 중국 법률, 법규 규정을 어겨 중국에서 계속 체류, 거주하기에 적합지 않은 상황일 경우, 기한 내 출국 시킬 수 있다.”, “외국인이

본법의 규정을 어겨, 그 정황이 심각하나 아직 범죄에는 해당치 않을 경우, 공안부는 강제추방 할 수 있으며 공안부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된다.", "강제추방 당한 외국인은 강제추방 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과 관련 규정한 주요한 행정법률로서 여기서는 행정법에서의 강제추방 담당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라고 밝히고 있다.

나. 중국 방진·재해경감법

《중화인민공화국방진, 재해경감법(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53] (2009년5월1일부터 실행) 제 86조에서는 방진, 재해 경감법 위반과 관련하여 "외국의 단체나 개인이 허가받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하의 해역에서 지진 감측 활동을 할 경우, 국무원 지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위법한 행위를 정지시키고 그 감측한 결과물을 몰수하고 아울러 1만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시키며,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는 아울러 10만 위엔 이상 50만 이하의 벌금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 말하면 만약 "외국이 앞에서 규정한 행위를 할 경우, 앞 규정대로 처벌하는 외에 또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그의 중국에서의 체류기한을 단축시키거나 그의 중국에서의 거주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는 기한을 정해 출국시키거나 강제추방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해역과 관련한 감측 활동에 대해 규정하면서 역시 강제추방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서 강제추방은 외국인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다시 말하면《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을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중국 치안관리처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2012년 개정) 제10조에선 치안관리 처벌 종류에 대해 경고, 벌금, 행정구류,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53)《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81조 참조

허가증 말소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이 조항 말미에서 치안관리법을 어긴 외국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한을 정해 출국 시키거나 강제추방 할 수 있다고 한다.

라. 중국 국경외의 비정부 단체 경내활동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경외(境外)의 비정부단체 경내(境内) 활동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제50조에선 경외 인원이 본법 규정을 어겼을 경우 관련 기관에서 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출국 시키거나 국외 송환(遣送出境) 또는 강제추방 할 수 있다. 이 두 법률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실행한다고 특정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법률조문의 서술적 표현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관련 기관이란 의당 공안기관이어야 함은 틀림 없다.

마. 중국 측량법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2017년7월1일부터 실행) 제51조에선 본 법의 규정을 어겨, 외국의 단체나 개인이 허가 받지 않고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그 어떤 부서나 단위와의 협력이 없이 제멋대로 측량 활동을 한 경우, 책임지고 위법행위를 제지시켜야 하며 그 불법적인 소득과 측량 결과물, 그리고 그 측량 도구는 몰수하고 아울러 10만위엔이상 5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는 50만 이상 1백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을 정하여 출국 시키거나 강제추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에서는 측량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기한을 정해 출국 시키거나 강제추방은 공안기관에서 법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형법상 강제추방 담당기관

현재 중국에선 《형법(刑法)》제35조에서만 강제추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독립적으로나 부가적으로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형법전(刑法典)에만 이런 간단한 규정이 있다. 2013년10월23일 , 최고인민 법원, 최고인민 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에선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징벌에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性侵害未成年人犯罪的意见)》을 인쇄, 배포했는데 그 29조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영내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이나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의당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그에게 형벌적 판결을 할 때 강제추방을 독립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아직 범죄에는 해당치 않지만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는 해당할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게 성 침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국경내에서 계속 거주, 체류하기에 적합지 않을 경우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그에게 기한을 정해 출국시키거나 강제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의견(意见)》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선 인민법원에서 판결하여 강제추방하고 아직 범죄에는 해당치 않는 행위를 했으나 그것이 외국의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드는 행위일 경우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강제추방을 적용한다.

제7절 중국의 강제추방 구제관련

강제추방 성격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당시 학자들은 강제추방이 형벌적 방법이냐, 그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이 있었다.

행정법에서의 강제추방 적용은 중국의 강제추방에 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판결을 받아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중국의 《행정재심법(行政复议法)》, 《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재심법에서의 구제관련

《행정재심법》제41조에서는 외국인, 무국적자와 외국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에서 행정재의 신청을 하면 본법, 즉《행정재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신청범위

《행정재심법》(1999년 10월1일부터 효력 발생)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다음의 상황 중 그 어느 하나의 상황이 있을 경우, 공민(公民: 국민), 법인 또는 여타의 단체는 본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⑴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경고 또는 벌금 그리고 불법소득 몰수와 불법재물 몰수, 조업정지, 폐업 명령, 허가증 가압류 또는 허가 취소, 면허 가압류 또는 면허 취소, 행정구류 등 행정 처벌에 불복할 경우

⑵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인신자유를 제한 또는 봉인, 압수, 재산동결 등등의 행정적 강제조치에 불복할 경우

⑶ 행정기관의 관련 허가증, 면허증, 자질관련(학위증서, 판사증과 ISO9000, 벤처기업증서 등 포함), 자격증 등 증서의 변경 또는 중지 그리고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⑷ 행정기관에서 토지, 지하자원, 수류, 산림, 산령(山岭), 초원, 황지, 간석지,해역 등 자연자원에 대한 확인 결정에 불복할 경우

⑸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경영 자주권을 침해 했다고 보여 지는 경우

⑹ 행정기관이 이른바 농업도급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폐기하여 합법적 권익이 침범 당했다고 보여 지는 경우

⑺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모금, 재물징수, 비용분담을 시키거나 법을 어겨 여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보여 질 경우

⑻ 규정된 요구대로 행정기관에 허기증, 면허증, 자질증서, 자격증 등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관련 사항을 신청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를 법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고 여겨질 경우

⑼ 행정기관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직책 이행을 요청했

지만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을 경우

(10) 행정기관에 법대로 무휼금, 사회보험금이나 최저생활 보장금 지급을 시청했으나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11) 행정기관의 기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했다고 여겨 질 경우이다.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적용 당했을 경우는 마땅히 본조 제 일 단에서 규정한 경우에 드는 것으로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

나. 신청방식

본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신고자로서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모두 가능하다. 구두로 신청할 경우, 행정재심 기관은 그 자리에서 신청인의 기본적인 정황, 행정재심 청구, 행정재심을 신청한 주요 사실, 사유와 시간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다. 신청기관

제12조에서는 현급(县级)이상 지방 각급인민정부 사업부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이 부서가 소속된 인민 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그 바로 윗 급별의 담당 부서에 행정재심을 신청해도 된다. 세관,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지도를 실행하는 행정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바로 윗 급별의 담당 부서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라. 행정재심과 행정소송

제19조에서는 마땅히 우선 행정재심 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 하고 나서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해 다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재심 기관에서 재심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 후 행정재심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공민, 법인이나 기타의 단체는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행정재심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본조(本条)의 규정은 적용된다.

2. 행정소송법에서의 구제관련

《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제98조에서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본 법을 적용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9조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부 규정 해 놓고 있다: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나 단체와 동등한 소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외국의 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나 단체의 행정소송의 권리에 대하여 제한을 둘 경우는 인민 법원도 해당 나라의 공민이나 단체의 행정소송 권리에 대하여 대등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100조에서는 규정하기를 국인, 무국적자, 외국 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리 소송을 할 경우,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기구의 변호사에게 변호 위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신청범위

중국《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제12조에 의하면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과 기타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⑴ 행정구류, 가압류, 허가증과 면허 회수와 취소, 조업정지 명령, 불법소득 몰수, 불법적인 재물 몰수, 벌금, 경고 등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

⑵ 인신자유에 대한 제한 또는 재산에 대해서 봉인하거나 압류하고 동결하는 등 행정적 강제조치와 행정적 강제집해에 불복

⑶ 행정적 허가 신청에 행정기관에서 거절 또는 법정기한 안에 답변을 주지 않거나 또는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와 관련한 기타의 결정에 불복

⑷ 행정기관이 내린 토지, 지하자원, 수류, 산령, 초원, 황무지, 간척지, 해역 등 자연자원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확인 결정에 불복

⑸ 징수, 징용 결정 및 그 보상 결정에 불복

⑹ 행정기관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책인 인신권(人身权), 재산권 등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

⑺ 행정기관이 그의 경영자주권이나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농촌 토지 경영권을 침범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⑻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한다고 보여질 때

⑼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모금, 비용분담 또는 기타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보일 경우

⑽ 행정기관이 법대로 무휼금 지급, 최저생활보장 대우나 사회보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⑾ 행정기관이 법대로 불이행하거나 약정대로 이행치 않거나 또는 정부가 특별히 허가해 준 경영합의서, 토지, 가옥 징수 보상합의 등 합의서를 불법적으로 변경, 해지했다고 보여지는 경우

⑿ 행정기관이 그 외의 인신권, 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여질 경우이다. 이와 같은 앞에서의 규정 외에 인민법원은 법률, 법규에서 소송제기 가능하다고 규정한 기타의 행정 사건도 수리할 수 있다.

나. 소송의 시간적 제한

제45조에서는 공민, 법인이나 기타의 단체가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기관에서 기한을 넘겨서도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심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형사법에서의 구제관련 등

가. 상소관련

중국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제216조에서는 피고, 자소인(自诉人)과 그들의 이른바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심 판결, 재정에 불복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바로 그 상위급의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고의 변호인과 피고와 가까운 친속은 피고의 동의하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가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당사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각급인민법원 제1심에서의 판결, 재정에서의 민사소송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관련 사례

이는 중국의 관련 사법 실천에서도 잘 구현되고 있다.

(1) 절강성 온주시 도박판 개설사건

원심법원은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각기 피고인 오모에게는 유기징역 1년에 인민페로 2만위엔의 벌금형을 아울러 내리고 , 피고인 주모(周某)에게는 유기징역 11개월 15일에, 인민페로 2만위엔의 벌금형을 아울러 내렸으며, 피고인 판모갑(潘某甲)에겐 유기징역 11개월에, 인민페로 2만위엔의 벌금형을 아울러 내렸으며 피고인 임모, 임모 갑, 이모 갑, 이모 을, 등모, 이모병, 왕모갑, 팽모, 이모정에게는 각기 10개월 20일의 유기징역에 인민페로 1만5천위엔의 벌금형을 아울러 내렸으며, 피고인 김모에게는 6개월간의 구속형에 인민페로8천위엔의 벌금형을 아울러 내렸다.

또 도박죄로 피고인 사모에겐 유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리고 아울러 인민페로 1만위엔의 벌금형을 아울러 내렸으며, 피고인 오모는 강제추방하여 중국을 떠나게 했다. 피고인 주모(周某), 판모 갑, 오모, 임모을, 임모 갑, 이모 갑, 이모 을, 등모, 이모 병, 왕모 갑, 팽모, 이모 정, 김모의 불법적인 소득 인민페 3815위엔은 몰수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 가압수한 피고인 사모의 불법적인 소득인 인민페 6천위

엔은 몰수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법원은 상소인 오모, 임모 갑, 그리고 원심 피고인 주모(周某), 판모 갑, 임모 을, 이모 을, 등모, 이모 병, 왕모 갑, 팽모, 이모 정, 김모는 무리지어 도박장을 개설하였는데, 그 행위들은 모두 도박죄에 해당한다. 원심 피고인 사모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도박을 하였기에 그 행위는 이미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 판결에선 상기 14인의 피고인이 붙잡힌 후 모두 사실대로 공술했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기에 모두 가벼운 쪽으로 처벌한다.

그 가운데서 임모 을, 임모 갑, 이모 갑, 이모 을, 등모, 이모 병, 왕모 갑, 팽모, 이모 정, 김모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 했기에 종범으로, 또 김모는 시간적으로 범죄에 참여한 기간도 짧기에 모두 가벼운 쪽으로 처벌한다.

주모, 판모 갑은 이들 공동범죄에서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았기에 이들에겐 모두 그 정황을 참작 가볍게 처벌한다. 사모는 범죄정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모(周某)는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기에 그 정황을 참작 무겁게 처벌한다.

오모씨는 그 가족이 모두 중국국적이며 중국에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있기에 오모의 범죄 정황, 성격, 결과와 본인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강제추방을 적용치 않는 것이 그가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 의무를 다하는데 보다 도움이 된다고 본다.

원심판결에서 그에게 적용되었던 강제추방은 그다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그에게 적용한 강제추방은 부당하며 이를 바로 잡는다. 원심판결에서의 정죄는 정확했으며 또한 상소인 임모 갑 및 같이 저지른 사람들의 그 범죄 참여시간, 정황, 구체적인 역할 등에 따라 내린 그 양형도 적당했고 심판절차 또한 합법적이었다.

오모 및 그 변호인이 강제추방 불적용을 요구한 의견은 성립되는 것이며 이를 인용한다. 온주시 녹성구 인민법원(2014)온녹형초자제143번 형사판결의 제15항, 즉 오모의 강제추방은 취소한다.

(2) 칼 ○○ · 알렉산드라 절도사건

피고인도 상소를 통하여 구제신청[54] 할 수도 있다.

상소인(원심 피고인) ＸＸ. 예카제리나는 이 사건에서 2014년 4월21일 불구속 수사되었다가 8월18일 체포되었다. 상소인(원심 피고인) ＸＸ. 알렉산드라는 이 사건에서 2014년 4월21일 불구속수사되었다가 8월18일 체포되엇다.

원심법원은《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6조제1관, 제264조, 제25조 제1관, 제67조제3관, 제5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ＸＸ. 예카제리나에게 절도죄로 6개월간의 구속에 벌금 인민페 1천위엔, 그리고 강제추방을, ＸＸ. 알렉산드라에겐 절도죄로 6개월 간의 구속에 벌금 인민페 1천위엔, 그리고 강제 추방을 언도한다.

상소인 피고 ＸＸ. 예카제리나, ＸＸ. 알렉산드라와 그 변호인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이의를 제기, 두명 상소인 모두는 유학생으로서 중국에서 계속하여 학업을 완수해야 하기에 재심 법원에선 강제추방을 적용치 말아 주기를 청구하였다.

상해시 인민 검찰원 제 1분원 측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상소인 ＸＸ. 예카제리나와 ＸＸ. 알렉산드라가 절도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그 범죄성격에 대한 확정도 정확하며 양형도 아주 적당하다.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도 합법적이었다. 강제추방 적용 여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재심 법원에서 두 명 상소인의 범죄 정황과 학업 정황에 따라 법에 따라 판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두 명의 상소인에게 강제추방을 적용해야 하는냐의 문제도 있다. 법원에선 조사 판명을 거쳐 상소인 Ｘ Ｘ. 예카제리나와 Ｘ Ｘ. 알렉산드라는 원래 화동 사범대학에서 한어(汉语)를 연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현재 중국에 남아 그 학업을 계속할 의향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형벌의 목적은 징벌과 교육(교화)이 결합돼야 하며 양형시 의당 재판의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두 명의 상소인의 범죄정황이 비교적 가볍고 또 그들이 중국에서 교육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강제추방은 적용치 않을 수 있다. Ｘ Ｘ. 예카제리나와 Ｘ Ｘ. 알렉산드라 및 그 변호인들의 관련 상소사유와 변호의 변, 그리고 검찰기관의 관련 법정 출석 의견은 합법적이고 근거가 있기에 법원은 인용하기로 한다.

---

54)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칼포바 . 알렉산드라등의 절도사건과 관련한 2심 형사판결서. (2014)호1중형초자제1792번(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卡尔波娃·亚历山德拉等盗窃罪一案二审刑事判决书. (2014) 沪一中刑终字第1792号)

법원은 상소인 X X. 예카제리나와 X X. 알렉산드라가 불법적 점유를 목적으로 남몰래 회사의 재물을 절도했고 그 액수 또한 비교적 커 그 행위가 이미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사건의 정황과 두 명 상소인의 학구적 필요 등에 비추어 강제추방은 적용치 않아도 된다.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2014)포형초자제2812번 형사판결 제1, 2항, 즉 "피고 X X. 예카제리나는 절도죄를 범하여 6개월간 구속, 인민폐 1천위엔 벌금형을 내리고, 아울러 강제 추방한다. 피고 X X. 알렉산드라는 절도죄를 범하여 구속 6개월에, 인민폐 1천위엔의 벌금형을 내리고, 아울러 강제 추방한다."는 원심 판결은 파기한다. 이. 상소인 X X. 예카제리나는 절도죄를 범하여 6개월간 구속, 인민폐 1천위엔의 벌금형을 내린다. 삼. 상소인 X X. 알렉산드라는 절도죄를 범하여 6개월간 구속, 인민폐 1천위엔의 벌금형을 내린다.

제8절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변호관련

형사 범죄와 관련된 강제추방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도 중국《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1차 취조를 받은 날, 또는 강제조치를 당한 날로부터 변호사를 위임할 권리를 가진다. 수사기간에는 변호사에게만 변호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 피고는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위임할 권리를 가진다.

수사기관은 제1차로 범죄혐의자를 취조할 때, 또는 범죄혐의자에게 강제조치를 취할 때부터 범죄혐의자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기소권을 넘겨 받아 심사하는 사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범죄 혐의자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안에 범죄 혐의자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범죄혐의자, 피고가 구금 중에 변호인 위임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 인민 검찰원과 공안기관에서는 마땅히 제때에 그 요구를 전달(轉達)해 주어야 한다.

범죄혐의자, 피고가 구금 중일 경우, 그의 가까운 친속이 대신 변호인을 위임할 수도 있다. 변호인은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들인 후 바로 이를 사건처리 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범죄혐의자,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 및 그 가까운 친속이 법률 지원 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지원 기구에서는 의당 변호사를 보내 그에게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혐의자, 피고가 맹인이나 농아(聾哑)인, 또는 불완전 인지능력 상실이나 자기행위 통제 능력을 상실한 정신 이상 자이어서 변호인을 위임 못했을 경우, 인민 법원, 인민 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마땅히 법률지원 기구에 통지, 변호사를 보내 변호해 주도록 해야 하며, 범죄혐의자, 피고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을 위임치 못했을 경우, 인민 법원, 인민 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마땅히 법률지원 기구에 통지, 변호사를 보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체포와 구금 등

이를테면 중국 호남성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외국인이 마약밀매를 한 사건의 판결서에는 피고에 대한 체포, 구속기간과 구금 장소에 관한 문제 모두가 표시돼 있다.[55] 사건의 상소인(원심 피고인)은 심○○으로 그 영문명은 “Mike”이고 남자로서 1977년 6월 14일 호남성 회양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족이며 중등 전문학교 학력으로 프리랜서이다. 그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2013년 4월 27일 형사 구류되었으며 그해 5월31일 체포되었다. 2015년 10월25일 형양시 중급인민 검찰원에 의해 불구속 수사 6개월을 받았다가 2016년 4월23일 다시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12개월을 받았다.

원심 피고인인 킹스○○는 (UkaegbuKings○Chinonso), 남자, 1982년2월23일 출생하였고 국적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이하 나이지리아로 약칭), 프리랜서이다. 마약

55) 호남성 고급인민법원, 킹스레이의 마약밀수 사건 2심형사판결서(2015) 상고법형초자제76번(湖南省高级人民法院，肯思雷贩毒案二审刑事判决书（2015）湘高法刑二终字第76号)

밀수 혐의로 2013년 4월 29일 형사구류됨. 같은해 5월31일 체포됨. 현재 호남성 형양시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원심 피고인 나○○(罗○○), 여자, 1986년3월25일 광동성 광주시에서 출생. 한족으로 고급직업학교 학력이며 무직업이다. 마약밀수 혐의로 2013년 4월 29일 형사구류 되었으며, 같은 해 5월 31일 체포되었다. 2015년10월27일 형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2016년4월23일 법원을 거쳐 불구속 수사 12개월 받은 바 있다.

1.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체포

이에 대하여 중국《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범죄혐의자, 피고 체포는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허가나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79조에서는 범죄사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징역, 그 이상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범죄혐의자, 피고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取保候审)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엔 충분치 않기에 마땅히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나. 국가안전·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현실적 위험성, 다.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고 증인의 증언을 방해 또는 범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꾸밀 가능성, 라. 피해자, 제보자, 고소인에게 보복할 가능성, 마. 자살이나 도주 시도의 가능성 등이다.

사실 증명할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십년 이상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범죄사실 증명할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또는 신분이 확실치 않을 경우는 체포해야 한다.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거주 감시(监视居住)를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 피고가 불구속수사와 거주감시 받음에 관련한 규정을 위반,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는 체포할 수 있다.

2. 중국 강제추방에서의 구속과 구금

가. 관련 규정

중국《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제80조는 공안기관에서 현행범이나 중대한 혐의자에 대하여,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있을 경우, 일단 구류할 수 있다.

가. 범죄 준비, 범죄 실행 중 또는 범죄 후 바로 발견 되었을 경우 나. 피해자나 현장목격자가 범죄자를 확인해 줄 경우 다. 몸이나 주거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라. 범죄 후 자살 도주 시도하거나 도주중일 경우 마. 증거를 말소, 위조하거나 범인과 공모, 허위진술을 꾸밀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바. 실명과 실 주소지를 밝히지 않고 신분이 확실치 않을 경우 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범죄했거나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리 지어서 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등이다

나. 영장 관련

중국 형사소송법 제83조에서 공안기관에서 사람을 구류시킬 때 반드시 구류증(拘留证: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류시킨 다음 마땅히 즉시 피구류인을 간수소(구치소)로 보내 구금해야 한다. 늦어도 2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통지할 수 없거나 국가안전과 관련된 범죄, 테러활동과 관련된 범죄이어서 통지할 경우, 수사를 방해하게 되는 상황 등은 제외하고 마땅히 구속 후 24시간 안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4조에서는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후 24시간 안에 취조해야 한다. 잘못 구류시켰음을 발견하면 즉시 풀어 주어야 하며 석방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1조에서 공안기관은 사람을 체포할 때도 반드시 체포증(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 후 마땅히 즉시 구속한 사람을 구치소(看守所)로 보내어 구금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후 24시간 안에

체포된 사람의 가속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형사소송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시간인데 공안기관은 구류 중인 사람에 대해 체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의당 구속 후 3일 안에 인민 검찰원에 제청하여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수 정황 하에서는 허가 심사 제청 시간을 1일에서 4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곳 저곳에서 돌아다니며 범행했거나, 수차례 범행했거나 또는 무리지어 범행을 한 중대 범죄 혐의자일 경우 허가 심사 제청 시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체포 허가 심사를 제청 후 7일 안에 체포 허가, 또는 체포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 검찰원 체포 불허 결정을 내렸을 경우, 공안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집행 정황을 제때에 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수사, 거주 감시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는 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 또는 거주 감시해야 한다.

제10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문제점

1. 중국 행정법 관련 강제추방 문제점

행정법 의미에서의 강제추방 제도는 지금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논쟁 되는 문제가 있다.

강제추방에 대한 결정을 하는 주체를 확정하는 문제다. 현재심 법률규정에 따르면 행정법 의미에서의 강제추방 결정 주체는 공안기관 뿐이다. 또한 공안기관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라는 성격을 띤다.

바꾸어 말하면 공안기관에서 강제추방 결정을 한 후에는 어느 정도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서는 이 사람의 중국 재입국의 가능성마저 박탈되는 것이며 어느 정도에서는 외국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바로 권리에 대한 제한이기도 한 것이다. 게다가 공안부문에서 강제추방의 결정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중국 치안 관리 처벌법, 출입국 관리법 등과 같은 행정적 법률과 법규라는 것이다.

2. 중국 형법관련 강제추방 문제점

가. 강제추방 적용관련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부동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죄행, 책임과 형벌, 이 삼자(三者)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원칙(罪责刑相适应原则)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강제추방을 적용 받은 외국인의 경우 결코 모든 강제추방 당한 외국인이 모두다 중국에 재입국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강제추방을 적용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중국에 재입국이 가능한 것이며 이는 어느 정도에서는 죄행, 책임과 형벌, 이 삼자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원칙적 요구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앞 글에서 언급했듯이 사법 실천에서의 법관이 법 조항을 해석하여 도리를 따지는 부분에서 상세히 해석해 놓은 것처럼 1심에서 강제추방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흔히 도리와 법리에 대하여 충분히 따져보고 나서, 또는 강제추방 판결을 받은 사람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기에,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확실히 가정과 감정적으로 중국에 보다 기대고 있거나 또는 확실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쳐 계속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받기 위한 필요로 강제추방을 적용치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강제추방 형을 적용 당한 경우도 특수한 사정을 지닌 사람은 응당 다시 중국으로 돌아 올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강제추방을 적용할 때 의당 범죄의 유형 또는 받은 형벌의 경중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범한 죄가 가볍거나 그 받은 형벌이 중벌이 아닐 경우는 강제추방제도 적용에 있어서 강제추방 후 그 외국인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 가능하냐의 그 여부를 포함하여 보다 가볍고도 유연하게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홍콩·마카오·타이완 관련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의 홍콩, 마카오, 타이완지역은 강제추방을 적용할 때 확실히

특수성을 가진다. 강제추방(驱逐出境)에서의 경(境)이 말하는 것을 국경(國境)으로 한다면 대륙을 제외한 지역도 국경 안으로 보아도 되며, 그렇다면 강제추방을 적용할 때 중국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으로 내보내도 된다. 그러나 경의 범위를 국경으로만 못을 박지 않고 변경이라고 한정한다면 '경' 밖으로 외국인을 내보낸다는 강제추방의 그 범위는 중국 대륙 바깥으로 된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대륙의 변경으로 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일부 그 범죄성격이나 정황이 심각하고 사회에 대한 위해성도 큰 범죄자를 강제추방, '경' 밖으로 내보낼 때의 '경'도 중국 대륙 변경을 말한다.

중국《출입경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출입국관리법)》제89조에서 "경"의라는 용어 사용의 함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출경'은 중국내지로부터 기타의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말하며 또한 중국내지로부터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타이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출입경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출입국관리법)》에서는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의 변계(邊界)도 역시 "경"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입경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출입국관리법)》이 내지에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으로 가는 것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지역(이하 강오태〈港澳台〉지역이라고 약칭)에서 중국 내지로 오는 것도 출입경의 범주에 들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 쪽으로는 중국대륙과 강오태〈港澳台〉 지역에 법률규정이 서로 다른 문제가 존재하기에 특구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역에는 각자의 사법제도가 있어 중국대륙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건의 종심(终审)은 자기의 종심 법원에서 진행한다. 법원 시스템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적용할 때도 자기 지역 내부의 법률에 따라 한다. "한 나라 두 개의 제도"로 어떤 행위는 중국대륙 지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강오태〈港澳台〉 지역에선 결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강오태〈港澳台〉 지역에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당 범죄자를 중국대륙 밖으로 추방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중국 행정법의 실천에서 특히는 2015년부터 효력을 발생한《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제40조에서는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 구역, 마카오 특별행정 구역도 마땅히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말하면 형법적 의미에

서의 심각한 범죄이기에 강제추방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자와 관련된 범죄가 국가 안전을 해친 것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의 안전을 해친 범죄는 중국 강오태〈港澳台〉 지역도 국가 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기에 마땅히 이런 외국인이 중국의 강오태〈港澳台〉 지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중국공민의 타이완 지역 내왕 관리법(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2015년 개정)에서 제 37에 "대륙에 방문 온 타이완 거주민이 본 방법에서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기타의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본 방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도 공안기관은 그 체류기간을 단축시켜 정한 기한 내에 변경 밖으로 떠나게 하거나 또는 변경 밖으로 송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공민이 사적인 사유로 홍콩지역이나 마카오지역 내왕에 관한 임시적 관리방법(中国公民因私事往来香港地区或者澳门地区的暂行管理办法)》제 15조에서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강오태〈港澳台〉 동포에게 귀향증(回乡证) 또는 출입경 통행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그 사유로는 강탈, 절도, 마약밀수 등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상황을 꾸며 가짜 증명을 제출할 경우, 정신병 환자일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서 모두 대륙과 지역사이의 범죄와 관련될 경우의 처리규정이 언급되고 있다.

3. 추방 후 재입국 관련

중국의《출입경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에서는 외국인이 행정법적 의미에서의 강제추방 당한 후 다시 중국에 재입국 할수 있느냐, 그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81조에서는 강제추방(행정적 의미에서의 강제추방)된 외국인에 대해 그 재입국을 불허하는 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였다. 형법에서는 얼마의 시간이 경과해야 재입국을 허가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법에서 강제추방 당한 나라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할 때는 그 행정법에서의 규정보다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그것은 형법은 모든 부서의 법 가운데서 맨 나중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행정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때에라야 형법적 적용을 하게 되는 강제추방은 맨 나중의 보장적 장치이기 때문으로 형법적 의미에서의 강제추방을 일단 적용하면 강제추방 당한 사람은 다시는 그 나라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도 논의된다.[56]

이 주장이 상당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본다. 때문에 일반적 상황에서는 이미 강제추방 당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은 그가 평생 중국에 다시 재입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외국인이 다시 중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한 특수한 규정은 중국형법에 결코 없다. 우리는 외국인이 재 입경(入境)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여긴다.

첫째, 시간적 제한에 있어서는 행정법에서의 10년 제한보다는 좀 더 길게 잡는 것이다.[57]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이 외국인이 가져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은 상당한 정도에서 해소할 수도 있다.

둘째, 마땅히 그의 강제추방의 사유가 된 범죄의 성격, 정황과 결과, 그리고 기타의 특수한 상황을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범죄자 갑은 외국국적자인데 절도죄 혐의로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강제추방이 적용되었다. 갑의 중국국적인 아내와 아이는 특수한 원인이기에 중국에 들어와 거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갑의 재입국을 허가해도 좋다.

셋째, 충분히 평가해 본 후 그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중국에 오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중국《출입경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제49조에서는 공안부는 강제추방형을 받은 외국인의 중국경내에서의 영구 거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중국형법에서도 확실히 특수 사유가 있는 그 외국인의 단기 입국이나 체류 허가를 규정할 수 있다. 또 강제추방 된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가한 후 행정법을 본떠서 외국인의 영구거주를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56) 参周明 : 《驱逐出境制度辨析》, 载《华北水利水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4第5期 第110-113页
57) 参周明 : 《驱逐出境制度辨析》, 载《华北水利水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4第5期 第110-113页

제4장

필리핀의 강제추방

김경찬(Kim, Kyoung Chan)

제4장

필리핀의 강제추방

제1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연구의 의의

필리핀은 한국인 재외동포가 8만 9천여명[58] 정도 거주하는 국가이며 해 마다 많은 사람이 관광이나 어학연수 또는 도박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외국인 입국자 1천 3백만여명 중 약3%정도[59]가 필리핀 사람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큰 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필리핀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관광과 어학연수, 카지노 등의 목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에서 살인, 사기,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2016년 한국의 범죄인이 도피하는 국가로 도피범죄자 총 613명 중 필리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수인 180명인 29.4%[60]의 도피범죄자가 도피하는 국가이며 또한 도피사범이 송환되는 것으로는 2016년 총 297명 중 84명인 28.3%로[61] 중국보다 많은 범죄인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국가이다.

필리핀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내용[62]은 필리핀의 범죄인 송환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

58) 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information/emigrants/index.jsp
(검색일: 2017.11.6.)
59) 법무부, 2015년도 출입국연감, 2015, 40면
60)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61)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62) 본 연구의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주요 내용은 주로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와 인터넷 자료 및 필리핀 이민 법제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하고 소개하였음을 밝혀둡니다.

하는 기관에 필리핀에 도피하는 범죄인의 송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리핀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리핀의 강제추방 관련 현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필리핀과 중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약, 보이스피싱, 돈세탁,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과 관련하여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의 활용 및 공동논의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제추방과 관련한 인권보호를 한 국가만의 정책을 넘어 양국 또는 다국가 간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것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표한 현지 체포된 범죄인의 국가별 현황과 범죄유형에서도 매우 다양한 국적의 범죄인이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음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 있다.

〈표 4-1〉 2016년 필리핀 현지 외국인 범죄자 체포현황[63]

국가	중국	대만	미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	호주	기타	총계
2016	25	3	19	-	**80**	1	-	1	6	135

위의 통계는 한국의 통계와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지만, 2016년도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자가 가장 많이 체포되었으며, 중국인, 미국인, 대만인, 일본인, 호주인 범죄자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4-2〉 2016년 필리핀 현지 체포된 외국인 범죄자 범죄유형[64]

범죄별	사이버범죄 (사기)	경제사범	성범죄	살인	밀수/폭행/ 마약밀매	기타	총계
2016	60	49	12	3	**5**	6	135

63) 필리핀 이민청 관련 통계; Bureau of Immigration, "135 Alien fugitives nabbed in 2016-BI", January 14, 2017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News/2017_Jan/2017Jan13_135 AlienFugitivesNabbed.pdf (검색일 2017.8.17)

64) 필리핀 이민청 관련 통계; Bureau of Immigration, "135 Alien fugitives nabbed in 2016-BI", January 14, 2017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News/2017_Jan/2017Jan13_135 AlienFugitivesNabbed.pdf (검색일 2017.8.17)

위의 통계에서 초국가적 대표범죄인 사이버 범죄와 밀수, 마약범죄를 포함하여 경제범죄, 성범죄, 살인 등의 범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범죄대응 차원의 목적과 관련 대책을 한 번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이후 공동의 논의와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갈 기회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2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법제

필리핀의 강제추방 관련 내용은 주로 1940년 필리핀 이민법(Philippine Immigration Law of 1940)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2003년 인신매매 금지법(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과 인신매매 금지 이행규정(Rules and Regulation Implementing the Anti-Trafficking in Person Act of 2003)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시행정책(Expanding RA 9208 –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등에서도 강제추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5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 2003년 시민권 보유와 회복법(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 1995년 이주 노동자와 해외 필리핀인 법, 필리핀에서 역외은행 체재 설립인가(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an Offshore Banking System in the Philippines), 공항 및 항구의 국제승객을 위한 출국 절차 가이드라인(Guideline on Departure Formalities for International Bound Passengers in all Airports and Seaports in the Country), 일정 조건하에서 필리핀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the Philippines Under Certain Conditions)[65] 등도 함께 강제추방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

65) http://immigration.gov.ph/information/immigration-law (검색일:2017.7.5.)

제3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현황 및 사례

1.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현황

필리핀에서 강제추방된 사람의 국가별 현황으로 중국과 대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미국, 인도, 한국 등의 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4-3〉 2011-2012 필리핀에서 추방당한 사람의 국가별 현황[66)67)]

	중국	대만	미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	호주	기타	총계
2011	53	10	18	17	**15**	7	2	2	16	140
2012	124	379	32	17	**12**	6	3	1	**29**	**605**

필리핀에서 강제추방된 사람의 국가별 현황은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한국에서 강제추방되는 사람의 국가별 통계를 2010년도까지 공개를 하였으나 이후는 일정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비공개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68)]

66) Jocelyn R. Uy, "140 illegal aliens deported in 2011 -BI report", Inquirer(online), December 26,2011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ILok-dY-gQsJ:m.inquirer.net/globalnation/%3Fid%3D21665+&cd=14&hl=ko&ct=clnk&gl=kr (검색일 2017.8.14.)

67) Tetch Torres, "Philippines deported 603 foreigners in 2012", Inquirer(online), January 01, 2013 http://globalnation.inquirer.net/60767/philippines-deported-603-foreigners-in-2012 (검색일 2017.8.14.)

68) 국가별로 한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경우의 현황과 구체적 사유 및 사례 등을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관련 내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제점을 현지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에 방문하거나 일정기간 체류하는 한국인에게 소개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4〉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사람의 국가별 현황[69)]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계	18,574	18,462	30,576	29,043	11,550
중국	7,397	7,294	11,113	11,661	4,387
타이	1,399	1,609	3,279	2,776	1,188
베트남	1,390	1,398	2,715	3,006	953
필리핀	1,188	1,079	2,277	2,074	692
몽골	1,418	1,495	2,229	2,198	717
방글라데시	1,591	1,517	2,039	1,568	368
인도네시아	549	504	920	767	310
기타	3,642	3,566	6,004	4,993	2,935

한국에서도 중국과 타이, 베트남, 필리핀 등의 순으로 많은 수의 사람이 강제퇴거되고 있는데, 필리핀인의 경우는 2006년과 2007년에는 천여명 정도였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이천여명 정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사례

가. 한국인 관련 사례

(1) 살인 및 탈주 관련 (2017.05.30.)

두 명의 용의자는 38살 동갑내기 박○○, 정○○로, Taguig의 Camp Bagong Diwa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의 수용시설에서 도망친 이래로 체포될 때까지 3개월가량을 숨어 지냈으며 마침내 지난 4월 6일에 다시 검거되었다.

이민 국장 모렌테는 "나는 용의자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민국 강제추방 담당부서에 지시하였다."고 말하며 필리핀 이민국 수감시설의 장(Warden)에게 그들이 강제추방 될 때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박○○과 정○○이 필리핀에 있는 그들의 동포를 대상으로 사기 및 살해(gun-for-hire) 행위를 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박○○은 지난해 팜팡가(Pampanga)에서 있었던 세 명의 한국인이 살해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경보)(Interpol red notice)의 대상이다. 체포팀의 일원이자 필리핀 이민국의 정보과 직원인 주드 히노란(Jude Hinolan)은 체포당시 그들은 무장상태였지만 저항할 수 없었던 급습에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체포팀은 그 둘로부터 38구경 리볼버 한정, 총알과 위조신분증 그리고 다른 한국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장을 회수하였다고 말했다.

69) 외국인 중 국가별 강제퇴거 현황,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11, 2010, 199면

(2) 살인 (2016.9.13.)

필리핀 이민국 조사관은 최근 수배중인 두 명의 한국인 도피자를 별개의 작전을 통해 팜팡가와 마닐라에서 체포하였다.
필리핀 이민국 국장인 제임 모렌테(Jaime Morente)는 그 도망자들이 Angeles City, Barangay Anunas에서 체포된 50세 장○○과 Manila의 Roxas Blvd.에 위치한 Midas Hotel에서 체포된 55세 윤○○라고 발표했다.
모렌테는 그 두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 이민국 도피자 추적 부서(FUS)의 직원들에 의한 집중감시주간 이후 지난 9월 6일에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 외국인들은 그들의 추방을 위한 당국의 승인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한국으로 돌려 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둘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험하게 하였고 체류에 적합지 않은 외국인이므로 추방될 것이다"라고 모렌테는 말했다.
필리핀 이민국 도피자 추적 부서(FSU)의 수장이자 검사인 리카스(Jose Carlitos Licas)는 장○○의 경우 즉결추방명령이 내려진 작년 6월 이래로 필리핀 이민국의 지명수배자 리스트에 올라 있었으며, 필리핀 이민국 위원회가 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리카스는 장○○은 2003년 1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칼에 찔린채 죽은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되었다고 덧붙였다.

(3) 강도상해 (2015.10.02.)

필리핀 마닐라 – 국내의 한국인 도피자들 중 가장 악명 높은 자가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이민국 조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는 한국정부로부터 "강도상해" 및 그가 가담한 다른 심각한 사건들로 인해 2011년부터 수배되어져 왔다. 2009년 5월 12일부터 필리핀에 체류해 왔으며 그의 여권은 취소되었다.
2013년 10월 4일, '이○○'는 체류를 위한 서류미비 및 위험인물인 외국 국적자로 즉결추방명령(summary deportation order)이 내려졌다
수색으로부터 2년 후, '이○○'는 필리핀 국립경찰의 매우 긴밀한 작전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오후 19시 30분 경, 팜팡가(Pampanga), 엔젤레스(Angeles)에 있는 개인 호텔겸 카지노에서 체포되었다. "'이○○'는 자발적으로 개인병원에 입원하여 체포를 지연시키려 하였다. 다른 지방정부기관의 핵심인물들 몇몇이 '이○○'를 대신하여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이민국 대변인 일레이 탄(Elaine Tan)이 전했다.
필리핀 이민국은 어제 저녁 개인병원 밖에서 그를 확인한 이후 만기구금(full custody)조취를 취하였다.
탄은 "이민국(Commissioner)의 '의인은 안으로, 악인은 밖으로(Good Guys In, Bad Guys Out) 캠페인에 따라 그의 범죄전력을 감안하여(in view of the personality) 가능한 가장 신속하게 필리핀 밖으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4) 온라인 신용사기 관련 (2017.5.19.)

필리핀 이민국은 오늘, 다수의 동포들을 상대로 벌인 온라인 신용 사기 행각으로 당국에 의해 수배중인 12명의 한국인 도피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 국장 제임 모렌테(Jaime Morente)는 이 사건 외국인들이 Makati City의 빈민가, Century City의 그래머시 레지던스에 있는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급습한 필리핀 이민국 정보과 직원들에 의해 실시된 작전으로, 지난 수요일에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모렌테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얻은 정보들로 고급 주거용 건물안에 도피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철저한 감시 후에 작전을 수행할 권한있는 이민국 조사관들에게 그 임무수행을 명했다고 말했다.

모렌테는 마닐라에 있는 한국인 대사관에 이 사건 도피자들의 현재위치를 알렸으며, 그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추방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국 국장은 "한국 대사관은 12명의 용의자 모두 대규모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여러 한국법원에서 발행된 체포영장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5) 금융피라미드 사기 (2017.4.7.)

필리핀 이민국은 한국의 지명수배자중 한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수사당국은, 그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피라미드 사기로 수백명의 한국인들을 속인 혐의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 국장 제임 모렌테(Jaime Morente)는 도피자의 신원은 45세 마○○으로, 3월 29일, Las Piñnas City에서 이민국의 도피자 수색부서(FUS)의 작전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모렌테는 인터폴의 적색수배(경고)의 대상이기도 한 마○○의 체포는 마닐라의 한국인 대사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대규모 사기혐의로 인한 재판출석을 위해 그를 서울로 추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작년 11월 7일에 마○○에 대한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만일 유죄일 경우 10년에 이르는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필리핀 이민국에 알렸다.

그는 해당 한국인이 추방전에 도주하는 것을 막고자 최근 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의 구금시설로 이관하였다고 덧붙였다.

(6) 사기 (2017.3.27.)

필리핀 이민국 국장 제임 모렌테(Jaime Morente)는 이 사건 한국인 도피자인 63세, 임○○과 45세, 손○○을 이민국 도피자 수색 부서(FSU)의 조사관들이 별도의 작전수행을 통해 지난주 각각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모렌테는 임○○과 손○○ 둘 모두 대규모 사기혐의로 그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한국법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국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둘 모두 인터폴의 적색경고(수배)의 대상인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모렌테는 이민국 이사회(BOC)가 이 사건과 관련된 한국인들에 대해 즉결 추방명령을 내린 후 지체없이 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들(undesirable aliens)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민물장어(freshwater eel) 3,000킬로그램을 수입해 와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이다.

반면 리카스는 손○○은 2011년 10월 경,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소유 건설회사에 141,000달러가 넘는 사기행위를 한 혐의로 수배되었다고 밝혔다.
손○○은 피해자가 하노이에 페이퍼 회사(가장회사)를 차리면 용의자가 이를 high grade bars로 교체하겠다고 하여 그 회사로부터 196톤의 제너럴 바(general bars)를 가로챈 혐의이다.

(7) 필리핀 이민법 위반 (2013.11.11.)

한국에서 수백달러의 횡령사건에 연루된 한국인이 아클란(Aklan) 지방, 보라카이 섬에 숨어 있다가 필리핀 이민국 조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민국 국장 지그프레드 미송(Siegfred Mison)은 도피자의 신원을 25세의 김○○라 밝히며, 지금 그는 비쿠탄(Bicutan)에 있는 이민국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고 전했다. 김○○는 이민국 위원회(BOC) 명령에 의한 즉각적인 강제추방에 직면해 있다.
검사 조세 칼리토스 리카스(Jose Carlitos Licas) 이끄는 정보과 도피자 수색부서의 조사관들은 2013년 10월 14일, 김○○가 5일형을 선고받고 PNP(필리핀 국립경찰)-BTAC(보라카이 관광지원센터)의 유치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보라카이로 갔다. 김○○는 그의 렌트비를 떼먹은 혐의로 관광경찰에게 체포되었다. PNP-BTAC의 경감(Chief Police Senior Inspector) 조퍼 E. 캐뷰럴(Joefer E. Cabural)은 도피자를 BI 조사관에게 넘겼다.
미송은 한국대사관이 한국정부의 체포를 돕고 김○○를 본국으로 추방하기 위해 김○○의 횡령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이민국의 조력을 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사관은 김○○가 2012년 12월 27일 이후로 허가된 체류기한이 지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미송은 김○○가 필리핀 이민법 위반으로 지체없이 추방될 것이라 덧붙였다.

(8) 공공의 안전 질서 위반 (2013.09)

필리핀 이민국 조사관들은 한국에서 악명 높은 도피자 중 하나이자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추정되는 자를 체포하였다.
필리핀 이민국 국장인 지그프레드 미송(Siegfred Mison)은 이○○(브루스 리)가 마닐라 에르미타(Ermita)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지난 9월 12일 체포되었고 이후 지체없이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송은 체류 자격 서류를 갖추지 못한 위험인물인 이 사건 한국인에 대하여 이민국 위원회는 이미 강제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도피자는 2년 전 한국의 법원이 그에게 발행한 체포영장을 이유로 한 인터폴의 적색수배(경고)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체포영장은 이○○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거의 50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강취한 혐의로 한국의 전주 지방법원에 의해 2011년 5월 16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필리핀 이민국의 '의인은 수용, 악인은 배척(Good Guys In, Bad Guys Out)이라 불리는,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화된 캠페인의 적용을 받는 가장 최근의 외국인이다.
미송은 이○○가 다양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한국의 여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받았음을 보여주는 인터폴 보고서를 인용하며 "그가 계속해서 필리핀에 체류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를 강제 추방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나. 중국인 관련 사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강제추방 관련 사례는 사기, 사기계약, 온라인 사기,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 경제범죄, 밀렵 등이 주요 관련 범죄로 살펴볼 수 있으며,[70]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을 행하는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71]

(1) 사기계약 (2017.7.15.)[72]

53세 퐁○○○ (가명 퐁 주오롱 Fong Jou-Rong) 사기계약 Contract fraud 사건에 연류되어 무기징역과 벌금에 처해진 상태이다.
인터폴의 레드노티스 경고가 발생된 상태이다.
2017년 7월 15일 다바오시의 경찰에 체포됨.
추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사기 (2017.6.10.)[73]

중국인 판 ○○은 중국 당국에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자.
중국인 판 ○○은 불법토지사용에 대한 이전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중국 현지법에 의하면 7년 징역형이 가능한 죄목.
중국인 판 ○○은 지난 2017년 6월 10일 세부에 있는 막탄 국제공항에서 체포, 세부에 있는 중국영사는 즉시 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
중국인 판 ○○은 이미 중국 본토에서 사기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행된 것을 인터폴에서 확인한 BI에의해 추방 진행 중이다.

---

70)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2001년 10월 30일 체결되었고, 2006년 4월 11일 발효된 바 있다.

71) Ryan General, "The Philippines is Deporting 1318 illegal Chinese Immigrants", Nextshark (online), November 29, 2016 https://nextshark.com/philippines-deporting-1318-illegal-chinese-immigrants/ (검색일 201.8.15)

72) Juliet C. Revita, " Chinese fugitive arrested in Davao City", Sunstar Manila(online), July 15, 2017 http://www.sunstar.com.ph/davao/local-news/2017/07/15/chinese-fugitive-arrested-davao-city-553147 (검색일 2017.10.25.)

73) Ferdinand G. Patinio, " DI deports Chinese woman fraudster", Philippines News Agency (online), June 19 2017, http://www.pna.gov.ph/articles/996235 (검색일 2017.8.24.)

(3) 온라인 사기 (2017.4.21.)[74]

중국인 55명은 중국본토에서 온라인 사기와 불법온라인게임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 중국당국은 이들 여권을 취소하였다.
바타안(Bataan) 프리포터 공항에서 이들을 체포, BI commissioenr는 이들에 대해 약식추방오더(SDO)를 발행, 수속을 진행 중. 향후 필리핀 재입국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

(4)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 (2013.9.30.)

중국인 장○○는 2013년 9월 30일 다른 중국인 3명과 함께 체포. 그 당시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중국정부는 장○○에게 조직적인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와 불법 게임을 조작한 죄로, 25년 징역형을 선고 한 상태였음.
2013.10.3일 중국본국으로 추방. BI와 마닐라 지역경찰 및 현지 중국 대사관 소속 관련자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임.

(5) 경제범죄 (2015.7.30.)[75]

중국인 도피자 장○○은 경제사범 Economic crimes에 연류되어 중국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중이었음.
중국인 장○○은 2011년부터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5년7월에서야 여권이 취소됨.
2015년 7월 30일 BI Board of Commissioner의 약식추방명령 Summary Deportation Order를 발급함.
2015년 10월9일 파사이(Pasay)의 한 국내공항에서 중국인 장동만을 체포함.

(6) 밀렵 관련 (2014.5.13.)[76]

중국인 밀렵꾼 아홉명을 추방함.
이민법이 아닌 필리핀 농경업 시행령 Philippine Fisheries Code (Republic Act No. 8550) 87항과 97항의 위반임.
위의 9명은 약식추방명령 Summary Deportation Order을 2014년 5월 13일자로 발행함. (근거: 필리핀 입국에 대한 검사와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입국한 행위와 필리핀 해협에서 밀렵한 행위)
지방법원에서 동 범죄에 대한 벌금과 형을 선고함. (벌금 미화 100,000, 필리핀 페소 100,000)

---

74) "BI to deport 55 Chinese nabbed in Bataan", Tempo(online), April 21 2017, http://tempo.com.ph/2017/04/21/bi-to-deport-55-chinese-nabbed-in-bataan/ (검색일 2017.8.25.)
75) Bureau of Immigration, 'BI arrests high-profile chinse fugitive', October 09, 2015, http://www.immigration.gov.ph/117-october-2015-press-releases/884-bi-arrests-high-profile-chinese-fugitive (검색일 2017.10.25.)
76) Bureau of Immigration, 'Chinese poachers deported', June 15, 2015 http://www.immigration.gov.ph/113-june-2015-pr/813-chinese-poachers-deported (검색일 2017.8.23.)

(7) 뇌물 관련 (2015.3.5.)

NBI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 왕보는 불법 뇌물 증여에 대한 혐의를 무혐의 처리를 하는 대가를 관계자에게 전달. 현지 사법부로부터 범죄자로 수배, 취소된 여권 소지 혐의로 기소. 2015.3.5 이민국 약식추방명령서(SDO) 발행

2015.5.21 BI Board of Commissioner 약식추방명령 철회(reversed the SDO)- immigration Commissioner는 중국인 왕보가 추방되어야 된다고 한 반면, 두 명의 공동 위원회원(Two associate commissioners)에 의해 번복(outvoted)

2015.6.8: 추방명령에 대한 약식추방절차 진행에 대한 중국인 왕보 재결(심) 절차 진행, 재결(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2015.8.4 중국대사관 왕보에 대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함(authenticated documents).

다. 소결

필리핀 강제추방 사례는 한국인과 관련하여서는 살인, 도주, 강도상해, 온라인 신용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필리핀 이민법 위반, 공공의 안전질서 위반 등이 주로 관련되어 있고 중국인과 관련한 사례는 역시 한국과 유사한 온라인 사기나 피라미드 다단계 사기 등 사기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경제범죄, 밀렵, 뇌물 관련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강제추방과 관련된 범죄는 관련 사항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예방과 이민법 위반 관련 사항을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77]이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7)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대응과 관련하여 코리안 데스크와 같이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범죄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필리핀의 기본적인 법제와 현황 및 관련기관에 대한 변화하는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과 연계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범죄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강제추방이나 이민 관련내용과 정보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필리핀 강제추방 담당기관[78]

1. 필리핀 이민국의 변천과정

필리핀 이민국은 1899년 미국 정권시기의 관세청의 부서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필리핀 위원회 702법에 따른 것으로 선박여행과 선박화물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이 관세청 소속으로 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감시보다는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외국인의 체류와 입국에 대한 규제나 통제보다는 물건에 대한 관세부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기능은 1937년 노동부로 이전되기까지 관세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79]

필리핀 이민국의 기능은 1937년 이후 노동부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주택, 상점, 식당의 거래나 소유와 관련하여 입국하는 중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고,[80] 1940년 1월 22일 필리핀 연방의 제2대 국회가 1940년 필리핀 이민법인 연방법 제613호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40년 9월 3일 미국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하였고 대통령의 행정적 감시 하에 있는 이민국을 창설하게 된 것이다.[81]

일년후 법무부 소속 기관이 되었고 후에 행정적 통제는 받지 않게 되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법무부 산하에 있던 이민국은 Azcarraga 거리(현재의 Claro M.Recto 거리)에 있는 빌리비드(Bilibid) 수형소로 옮겨가게 되었고 전쟁 후 마닐라에 소재한 사우드 하버(South Harbor) 제1번 게이트로 옮겼으며 이후 4번 게이트에 있는 관세청 5번 건물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1945년에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사무실은 다시금 노동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82]

1948년 이민국은 다시금 현재와도 같은 법무부의 관할로 전환되었으며 1972년 9월 21일 대통령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는 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통합 재조직

78) 필리핀 이민국 관련 내용은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와 그에 게제 된 법령 및 문서의 내용을 번역하고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79)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history (검색일: 2017.07.04.)
80) 1937년 노동청의 한 부서로 이관된 이유는 다수의 중국인들의 입국에 따른 무역사무소 운영과 요식업 수요에 대한 증대가 그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immigration.gov.ph/the-bureau/history (검색일: 2017.8.7.)
81)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history (검색일: 2017.07.04.)
82)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history (검색일: 2017.07.04.)

계획의 채택과 시행을 명한 것이다. 재조직 위원회는 1972년 12월 31일 그 계획을 구체화한 제20호 시행안을 발표하였고 이민국의 명칭을 인민과 강제추방 위원회로 바꾸었으며 이는 행정적이고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두명의 부국장과 한명의 국장으로 하는 합의체로 구성하였다.[83]

제20호 시행안은 강제추방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의 기능을 이민국 국장 위원회 회의로 옮겨 강제추방 사례들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이민을 관리하고 외국인 등록법과 입국허가, 배제, 강제추방, 강제송환을 집행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이민에 대한 감시를 행하도록 하였다. 1987년 7월 25일 아퀴노(Corazon. C. Aquino) 대통령은 1987년 행정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92호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다시금 이민국으로 재명명하고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고 사무소장은 법무부 소속하에서처럼 이민국 국장(commissioner)으로 불리도록 하였다.[84]

2. 필리핀 이민국의 구조

필리핀 이민국은 한명의 이민국장과 두명의 이민부국장으로 구성된 국장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청문위원회와 행정감독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이민국장위원회 아래에 행정과, 재정관리과, 이민통제과, 증명 및 감시과, 관리정보체제과, 정보과,[85] 항만운송과, 법무과,[86] 외국인 등록과 등이 소속되어 있다.[87]

---

83)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history (검색일: 2017.07.04.)
84)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history (검색일: 2017.07.04.)
85) 이민국 위원회 사무실 또는 제3자로부터 외국인 범죄/도피자에 대한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안보국은 즉시 요청국 대사관, 인터폴 혹은 기타 법 집행기관과 함께 협력, 외국인 범죄/도피자의 소환 및 체포, 조사 등을 수행. 정보국은 추방명령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에 24시간내에 체포영장을 요청할 수 있음
Letter of Implementation No.20, s 1972 s15.9 http://www.officialgazette.gov.ph/1972/12/31/letter-of-implementation-no-20-s-1972/ (검색일: 2017.8.10)
86) 이민국 위원회 사무실 등으로부터 범죄자(범죄경력파일)에 대한 접수를 받은 후 48시간 내에 법무과는 이민국 위원회 사무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함
Letter of Implementation No.20, s1972 s15.6 http://www.officialgazette.gov.ph/1972/12/31/letter-of-implementation-no-20-s-1972/ (검색일: 2017.8.10)
87)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organizational-structure (검색일: 2017.07.04.)

〈표 4-5〉 필리핀 이민국 구조[88]

<table>
<tr><td colspan="3"></td><td colspan="5">국장 위원회</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td><td>국장</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행정감독사무실</td><td></td><td colspan="2">행정부
국장</td><td></td><td>운영부
국장</td><td></td><td>특별청문위원회</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행정과</td><td>재정
관리과</td><td>이민
통제과</td><td>증명 및
감시과</td><td>관리정보
체제과</td><td>정보과</td><td>항만
운송과</td><td>법무과</td><td>외국인
등록과</td></tr>
</table>

3. 이민국의 기능과 권한

이민국 국장위원회를 통한 필리핀 이민국은 행정적 그리고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필리핀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심사여부 결정과 이민법에서 정한 입국거부가 가능한 사례에 대한 사실확인과 권고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다.[89]

주로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관련 규제, 필리핀 법과 다른 법절차에 따른 필리핀 시민의 출입국 감시, 이민서류발급과 비이민자의 신원확인 증명 및 이민비자와 비이민 특별비자의 발급, 이민법 집행관련 특별허가로 특별취업허가나 지역취업허가 또는 특별유학허가, 재입국허가, 정리허가 등의 발부[90]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일시 방문자의 체류연장과 법에 따른 지위변화의 이행, 시민권과 관련 지위의 행정적 결정, 외국인의 배제결정과 강제추방 및 강제송환 명령에 대한 조사와 청문 및 결정과 집행, 출국 명령과 블랙리스트·감독리스트·이민감시 공고명령과 통보리스트 명령 보류의 시행, 이민법과 절차 위반에 따른 이민서류의 취소 관련 업무[91]도 함께 담당한다.

이민법과 다른 필리핀 법의 위반에 따른 외국인 조사와 체포 및 구금관련 업무,

88)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organizational-structure (검색일: 2017.10.23.)
89) Commonwealth Act No.613 s27(b)(2)
90)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functions (검색일: 2017.7.5)
91)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functions (검색일: 2017.7.5)

공식적으로 허가된 외국인 학생 등록의 학교와 시설에 대한 승인, 이민국과 거래가 있는 법률자문회사와 관련 사무소 및 여행사와 다른 개인 및 조직의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92]

그 이외에도 필리핀 입국을 한 외국인의 신체적, 정신적 의학 감정을 대통령이 정한 의료진에 의뢰한다.[93] 형사사법체계 및 이민관련 강제추방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복잡하지만 좀 더 과학적인 접근과 방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94] 어떠한 특정 인종이나 종교 및 문화적 이유등 다른 근거와 구별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필리핀 강제추방 사유

필리핀의 강제추방 사유는 1987년 필리핀 행정법 제3권 제3장 제8절 이하[95]에서와 1940 필리핀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96] 필리핀 강제추방의 주요 사유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 제37절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구체적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강제추방은 필리핀 이민국 국장 또는 이민국 국장이 지명한 공무원의 영장으로 체포되고, 외국인에게 추방의 근거에 대한 유무가 결정된 후 이민국 국장의 영장으로 추방된다.[97]

본 법이 발효된 후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이 그 입국이 거짓 진술에 의한 경우, 도착항 또는 도착항 이외의 장소에서 이민국 직원의 조사, 허가 없이 입국한 경우,[98]

---

92) http://immigration.gov.ph/the-bureau/functions (검색일: 2017.7.5)
93) Commonwealth Act No.613 s28
94) Ameil J.Joseph, "Deportation and The confluence of violence within Forensic Mental Health an Immigration System", *Palgrave macmillan*, (2015): 48.
95) 1987 Administrative Code of the Philippines, Book III, Chapter 3, Sec.8
96) 필리핀 대통령은 적법절차의 요건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가지고, 법에 따라 외국인의 비이민자 지위를 비자 없이 영주권 지위를 얻도록 할 수 있으며, 이민국 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할 권한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 원칙에 따른 권리를 외국인에게 실행 시킬 수 있다. http://www.chanrobles.com/administrativecodeofthephilippines4.htm (검색일: 2017.11.9.)
97)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

본 법이 발효된 이후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당시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99] 등이다.

또한 범죄와 관련하여 본 법이 발효된 후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 후 5년 이내에 부도덕한 범죄를 범한 것과 관련하여 1년 또는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필리핀에 입국 후 언제라도 2회 이상 그러한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100] 외국인이 마약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101] 성매매를 한 외국인이나 성매매 업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또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나 성매매 알선을 한 외국인[102]도 강제추방 사유에 해당한다.

그 이외에도 필리핀 입국 후에 5년 이내에 정부지원대상자가 된 경우로 그러한 원인이 입국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외국인,[103] 필리핀의 비이민자로 인정된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하여 필리핀에 체류 중인 외국인[104] 역시 강제추방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나 헌법 또는 헌법기관을 무력이나 폭력으로 전복할 것을 가르치거나 옹호하고 조언 또는 신봉하는 외국인, 조직된 정부를 반대하거나 불신하고 공무원을 공격하거나 암살할 것을 가르치거나 옹호하고 조언하는 외국인, 재산의 불법적 파괴를 가르치거나 옹호하고 조언하는 외국인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가르치거나 옹호하며 흥미를 일으키는 조직과 관련되거나 그 구성원인 외국인 또는 재정적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주거나 그러한 원칙을 유포하는 외국인[105]도 강제추방의 적용이 될 수 있다.

또한 본법 제45절과 제46절 기술된 행위를 범한 경우로 범죄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만약 교도소 수감과 강제추방을 동시에 선고받았다면 그 외국인은 실제로 강제추방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전체 선고받은 기간을 복역하여야 하며, 만약 교도소 복역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이민국 국장에 의해 포기된 경우에도 이민

98)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1
99)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2
100)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3
101)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4
102)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5
103)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6
104)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7
105)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8

국 국장이 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금액과 관련된 납입금을 외국인은 납부하여야 한다.[106]

한편, 필리핀 입국 후 5년 이내에 필리핀 커먼웰스 법 653 (Philippine Commonwealth Act 653)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는 필리핀 이민법1940 외국인 등록법을 위반하여 유죄선고된 외국인 또는 입국 이후에 동법을 두 번이상 위반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107] 자신에게 관련된 범죄와는 관계없이 폭리, 비밀 축재, 암거래에 관여한 외국인[108]도 강제추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 개정귀화법으로 알려진 필리핀 커먼웰스 법 473 (Commonwealth Act. No. 473)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필리핀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외국인[109] 역시 강제추방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도피하여 기만하거나 그들로부터 집행이나 근접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분리시키는 외국인[110] 등에 대하여 강제추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약식 강제추방명령(Summary Deportation Order, SDO)

필리핀의 약식추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이 고소나 명령서에 따라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입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사법부로부터 범죄 도피자로 인정된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추방관련범죄의 벌금 지불을 완료하며 형집행을 완료한 외국인, 필리핀 이민법 제37조 (a) 3항과 10항에 따른 형 집행을 완전히 수행한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된다.[111] 그러나 약식 강제추방 명령은 형사 소추를 피하는 수단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112]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유효하게 발부된 여권이나 여행서류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된 비자가 있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증명서류가 없는 외국인은 유효하게

106)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9
107)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10
108)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11
109)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12
110)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s37(a)13
111)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SBM-2015-010
112)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s of Procedure of 2015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MemorandumCircular/2016_May/MC_SBM-2015-010.pdf (검색일: 2017.10.27.)

발부된 여권이나 여행서류가 없는 외국인 또는 취소된 혹은 파기된 여권을 가진 외국인을 의미하며, 법무부로부터 도피인은 외국 대사관이나 인터폴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해 표시되거나 그의 여권이 대사관에 의해 취소된 외국인을 의미한다.[113]

사법부로부터 범죄자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형 집행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정보국은 즉각적으로 외국 대사관이나 인터폴 또는 법집행 기관을 통해 외국 도망자나 범죄인의 수색과 체포 및 인계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114]

정보국은 관련된 외국 대사관, 인터폴, 국가 수사청 및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에 주요 책임부서가 된다. 체포나 인계로부터 8시간 이내에 정보국은 관련 서류를 법무실로 이송한다.[115]

2. 자발적 강제추방 (Voluntarily Deportation)

자발적 강제추방은 해당 외국인이 강제추방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발적 강제추방을 요청한 외국인은 혐의가 인정되고 구류되며 강제추방이 된다.

외국인에 의해 자발적 강제추방에 대한 공증된 요청은 그에 대한 임박한 범죄수사가 없어야 하고 형사소추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116]

법무실은 자발적 출국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발적 출국명령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민국 위원회 비서실에 함께 송부한다.[117]

3. 입국금지(Excluded Classes) 관련

가. 필리핀 입국거부 현황

필리핀은 최근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7년 상반기에만 2,717명이 입국이 거부되기도 하였으며[118] 이는 전년도에 비하면 39%정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119]

---

113)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SBM-2015-010 r9 s2
114)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SBM-2015-010 r9 s7
115)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SBM-2015-010 r9 s7.
116)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SBM-2015-010 r8
117)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SBM-2015-010 r8 s3

〈표 4-6〉 2016-2017년 필리핀 입국거부 국가별 현황[120]

구분	중국	인도	한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계
2017 상반기	1594	127	117	106	101	43	629	2717
2016	2034	269	-	163	179	119	6974	9738

필리핀의 입국거부 국가는 2017년도 상반기에 중국이 1,59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 한국, 미국, 베트남이 각각 100여명 정도로 비슷한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적지 않은 수가 입국거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입국거부의 주요 사유로는 체류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자와 공공안전과 보건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이익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외국인. 성범죄자, 외국인 도피자(범죄자) 등이며 테러리스트와 추방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중점심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범죄자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 입국거부 및 강제추방과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121]

〈표 4-7〉 필리핀 성범죄자 입국거부 현황[122]

	2014-2015	2016	2017 상반기
성범죄자	202	312	176

118) Bureau of Immigration, "2700 Aliens barred from Entering RP", July 26, 2017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News/2017_Jul/2017Jul26_2700AliensBarred.pdf (검색일: 2017.8.11.)

119) Philippine News Agenc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ver 2700 aliens barred from entering PH in H1 2017", July 26, 2017 http://www.pna.gov.ph/articles/1003029 (검색일: 2017.8.18.)

120) Bureau of Immigration, "BI barred 9,000 Aliens from Entering RP in 2016", January 27, 2017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News/2017_Jan/2017Jan27_BI_Barred9000Aliens.pdf (검색일: 2017.8.11), Bureau of Immigration, "2700 Aliens barred from Entering RP", July 26, 2017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News/2017_Jul/2017Jul26_2700AliensBarred.pdf (검색일: 2017.8.11)

121) Operations Order No. SBM-20014-016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OPERATIONSORDER/operations%20order%20sbm%202014-016.pdf (검색일: 2018.8.18)

122) http://www.manilatimes.net/514-foreign-pedophiles-barred-in-last-two-years/274350/ (검색일: 2017.8.18.)

필리핀 성범죄자의 입국거부는 2014-2015년이 202명에서 2016년 312명, 2017년 상반기에 176명으로 입국거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안전(Public safety)에 반하는 인물 역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등재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민국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유관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협업하는 것으로 공표하기도 하였다.[123]

나. 필리핀 입국금지 사유

필리핀의 입국금지는 필리핀 이민법 제29절에서 명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병자 혹은 정신적으로 질병을 가진 자,[124] 혐오스럽거나 매우 전염이 강한 질병을 가진 자 혹은 간질을 앓고 있는 자,[125] 부도덕한 범죄에 연류되어 범죄를 저지른 자,[126]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한 자 혹은 매춘업자 혹은 매춘을 하는 자[127] 등이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자 입국하는 자,[128] 극빈자, 부랑자 및 구걸하는 자,[129] 일부다처를 하는 자 혹은 일부다처제에 대해 옹호하거나 믿는 자[130]도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 혹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폭도, 무력행위를 통한 전복을 옹호하거나 믿는 자, 혹은 정부조직에 반대 혹은 부정하는 자, 국가 공무원을 암살 혹은 공격을 옹호하는 자, 필리핀 헌법에 위배되는 정신, 이론 및 원칙을 옹호하고 설교하는 자, 불법적으로 기물 파손을 설파하고 옹호하는 자, 혹은 위와 같은 사상을 가르치거나 다른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회원[131]도 입국금지에 해당한다.

---

123) Bureau of Immigration, "BI clarifies policy on blacklisting of foreign nationals"', November 22, 2014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JeWnSKZClEEJ:www.immigration.gov.ph/news/press-release/95-november-2014-press-releases/700-bi-clarifies-policy-on-blacklisting-of-foreign-nationals+&cd=2&hl=ko&ct=clnk&gl=kr (검색일: 2017.8.7)
124) Commonwealth Act No.613 s29(a)1
125) Commonwealth Act No.613 s29(a)2
126) Commonwealth Act No.613 s29(a)3
127) Commonwealth Act No.613 s29(a)4
128) Commonwealth Act No.613 s29(a)5
129) Commonwealth Act No.613 s29(a)6
130) Commonwealth Act No.613 s29(a)7

그러나 15세 이상의 신체적으로는 읽기능력이 있는 외국인이 선택한 언어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쇄물을 읽지 못할 경우,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리핀 시민권자의 친척 및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132]

이민위원회(Commissioner of Immigration)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입국 금지된 외국인을 동반하여 온 가족 관계에 있는 자,[133] 이민위원회 (Commissioner of Immigration)의 결정을 기본으로 하여,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거나 유아가 입국허가가 되지 않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호자 역할이 필요하여 동반한 자,[134] 이민위원회(Commissioner of Immigration)의 재량권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한 15세 이하의 어린이,[135] - 이민위원회(Commissioner of Immigration) 의 재량권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밀항한 자,[136] 동법 제20절에서 인정한 여권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미숙련공에 대한 취업보장, 취업알선 혹은 그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해 입국한 자,[137]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추방 혹은 입국금지 된 적이 있는 자도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민위원회(Commissioner of Immigration)의 재량권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외에도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연루되거나 행한 자, 동법 45조와 46조에 근거하여 어떤 형태로든 형 집행을 선고 받은 자, 사재기, 암시장 및 부당이익 취득과 같은 일에 연류 된 자. 다만, 추방 혹은 출입금지를 받기 전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38]

재정적인 능력(극빈)이 부족한 외국인 (동법 제43절)이 필리핀 정부의 경비로 필리핀에서 추방 된 적이 있었던 자이며 동시에 재입국에 대한 이민위원회(Commissioner of Immigration)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139] 이민법에서 명시된 입국승인에 대한 문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140] 등도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131) Commonwealth Act No.613 s29(a)8
132) Commonwealth Act No.613 s29(a)9
133) Commonwealth Act No.613 s29(a)10
134) Commonwealth Act No.613 s29(a)11
135) Commonwealth Act No.613 s29(a)12
136) Commonwealth Act No.613 s29(a)13
137) Commonwealth Act No.613 s29(a)14
138) Commonwealth Act No.613 s29(a)15
139) Commonwealth Act No.613 s29(a)16
140) Commonwealth Act No.613 s29(a)17

이 입국금지와 관련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민위원회는 그의 재량으로 입국금지에 해당하지만 서류가 적절히 갖춰진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용할 수 있으며,[141] 필리핀에 입국과 관련한 허가를 원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이민법에 조항에 따라 입국이 배제되지 않음을 증명할 부담이 있다[142]고 하겠다.

입국금지 사유는 강제추방 사유인 이민법 제37절 (a) 2의 필리핀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당시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함께 강제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리핀은 입국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의 시효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입국금지 명령이 실제 적용된 날부터 3개월 후의 블랙리스트 시효사유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금치산자와 그 동반인, 입국 금지된 이국인을 동반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 부모동반을 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아동, 밀항 혹은 부적절한 서류(서류미비) 등이다.[143]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거나 추방명령에 대한 실제 적용된 날로 부터 6개월 후의 블랙리스트 시효사유로는 자발적 추방명령(Voluntary Deportation Order)으로 인한 추방, 1년이하의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자 등에 해당하고, 질병 혹은 심각한 건강상태로 진단받은 경우 6개월 후의 블랙리스트 시효사유로는 정신이상, 혐오스럽거나 매우 전염이 강한 질병에 걸린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144]

추방명령의 적용 혹은 실제 입국금비의 날로부터 12개월 후의 블랙리스트 시효사유로는 부도덕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매춘 업자, 일부다처제를 옹호하거나 신봉하는 자 혹은 실제 행하고 있는 자, 극빈층, 부랑자 및 구걸하는 자, 미숙련 노동자들, 재정적인 지원이 미비한자, 허위진술을 통해 입국을 한 자, 입국에 대한 검사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 입국지에서 만취 혹은 공공질서 혼란을 야기한 자, 입국심사 과정에 불응한 자, 입국 심사관에게 매너를 지키지 않거나 난폭한 행동을 한 자, 불법

141) Commonwealth Act No.613 s29(b)
142) Commonwealth Act No.613 s30
143)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http://immigration.gov.ph/images/ImmiAdminCircular/AdminCircularNO.%20SBM-2014-001.pdf (검색일: 2017.8.10)
144)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http://immigration.gov.ph/images/ImmiAdminCircular/AdminCircularNO.%20SBM-2014-001.pdf (검색일:2017.8.10)

입국자, 체류기간 제한을 어긴 자, 일년 이상의 장기체류를 한 자, 비자가 취소 된 자, 서류/증명서가 없는 자, 부적절한 서류를 가진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145]

추방명령의 실제 적용된 날로부터 5년 후의 블랙리스트 시효사유로는 부당이익, 암시장 및 사재기에 관여한 자, 신용기관(자)을 속인 자, 위험인물(범죄자) 등이고, 추방명령 혹은 실제 입국금지 날로부터 10년 후의 블랙리스트 시효사유로는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 이민법에 명시된 제 45조 46조에 의거한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146]

법무부장관의 요청 건은 제외하고 삭제에 대한 비자격자로는 체제전복행위에 가담한 자, 금지약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로 등록된 자 등은 입국과 관련한 비자격자로 분류된다.[147]

입국금지 블랙리스트에 다양한 범죄로 기록된 자 즉 중복등재된 자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해제의 시간이 가장 긴 시효를 적용 받는다. 그 이외에 면제의 경우도 있으며, 이민국장의 권한으로 인도주의, 경제적, 정치적 혹은 다른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 그의 재량권으로 해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8]

제6절 필리핀 강제추방 절차

필리핀은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관련 세부 절차를 필리핀 이민법과 관련 절차법(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s of Procedure of 2015)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145)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http://immigration.gov.ph/images/ImmiAdminCircular/AdminCircularNO.%20SBM-2014-001.pdf (검색일: 2018.8.10)
146)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http://immigration.gov.ph/images/ImmiAdminCircular/AdminCircularNO.%20SBM-2014-001.pdf (검색일: 2018.8.10)
147)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http://immigration.gov.ph/images/ImmiAdminCircular/AdminCircularNO.%20SBM-2014-001.pdf (검색일: 2018.8.10)
148)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http://immigration.gov.ph/images/ImmiAdminCircular/AdminCircularNO.%20SBM-2014-001.pdf (검색일: 2018.8.10)

1. 고소나 고발

필리핀의 강제추방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작되며 관련 고소나 고발이 위원회 사무실에 중앙 접수팀을 통하여 제출되면서 시작된다.[149]

고소나 고발은 관련인의 성명과 주소, 관련 외국인의 성명과 (지난 최근)주소,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범한 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150] 또한 익명 고발이나 고소 또는 주소가 누락된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명백한 증거나 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151]

고소나 고발의 철회는 자동적으로 사안이 폐기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152]

2. 예비심문 (Preliminary Investigation)

고소나 고발이 형식상 적절한 경우 예비심문이 시작된다. 고소와 고발이 접수된 후 특별검사를 거친 법무실은 예비심문을 수행하며 이는 접수된 후 60일을 넘기지 않는다.[153]

고소나 고발이 명백히 가치가 없는 경우 특별검사는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폐기를 권고하고 그 권고안은 이민부장에게 전달되며 법무실은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전달한다.

3. 사건기록서 (The Charge Sheet)

고소나 고발이 적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는 할당 받은 후 2일 이내에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접수 후 10일 이내에 증명과 관련한 관련 서류와 기록을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답변이 제출된 후 10일 이내 또는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는 사건

149)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2 s4
150)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2 s5
151)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2 s6
152)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2 s8
153)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3 s1

기록서를 발부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154]

사건기록서는 특별검사에 의해 발부되고 이민부장의 승인이 있는 서면으로 된 일종의 기소장과 같다. 사건기록서는 관련자의 이민관련 지위의 조정이나 국가이탈을 막기 위하여 이민부 데이터 베이스에 외국인의 이름이 포함된 일종의 명령을 포함하여야 한다.[155] 사건기록서는 혐의의 내용에 대해 관련인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그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56]

사건기록서는 이름과 국적, 위반사항,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위반관련 날짜, 위반이 있는 장소 등이 필요하다.[157] 사건기록서의 발부된 후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서명을 위해 명령서를 준비하여야 한다.[158] 인신보호영장 (Writ of Habeas Corpus) 발부청원의 제출은 강제추방 절차를 연기할 수 없으나, 법원이 일시적 제한명령이나 일종의 명령을 발부하면 가능할 수 있다.[159]

4. 임무 명령서 (Mission Order)

외국인이 필리핀 이민법이나 필리핀 법, 규칙이나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이것이 강제추방의 사유가 될 때 위원회는 국가안전의 이익, 건강,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임무명령서를 발부하여 이민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인과 관련한 조사를 하거나 증명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임무명령서는 다양한 국가기관이 발부할 수 있는데,[160]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명백한 필리핀 법의 위반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도 가능하다.[161]

이민국 정규 담당자나 이민국 관련 정부 정규 담당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임무

---

154)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3 s2
155)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4 s1
156)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4 s2
157)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4 s3
158)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4 s4
159)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4 s5
160) 화기(firearms)와 관련하여 임무명령서 발부가 가능한 기관으로 필리핀 국가경찰, 국가정보국, 국가 수사국, 이민국 핵심요원 등등 관련 기관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http://ls.pnp.gov.ph/publications/23-authorities-allowed-to-issue-mission-letter-order-involving-the-carrying-of-firearms (검색일: 2017.11.11.)
161)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1

명령서를 집행하며 다른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무명령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물론 업무시간 외에는 집행되지 않으나 대상 외국인이 법무부에 의한 도망자이거나 위원회가 결정한 국가 평화와 안보에 해가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집행될 수 있다.[162]

임무명령서는 지체 없이 시행되며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임무명령서(Mission Order)의 적법성 재판에서 법원이 외국인의 편에서 고려해 준 사례는 사실상 드물다고 한다.[163] 만약 영장없는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공무원은 외국인이 체포되는 이유에 대해 알권리, 변호인 선택의 권리, 묵비권 등 필리핀 공화국 법 No.7438에 따른 그의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164]

5. 체포 공무원 임무

체포하는 날 체포 공무원은 외국인을 정보국으로 인도하여 등록, 촬영, 지문과 기록을 확인하고 정보국장은 해당 외국인의 대사관에 그 체포사실을 고지한다.[165]

체포한 공무원은 체포 후 18시간 이내에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준비하는데 체포의 날짜, 시간, 장소, 방식이 언급된 진술서가 있는 임무명령보고서와 그러한 임무명령의 발부를 위한 근거가 되는 정보보고서와 임무명령서, 만약에 있다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이민서류를 포함한 서류와 재산 등 물품 목록, 외국인의 의료 기록과 생체 데이터, 그 외 다른 서류 등을 준비하여 2부는 법무실로 보내고 1부는 이민국 위원회에 보유한다.[166]

6. 특별검사 할당 (Special Prosecutor)

법무실장은 해당 사건 기록을 특별검사에게 즉각 할당하며 특별검사는 수사를 하고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사건기록서를 제출하든지 결정한다. 사건기록서는

---

162)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3
163) 이호진, 필리핀 법제와 문화, 학영사, 2005, 10면
164)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4
165)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4
166)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5

법무실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석방명령은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과 그의 변호인 및 그의 국가 대사관은 사건기록서나 석방명령서를 제공받는다. 사건기록서가 제출되면 체포된 외국인은 예비심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변호인권 제한), 그 심문은 15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167]

7. 이민국 관리실 (BI WardenFacility)

수사와 특별검사가 사건기록서 제출을 인용한 후 정보실은 외국인의 구금을 이민국 관리실로 인계한다.[168] 한국의 조○○씨는 23,500달러의 강탈죄를 범하여 이민국 관리실에 구금되었다가 탈주하기도 한 바가 있기도 하다.[169]

체포된 외국인의 구금을 받기 전 이민국 관리실은 공식기록을 작성하는데, 그 외국인의 구금을 인계받은 이민국 담당자의 전체 성명, 체포된 외국인의 개인 상황, 체포명령서와 임무 명령서 사본, 이민국 위원회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발부된 수행명령 사본, 관리실로 인계되는 서류와 외국인의 재산 및 물건 목록 등이다.[170]

체포 공무원이 그 외국인을 이민국 사무실과 수사를 위해 법무실에 체포 당일날 데리고 오지 못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외국인은 즉각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민국 관리실로 이송된다. 관리실은 그 체포된 외국인을 그 다음 업무일에 수사를 위해 법무실에 이송하는데, 다음 업무일이 36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법무실장은 특별검사를 할당하여 관리실에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171]

8. 특별청문 위원회 전 절차

사건기록서 발부 15일 이내에 법무실장은 일련의 과정을 정렬한 검사의 기록(Memorandum)이 첨부된 사건기록서를 특별청문 위원장에게 서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Memorandum)은 사실에 입각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

167)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6
168)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7
169) http://newsinfo.inquirer.net/726741/escape-of-wanted-korean-from-bi-detention-facility-probed(검색일:2017.11.11.)
170)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8
171)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9

실질적인 원본 문서를 공증한 복사본 증거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접수확인을 받은 즉시, 특별청문 위원장은 추방사건의 해결을 위한 부서원에게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172]

추방사건을 이송 받은 특별청문 위원회의 담당직원은 2일 내에 사건당사자에게 정해진 15일 기간 안에 서면 기록을 제출할 것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명령을 하며, 반박자료 혹은 재반박에 대한 기록은 금지된다.[173]

기록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5일안, 혹은 기록접수 기간의 마지막 날, 위원장의 승인아래 특별청문 위원회의 직원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야여하고, 이사회 사무국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특별청문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모든 결정문 초안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파일로 보관해야 된다.[174]

사건기록을 첨부한 결정문 초안을 받자마자, 이사회 사무국은 순차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한다. 만일 심사할 사건의 양이 방대하거나, 복잡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사회 사무국은 다음 회의에서 사건을 논할 수 있도록 연기할 수 도 있다.[175]

9. 특별청문 위원회 (Board of Special Inquiry)

도착항에서 이민국의 검사에 나타나지 않거나 명백히 입국할 권한이 없는 모든 외국인은 특별청문 위원회에 의한 검사를 위해 구금된다.[176] 특별 청문위원회는 의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에 의해 선임이 결정된다. 도착항에서 특별청문 위원회 구성이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특별청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정부 공무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177]

특별청문위원회는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허용되어야 할지 배제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필리핀 이민법 제29절에서 제시된 모든 경우에 이민국 위원회가 외국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고사항과 사실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178]

---

172)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6 s1
173)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6 s2
174)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6 s3
175)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6 s4
176) Commonwealth Act No.613 s26
177) http://www.immigration.gov.ph/17-announcements/90-board-of-special-inquiry(검색일: 2017.11.11.)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선서하고 증거를 취합하며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이민 위원회에 의해 기술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179] 위원 3명 중 2명의 결정이 되고 이민국 위원회의 항소가 없는 경우에 최종 결정이 된다.[180]

10. 강제추방 명령과 결정

이민국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사무국이 접수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고[181] 사본은 마지막으로 알려지거나 주어진 주소나 기록된 그의 변호사 사무실 또는 가까운 대사관 등으로 송부된다.[182] 이민국 위원회에서 결정된 추방은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것으로 결정되는데, 대통령은 이민국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83]

제7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체포와 구금관련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체포한 공무원은 체포 후 18시간 이내에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준비하는데 체포의 날짜, 시간, 장소, 방식이 언급된 진술서가 있는 임무명령보고서와 정보보고서 및 임무명령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184] 관련보고서가 법무실로 이관되면 특별검사에게 할당되며 특별검사는 수사를 하고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사건기록서를 제출하는 등 결정을 내린다. 사건기록서가 제출되면 체포된 외국인은 예비심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변호인권 제한), 그 심문은 15일 이내에 종료된다.[185]

---

178) Commonwealth Act No.613 s27
179) Commonwealth Act No.613 s27
180) Commonwealth Act No.613 s27
181)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10 s2
182)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10 s2
183) 1987 Administrative Code of the Philippines, Book III, Chapter 3, s.10
184)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5
185)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6

사건기록서 발부 15일 이내에 법무실장은 일련의 과정을 정렬한 검사의 기록이 첨부된 사건기록서를 특별청문 위원장에게 서명하여 송부하고,[186] 추방사건을 이송받은 특별청문 위원회의 담당직원은 2일 내에 사건당사자에게 정해진 15일 기간 안에 서면 기록을 제출할 것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명령을 하게 된다.[187] 특별청문위원회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관련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사회 사무국은 관련 내용이 방대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로 연기할 수도 있다.[188] 도착항에서 이민국의 검사에 나타나지 않거나 명백히 입국할 권한이 없는 모든 외국인은 특별청문 위원회에 의한 검사를 위해 구금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189]

구금장소와 관련하여 조사가 끝나고 특별검사가 사건기록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국은 그 외국인을 이민국 관리실로 인계하여 구금한다.[190] 체포 공무원이 그 외국인을 이민국 사무실과 수사를 위해 법무실에 체포 당일 날 데리고 오지 못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외국인은 즉각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민국 관리실로 이송한다.[191] 필리핀의 구금실과 관련하여서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192] 일정부분 공동의 논의와 함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8절 필리핀 강제추방 관련 보석

필리핀은 강제추방 과정 중에 체포된 외국인이 현금 보증금 혹은 정부가 발행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내고 위원장(Commissioner)이 부과하는 기타 조건하에 석방 할 수 있는 보석(Bail) 관련 규정을 이민절차법[193]에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 추방관련 자료가 있는 한, 체포 후 즉시, 혹은 최종추방명령 이전에

186)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6 s1
187)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6 s2
188)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6 s4
189) Commonwealth Act No.613 s26
190)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7
191)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9
192) http://www.philstar.com/headlines/2017/04/29/1695107/bato-backs-secret-cell-detention (검색일:2017.11.11.)
193)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추방사건에 대한 재검토 포함)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필요하다면 증거를 첨부하여 보석석방에 대한 청구를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94]

피항소인이 부과된 현금 보증금을 송금할 수 있고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또는 청문회에서 변호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을 대변해야 하며, 피항소인은 위원장의 필요시, 필리핀내의 거주 장소와 거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95]

위원장으로부터 출국명령허가서 없이는 필리핀 출국을 할 수 없으며, 피항소인은 승인된 이민국 직원이 필리핀 거주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여야 하고, 강제추방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마닐라발 자국으로 향하는 편도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196]

위원장은 추방 혐의의 특징, 외국인의 이민 지위, 외국인의 나이와 신체상태, 인권적 사안 고려, 외국인의 도주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해가 있는 경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197] 보석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외국인은 정보국, 법무팀, 특별청문회, 이민국 위원회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출두를 하여야 하고,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은 외국인은 참석해야 되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또한 외국인은 추방명령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복종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이민국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재체포에 대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모든 경비, 그의 추방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비용도 보증되는 것[198] 등을 조건으로 한다.

보석석방청구 승인명령은 추방유예목록에 외국인의 이름을 등재하며 특별청문위원회 혹은 법무팀에 그의 여권원본, 여행증명서를 회수하고 이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199]

법무팀 팀장은 보석청구에 대한 승인 명령 사본, 외국인의 현금보증금에 대한 공식 영수증 복사본, 법무팀 팀장으로부터의 석방과 관련된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194)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2
195)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2
196)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2
197)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3
198)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4
199)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5

증명서 등에 서명을 하고 구금실에 서신송부를 준비한다.[200]

보석의 조건을 이행할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금은 이민국으로 귀속되는 등 회수되며, 보석으로 풀려난 외국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도피를 시도하였다면, 체포영장 없이 재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

정상적인 운영과 감사과정에서 외국인의 사망, 외국인의 추방, 추방사건의 기각이 있을 시, 보석은 취소되며, 그의 공식 대리인 혹은 외국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202] 한국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강제추방(강제퇴거)과 관련된 보석 관련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9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이의 및 항소관련

외국인은 이민국 사무실이 강제추방 결정의 수령에서부터 이의 재고의 신청 제출까지 3일간의 기간을 가지는데, 한 번의 이의신청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이민국 사무실은 재고의 이의신청을 사안에 따라 법무실 또는 특별청문위원회로 전달한다.[203]

이의 신청은 증거가 없는 사실이나 법에 반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여야하며 사실이나 결론에 반하는 법조문이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무실이나 특별청문위원회는 이의 신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진술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실이나 특별청문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문이 작성되면 법무실과 특별청문위원회는 이민국 위원회 사무실에 전달하고 이민국 위원회 사무실은 이민국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다음 일정계획을 마련한다.[204]

항소와 관련하여서는 법무실이 미결항소의 실행을 지시하지 않는 한 항소된 결정의

200)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6
201)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7
202) Bureau of Immigration Omnibus Rule of Procedure of 2015 r7 s8
203)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10 s7
204)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10 s7

집행을 유지하도록[205]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60조에서 이의신청[206]을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 관련 내용규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이민법을 새롭게 구상하여 내용을 규정할 때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0절 필리핀 강제추방에서의 변호관련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2015년 필리핀 이민 절차법에서는 필리핀 공화국 법 No.7438에 따라 외국인의 영장 없는 체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포 공무원은 그의 체포의 사유와 그의 선택에 의한 변호인 선임권 및 묵비권을 가짐을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207]

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필리핀 헌법 제12조(Section 1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묵비권과 경쟁력 있는 독립적인 변호인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가질 수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데, 서면으로 변호인 입회하에서는 포기될 수 있다.[208]

---

205)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10 s8

206)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0.5.14.]

207)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r5 s5

208)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rticle III, http://www.officialgazette.gov.ph/constitutions/the-1987-constitution-of-the-republic-of-the-philippines/the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 제54조[209]에서도 변호인이 언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권 또는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여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7-constitution-of-the-republic-of-the-philippines-article-iii/ (검색일: 2017.10.31.)

209)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54조(보호의 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외에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아멜리아(Amelya)

제5장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제1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연구의 의의

인도네시아는 한국인 범죄자가 주로 도피하는 중국이나 필리핀과는 달리 주요 범죄 도피국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나[210] 중국과 필리핀 이외에도 아시아 각 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를 경유하는 범죄의 거점으로 자주 활용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범죄는 초국가적 범죄의 현상을 띠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 간에 걸쳐서 범죄지를 활용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과 대책 또는 양 국가 간의 대응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공동 범죄 대응은 일반적인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의 재조명과 활용 및 범죄대응을 위해 이민법상 필요한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 체계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강제추방 관련한 범죄의 공동대응과 함께 인권보호의 문제점과 공동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본적인 강제추방 관련 법제와 현황 및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데 그치는 점이 있는데, 추후 심화 연구에서 범죄공동대응에서 관련 공동논의

---

210) 인도네시아는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도피범죄자를 강제송환하는 내용을 인도네시아 이민법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75조 ③ 강제퇴거와 같은 출입국 행정준수는 본국에서의 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사항을 발굴하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일정한 공동논의 구성을 위한 협의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필리핀의 경우 주로 범죄를 통한 강제추방의 사례를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한국인은 주로 인도네시아 이민법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제에 대한 소개와 검토가 한국인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섬나라의 현상과 특징이 있어 통계의 전국적 산출이 사실상 온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211] 또한 강제추방과 관련한 통계 역시 외국의 이민관련 기관을 통하여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관련 기관이 한국인 관련 강제추방의 사례와 현황에 대한 총괄 관리와 검토가 역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2절 인도네시아 이민의 역사

1. 식민시대 이전

오직 우기와 여름의 2개 계절로만 대표되는 적도지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은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사이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에 위치하여 풍부한 천연생산물, 우림, 바다로 인하여 인도네시아를 비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런 이유로 매우 다양한 목적에서 외부인들(foreigners)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식민시대 이전에 들어온 외부인들은 국적 또는 소위 민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룹지어진다.[212]

첫 번째 이주민은 힌두인으로 힌두교와 그 문화의 전파 및 상거래(무역: trade)를 할 목적으로 중세(Middle CE) 초기에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였다. 두 번째 이주민은

211)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유무선 인터넷 기술과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상호협력이나 지원을 논의함으로써 아시아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212)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hlm 5-6.

중국인으로 서기 1294년 경에 인도네시아로 이주. 처음에는 왕조 교체기의 내전에 의해서 온 것이었다. 두 번째 이주 시기에는 중국인들은 상거래를 위해서 들어왔다.

세 번째 이주민은 아랍인으로 처음 이주는 종교 전래를 위해서 15세기 초반에 들어왔다. 다음 이주 시기는 1860년경과 1930년경으로 Hedrabat 아랍으로부터 소매상인들이 상거래를 위해서 들어왔다.

네 번째 이주민은 포르투칼인으로 1522년경에 상거래를 위해 들어왔다. 이후 독점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하였다.

다섯 번째 이주민은 네덜란드인으로 1596년에 상거래를 위해서 들어왔고 이후 역시 그 독점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하였다.[213]

2. 식민시대[214]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플랜테이션(plantation: 목재, 고무, 설탕, 커피 등의 대농장) 상품들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부분 지배하는 인도네시아 영토는 플랜테이션 상품 거래에 참여하려는 수많은 외국 국가들을 매료시켰다.[215]

네덜란드 동인 회사 영토 안으로 쇄도하는 외부인들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1913년 식민정부는 출입국(이민) 위원회 담당국(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Immigration Commission)을 설립했고, 그 책무와 기능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1921년 출입국 위원회 담당국은 출입국담당국(immigratiedients: 네덜란드어로 이민)으로 변경되었다.[216]

네덜란드 동인도 식민통치동안 출입국담당국(Immigration Service)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조직구조상 비자업무나 기타 필요한 부분(afdeling: 네덜란드어로 부서, 분야)과 같은 분야를 조직한다. 출입국담당국 공무원(immigratie

213)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hlm 5-6.
214)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0)
215) M.Iman Santoso, Perspektif Imigrasi dalam Pembangunan Ekonomi dan ketahanan Nasional, hlm. 18
216) M.Iman Santoso, Perspektif Imigrasi dalam Pembangunan Ekonomi dan ketahanan Nasional, hlm. 18

ambtenaar: 네덜란드어)들이 확대되었다. 경력이 있고 잘 교육받은 직원들이 센터에 고용되었다. 네덜란드에서 파견된 사람들(uitgezonden krachten: 네덜란드어로 파견단)이 적지 않았다. 출입국담당국의 모든 핵심지위들이 네덜란드 공무원들의 수중(手中)에 들어갔다.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가 수립한 출입국정책은 문호개방정책들이다(opendeur politiek).[217]

이 정책에 의해 네덜란드 인도 정부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살도록 하여 네덜란드 동인도의 시민이 되도록 가능한 한 폭넓게 문호를 개방했다. "문호개방" 출입국정책을 적용한 주요 목적은 네덜란드 동인도 지역의 플랜테이션 상품들 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투자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218]

또한 덧붙여서 외부인들이 존재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토착민들을 억제하고 착취하는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수많은 지역들의 출입국담당국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의 출입국담당기구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이는 당시 해외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편이 비교적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 치하에서 관리된 출입국(이민)분야들은 단지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이었다.[219] 이는 입국 및 체류의 승인 분야, 외부인의 거주 분야, 시민권(국적) 분야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정부규제로 Toelatings Besluit(입국허가결정) (1916); Toelatings Ordonnantie(입국허가명령) (1917); And Passport Regelings(여권규칙) (1918)이 있었다.

3. 독립혁명 시대

네덜란드 동인도 식민지 시대는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 영토를 침입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일본 점령기 동안 출입국법령의 근원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

217) M.Iman Santoso, Perspektif Imigrasi dalam Pembangunan Ekonomi dan ketahanan Nasional, hlm. 19

218) M.Iman Santoso, Perspektif Imigrasi dalam Pembangunan Ekonomi dan ketahanan Nasional, hlm. 19

219) Sihar Sihombing, Op. Cit, hlm 19.

달리 말해서, 일본 점령기 동안에도 네덜란드 동인도 출입국법의 결과물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했던 시점까지도 이 중요한 출입국규정들은 유지되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선언 이후 출입국(이민)과 관련하여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220]

첫째, APWI(Allied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연합군 포로와 피억류자)와 일본군의 송환 : 이 사건은 특히 자바섬 중앙부에서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와 수송, 그리고 APWI의 수송에 대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와 자바섬에서 일반적으로 POPDA(일본군 포로 및 피억류자 송환) (Panitia(위원회) Oeroesan(추방) Pengotooetan(포로) Jepepang (일본)) 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둘째, 무기와 항공기에 대한 구매와 교환 : 독립혁명시기동안 투사들(fighters)이 종종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해외로 여권 없이 나가기도 하였다.

셋째, 외교적 투쟁 : 뉴델리에 열린 범아시아 회의(Inter Asian Conference)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합법정부의 임무로서 처음으로 국가간 여행증명서인 "여권 양해 증서(Certificate of Consideration as Passport)"를 발급받는데 성공하였다. H. Agus Salim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교 여권"을 소개한 것이었다.

넷째, 아체(Aceh: 수마트라 섬 북부의 특별자치구) 주(州)으로의 이주 : 아체(Aceh)는 네덜란드가 점령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영토로서 1945년 이후 5개 도시들에 출입국담당국이 세워졌고 독립혁명 시기동안 계속 운영되었다. 1945년 이후 아체주의 출입국담당국 설립은 Amirudin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 사건들은 매우 중요했는데, 1947년에 법무부 소속이던 출입국담당국이 외무부 권한으로 넘어갔다.

또한 법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가 만든 이민법과 규정들이 폐지되었고 독립정신에 부합하는 법령들로 대체되었다. 독립혁명 시기동안 출입국(이민)에 관한 네덜란드 동인 법령 두 개가 폐지되었다.[221]

---

220) Ramadhan K.H, Abrar Yusra, *Lintas Sejarah Imigrasi Indonesia*,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Departemen Hukum dan HAM, RI, 2005, hlm 47.

221) Ramadhan K.H, Abrar Yusra, *Lintas Sejarah Imigrasi Indonesia*,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Departemen Hukum dan HAM, RI, 2005,, hlm 49.

첫번째가 Toluatings Besluit(입국허가결정)(1916)이 1949년 국가 관보 제330호에 수록된 입국허가조항(PIM)으로 개정되었다.

두 번째가 Toelatings Ordonnantie(입국허가명령)(1917)이 1949년 국가 관보 제331호에 수록된 입국허가명령(OIM)으로 개정되었다.

독립혁명 시기동안 출입국기관은 네덜란드 출입국담당국(Immigration Service)의 조직구조와 진행절차를 이용하였다.

4. 인도네시아 연방 공화국 시대[222]

인도네시아 연방 공화국 시대는 인도네시아 출입국기관의 오랜 역사 속에서 최고 정점의 시기이다. 이 시대 1950년 1월 26일에 네덜란드 동인도 출입국담당국이 인도네시아 정부로 이양되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의 출입국 관련 조직구조와 진행절차는 물론 몇몇 법령들도 인도네시아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사용되었다.[223]

인도네시아 출신인(자기 지역 출신, native son) H.J. Adiwinata가 첫 번째 출입국담당국의 수장을 맡았다. 출입국담당국의 조직구조는 오래된 출입국(이민)구조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출입국담당국의 편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운영전략이든 행정이든 조직이든 법무부와 협력 하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했다.[224]

1950년 초반, 새로운 독립국가이며 대변혁의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출입국담당국을 지원하는 기관(facilities)과 기반시설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단순했다. 알려진 어려움은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출입국의 임무들과 기능들을 이해하는 토착민(indigenous son)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출입국 업무(immigration service)은 네덜란드 시민권을 여전히 사용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출입국부서에 근무하는 459명 중에서 160명은 네덜란드 인들이었다.[225]

RIS(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출입국 당국의 기초로서 사용된 법규들은 여전히 네덜란

222)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23)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24)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25) Moh Arif, Keimigrasian di Indonesia Suatu Pengantar, Pusat Pendidikan dan Latihan Pegawai Departemen Kehakiman, 1997, hlm. 16-17

드 인도 정부의 다음과 같은 유산들이었다. Indische Staatsregeling(인도정부법규), Toluating Besluit(입국허가결정), Toeatings Ordonnantie(입국허가명령) 등이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출입국담당국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법령을 발령하였다.[226]

첫째, 1950년 7월 12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부 장관 명령(decree) JZ/239/12호로 발령되었는데, 이는 입국항구(landing ports)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항구들에 입국한 승객들이 세관에 대해 수행하는 입국보고를 규정한 것이었다.

둘째, 1950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여행증명서(travel letters)에 관한 RIS 긴급법령(Emergency RIS Law) 제40호이다.

셋째, 출입국(이민, immigration) 세금(duty)에 대한 1950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긴급규칙(Emergency Rules) 제42호 (관보 제77호 보충, 1950년 법령집 제84호)이다.

5. 의회민주주의 시대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시대의 결정적 기간이 의회민주주의 시대로 1952년 말 네덜란드 고용의 고용계약이 끝나는 것과 관련된 시점으로 이어졌다. 고용계약의 종료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출입국업무(immigration services)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0~1960년대에 출입국업무는 출입국 사무소들을 개청하고 새로운 입국항구들을 지명하려 하고 있었다.[227]

그 10년 동안 중에 1960년 1월 26일 출입국담당국은 자카르타에 출입국담당국 본부를 설립했고, 26개의 지역 출입국사무소, 3개의 출입국사무소, 1개의 출입국검사사무소, 해외에 7개의 출입국 출장소(immigration posts)를 설립하여 조직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출입국 인력(HR: Human Resource) 분야에서, 1960년 1월 출입국담당국 전체 직원 총수가 행정직원이나 출입국 기술직원을 포함하여 125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모두 인도네시아 출신 남녀들이었다.[228]

출입국 처분(arrangement) 분야에서, 이 시기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민시대 출

226) Ramadhan K.H, Abrar Yusra, Op. Cit, hlm 50.
227)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28)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입국(이민)의 문호개방정책을 선별 또는 여과 정책(선별정책)으로 변경하는 재량을 가지게 되었다.[229] 선별정책은 국익의 보호에 기초하며 나아가 인도네시아 국적자(시민권자)에게 보다 큰 보호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이용되고 이행된 접근법들은 번창(prosperity) 접근법과 보호 접근법을 포괄하였다. 몇몇 출입국 처분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230]

첫째, 출입국 교통 처분들; 외국선박 선원과 승객들의 출입국 문서에 대한 검사는 여행 중 해외에 있는 선박에서 수행된다.

둘째, 외국인 거주 영역에 대한 처분들은 외국인 수에 대한 1955년 긴급법령 제9호 입법에 의한다(1955년 관보 제33호, 관보 제812호 부록).

셋째, 외국인에 감독에 대한 처분들은 해외감독(Overseas Supervision)에 관한 1953년 긴급법령 제9호 입법에 의한다(1953년 법령집 제64호, 법령집 제463호 부록).

넷째, 출입국 영역의 범죄/ 범죄자/ 범죄활동에 대한 규제규칙(regulation)은 출입국 범죄에 관한 1955년 긴급법령 제8호 입법에 의한다(1955년 관보 제28호, 관보 제807호 부록).

다섯째, 시민권 영역은 이 시기에 시민권에 대하여 통과된 중요입법에 의하는데, 먼저 시민권 문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중국인민공화국 간의 협정에 관한 1958년 법령 제2호(법령집 1958호)이다.

여섯째,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에 관한 1958년 법령 제62호(1958년 법령집 제113호, 법령집 제1647호 부록)이다.

일곱째, 중국인 시민권 문제와 외국인 등록 이행(POA)에 의한다.[231]

또한 이 시기에, 출입국에 연관된 입법 결과물들로서 비자(사증), 여권, 국가간 여행증, 출입국범죄 취급사항, 외국인 등록, 시민권과 같은 것들이 점증적으로 현출되기 시작했다. 의회민주주의 시대동안 발효된 중요 입법결과물 중 하나는 여권 규제규칙(Regelings: 네덜란드어)(1918)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여행증에 관한 1959년 법령 제14호로 대체한 것이다.(1959년 관보 제56호, 관보 제1799호 부록)

---

229) Herlin Wijayanti, Hukum Kewarganegaraan dan Keimigrasian, Malang (Bayumedia Publishing, 2011) hlm 131.
230)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31)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6. 새로운 질서(orde: 네덜란드어로 질서) 시대[232]

새로운 질서 정부 시기는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이후 가장 길었다. 이 같은 신정부의 장기집권은 출입국기관들(institutions)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는데, 비록 그 수행에 있어서 그 모(母)조직을 몇 번 대체하는 경험을 겪었지만 말이다. 새로운 질서 정부 동안의 정치적 안정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인도네시아 출입국기관들(agencies)은 사회봉사에 보다 전문화되고 발전하게 되었다.[233]

이 시기에 각료(cabinet)조직과 부서업무 분야가 몇 번 바꾸었는데, 이는 순차적으로 출입국 일선조직에 변화로 이어졌다. 1966년 11월 3일 부서업무 영역과 조직구조에 관하여 정책이 세워졌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 주요 수행업무로서의 출입국기관이 출입국관리 장관(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이 이끄는 출입국기관으로 이행되었다.[234]

이러한 변화는 확대된 출입국관리부서(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의 권한 안에서 물적 시설들의 건설로 계속 이어져 나갔다. 관청건물, 공무원들의 주택, 출입국 사무소들(posts), 구치시설들을 매년 건설되었다. 인사(인력관리 HR) 영역과 경력관리에서, 고용인 배치 및 고용인 보호체계는 출입국관리부서가 한 사무소에 고정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인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갔다. 출입국 경력발전 시스템도 전문성(professionalism)과 공평(justice) 원칙에 따른 승진으로 계속 강화해 나갔다.[235]

업무량 증가와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으로 출입국관리부서는 출입국영역에 전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할 이유가 있었다. 1978년 초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처음으로 전산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출입국정보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이용된 것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236]

새로운 시대동안 출입국 입법분야에서, 정부의 국가발전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출입국 규제 산물들이 출입국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처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발전 세부분야(sectors)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237]

---

232)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33)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hlm 10
234)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hlm 10
235)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hlm 10
236)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hlm 10

출입국서비스, 1974년 hajj 순례에 관한 입국(상륙, landing)서류 작성(completion), 자카르타-토교 사이 Garuda 항공노선에 대한 검사서류 작성, 여권 출력품질 향상, 국경 월경 문제들에 관한 처분, 출입국시설의 특별허가(특별면제, dispensation) 처분, 국경지역의 불법출입국 노동자들에 대한 취급조치, Umroh(이슬람성지인 메카방문: 성지순례: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처분, 예방 및 제지 문제들에 관한 규제규칙, 노동분야에서 출입국처분들, 1979년의 비자(사증) 처분, 인도네시아 영토로의 불법이주 및 불법체류, 인도네시아 시민에 관한 출국허가(exit permit)의 취소(removal) 등이 그것이다.[238]

새로운 질서시대동안, 새로운 출입국법, 즉 1992년 출입국에 관한 법령 제9호(1992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33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3474호 부록)가 1992년 3월 4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 출입국법은 종전 법적 규칙들(regulations)에 대한 검토의 산물로서, 부분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의 유물인 동시에 1992년 법령 제9호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되고 있던 종전 출입국법의 다양한 결과물로서 널리 퍼져 있던 출입국법령과 규제규칙들을 통합하고 편집한 것이었다.[239]

1992년 법령 제9호의 발령으로 이를 수행하려는 다음과 같은 정부규칙들의 입법이 뒤따랐다.[240] 예방과 제지(deterrence: 입국제지) 절차에 관한 1994년 정부규칙 제30호(1994년 법령집 제53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령집 제3561호 부록), 외국인 감독(oversight)과 출입국 조치들(measures)에 관한 1994년 정부규칙 제31호(1994년 법령집 제54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령집 제3562호 부록), 비자에 관한 1994년 정부규칙 제32호(1994년 법령집 제55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령집 제3563호 부록), 인도네시아 공화국 여행증서에 관한 1994년 정부규칙 제36호(1994년 법령집 제65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령집 제3572호) 등이 그것이다.

7. 개혁시대

1997년 경제위기로 기나긴 새로운 질서시대가 막을 내렸고 개혁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회 내의 생활수준(living)에 대한 열망, 인권, 법과 정의의 정립, 부패의 척결,

237)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hlm 10
238)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39)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240) http://www.imigrasi.go.id/index.php/profil/sejarah, (검색일: 2017.5.31)

민주화, 좋은 정부, 투명성과 책임 등에 대한 강력한 합의(약속, commitment) 요구가 지방자치의 가속화 요구까지 포함하여 계속 메아리쳤다.[241]

1992년 법령 제9호 수행에 따른 종전의 출입국 기능 패러다임이 글로벌 자유시장 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다 강조했으나 보안이나 법집행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면, 이 시대의 시작은 보안과 법집행 기능들에 균형을 맞추어야 했던 것이다. 국내외의 문제들과 진행 상황들(developments)에 직면하여, 개혁시대의 출입국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해 왔다.[242]

가. 법령과 규칙의 향상

정부는 출입국에 관한 1992년 법령 제9호를 업데이트했다. 이는 예측이 필요한 몇몇 발전책들에 기초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 영토의 지정학적 위치(각 주(州)간 문제들의 복잡성) (2) 출입국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국제협정(agreements)/국제협약(conventions) (3) 국가간 또는 초국가적 범죄들의 증가 (5) 현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특정한 또는 보편적인 출입국 기능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6) 출입국관리부서 하의 기술적 집행단위인 출입국기관 구조(조직)와 출입국 구치시설의 배치 (7) 인도네시아공화국 시민권에 관한 2006년 법령 제12호에 의거한 시민권 체계의 변경 (8) 외국인의 비자 승인에 관한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국가주권 (9) 이 체계의 조화와 표준화 (10) 출입국법 집행이 효과적이지 않아 범죄정책이 인신밀매에 대해 최소형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11) 출입국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게 한 보증인 그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포괄하여 출입국위반범죄 범위의 확대 (12) 출입국 영역의 규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가중 적용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지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243]

---

241) 2017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인도네시아공화국 출입국 집행통제부서의 불법 출입국분야 기관장인 Boedi Prayitno와의 인터뷰 요약.
242) 2017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인도네시아공화국 출입국 집행통제부서의 불법 출입국분야 기관장인 Boedi Prayitno와의 인터뷰 요약.
243) 2017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인도네시아공화국 출입국 집행통제부서의 불법 출입국분야 기관장인 Boedi Prayitno와의 인터뷰 요약.

나. 관리(Management)

2003년까지 관리 분야에서 성취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관리부서에서 시민권자/외국인의 도착과 출발에 대해 처리된 데이터가 인물인식정보수집(ICR: intelligence character recognition) 시스템에 의하여 출입국검색대로 보내짐 (2) 출입국 데이터 저장이 전자파일시스템(electronic filing system)을 통해서 보고됨 (3) 출입국 식별기준들의 일반 패턴의 준비 (4) SIMKIM(인도네시아의 출입국경영정보시스템) 계획화, IMT에의 일반구축의 표준화와 출입국서비스의 표준화 등이다.[244]

다.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지방자치의 이행과 몇몇 국가들(countries)에서 이루어진 발전으로 인하여, 각 지방, 도시, 구역들, 관련국가(the country)에서의 출입국 업무가 지역생활의 역동적 속성들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예견되어 출입국관련부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들을 강구해왔다.

(1) 지역에 출입국사무소의 설립, (2) 몇몇 출입국사무소의 보강, (3) 지능정보수집(intelligence) 부서의 설립, (4) 출입국 구치시설의 설립, (5) 출입국검색대의 추가, (6) Guangzhou-PRC(중국 광저우)에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표부에 비자영사관과 담당관의 설치 등이다.[245]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역과 해외에 분산 배치된 출입국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115개의 출입국사무소, 13개의 출입국 구치시설, 33개의 출입국검색대, 79개의 국경지구대(cross-border post), 19개의 인도네시아 대표부의 출입국 영사관과 담당관[246] 등이 그것이다.

---

244) 2017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인도네시아공화국 출입국 집행통제부서의 불법 출입국분야 기관장인 Boedi Prayitno와의 인터뷰 요약.

245) http://www.imigrasi.go.id/index.php/en/profile/history#%E2%80%A2-era-reformasi, (검색일: 2017.8.30)

246) http://www.imigrasi.go.id/index.php/en/profile/history#%E2%80%A2-era-reformasi, (검색일: 2017.8.30)

라. 시설과 인프라

출입국관리부서에 초점을 맞춘 시설과 인프라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청건물의 물리적 건설, (2) 출입국 구치시설의 물리적 건설, (3) 각 국가들 간의 경계지역에 국경 지구대(post) 시설의 개선, (4) 출입국검사를 관리하는 몇몇 전문수행기관(TPI: technical implementing units supervising immigration inspection) 안에 인물인식정보수집(ICR) 풀세트 조달, (5) 전자파일시스템(electronic filing) 조달, (6) 몇몇 국제공항에 도착/방문 비자에 관한 비자 풀세트 조달, (7) 출입국관리부서에 범죄과학수사(forensic) 실험실의 발전, (8) 모든 국가의 국적여권 상세서를 식별하는 EDISON 기기의 조달, (10) 허위서류를 감지하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장비의 조달, (11) 출입국과 다문화 및 국내(indigenous) 사무에 대한 부서(DIMIA)와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협업으로 국경정보관리시스템과 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 등이다.[247]

마. 출입국 통제(Immigration Control)

개혁시대에 출입국관리부서는 출입국 문제들에 관한 다음과 같이 몇몇 처분들을 해 왔다: (1) 도착 비자면제 규칙(VOA), (2) 중장년층 여행객을 위한 특별비자 규칙(Elderly), (3) APEC 사업여행카드(ABTC) 처분, (4) 외국인들에 대한 감독, 제지, 집행, (5) 스티커 비자, (6) 국내와 국외 모두 출입국 협력, (7) 불법 출입국자 강제추방(국외추방), (8) 이주근로자의 여권위조 사례에 대비한 경우, (9) 예방과 제지, (10) 통관절차사무소(CH: clearance house), 즉 출입국 측면과 정치·사회·경제·문화·치안·국방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어떤 국가에 대한 도착비자를 보증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려고 외국인을 취급하는 기관들을 구성하는 구성원들과의 협력회의 등이다.[248]

---

247) http://www.imigrasi.go.id/index.php/en/profile/history#%E2%80%A2-era-reformasi, (검색일: 2017.8.30)

248) MadeWidnyani,GustiAyu, Eksistensi Area Imigrasi PadaTempatPemeriksaanImigrasiDi Indonesia, Jurnal Magister Hukum Udayana, Vol5 No. 1 Tahun 2016, hlm 104.

제3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주요사유

1.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사유

인도네시아 큰 사전에 의하면 강제추방(국외추방)이란 어떤 사람이 인도정부법(네덜란드 인도정부의 법, Indische Staatsregeling)에 따라 거주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처벌의 의미로 한 국가 밖으로 추방, 축출하는 것을 말한다.[249]

인도네시아로부터의 강제추방(국외추방)의 역사는 네덜란드 식민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강제추방(국외추방) 정책들은 인도네시아에 살기로 동의한 외국인들과 떠나기로 동의한 외국인들과 관련하여 식민정부의 이익에 기초한 것이었다.

식민시대의 강제추방(국외추방) 규칙은 인도정부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은 이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공공질서와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들을 인도정부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총독이 추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제36조와 제37조에서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억류하거나 인도정부의 어떤 지역에 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당국에 다른 권한을 부여[25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정부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서 규정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당국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을 강제추방(국외추방)하는 사유들은 1916년 입국허가결정(Toelatingsbesluit: 입국규정) 제10항 473쪽에 나와 있다. 1916년 입국허가결정 제47호 제10항 단락 만일 어떤 사람이 1916년 제47호 섹션 4 아래서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제4항이나 제9c항 하에서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명백히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다.

공공질서와 안전상 위험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의 입국(도착)이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경우, 그의 성명과 제반사항들에 대해 허위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술을 사용하여 입국카드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251] 등이다.

---

249) Kamus Besar Bahasa Indonesia, Tim Penyusun Kamus Pusat Bahasa, ed. 3, cet. 2, Jakarta, Balai Pustaka, 2002, hlm. 254

250) Sri Setianingshih Suardi, Prosedur Deportasi di Indonesia, Junal Hukum dan Pembangunan Vol. 7 No.5 Tahun 1977, hlm 312

251) Ajat Sudrajad Havid, Tinjauan terhadap Status Kependudukan Orang Asing di Indonesia,

2. 입국허가와 강제추방

입국카드가 총독에 의해 거부되면 축출명령이 인도네시아 정부로터 해당 당사자에게 발부될 것이다. 제4항에서는 앞서 언급한 규칙의 "입국허가 규정"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입국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52]

허위정보가 여권이나 적법증서에 의해 밝혀지거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여행증서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위정보가 주어진 경우, 악의적 행위로 이익을 내거나 간통(간음, fornication)을 한 경우, 외국에서 처벌받을 범죄를 행한 경우로 해당 국가와 범죄인인도협정이 있어서 그 협정에 따라 관련자의 송환을 요청받은 경우, 인도네시아의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 그 자신이나 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생계를 위한 자력이 없음을 표시한 경우, 평화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됨을 보여준 경우 등이 입국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제9c항 단락 (2)에서, 입국허가나 그 갱신을 거부당한 사람, 8일 안에 입국허가 거부나 갱신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에 대한 강제추방(국외추방)이 영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에 나온 사유들에 덧붙여서, 인도네시아에 잠시 정거하는 외국 선박과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체류하는 선박탑승자들(classes)에 있어서, 해당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불법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는 뒤에 남는 선원에 대한 퇴거(Removal)에 관한 총독 일반결정이 1938년에 발효된 이래로 그러했다.[253] 제2항 :

> *제3항 단락 (1)의 명령(ordinance)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는 국가에 남는 선원들에 대한 추방은 선박탑승이나 작업개시하는 때에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안지구든 인도네시아 영토 밖이라면 어디든 간에 내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254]

Skripsi, Jakarta: Akademi Imigrasi, 1976, hlm 20

252) Ajat Sudrajad Havid, Tinjauan terhadap Status Kependudukan Orang Asing di Indonesia, Skripsi, Jakarta: Akademi Imigrasi, 1976, hlm 20

253) Santjaja, *Himpun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tentang Masalah Orang Asing*,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1979, hlm 68.

254) Santjaja, *Himpun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tentang Masalah Orang Asing*,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1979, hlm 68.

위의 설명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가 외국인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255]

첫째, 안전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성 (인도정부법 제35항, 1916년 입국허가결정 제47호 제10항)

둘째, 인도네시아에의 입국(도착)이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경우(1916년 입국허가결정 제47호 제10항)

셋째, 그의 성명과 제반사정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이용하거나 사술을 사용하여 입국허가를 받아낸 경우(1916년 입국허가결정 제47호 제10항)

넷째, 해당 선박에서 뒤에 남은 선원(뒤에 남은 선원의 퇴거명령 제38조 393-394쪽) 등이 강제추방의 사유였다.[256]

3. 국익과 입국허가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즉 주권회복 이후에, 출입국정책은 인도네시아 이익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이 사례에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범람을 규제하는 정책은 1945년 헌법 전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가 흘린 모든 피와 국가 전체를 보호하고 그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 " 국가목적에 따라 조정된다.[257]

Jusuf Adiwinata, S.H.(출입국관리 기관장)가 1952년 Semarang(인도네시아 자바섬 북부 항구도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출입국 정책을 지도하는 것은 국익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출입국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책들은 현재 문호개방정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이익을 가져올 사람들에게만 정부가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여과정책"이다."[258]

인도네시아에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의 목표, 입장, 이익에 실질

255) Santjaja, *Himpun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tentang Masalah Orang Asing*,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1979, hlm 68.
256) Santjaja, *Himpun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tentang Masalah Orang Asing*,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1979, hlm 68.
257) Ajat Sudrajad Havid, *Tinjauan terhadap Status Kependudukan Orang Asing di Indonesia*, Skripsi, Jakarta: Akademi Imigrasi, 1976, hlm 28
258) Ajat Sudrajad Havid, *Tinjauan terhadap Status Kependudukan Orang Asing di Indonesia*, Skripsi, Jakarta: Akademi Imigrasi, 1976, hlm 28

적으로 이로울 외국인들일 뿐이다. 게다가 안전과 공공질서에 입각한 접근법인 것이다.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들은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아니할 사람들로 사회에 있어도 되는 사람들만이다.[259]

4. 평온, 도덕성, 공공복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문외한들, strangers)로 평온, 도덕성, 공공복리에 위험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961년 법령(Act) 제1호로 변경된 해외감독(Overseas Supervision: LN53.64)에 관한 1953년 긴급법령 제9호의 제5항에 마련된 조치(acts)에 따른다.[260]

제5항 단락 (1)에는 "평온, 도덕성, 공공복리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이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규칙들을 무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정 지역에 체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거주민이 될 수 있더라도 인도네시아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다.[261]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1953년 긴급법령 제9호 제5항에 따라서, 평온, 도덕성, 공공복리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 또는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유지되는 규칙들을 무시하는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 강제추방(국외추방)시킬 수 있다. 입국허가결정 제10항 규정과 비교하여, 이 규정은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1953년 긴급법령 제5항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외국인체류자들(resident aliens)을 포함하는 것인데 비해서, 해당 규정에서 언급하듯이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규정하는 것이다.[262]

위의 사유들에 덧붙여서, 외국인거주에 관한 긴급법령(1955년 긴급법령 제9호, 1955년 관보 제33호)에 수록된 규정들 안에 있었는데, 이는 1961년 법령 제1호로

---

259) Ajat Sudrajad Havid, *Tinjauan terhadap Status Kependudukan Orang Asing di Indonesia*, Skripsi, Jakarta: Akademi Imigrasi, 1976, hlm 28

260)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Surat Terkumpul*, Jakarta: Direktorat Imigrasi, 1976, hlm 12

261) Petrus Ndalu, *Pengawasan terhadap Orang Asing yang Bertempat Tinggal di Indonesia*, Jakarta: Lukita, 1980, hlm 23.

262) Petrus Ndalu, *Pengawasan terhadap Orang Asing yang Bertempat Tinggal di Indonesia*, Jakarta: Lukita, 1980, hlm 23.

개정되었다(1961년 관보 제3호 제3항 단락 (4), 영주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 해당 허가를 발행받거나 아니면 허가가 거부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63]

5. 외국인 문제에 대한 평가와 강제추방

새로운 질서 시대동안, 외국인 문제, 특히 중국인 문제에 관한 정부정책의 평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중국인 문제 해결(settlement)을 위한 정책원칙에 관한 내각 상임위원회(Cabinet presidium) 훈령(instruction) 1967년 6월 제37호/U/IM과 제4항에서 언급된 해당훈령은 다음과 언급하고 있다.[264]

> *국헌문란(subversion)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증명된 외국인이거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증명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한 법규정에 입각하여 법적 조치로 형사법적 조치는 물론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추방과 축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265]*

실제로 이 규정은 1953년 긴급법령 제9호(1961년 법령 제1호)에서 언급된 규정들에서 재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또 다른 사유는 차관보(Dirjenim: 인도네시아어) 결정(decree) 071/VI/69에 나오는 7일 무비자 방문을 부인하는 규정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다.[266]

> *7일간의 여행방문 목적으로 온 ASEAN 회원국 국적자(시민권자)에게는 필수적 비자 확보 요건을 면제한다(제1항). 한편(furthermore), 7일의 마감시한을 위반한 사람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추방된다(제5항 단락(1)), 그리고 인도네시아로부터 그의 경비지불(expenditure)은 기다리는 동안에는 해당자는 출입국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다(제5항 단락(2))[267]*

---

263)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Op. Cit, hlm 30-33.
264) Petrus Ndalu, Op. Cit, hlm 24
265) Petrus Ndalu, Op. Cit, hlm 24
266) Soepomo, Sistem Hukum di Indonesia Sebelum Perang Dunia II, Jakarta: Cipta Karya, 1963, hlm 9

원래 출입국관리 장관(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의 결정(decree)이었던 위에서 언급한 규정은 7일 무비자 편의에 따른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해외감독 협조에 관한 1970년 정부규칙 제26호로 개선되었다.[268] 정부규칙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 직원들은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어떤 외부인(aliens)이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혐의가 있다는 사유, 어떤 외국인이 범죄를 범하여 인도네시아 법원에 의해 유죄를 받았음, 어떤 외국인이 허위의 성명, 제반사항, 활동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로의 방문기회를 얻어냈음이 명백한 경우, 어떤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7일의 제한기간을 도과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내용이다.

만일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역출입국 기구에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관련 외국인의 방문허가나 지출경비에 대하여 기각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도록 제기될 것이다. 실제로 1970년 정부규칙 제26호의 제6항 규정은 입국허가결정(1916년 제47호) 제4항에 수록된 규정들을 다시 강조했다. 아세안 무비자 편의제공은 인도네시아(R.I) 출입국관리 장관 결정 Pora 6032/ 12-5/76호에 의해 7일에서 14일로 확대되었다.[269]

6. 선별적 정책원칙과 강제추방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정책은 선별적 정책 원칙을 고수하는데, 즉 인도네시아 입국이 허락된 외국인은 오직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가와 주(州), 국민의 번영을 위한 이익을 제공하는 외국인,[270] 그리고 1945년 헌법과 판차실라(Pancasila : 인도네시아의 건국 5대원칙 : 유일신에 대한 믿음, 인본주의, 인도네시아 통합,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정의)에 입각한 인도네시아 국가와 국민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

267) Soepomo, Sistem Hukum di Indonesia Sebelum Perang Dunia II, Jakarta: Cipta Karya, 1963, hlm 9

268) Soepomo, Sistem Hukum di Indonesia Sebelum Perang Dunia II, Jakarta: Cipta Karya, 1963, hlm 188-189

269) Sri Setianingsih Suardi Prosedur Deportasi di Indonesia, Jurnal Hukum dan Pembangunan Vol. 7 No.5 Tahun 1977, hlm 316

270) 인도네시아는 14,572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이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영토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많은 것이다. 게다가 풍부한 천연자원과 매혹적인 자연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게끔 하는 특별한 유인이 된다.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외국인만이 해당한다.[271]

출입국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인도네시아 영토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적법하고 유효한 여행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를 진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이 법과 국제조약 하에서 달리 결정된 것이 없는 한 적법하고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를 진다.[272]

출입국과 관련하여 201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령 제6호가 입법된 이래, 제75항과 제13항 단락(2) 규정에 좇아서 강제추방(국외추방)되는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날 것이 요구되고, 이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게 되는데, 강제추방(국외추방) 조치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친다는 합리적인 혐의가 있거나 위험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규칙들을 무시하거나 이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본국에서 형 선고의 집행이나 위험을 피해서 도주를 시도해 온 경우[273] 등과 같은 사유이다.*

강제추방(국외추방)은 외국인을 인도네시아 영토 밖으로 축출하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강제추방(국외추방)은 출입국행정조치(Immigration Administrative Action)이다. 출입국행정조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무소가 규정한 행정제재를 의미한다.

7. 강제추방 집행 관련 문제점

강제추방(국외추방)은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거주하며 출입국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강제추방(국외추방)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조치이지만, 그 집행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274]

---

271)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Keimigrasian di Wilayah Perbatasan, Jakarta: Direktorat Lintas Batas dan Kerja Sama Luar Negeri, 2007, hlm 8

272)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Keimigrasian di Wilayah Perbatasan, Jakarta: Direktorat Lintas Batas dan Kerja Sama Luar Negeri, 2007, hlm 10

273) Sihar Sihombing, Op. Cit, hlm 8.

274) The Head of The Illegal Immigrant Section Boedi Prayitno,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여권이 없는 외국국적자로 자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잃어버렸고 해당 본국 대사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사가 그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 각 지방의 출입국 구치소가 없는 경우, 그 밖의 경제적 요소들, 외국국적자가 자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할 돈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하여 본국송환할 예산이 없는 경우, 외교관계가 없는 사항[275] 등의 문제가 있다.

제4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통계와 사례

이 연구보고서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 수행권한을 가진 중심기관인 출입국관리부서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처한 인도네시아 강제추방(국외추방) 통계의 정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강제추방(국외추방)권한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115개 출입국사무소에 퍼져 있다.

115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외국국적자에 대한 강제추방(국외추방) 자료 보고서들은 여전히 전산처리된 것이 아니라 수기로 된 보고서들이다. 그래서 그 정보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는 인도네시아의 출입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고 다른 출입국사무소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수의 외국인 강제추방(국외추방) 사례가 있다고 하겠다.[276]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May 15, 2017.

275) The Head of The Illegal Immigrant Section Boedi Prayitno,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May 15, 2017.

276) The Head of The Illegal Immigrant Section Boedi Prayitno,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May 15, 2017.

1.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강제추방(국외추방) 통계

지난 3년간(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이루어진 외국국적자 강제추방(국외추방)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 2015년 출입국관리부서 외국국적자 강제추방 개요[277]

번호	국적	수
1	2	3
1.	중국	915
2.	아프카니스탄	353
3.	이란	152
4.	이라크	147
5.	대만	136
6.	사우디 아라비아	117
7.	태국	100
8.	인도	82
9.	스리랑카	55
10.	미얀마	49
11.	나이지리아	42
12.	캄보디아	42
13.	팔레스타인	39
14.	파키스탄	38
15.	소말리아	36
16.	대한민국	34
17.	말레이시아	31
18.	예멘	28
19.	미국	24
20.	호주	17
21.	필리핀	17
22.	수단	15
23.	모로코	12
24.	이집트	12
25.	카메룬	12
26.	싱가포르	12
27.	일본	9
28.	네덜란드	8
29.	영국	6

277) 인도네시아출입국관리부서, 출입국·구치·강제추방(국외추방) 하급관리부서

번호	국적	수
1	2	3
30.	라이베리아	6
31.	시리아	6
32.	독일	5
33.	아제르바이잔	5
34.	캐나다	3
35.	시에라리온	3
36.	요르단	3
37.	네팔	2
38.	아랍 에미리트	2
39.	아이보리코스트	2
40.	에티오피아	2
41.	브라질	2
42.	베트남	2
43.	러시아	2
44.	동티모르	2
45.	기니	2
46.	터키	2
47.	아르헨티나	2
48.	가나	2
49.	이탈리아	2
50.	말리	2
51	뉴질랜드	2
52.	스페인	1
53.	프랑스	1
54.	차드	1
55.	체코	1
56.	그리스	1
57.	슬로바키아	1
58.	콩고	1
59.	탄자니아	1
60.	케냐	1
61.	튀니지	1
62.	우크라이나	1
TOTAL		2612

위의 표에 의하면, 2015년에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2612명의 외국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인민공화국은 915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강제추방(국외추방)자를 보인 국가이다. 그리고 강제추방(국외추방)자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스페인, 프랑스, 차드,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콩고, 탄자니아, 케냐, 튀니지, 우크라이나로 단지 1명만이 강제추방(국외추방)되었다. 대한민국은 34명이 강제추방(국외추방)되어 16위에 해당했다. 북한은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된 국민이 하나도 없었다.

〈표 5-2〉 2016년 출입국관리부서 외국국적자 강제추방 개요[278)]

번호	국적	수
1	2	3
1.	아프가니스탄	670
2.	중국	492
3.	이라크	176
4.	소말리아	167
5.	이란	163
6.	대만	135
7.	사우디 아라비아	125
8.	팔레스타인	111
9.	파키스탄	84
10.	인도	84
11.	미얀마	60
12.	수단	56
13.	예멘	49
14.	스리랑카	47
15.	시리아	41
16.	말레이시아	40
17.	나이지리아	36
18.	대한민국	34
19.	네덜란드	23
20.	호주	19
21.	에티오피아	17
22.	필리핀	16
23.	싱가포르	11
24.	방글라데시	11
25.	미국	11
26.	일본	10
27.	쿠웨이트	8
28.	홍콩	7
29.	무국적	6

278)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부서, 출입국·구치·강제추방(국외추방) 하급관리부서

번호	국적	수
1	2	3
30.	콩고	6
31.	우즈베키스탄	5
32.	브라질	5
33.	영국	5
34.	이집트	4
35.	네팔	4
36.	태국	4
37.	시에라리온	4
38.	슬로베니아	4
39.	브루나이	3
40.	캐나다	3
41.	체코	3
42.	에리트레아	3
43.	이탈리아	3
44.	모로코	3
45.	오만	3
46.	프랑스	3
47.	포르투갈	3
48.	우크라이나	3
49.	남아공	2
50.	칠레	2
51	캄보디아	2
52.	독일	2
53.	러시아	2
54.	우간다	2
55.	오스트리아	1
56.	부르키나 파소	1
57.	덴마크	1
58.	기니	1
59.	아일랜드	1
60.	아이슬란드	1
61.	카메룬	1
62.	케냐	1
63.	크로아티아	1
64.	뉴질랜드	1
65.	스페인	1
66.	동티모르	1
67.	아랍에미리트	1
68.	요르단	1
TOTAL		2806

위의 표에 의하면, 2016년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2806명의 외국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한 것을 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670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강제추방(국외추방)자를 보인 국가였다. 그리고 강제추방(국외추방)자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부르키나 파소, 덴마크, 기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카메룬, 케냐,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스페인, 동티모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으로 단지 1명만이 강제추방(국외추방)되었다. 대한민국은 34명이 강제추방(국외추방)되어 18위에 해당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된 국민이 하나도 없었다.[279]

〈표 5-3〉 2017년 1-3월 출입국관리부서 외국국적자 강제추방 개요[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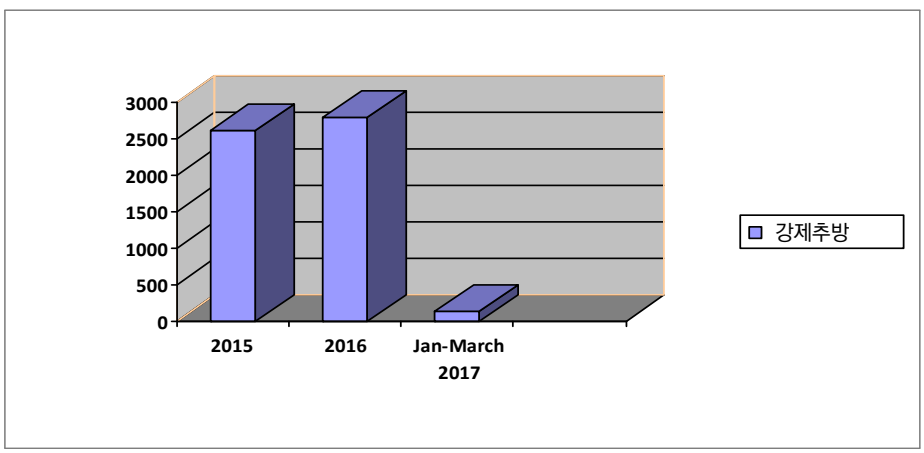
번호	국적	수
1	2	3
1.	중국	22
2.	대만	19
3.	사우디 아라비아	15
4.	이라크	13
5.	인도	10
6.	나이지리아	8
7.	이란	6
8.	아프가니스탄	5
9.	소말리아	4
10.	미국	4
11.	예멘	3
12.	필리핀	3
13.	호주	2
14.	말레이시아	2
15.	시에라리온	2
16.	스리랑카	2
17.	네덜란드	1
18.	덴마크	1
19.	기니 비소	1
20.	영국	1
21.	캐나다	1

279)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관련 담당업무자의 비공식적 의견으로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과 관련된 사안과 집계는 별도로 관리하는 듯하다.
280)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부서, 출입국·구치·강제추방(국외추방) 하급관리부서

번호	국적	수
1	2	3
22.	라이베리아	1
23.	리비아	1
24.	이집트	1
25.	프랑스	1
26.	터키	1
TOTAL		130

위의 표에 의하면, 2017년 1-3월까지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130명의 외국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인민공화국이 22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강제추방(국외추방)자를 보인 국가이다. 그리고 강제추방(국외추방)자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네덜란드, 덴마크, 기니_비소, 영국, 캐나다, 라이베리아, 리비아, 이집트, 프랑스, 터키로 단지 1명만 강제추방(국외추방)되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2017년 3월까지 출입국관리부서에 의해 단 1명도 강제추방(국외추방)된 국적자가 없다.

〈표 5-4〉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외국인 강제추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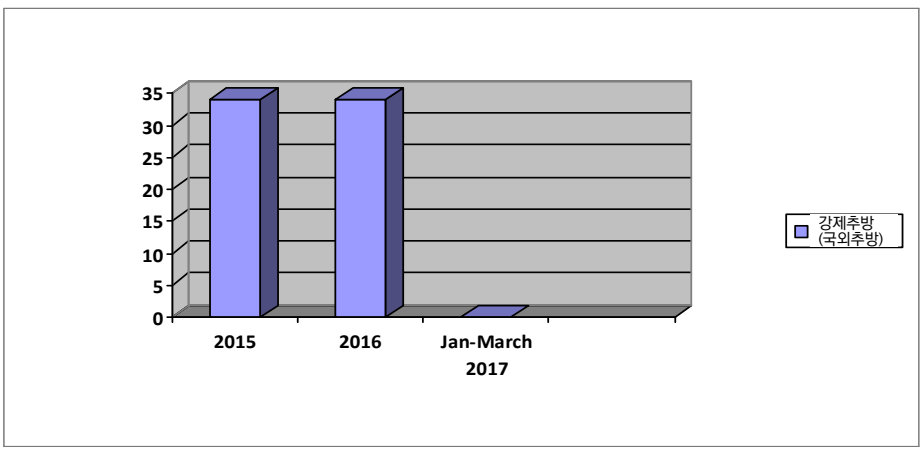
위 그래프에 의하면, 2015년에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한 외국인은 2612명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에는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한 외국인이 2806명에 이르러서 그 막대표가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강제추방(국외추방) 외국국적자의 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단언할 수 없

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한 외국국적자가 1분기에 130명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 강제추방(국외추방) 담당책임자인 Sembayan의 인터뷰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부서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된 외국 국적자에게는 몇몇 이유들이 있다.[281]

첫째, 자원봉사자 귀환(AVR) 사례와 관련하여 국제이주기구(IMO)에서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귀환기금 문제이다. 둘째, 출국한정 허가증(EPO: Exit Permit Only) 관련사례로써 출국한정 허가증(EPO)는 귀환 없는 출국허가로서, TKA(외국인근로자: 인도네시아어)가 관련회사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강제추방(국외추방)됨으로써 그 본래 지위로 복귀하는 경우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셋째, 출입국 관련 2011년 법령 제6호 제75항 단락 (1)과 (2)의 위반 관련사항이다. 넷째, 출입국 관련 2011년 법령 제6호 제78항 단락 (1), (2), (3)의 위반 관련사항이다.

〈표 5-5〉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대한민국 국적자 강제추방 개요



위 그래프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 의하여 강제추방(국외추방)된 대한민국 국적자의 수는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281) The Head of The Illegal Immigrant Section Boedi Prayitno,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July 23, 2017.

나타난다. 2017년 1월-3월까지 기간에는 자카르타 출입국관리부서에 의해 강제추방(국외추방)된 대한민국 국적자는 아무도 없다.

출입국관리부서 강제추방(국외추방) 담당책임자인 Sembayan의 인터뷰에 의하면, 강제추방(국외추방)된 대한민국 국적자의 대부분은 거주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방(국외추방)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범한 거주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2가지와 관련된다.[282]

첫째는 체류기간 도과이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가 특정된 기한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 국적자는 단지 30일 입국허가를 부여받을 뿐인데 출입국에서 부여된 30일 기한을 도과하였기에 체포된 경우이다. 둘째는 불법적 체류허가이다. 외국 국적자가 방문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이후에 비자와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나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이다.

2.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사례와 검토

언론매체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외국국적자 강제추방(국외추방) 사례가 다음과 같이 몇 개 있다.

가. 2013년 3월 한국 강○○ 허위정보 관련 사례

자카르타 남부 출입국사무소는 강○○이라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하였는데, 그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거주허가를 얻어냈다고 주장되었다.[283] 이 사건은 2013년 3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은 남부 자카르타 604 Kebayoran Baru / BRawijaya 타워 아파트로 거주주소를 두었다고 하면서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거주허가의 입국비자 연장을 신청하였다. 2013년 3월 19일에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과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 공무원들이 강○○의 주소인 남부 자카르타 604 Kebayoran Baru / BRawijaya 타워 아파트로 현장검사를 나갔는데, 그가 해당

282)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283) http://www.tribunnews.com/nasional/2013/03/25/imigrasi-jakarta-selatan-deportasi-warga-korsel, (검색일: 2017.4.13)

주소에 체류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2013년 3월 19일, 남부 자카르타 Kebayoran Baru Brawijaya 아파트 관리소에서 강○○이 남부 자카르타 Kebayoran Baru Brawijaya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담긴 2013년 3월 19일부 010/BPAB/Ⅲ/2013번 편지를 발부하였다. 2031년 3월 20일,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는 W7.JE.GR.01.01-03893번 2013년 3월 22일에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통하여 강○○을 소환하였고,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과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이 강○○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284]

이 조사에서 강○○은 인도네시아 입국목적이 골프를 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남부 자카르타 Kebayoran Baru Brawijaya 아파트에 거주 주소를 포함한 관련이유에 대해서 그의 친구인 김모씨의 도움으로 2013년 3월 14-15일간 해당 아파트에 체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강○○은 출입국과 관련하여 2011년 법령 제6호 123항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되는데, 이는 그가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에 입국비자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거주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증명에 필요한 거주주소를 허위로 하여 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것이라는 바였다.

2013년 3월 23일,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는 강○○에 대하여 강제추방(국외추방) 출입국행정처분을 내렸고 제지(deterrence) 목록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285]

나. 2017년 8월 1일 중국 전화사기 사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부유한 사업가와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사이버 전화사기(fraud ring)에 연루되어 체포된 153명의 중국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하였다.

이들이 중국공안들에게 발각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당 범죄조직(syndicate)은 그들 본국의 어떠한 피해자들을 표적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284) http://www.tribunnews.com/nasional/2013/03/25/imigrasi-jakarta-selatan-deportasi-warga-korsel, (검색일: 2017.4.13)

285) http://www.tribunnews.com/nasional/2013/03/25/imigrasi-jakarta-selatan-deportasi-warga-korsel, (검색일: 2017.4.13)

2016년 말 운영을 시작한 이래 약 6조 루피(4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들은 중국당국에 체포되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몇몇 지역에 터전은 잡은 이 조직은 중국경찰이나 법률공무원인 척하고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여 피해자들의 법률 문제들을 해결해준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즉시 현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범죄 네트워크에는 IT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정보를 검색하고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위한 연결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 주말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경찰의 현장급습으로 자카르타, Surabaya(수라바야)지역의 도시, Bali(발리) 섬의 리조트에서 이들 중국 국적자들은 체포되었다. 범인들과 피해자들은 중국인들이었다.

다만 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를 운영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들 중국 범죄용의자들 몇몇이 유효한 여권 없이 인도네시아 군도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중국의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범죄들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발전을 증대하고 있고, 최근 서남아시아 전역을 넘어설 정도로 퍼져가고 있다. 중국은 범죄자들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286]

다. 2017년 5월 일본감독 관광비자 관련 사례

6명의 일본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적합한 비자 없이 불안정한 지역인 Papua(파푸아) 지방에서 다큐멘터리영화를 촬영하려다가 잡힌 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강제추방(국외추방)되었다. 이들은 Nagano 제작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Wamena 읍(town)의 부족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 체포된 이후에 목요일에 이 지역으로부터 비행기로 쫓겨났다. 해당 감독들은 인도네시아에 관광비자만을 가지고 입국했었던 것이다.[287]

---

286)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7/08/01/indonesia-to-deport-153-chinese-for-450-million-scam.html, (검색일: 2017.4.13)

287) "Japanese Documentary Filmmakers Deported from Indonesia", Indosurflife(online), May 17, 2017 http://indosurflife.com/2017/05/japanese-documentary-filmmakers-deported-indonesia/,l(검색일: 2017.8.4)

라. 2017년 3월 디카프리오 관광비자 관련 사례

법인권 장관 소속 출입국관리부서는 헐리웃(Hollywood) 배우 Leonardo DiCaprio(레오나르드 디카프리오)를 인도네시아로부터 강제추방(국외추방)하려 했는데, 이 오스카(Oscar)상 수상자가 비자기간을 위반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렇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일요일에 Leuser산(山)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동안, 아체(Aceh)주(州)의 야자수 농장에 반대하는 보이콧 캠페인을 시도했다. 디카프리오는 관광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의 분란을 초래하고 국익을 해치는" 다른 활동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출입국당국은 강제추방(국외추방)할 예정이었다.[288]

마.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인 체류기간 관련 사례

서부 Kalimantan(칼리만탄) 지방의 Pontianak(폰티아나크)시 1급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사무를 위반한 3명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하려고 했다. 이들 3명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은 출입국사무를 위반했는데, 2명은 폰티아나크 시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서류에 허가된 것보다 오래 체류하여 즉 "체류기간 초과(over stay)"와 관련되었고, 1명은 본국(말레이시아)의 보증(insurance)이 보다 의심스러운 경우이었다.[289]

바. 2016년 9월 호주 대학교수 관광비자 관련 사례

법의학 병리학자이자 Brisbane(브리즈번) Queensland(퀸즈랜드) 대학 부교수인 호주인 전문가인 Beng Beng Ong는 자카르타의 Jessica Kumala Wongso(제시카 쿠마라 옹소)법정에 증거를 제출했다. 해당 증거 제출 후 단 몇 시간 만에, Ong은 관광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는 혐의에 따라 화요일 오전 4시경(호주동부시간(AEST) 기준

---

288) "Indonesian Ministry Threatens to Deport Leonard DiCaprio", The Tempo(online), March 31, 2016 https://en.tempo.co/read/news/2016/03/31/055758597/Indonesian-Ministry-Threatens-to-Deport-Leonardo-DiCaprio,(검색일: 2017.7.3)

289) Selasa,"Imigrasi Pontianak Akan Deportasi Tiga Warga Negara Malaysia", Antaraka (online), October 4,2016 http://www.antarakalbar.com/berita/343749/imigrasi-pontianak-akan-deportasi-tiga- warga-negara-malaysia,(검색일: 2017.7.3)

오전 7시경)에 Soekarno Hatta(수카르노 하타) 공항에서 잡혔다. 이 호주인 전문가는 Wongso 법무팀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는데, 제한된 체류비자를 사용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강제추방(국외추방)되고, 게다가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돌아올 수 없게끔 되었다.[290]

사. 2016년 1월 35인 중국인 거주허가 관련 사례

서부 Nusa Tenggara(누사 텡가라: 인도네시아 소(小) 순다 열도의 인도네시아식 이름) Mataram(마타람)시의 1급 출입국사무소가 동부 Lombok 관할구(regency: 섭정지구)의 발전소에서 체포된 중국인민공화국(PRC) 국적자 35명을 강제추방(국외추방)하는 사건이 있었다. 강제추방(국외추방)하기 전에, 마타람의 1급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은 해당 35명 중국국적자의 서류들을 조사했고, 출입국 위반과 관련하여 다른 조사들도 수행했다. 조사과정이 완료된 후에, 35명의 중국 국적자들은 출입국에 관한 2011년 법령 제06호 제75항에 따른 거주허가 남용(악용, misuse)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강제추방(국외추방) 위험대상이었다.[291]

아. 2016년 11월 인도 갱스터 도피관련 사례

악명 높은 인도 갱스터 1명이 약 3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인도네시아로부터 강제추방(국외추방)되어 인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Chhota Rajan이란 가명으로 더 잘 알려진 Rajendra Nikalje는 인도 중앙수사대 경관팀에 의해서 압송되었다. 본국(인도) 지하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의 하나인 Rajan은 범죄사건들의 주범으로 알려졌고, 인도에서 가장 찾고자 수배 중인 테러리스트 Dawood Ibrahim과 그의 전(前) 연관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92]

---

290) "Australian Expert's passport seized in Indonesia, he gave evidence in cyanide murder case", News.com(online), September 7, 2016 http://www.news.com.au/world/asia/australian-experts-passport-seized-in-indonesia- after-he-gave-evidence-in-cyanide-murder-case/news-story/01e51a08e5b0e2e96b166fbfd3d0f312,(검색일: 2017.7.3)

291) "Imigrasi Mataram deportasi 35 waga Tiongkok", Antartak(online), March 4, 2016 http://www.antaranews.com/berita/550071/imigrasi-mataram-deportasi-35-warga-tiong kok, (검색일: 2017.7.3)

292) Risi Iyengar, "Indian Ganster Chhota Rajan Lands in New Delhi After Indonesia deportation",

자. 2014년 6월 호주 20인 교사 체류허가 관련 사례

학교 내 아동 성폭행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극도로 여론을 들끓고 있던 중에, 가장 최근의 조치로서 호주인 2명을 포함하여 자카르타 국제학교의 20명의 교사들에 대한 인도네시아로부터의 강제추방(국외추방)이 이루어졌다.

학교는 기한부 체재허가증(kitas: 인도네시아어)으로 알려진 체류허가를 교사들에게 잘못 내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책임을 인정하고 출입국관리부서의 전문성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교사들이 사실 체육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수학을 가르쳤다고 말한 것과 같은 간과를 포함하여 이러한 잘못들을 Fairfax는 인정했다. 강제추방(국외추방)은 교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새로 기한부 체재허가증인 Kitas를 신청해야 한다.[293]

차. 2013년 3월 중국 회사원 거주허가 관련 사례

법인권 장관 소속 출입국관리부서는 Zhao Lei라는 중국국적자를 강제추방(국외추방)했다. Zhao Lei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허가를 악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Zhao는 2013년 3월 7일 인도네시아에 왔다.

Zhao는 2C11JD01207-M번 거주허가카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 자오의 인도네시아 체류(existence)는 남부 자카르타 JI Jend Sudirman에 있는 Plaza Asia Office Park Tower에 위치한 PT Bangun Karya Selaras 회사가 보증했고, 이 회사에서 Zhao는 마케팅 자문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2월 20일 출입국사무소는 Zhao를 Kebayoran Baru에 있는 Mighty Minds라는 이름의 유치원에서 발견했다. 당시 Zhao Lei는 이 유치원 교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또한 Zhao Lei가 다른 교사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Time(online), November 15, 2015 http://time.com/4102457/chhota-rajan-delhi-return-indonesia-deported/, (검색일: 2017.7.3)

293) Michael Bachelard, "Teacher deportations yet another overreaction by Indonesian authorities", The Sunday Morning Herald(online), June5, 2014 http://www.smh.com.au/world/teacher-deportations-yet-another-overreaction-by- indonesian-authorities-20140605-zrz7h.html (검색일: 2017.3.3)

출입국관리직원(clerk)은 의심을 들어서 Zhao Lei를 인터뷰하기 위해 동행해 왔다. 그 결과 Zhao가 거주허가를 남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의 행위들 때문에 Zhao는 강제추방(국외추방)이라는 출입국행정처분을 부과받았고 그의 성명은 제지(deterrence) 목록에 기재되었다.[294]

카. 2010년 11월 칠레운동 선수 체류기간 관련 사례

칠레 국적의 운동선수인 Jeremy Espinosa가 체류기간 초과(overstay)로 출입국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PSDS Deli Serdang(북수마트라섬에 위치한 도시 델리 세를당을 연고로 한 축구단)와의 계약이 2010년 중반 만료된 후에 약 1년 정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Jeremy Espinosa가 전날(yesterday)에 외국인선수 자격(requirement)으로 출입국서류를 완성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체류초과 사례가 밝혀졌다. Jeremy Espinoza는 약 1년 정도 체류초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Jeremy는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추방(국외추방)되었다.

타. 2010년 1월 중국인 거주허가 관련 사례

Zhang Renxiang이라는 중국국적자가 거주허가 남용 혐의로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상하이 출신으로 66세인 이 남성은 2008년 이래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8월 28일 이래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그는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오간 것이었다. 또한 그는 (거주 허가) 남용을 저질렀다.

지역보고(community report)를 통해서 Zhang의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해당 보고를 받은 후 즉각 1주일동안 모니터링(감시) 조치가 이루어졌다. Zhang은 남부 자카르타 Puri Denpasar 호텔에 있는 Randu(판야나무) Spa clinic(온천 클리닉)에서 체포되었다.

중간조사로부터 Zhang의 활동사항들이 PT Victus Sucira International(스파치료 관련업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회사)의 마케팅으로 주어진 (거주)허가와 부합하지

294) "Imigrasi Mataram deportasi 35 waga Tiongko", Antarank(online), March 4, 2016 http://www.antaranews.com/berita/550071/imigrasi-jakarta-deportasi-35-warga-china (검색일: 2017.7.3)

않았다. 대신에 Zhang은 중국마사지나 추나 요법 클리닉을 열고 있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Zhang은 항상 그의 요법을 의료행위라고 하였다.

의사처럼 옷을 입고서 Zhang은 이 요법이 마사지가 아닌 것처럼 고객들에게 항상 말했다. 또한 그는 이 클리닉에 행정 및 보조 직원으로 4명의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의 마사지요법 서비스에 책정된 요금은 45분에 1만 루피 정도였다. 그의 이런 행위 때문에, Zhang Renxing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강제추방(국외추방)을 받을 위험에 놓인 것이었다.

이 사례들을 볼 때, 인도네시아로부터 강제추방(국외추방)된 외국국적자들 대부분이 체류허가를 남용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용한 비자와 체류허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그들이 수행한 활동들과는 다른 것들이었다. 아니면, 외국 국적자들은 인도네시아 법령과 규칙들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제추방(국외추방)된 것이었다. 또는 외국국적자들 중 자신의 본국 법을 피해서 도피해 온 사유로 강제추방(국외추방)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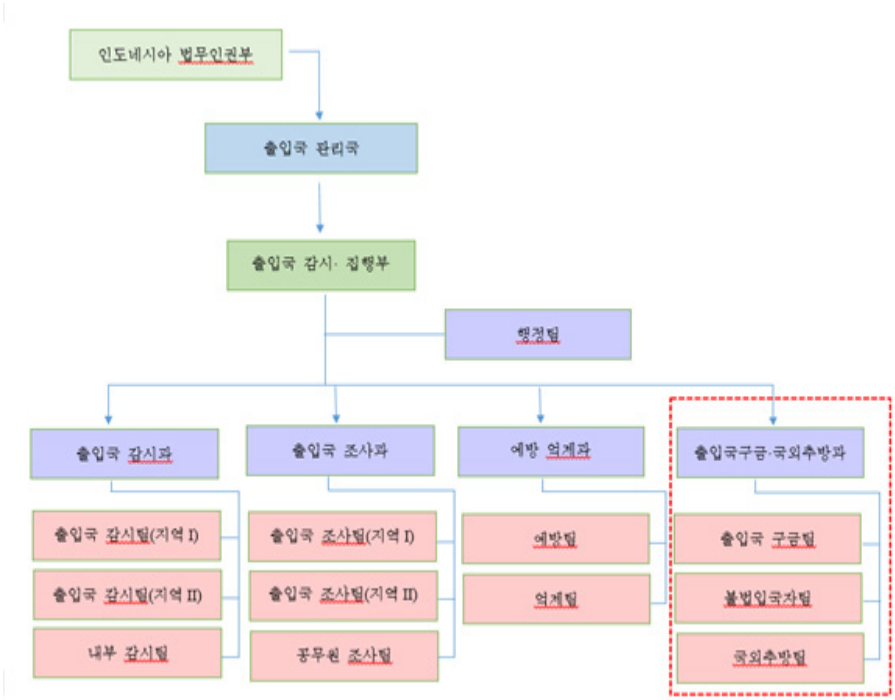
제5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관련기관과 체계

1.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담당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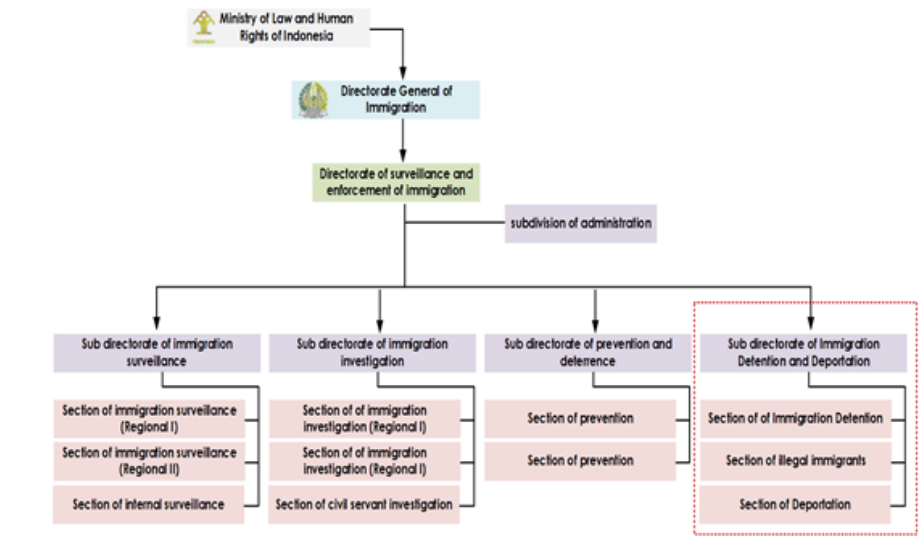
국외추방의 집행은 출입국관리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의 업무이고, 특히 출입국통제부(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Control)의 담당업무이다.

출입국통제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소속이다.

〈표 5-6〉 인도네시아에서의 국외추방에 관한 조직 체계[295)]



295) 인도네시아 국외추방 관련조직 영문명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아래에 출입국관리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이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출입국감시·집행부(Directorate of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of Immigration)와 행정팀(subdivision of administrative)이 있다.

출입국감시과(Sub directorate immigration surveillance)에서는 세부 하부조직으로 출입국감시팀(Section of immigration surveillance) (지역 Ⅰ), 출입국감시팀(Section of immigration surveillance) (지역 Ⅱ), 내부감시팀(Section of internal surveillance)이 있으며, 출입국조사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invstigation)의 하부조직으로 출입국조사팀(Section of immigration invstigation) (지역 Ⅰ), 출입국조사팀(Section of immigration invstigation) (지역 Ⅱ), 공무원조사팀(Section of civil servant invstigation)이 있다.

예방·억제과(Sub directorate of prevention and deterrence)는 예방팀(Section of prevention)과 억제팀(Section of deterrence)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입국구금·국외추방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Detention and Deportation)는 출입국구금팀(Section of immigration Detention)과 불법입국자팀(Section of illegal immigrants) 및 국외추방팀(Section of Depor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법무인권부의 조직

법무인권부는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무인권부는 장관에 의해 통할되고 있다. 법무인권부는 법무와 인권에 관련된 정부적 사안을 관장하고, 주정부 차원의 법무인권업무 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법무인권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사무총국(The Secretariat General)
- 입법총국(Directorate General of Legislation)
- 법집행총국(Directorate General of General Law Administration)
- 교정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orrections)
- 출입국관리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 지적재산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 인권총국(Directorate General of Human Rights)
- 감찰총국(Inspectorate General)
- 법제위원회(National Legal Development Board)
- 법·인권연구개발국(Agenc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aw and Human Rights)
- 정책·안전 전문참모(Expert Staff for Politics and Security)
- 경제 전문참모(Expert Staff for Economics)
- 사회문제 전문참모(Expert Staff for Social Affairs)
- 부서관계 전문참모(Expert Staff for Inter-Agency Relations)
- 관료제개혁보강 전문참모(Expert Staff for Strengthening Bureaucracy Reform)[296]

나. 출입국관리총국

(1) 출입국관리총국의 업무

출입국관리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은 법무인권부장관의 통할 아래 있으며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출입국관리국은 국장(Director General)이 그 부서장이다. 출입국관리국 국장은 법령 규정에 따라 출입국 분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입관리국 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출입국 분야에서의 법 집행과 안전 확보, 출입국서비스와 출입국시설, 출입국업무와 관련된 주간(州間)사항 처리 및 외국과의 협력, 출입국 정보·기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출입국 분야에서의 법 집행과 안전 확보, 출입국서비스와 출입국시설, 출입국업무와 관련된 주간(州間)사항 처리 및 외국과의 협력, 출입국 정보·기술 등에 관한 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한다.[297]

---

296) Article 4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또한, 출입국 분야에서의 법 집행과 안전 확보, 출입국서비스와 출입국시설, 출입국업무와 관련된 주(州)통과사항 처리 및 외국과의 협력, 출입국 정보·기술 등에 관한 기술 지도와 감독, 출입국 분야에서의 법 집행과 안전 확보 관련 권한과 업무[298]를 수행하다.

그 이외에도 출입국서비스와 출입국시설, 출입국업무와 관련된 국가간 사항 처리 및 외국과의 협력, 출입국 정보·기술 등에 관한 감찰, 평가, 보고의 수행, 출입국관리총국의 행정사무 집행, 법무인권부장관이 위임한 기타사무의 집행[299] 등이 그것이다.

(2) 출입국관리총국의 조직

출입국관리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사무과(Secretariat of the Directorate General)
- 출입국교통관리과(Directorate of Immigration Traffic)
- 출입국승인과(Directorate of Immigration Permit)
- 출입국정보과(Directorate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 출입국통제·처분과(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 출입국협력과(Directorate of Immigration Cooperation)
- 출입국정보·기술과(Directorate of Immigration Information System and Technology)[300]

297) Article 549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98) Article 549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99) Article 549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300) Article 550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3) 출입국 관리와 집행부의 조직

출입국 관리와 집행부(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Enforcement)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 출입국관리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 출입국조사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Investigation);
- 예방 및 저지과(Sub Directorate of Prevention and Deterrence);
- 출입국 및 국외추방구금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and Deportation Detention)
- 행정과(Sub Division of Administration);
- 기술과(Functional Position Group)[301]

다. 출입국 및 강제추방구금과

(1) 출입국 및 강제추방 구금과 업무

출입국 및 강제추방 구금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and Deportation Detention)는 출입국, 국외추방구금, 불법출입국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 기관 협조, 절차적 안내, 감독과 평가를 위한 사항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출입국 및 강제추방 구금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and Deportation Detention)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출입국, 국외추방구금, 불법출입국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의 수립, 정책에 대한 기관 협조, 절차적 안내, 감독, 정책 집행 사항 준비이고 둘째, 출입국 관련 외국인의 구금과 국외추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준비[302]가 그것이다.

---

301) Article 632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302) Article 646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 출입국 및 강제추방구금과 조직

출입국 및 국외추방 구금과(Sub Directorate of Immigration and Deportation Detention)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출입국구금부(Immigration Detection Section)로 출입국구금 집행 분야에서 정책의 수립, 정책에 대한 기관 협조, 가이드라인의 준비, 절차적 안내, 감독 사항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불법출입국부(Illegal Immigrants Section)로 불법출입국에 대한 대응, 감시, 통제, 집행 분야에서 정책의 수립, 정책에 대한 기관 협조, 절차적 안내, 감독 사항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국외추방부(Deportation Section):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국외추방 집행 분야에서 정책의 수립, 정책에 대한 기관 협조, 가이드라인의 준비, 절차적 안내, 감독 사항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303]

제6절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련 비자와 체류

인도네시아의 출입국관리 사항들을 출입국관리법은 2011년 제6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출입국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 정책에 근거해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사람들, 국민, 국가에 대해서 호혜적이며,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사람들과 국가나 인도네시아의 정치 이념과 1945년 헌법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도네시아 입국이 허용된다.[304]

1. 출입국관리법 관련 비자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영역에 들어

303) Article 647-648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304) Abdullah Sfahriful, Memperkenalkan Hukum Keimigrasian, Jakarta; Grafika Indonesia, 2005, hlm. 51.

오거나 인도네시아 영역을 나가는 모든 자는 유효한 법적 여행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이 법과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적 비자(visa)를 지녀야 한다.[305]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심사에 있어서 승인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승인을 위해서는 비자의 소지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자와 승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된다.

2.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비자(Visa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비자는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주무관청이나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증서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영역에서의 여행과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비자에는 외교비자(Diplomatic Visa), 서비스비자(Service Visa), 방문비자(Visit Visa), 제한적 체류비자(Limited stay Visa) 등과 같은 유형이 있다.

3. 비자의 거절(Rejection of the Visa)

외무 관리나 출입국관리는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해서 외국인의 비자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입국금지자명단(list of Deterrence)에 포함되어 있는 자, 불법적 여행증명서나 유효하지 않은 여행증명서를 제시한 자, 인도네시아 체류기간 동안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의 생활비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자, (본국으로의) 귀환 티켓 또는 타국으로의 여행을 계속할 티켓을 보유하지 못한 자, 본국으로의 재입국 승인서 또는 타국으로의 여행을 위한 비자를 보유하지 못한 자 등이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기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보건환경이나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 국제적 조직범죄 연관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보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 있는 자, 성매매조직, 장기밀매 연관자, 인신매매 연관자[306]

305) Abdullah Sfahriful, Memperkenalkan Hukum Keimigrasian, Jakarta; Grafika Indonesia, 2005, hlm. 51.

306) Article 109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등에 해당하는 것이 비자 거절사유이다.

4. 비자 사용 기간(Period of Visa Use)

발급된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는 비자는 무효로 판정된다. 이렇게 비자가 무효로 판정되면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외교비자, 서비스비자, 수차례의 여행을 위한 방문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307]

5. 비자 면제 정책(Visa Free Policy)

169개국이 그 국민의 인도네시아 여행 목적의 비자소지의무에서 면제되고 있다. 이것은 2016년 3월 2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Widodo)가 서명한 2016년 대통령령 제21호에 근거한다. 그 이전에는 201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69호에 의하면 45개국이 비자 면제 대상국이었다. 100일이 지난 2015년 9월 18일 대통령령 104호가 발령되었다.

이것에 의하면 비자면제국은 90개국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대통령령 제21호에 의하면 비자면제 대상국 국민이 무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 30일간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을 갱신하거나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할 수 없다.[308]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육상 또는 해상의 124개 출입국심사소를 통해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309]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들은 관광활동, 가족방문, 사회활동, 예술활동, 문화활동, 정부업무, 강연 또는 세미나 참석, 국제전시회 참가, 인도네시아에서 지도부 도는 대표자에 의해 개최된 회의 참가, 타국으로의 여행

---

307) Article 110-111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08) 인도네시아 비자면제국 90개국
http://www.imigrasi.go.id/index.php/en/berita/berita-utama/996-169-negara-resmi-dibebaskan-dari-visa-untuk-kunjungan-ke-indonesia,(검색일: 2017.7.2)

309) 인도네시아 출입국 심사소 124개
http://www.imigrasi.go.id/index.php/en/berita/berita-utama/996-169-negara-resmi-dibebaskan-dari-visa-untuk-kunjungan-ke-indonesia,(검색일: 2017.7.3)

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 무비자에 의해 허용된 30일의 체류기간으로 불충분하다면 정식 비자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체류 허가(Stay Permit)

인도네시아 영역에 체류하려는 자는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 허가란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에 의해 외국인에게 발급된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여하한 종류의 허가를 의미한다. 체류 허가는 수동적 방법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될 수 있다. 체류 허가는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체류 허가에는 외교 체류 허가(Diplomatic Stay Permit), 서비스 체류 허가(Service Stay Permit), 방문 체류 허가(Visit Stay Permit), 제한적 체류 허가(Limited Stay Permit), 영구적 체류 허가(Permanent Stay Permit)[310] 와 같은 유형이 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영역 내에 체류하려는 자는 1개 이상의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대하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허가가 면제된다.

첫째, 수사절차, 기소, 재판 목적으로 구금 중 또는 교도소 수용, 감금유치 중에 유효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둘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소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장기밀매의 희생자로서 인도네시아 영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311]에게는 체류허가가 면제된다.

종국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범죄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인 또는 소송에서 벗어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후에 체류가 허가될 수 있다. 체류 허가는 이전의 체류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체류 불허가가 결정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영역을 떠나야 한다.

---

310) Article 112 Paragragh 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11) Article 115 Paragragh 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7. 체류 허가의 거절=체류 불허(Rejection of Stay Permit)

출입국관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방문 체류 허가, 제한적 체류 허가, 영구적 체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할 수 있다.

입국금지자명단(list of Deterrence)에 포함되어 있는 자, 허위 여행증명서를 지닌 자, 인도네시아의 보건을 위태롭게 할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국제범죄나 국제조직범죄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언동을 한 자, 외국에서 수배자명단에 포함되어 수배중인 자,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반대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관련된 혐의자, 인도네시아공화국에 유해한 정치적인 활동에 관련된 혐의자[312]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류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8. 체류 허가의 취소(Cancellation of Stay Permit)

방문 체류 허가, 제한적 체류 허가, 영구적 체류 허가는 장관이나 출입국관리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가. 방문 체류허가 무효

방문 체류 허가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무효화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해 제시된 인도네시아에 반대하는 범죄적 행위를 한 자, 인도네시아의 안전이나 공중질서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인도네시아 법령을 위반한 자, 방문 체류 허가 신청 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313] 등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문체류허가는 무효화될 수 있다.

---

312) Article 158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13) Article 159 Paragragh 2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나. 제한적 체류허가 무효

제한적 체류 허가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과거의 행위를 고려해서 무효화 조치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에 위반해서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있는 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위험한 행위를 하였거나 위험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 방문 체류 허가 신청 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제재)을 받은 자, 인도네시아 국민과의 법적 혼인을 사유로 제한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혼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관계를 종료한 자[314]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 체류허가는 무효화 될 수 있다.

다. 영구적 체류허가 무효

영구적 체류 허가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과거의 행위를 고려해서 무효화 조치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에 위반해서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있는 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위험한 행위를 하였거나 위험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통합을 해친 자, 취업 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자, 영구적 체류 허가 신청 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제재)을 받은 자, 인도네시아 국민과의 법적 혼인을 사유로 영구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혼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관계를 종료한 자(다만 혼인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315])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구적 체류허가는 무효화 될 수 있다.

---

314) Article 159 Paragragh 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15) Article 159 Paragragh 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제7절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련법상 행정처분과 범죄

1.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의 행정처분(제재)(Immigration Administrative Action)

출입국 행정처분이란(Administrative Action of Immigration)이란 사법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에 의해 부과된 행정제재를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는 인도네시아 영역에서 위험한 활동을 한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존중하거나 준수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공공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 관련 행정제재를 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제재)에는 다음의 유형이 있다. 예방목록 또는 저지목록에의 등재(Inclusion in the list of Prevention or Deterrence), 체류 허가의 제한, 변경, 취소,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서 하나 도는 그 이상의 장소에서의 체류 금지,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서 특정 장소에서 거주할 의무, 비용 부담 부과, 인도네시아 영역에서의 강제추방 등이다.

강제추방과 같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은 본국에서의 형벌 선고와 그 집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취해질 수 있다.[316]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은 비사법적 영역(Non Pro Justitia)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작용으로 보며 따라서 법적인 항소(Appeal)의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이민 행정처분의 반대(Objection to Immigration Administrative Action)나 이의제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2. 출입국관리법상 범죄관련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죄형 규정(Criminal Provision for Indonesia Immigration Law)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개의 죄형 규정이 있다.

---

316) Article 75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가. 인도네시아 입출국 심사

고의로 인도네시아 출입국심사소에서 출입국관리의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인도네시아 영역을 입출국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억 루피아[317]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318]

나. 출입국심사소를 거치지 않은 이송수단의 책임자

출입국심사소를 거치지 않은 이송수단의 책임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319]

고의로 출입국관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객을 입항 또는 출항시키거나 출입국심사소에서의 개인에 대한 착륙 심사를 거치지 않은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320]

부과금(비용)을 면탈한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321]

다. 의무 불이행 외국인(Foreigner Undertake No Obligation)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50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322]

---

317) 인도네시아 1억 루피아=한화 826만원 가량 (2017.11.7.일자 기준환율)
318) Article 113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19) Article 114 Paragraph 1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0) Article 114 Paragraph 2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1) Article 115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2) Article 116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라. 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72조 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의 질문을 받고도 그 숙박시설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500만 루피아(한화 약 2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323]

마. 보증인(Guarantor)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6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고의로 피보증인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피보증인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제공한 보증인은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억 루피아(한화 약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4]

바. 여행증명서 미소지(No Legal Travel Document)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8조에 따라 법적으로 유서도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5] 여행증명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그러한 여행증명서를 사용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6]

사. 사람 밀송(Human Smuggling)

영리를 목적으로 법적 권한 없이 또는 법적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위증명서

323) Article 117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4) Article 118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5) Article 119 Paragraph 1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6) Article 119 Paragraph 2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를 사용하거나 또는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출입국심사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또는 조직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집단을 이끌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도네시아 영역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키는 행위 또는 인도네시아 영역에 진입할 법적 권한 없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타국으로 이송한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 또는 조직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집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영역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키는 행위 또는 인도네시아 영역에 진입할 법적 권한 없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타국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한 자 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상 15억 루피아 (한화 약 1억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7]

사람 밀송의 범죄행위를 시도한 자도 위의 내용과 유사한 형에 처한다.[328]

아. 법적 비자, 입국 허가, 체류 허가 미소지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을 인도네시아에 입국, 출국, 체류케 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비자나 위조비자 또는 허위나 위조 입국허가서 또는 허위나 위조 체류허가서를 만든 자와 인도네시아 영역에 대한 입국, 출국, 체류를 허위 또는 위조 비자, 입국허가서, 체류허가서를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329]

자. 고의적인 오용과 활동

고의로 특정 체류허가의 목적이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오용이나 활동을 한 외국인과 특정 체류허가의 목적이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오용이나 활동을 할 기회를 외국인에게 요청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330]

---

327) Article 120 Paragraph 1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8) Article 120 Paragraph 2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29) Article 121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0) Article 122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차.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한 부정확한 정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서면이나 허위자료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와 인도네시아 영역에로의 진입, 체류를 위해 고의로 허위 또는 위조된 비자나 체류허가서를 사용한 외국인[331]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카. 불법체류의 지원, 보호 또는 숙소의 제공

외국인에게 아래의 사정이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외국인을 은닉, 보호, 숙소 또는 생계의 제공, 고용기회를 제공한 자는 인도네시아 영역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체류허가기간 만료 후 체류에 대해서는 3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천5백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하는[332]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 특정지역에 대한 무허가 체류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된 지역에 허가 없이 체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333]

파. 인도네시아공화국 불법여행증명서

고의로 허위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 영역을 출입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334]

---

331) Article 123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2) Article 124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3) Article 125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4) Article 126 letter a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또한 인도네시아 영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미 취소되거나 무효화된 타인의 여행증명서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는 사용의 의도로 타인의 여행증명서를 행사한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335]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허위 자료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336]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2개 이상의 유사한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그것이 모두 유효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337] 그 이외에도 자기 또는 타인이 사용할 의도로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여행증명서를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338]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 허위의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 소지

자기 또는 타인이 사용할 의도로 고의로, 불법적으로 허위의 또는 위조된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339] 하고 있다.

거. 인도네시아 백지 여행증명서식의 인쇄, 소유, 보유, 영리적 이용

백지 여행증명서식, 백지 출입국증명서식을 고의로, 불법적으로 인쇄, 소유, 보유, 영리적으로 이용한 자와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유효화하기 위한 인장이나 기타 도구를 고의로, 불법적으로 작출, 소유, 보유, 영리적으로 이용한 자[340]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Immigration

335) Article 126 letter b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6) Article 126 letter c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7) Article 126 letter d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8) Article 126 letter e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39) Article 127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너.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의 손괴, 변경, 추가, 삭제

고의로,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손괴, 변경, 추가, 삭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341]

더. 여행증명서의 불법적 통제

타인의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 기타 출입국증명서를 고의로, 불법적으로 관리하며 타인을 통제한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342]

러. 출입국자료의 불법적 소유, 보유, 손괴, 삭제, 변경, 재생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불법적으로 출입국자료를 수동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유, 보유, 손괴, 삭제, 변경, 재생산, 사용하거나 출입국자료에 접근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343]

머. 출입국 공무원의 위법행위

인도네시아 이민법은 역시 출입국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권리 없는 자에게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갱신해 준 출입국공무원 또는 지정공무원은 7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344]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340) Article 128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1) Article 129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2) Article 130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3) Article 131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4) Article 132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b호, 제134조 b호, 제135조를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는 것[345]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67조, 제68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비밀자료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고,[346] 출입국심사소에서 표준적인 출입국절차를 고의로 집행하지 않아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거나, 제16조 제항에 따라 외국인을 출국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347] 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불법적으로 출입국사범 억류소(구금소), 억류실(구금실)의 억류자 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를 집행하지 않아 피억류자가 탈출한 때는 2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며,[348] 고의로, 불법적으로 출입국과 관련 인도네시아공화국의 2011년 제6호 법 제70조에 다른 출입국정보관리체계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6월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349] 하고 있다.

버. 피억류자(피구금자)

피억류자와 관련하여 고의로 무기를 제조, 소유, 사용, 양여한 피억류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고 출입국억류소나 출입국억류실을 탈출한 자는 5년 이하의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350] 하고 있다.

서. 위장혼인(Quasi Marriage)

위장혼인도 금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출입국증명서 또는 시민권의 획

345) Article 133 letter a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6) Article 133 letter b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7) Article 133 letter c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8) Article 133 letter d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49) Article 133 letter e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50) Article 134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득을 목적으로 위장혼인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351] 규정하고 있다.

제8절 인도네시아 영역에서의 출입국 관리통제

인도네시아 영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통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행정적 관리(통제)와 지역관리(통제)가 그것이다.

1. 행정적 관리통제

행정적 통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서 수행된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자료의 수집, 처리, 제시와 관련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서비스, 인도네시아를 입출국하는 외국인의 교통수단, 억류(구금)결정을 받은 외국인, 출입국 결정절차 또는 출입국 집행절차 중에 있는 외국인, 억류기간이 경과한 후에 억류시설 밖에서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억지와 예방에 영향을 줄 외국인명단(블랙리스트)의 편철도 하고 있으며,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352]도 이루어진다.

행정적 관리의 결과는 출입국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처리된 출입국정보를 구성한다. 출입국정보관리체계에 수록된 자료와 정보는 출입국정보나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정부부서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2. 외국인에 대한 지역관리

외국인에 대한 지역 관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행된다.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두와 활동의 관리로 다음을 포함한다.

---

351) Article 135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52) Article 180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외국인의 출두와 함께 외국인의 활동과 소지한 여행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서의 완성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입국 인가의 수행과 출입국관리에 대해 관련기관과 정부기관 사이의 조정의 수행[353]이 그것이다.

지역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와 기타 지정공무원은 감독 출입국관리가 서명한 서면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정 주에서 출입국관리와 기타 지정 공무원은 서면지시서 없이 지역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와 다른 지정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업무를 수행한 때로부터 1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보고해야 한다.

3.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절차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인도네시아 영역을 여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자 신청서의 서류 검토 절차로부터 개시된다. 인도네시아 영역을 입출국하는 외국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출입국심사소와 출입국관리국 국장의 승인에 의해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소 아닌 곳에서 수행된다.

인도네시아 영역에서의 체류 허가를 신청하거나 인도네시아 영역에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행정관리와 지역관리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여행증명서와 민간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외무부와 조정되어야 한다. 외무부는 외교적 체류 허가(Diplomatic Stay Permit)와 서비스 체류 허가(Service Stay Permit)가 승인된 외국인에 대한 자료, 승인된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 외교적 체류 허가나 서비스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거주지(거소), 외국인의 신분(신상), 가족, 민간인 지위(civil status), 직업, 주소의 변화[354] 등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와 정보는 출입국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취합된다.

---

353) Article 181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54) Article 181 Paragraph 2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4.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출입국관리의 직무상 요구에 대해 그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해야 하는 자료에는 성명(Full name), 출생지와 출생일, 성별, 전화번호, 국적, 여권번호[355]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출입국관리의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5. 보증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보증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제한적 체류 허가나 영구적 체류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보증인에 대해서 수행된다. 보증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보증인이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 형태로 수행된다. 이는 법령규정에 부합하는 증서, 외국인의 출두와 활동,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협력장소(domicile of such Corporation), 외국인의 출두와 활동에 대한 보증 의지, 외국인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본국 송환에 대한 보증인의 의지[356] 등과 같은 경우이다.

보증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보증인이 법인(회사)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 형태로 수행된다. 이는 법령규정에 부합하는 증서, 외국인의 출두와 활동에 대한 보증 의지, 외국인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본국 송환에 대한 보증인의 의지[357] 등과 같은 사항이다.

출입국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보증인에 의해 보증된 외국인의 신분, 가족사항의 변경, 보증인에 의해 보증된 외국인의 민간인 지위, 시민권, 직업, 주소의 변경을 그 외국인의 체류지, 직장, 거소지를 관할하는 중앙출입국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공무원에 알리는 것[358]이라고 할 수 있다.

---

355) Article 188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56) Article 190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57) Article 191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58) Article 192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6. 외국인 관리팀(Foreigner Control Team)

인도네시아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정된 출입국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장관은 외국인관리팀을 조직해야 한다. 외국인관리팀은 중앙과 지방 및 그 하위 행정구역에도 둔다. 외국인관리팀은 중앙과 지방 모두 정부기관과 관련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외국인 관리팀은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외국인관리팀과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외국인 관리팀으로 구성되고 지방정부 외국인 관리팀은 상위지방(province level) 수준에서의 외국인관리팀과 하위지방(district/municipality and sub-district) 수준에서의 외국인관리팀[359]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외국인관리팀은 장관령(部令)으로 조직된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외국인관리팀은 장관이나 지정 출입국공무원이 책임자가 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외국인관리팀은 법무인권부의 지역책임자의 령(令)에 의해 조직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외국인관리팀은 법무인권부의 지역책임자, 지구책임자가 그 책임자로 된다.

하위지방 외국인관리팀의 책임자는 각 지역(district/municipality and sub-district)의 출입국관리 책임자이다. 외국인관리팀은 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기관과 관련기관에 조언하고 자문할 의무가 있다. 출입국관리팀은 또한 아래와 같은 합동운영을 요청받았을 때 합동운영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합동운영(Special joint operation)과 일시합동운영(Incidental joint operation)[360]으로 구성된다.

합동운영은 운영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외국인관리팀이 합동운영 중에 외국인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그 범죄사실을 정부기관과 관련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359) Article 196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60) Article 200 paragraf 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제9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절차

국외추방은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이다. 국외추방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단계의 조치이다. 외국인에 대한 국외추방의 집행 단계는 자카르타에 소재한 출입국관리총국(the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의 다음과 같은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1. 정보수집과 소재파악

출입국관리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그 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외국인의 (소재와 활동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부터 획득한다.[361]

가. 당국(Agency) 또는 기업(Company)

이 자료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소통의 정보교환체계의 형태로 두 당사자 사이의 협력의 산물이다.

나. 일반사회(Society)

사회의 각급 공동체로부터의 정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태도나 행동을 관찰·감시함에 있어서 쉽고 효율적인 환경적 범위에서 산출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국은 대중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의 출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361)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다. 미디어

미디어는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 당국의 좋은 도구이다. 미디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들에 대한 기사와 문서들을 담고 있다. 뉴스 형태의 기사와 문서는 재판절차의 진행에 따르는 지역 출입국관리국에 단초를 제공하고, 종국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일련의 대응 뒤에는 외국인의 국외추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라. 진정서와 인터넷

이 자료는 그 진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 당국이 주시해야 한다. 이 자료는 출입국관리 당국이 초기에 제한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실제에 있어서 많은 사례들이 진정서와 인터넷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마. 정보제공자

이 자료는 외국인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출입국관리 당국 밖의 국외자에 의한 서면정보 또는 비서면정보를 의미한다. 출입국관리의 유연한 직무 수행을 위해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자나 외부관련자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2. WASDAKIM

(출입국관리사범)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는 특히 "WASDAKIM" 분야의 공무원들에 의해 출입국관리 당국에 보고될 것이고, 혐의외국인들의 소재가 추적되고 가능한 빠른 조치가 취해진다.

3. 보고와 대응조치

출입국관리 당국이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일반사회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출입국관리총국의 명령에 근거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나 대응조치의 검토가 이뤄진다. 그러한 보고나 검토의 내용에는 (혐의)외국인의 신분, 문제점, 분석, 결론, 제안 등이 포함된다.

4. 소환장과 체포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와 검토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조사나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을 받기 위해 소환장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즉시 체포될 수도 있는데, 대개 즉시 체포되는 외국인은 그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보증인 또는 후원자가 없는 경우이다.

5. 출두와 조사

출입국 심사소의 외국인 소환 요건에 따라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에 출두해서 조사에 응해야 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조사보고서(inspection report: BAP)를 작성해야 하고, 출입국사무소의 의견을 담은 이 공적 보고에 의해 출입국관리총국의 결정에 근거한 출입국상의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6. 범죄여부 결정

출입국사무소의 조사가 진행되고 난 상당 기간 뒤에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출입국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7. 질서위반범과 범죄

출입국 관련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은 그 위반 내용이 단순한 질서위반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게 행정처분이 취해질 것이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절차법에

의거해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8. 형사제재와 관련처분

외국인 출입국사범이 형사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본국으로의 강제추방 절차가 뒤따르고, 그 외국인의 이름은 출입국금지자명단에 기재되며, 추방 후 2년 이내에는 인도네시아 영역에의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붉은 도장(red stamp)이 그의 여권에 찍힌다.

9. 경미한 출입국사범

경미한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출입국금지자명단에는 기재되지 않고, 대신에 그의 여권에 우선(즉시)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해야 되며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푸른 도장(blue mark)이 찍힌다.

제10절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련 행정처분의 이의제기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결정은 그 행정처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방식으로 내려진다.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외국인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받은 장관은 심사를 통해 장관령으로 이의를 기각할 수도 있고 이의를 인용할 수도 있다.

이의에 대한 장관의 명령(장관령)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다. 외국인의 이의 제기로 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의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봉인된 서면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리인에 의해 이의가 신청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신상, 이의 제기의 이유, 처분을

부정하는 반대증거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셋째, 반대증거에는 서신, 저술, 전문가 정보, 성명서, 관련 당사자의 승인(인정) 등이 있다.

넷째, 출입국관리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서면 형식에 의한 이의 제기는 그 행정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인권부장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의 제기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의제기자는 접수증을 받게 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제기기간 3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섯째, 접수된 이의 제기에 대해 출입국관리국 관계 공무원들은 출입국관리국장(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으로 출입국관리에 관한 2011년 제6호 인도네시아공화국법 제25조 b에 따라 (이의 제기가 접수된 대로부터) 8일차에 그 청원의 당부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며, 출입국관리에 관한 2011년 제6호 인도네시아공화국법 제22조 c에 따라 14일차에 그 청원의 당부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한다.

일곱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출입국 관련 당해 행정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이 구류(유치)라면 유치실에 수용하고, 추방이라면 추방을 하게 된다.

여덟째, 이의를 제기받은 출입국관리국장(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은 이의 제기의 이유를 검토·심사한 뒤에 이의 제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법무인권부장관에게 사건서류를 보내야 한다. 법무인권부장관은 출입국관리국장에게서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362]

제11절 인도네시아 출입국사범 구류

1. 인도네시아 출입국사범 구류소

인도네시아의 출입국사범 구류소는 1992년에 시작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362)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출입국관리에 관한 1992년 제9호법 제1조 제15호에 출입국사범에 대한 격리시설은 국외추방(강제추방) 또는 기타 출입국 관련 행정정분을 받게 될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처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출입국사범구류소의 출발점이 된 출입국사범격리소(Immigration Quarantine)가 인정되었다. 출입국사범구치소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2004년 법무인권부장관령에 따라 2004년 3월에 기존의 출입국사범격리소(Immigration Quarantine)는 출입국사범구류소(immigration detention house)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13개의 출입국사범구류소가 산재해 있다.

탄중피낭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Tanjung Pinang), 발릭파판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Balikpapan), 덴파사르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Denpasar). 자카르타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DKI Jakarta), 쿠팡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Kupang), 마카사르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Makassar), 마나도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Manado), 메단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Medan), 페칸바루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Pekanbaru), 폰티아낙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Pontianak), 세마랑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Semarang), 수라바야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Surabaya), 자야푸라 출입국사범구류소(Dentention House in Jayapura) 등이 그것이다.

출입국사범구류소는 국제적 교류의 증가와 인도네시아 출입국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즉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과 인도네시아 국내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해 설립되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고, 외국인 사범구류소는 이러한 변화된 출입국관리정책을 위한 지원시설, 기반시설로서 필요하게 되었다.

출입구사범 구류소는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이 부과된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적 법집행수단이라 할 수 있다.[363] 출입국사범 구류실(Immigration Detention Room)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임시거처로

363) Article 1 Number 33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서 각급 출입국사무소 본부(출입국총국)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364] 수용자는 출입국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을 받고 출입국사범구류소나 출입국사범 구류실에 유치된 외국인을 말한다.[365]

출입국사범 구류소는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인도네시아공화국 수도나 지방, 지역,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수 있다. 출입국사범구류소는 법무인권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출입국사무소의 장에 의해 운영되고 그 지정 해제에 의해 관리권을 잃는다. 출입국사범구류소의 설치는 법무인권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실행된다. 출입국사범구류실은 출입국사무소의 본부의 일부나 출입국검문소에 딸린 일부로서의 특정된 구류실을 의미한다.

2. 승인과 유치기간

출입국공무원은 다음의 외국인을 출입국사범 구류소나 출입국사범 구류실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법적 체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류허가를 소지하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법적 여행증명서 없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인도네시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그 체류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 강제추방(국외추방)의 집행을 기다리는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이 거절되어 인도네시아 영역 밖으로의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국적의 진위가 의심되는 외국인[36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입국사범구류실에의 유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을 초과해서 구류해야 할 외국인은 출입국사범구류소로 이송하게 된다.

출입국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출입국사범 구류소에 유치하기 위해서

364) Article 1 Number 34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65) Article 1 Number 35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66) Article 208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법적 체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류허가를 소지하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법적 여행증명서 없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인도네시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그 체류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 강제추방(국외추방)의 집행을 기다리는 외국인, 출입국사범구류실에서 퇴거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국적의 진위가 의심되는 외국인[367]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즉시이송

출입국구류실의 수용능력 부족하거나 출입국사범 구류소로의 조기수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368] 등과 같은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사범구류실에서 출입국사범구류소로 즉시 이송할 수 있다.

4. 유치명령서

외국인의 출입국사범구류소나 출입국사범구류실에의 유치는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공무원의 서면에 의한 명령으로 집행한다. 유치명령서는 출임국사범구류소나 출입국사범구류실에의 유치 집행을 받는 해당 외국인에 제시되어야 한다.

유치명령서의 사본도 피유치 외국인의 보증인이나 가족 또는 그의 본국 관계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유치명령서에는 구류(유치)에 처하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자료, 유치(구류) 이유, 구류시설의 위치[369]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67) Article 208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68) Article 210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69) Article 212 Paragragh 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5. 다른 장소로 이치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사범구류소나 출입국사범구류실에 유치된 외국인이 질병, 출산 예정, 유아(still children)[370]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절한 장소에 이치시킬 수 있다.

6. 강제추방 구류기간 상한

피구류자(피유치자)가 강제추방이 집행될 때까지 구류(유치)는 집행된다. 강제추방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 10년을 상한으로 집행될 수도 있다.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은 10년의 구류(유치)기간이 경과한 피구류자(피유치자)를 출입국사범구류소에서 내보내어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그 구류소 밖에서 체재하게 할 수 있다.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은 피구류자(피유치자)에 대한 강제추방(국외추방)이 잘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7. 피구류자 이송

피구류자(피유치자)의 이송은 출입국사범구류실에서 출입국사범구류소로의 이송, 출입국사범구류소간 이송, 출입국사범구류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다른 장소에서 출입국사범구류소로의 이동,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371]과 같은 이송사유가 있는 경우에 집행한다.

8. 피구류자 석방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은 출입국사범구류소나

---

370) Article 213 Paragragh 1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71) Article 217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출입국사범구류실에 유치된 피구류자(피유치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 출입국사범구류소나 출입국사범구류실에 유치된 피구류자(피유치자)에 대한 석방은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의 명령으로 집행된다. 피구류자(피유치자)에 대한 석방명령서는 출입국사범구류소나 출입국사범구류실에 유치된 석방 대상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석방명령서의 사본은 피구류자(피유치자)의 보증인, 가족, 기타 본국 관계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피구류자(피유치자)에 대한 석방은 구류(유치)기간의 만료, 피구류자(피유치자)에 대한 강제추방의 집행, 피구류자(피유치자)의 이송, 피구류자(피유치자)의 임시석방[372]과 같은 경우에 집행된다.

9. 피구류자 임시석방

피구류자(피유치자)에 대한 임시석방은 가족피구류자(피유치자), 환자피구류자(피유치자), 출산 예정 피구류자(피유치자)[373]등고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될 수 있다.

가족수용자에 대한 임시석방은 출임국관리국장의 승인을 얻은 출입국사범구류소 본부나 출입국사무소에 본부에 의해 집행된다. 환자수용자나 임부수용자에 대한 임시석방은 출입국사범구류소 본부나 출입국사무소에 본부에 의해 집행된다. 수용자에 대한 임시석방을 집행한 출입국사범구류소 본부나 출입국사무소에 본부는 법무인권부의 지역사무소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구류기간 만료와 외부체류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은 수용자에 대한 구류(유치)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출입국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2011년 제6호법을

372) Article 216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73) Article 218 Paragraph 1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집행하기 위한 인도네시아공화국 2013년 제31호규칙 제214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사범 구류소 밖에 체재도록 허가할 수 있다.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은 수용자의 구류소 외부 체재기간 중에도 그 수용자의 강제추방(국외추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치소 외부에의 체재를 허가받은 수용자는 매월 정기적인 출석(소재), 민간인 신분· 직업·거주지[374]와 같은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위의 보고는 출입국사범구류소 본부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에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출입국사범구류소 관할지역 밖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체재하는 지역의 출입국사범구류소나 출입국관리소에 보고할 수 있다.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은 출입국구류소 외부에의 체재를 허가받은 수용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출입국구류소 외부에의 체재 허가 취소는 6개월을 한도로 한다. 출입국사범구류소 외부에의 체재 허가가 취소된 수용자는 다시 출입국사범구류소에 수용된다.

제12절 인도네시아 입국금지와 제지

1. 입국금지와 제지

제지(deterrence)는 출입국관리의 사유로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인권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국금지요청은 법규에 따라 법무인권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임국금지요청서에는 성명, 성별, 출생지와 출생년도 또는 나이, 제지 사유로 될 사진, 제지 사유, 제지기간[375]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74) Article 235 Paragraph 2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75) Article 235 Paragraph 2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2. 입국금지 제지사유(The Reason of Deterrence)

법무인권부장관은 제지 요청이 법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지는 출입국관리의 사유로 취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상의 제지사유는 국제조직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을 받는 자, 인도네시아 정부에 적대적 의사를 보이거나 인도네시아 국가 또는 국민에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인도네시아의 안전, 공공질서, 도덕, 종교, 인도네시아 국민의 풍습을 해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비자 또는 인도네시아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위조여권을 사용한 자, 인도네시아 영역에서 강제추방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376]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3. 추가적 입국금지 제지사유

출입국관리상의 제지사유에 더해서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를 경유한 인도네시아 외교관계자의 요청, 해당 외국인이 형벌 집행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른 공공기관의 요청, 해당 외국인이 반인도적 범죄나 국제조직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요청[377]과 같은 이유로 제지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출입국관리정보체계 기입

법무인권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첫 번째 제지명령을 내릴 때에 그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제지자(금지자)명단에 성명, 성별, 출생지와 출생일자 또는 나이, 사진[378]과 같은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

376) Article 236 Paragragh 2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77) Article 236 Paragragh 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378) Article 230 Paragraph 2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제지결정을 받을 외국인의 주소(거주지)와 시민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주소와 국적은 그 자의 신상의 일부로 기입된다. 제지목록은 출입국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각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 외교기관,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에 통보된다.

5. 입국금지 제지기간 갱신

출입국관리 당국은 제지대상자의 제지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제지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제지의 갱신을 법무인권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인권부장관은 제지의 갱신을 서면방식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지기간 갱신의 명령은 제지의 집행공무원에게 적어도 그 집행 7일 전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제지기간 갱신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지기간의 만료로 법에 의해 제지에서 벗어나게 된다.[379]

6. 입국금지 제지의 해지(Expiration of Deterrence)

제지는 제지기간의 만료, 법무인권부장관의 제지 취소와 같은 사유로 해지된다. 위의 어느 사유로 제지가 취소될 경우, 제지의 취소는 서면방식에 의한 명령으로 행한다. 제지취소명령은 법무인권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의 명령으로 발급된다.

위의 어느 사유로 제지처분이 해지된 경우에 출입국관리국 담당 공무원은 먼저 그 대상자를 제지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특정 외국인을 제지자 명단에서 삭제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각국 주재 인도네시아 외교기관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야 한다.

379) Article 243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제13절 인도네시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 사례

인터폴의 적색수배자명단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 제지를 받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강제추방처분이 부과된다.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고 모두 인도네시아로부터의 강제추방사유에 해당된다.

첫째, 살인, 잔혹한 강간, 납치, 학대, 인질범죄, 아동범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조직범죄 형태로 범하였거나 한 국가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고 다른 나라로 도주한 경우이다.

둘째, 은행강도, 차량절도, 도난차량 거래,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명서 위조·절도, 예술품절도, 보호동물거래 범죄이다.

셋째,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마약과 무기 거래범죄이다.

넷째, 범죄 목적의 화기(firearms)의 불법거래이다. 인터폴은 화기의 거래와 이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인터폴 불법무기거래체계(Interpol Trafficking Arms System)와 인터폴 불법폭발물사고체계(Interpol Explosive Incident System)라 한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인신매매범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다.

여섯째, 1970년 헤이그협약이나 항행의 안전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이 담고 있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범죄이다.

일곱째, 화폐위조이다. 1923년 이래 인터폴은 화폐위조 방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인터폴은 1929년 화폐위조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덟째, 범죄에서 연유한 자산의 확인, 추적, 몰수. 범죄자산의 이동, 마약밀매, 테러범죄이다. 상업적 범죄는 인터폴의 특별그룹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 하위 부서 Ⅰ은 자금세탁, 체포·압수의 형사절차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협약과 관계되어 있다. 불법적인 자금세탁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월보(monthly bulletins)가 발행되고 있다.

아홉째, 금, 보석 등 귀중품의 불법거래와 그 위조이다. 이는 국제적 협력으로 방지될 수 있다.

열째, 광범위한 경제적 남용범죄로서의 사기는 국제적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주가조작, 허위정보를 이용한 수표 위조, 저작권 침해행위 등이 포함된다.

열한번째, 마약거래이다. 인터폴의 마약거래와 관계 하위부서는 회원국에 마약몰수 사례, 압수된 마약의 유형, 마약이 밀매되는 수법과 통로 등 마약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며, 마약거래자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연구한다.[380]

제14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변호관련

인도네시아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이민행정처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외국인, 18세가 아닌 외국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을 보장하는 고용 회사나 후원자, 거부된 외국인으로부터 인도네사의 변호인은 이민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반대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민 행정처분에 반대를 제기하는 변호인은 외국 대사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추방되는 외국인에 의해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381]

제15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개혁 및 관련 국제협력

1. 인도네시아 강제추방 관련 개혁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에 관한 개혁은 이민법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92년 이민법 제9조(No.9)는 강제추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민에 관한 2011년도 법 제6조(No.6)에서는 강제추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민법 개혁의 근본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382]

---

380) Sardjono, Kerjasama Internasional di Bidang Kepolisian, NCB-Indonesia, Jakarta, 1996, hal. 48

381) Operational Manual of the 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 Number: F-336.IL.02.10 YEAR 1995

382)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첫째, 1992년 이민법 제9조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원칙에 좀 더 부합하는 선별적 정책을 더욱 중요시한 반면, 2011년 이민법 제6조에서는 인권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2011년 이민법 제6조가 선별정책원칙과 인권원칙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83]

둘째, 인도네시아의 비이민 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른 변화는 특히 체류 허가 방식의 변화가 있다. 특정 외국인 거주자의 불명확한 영구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한 기간을 고려함 없이 획득된 영주 자격과 관련된 변화이다.[384]

셋째, 2011년 이민법 제6조에 의거한 선별정책원칙은 1992년 이민법 제9조보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의 거주와 인도네시아 영토로의 출입국 절차와 같은 몇몇 경우에 있어 특히 더 엄격하다. 예를 들어 이민법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이민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각 출입국 심사소에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385]

넷째, 비자 발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1992년 이민법 9조와 비교하여, 2011년 이민법 제6조는 비자신청 거절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을 통해 보다 비자거절을 위해 실질적인 사유를 제공하는 1992년 이민법 제9조와 비교할 때, 2011년 이민법 제6조의 명시적인 비자신청 요건은, 그 신청자의 법적확실성 보장에 더욱 유리하다.[386]

다섯째, 또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특정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보증인을 요하는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치가 2011년 이민법 제6조에 반영되었다. 그 보증인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그의 거주(existence)와 활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고, 시민권, 영주권의 변동사항 및 주소의 이전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2011년 이민법 제6조는 이러한 행정감독 체계에 외국인 광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 이민법 제9조의 경우에는 없던 바이다.[387]

---

383)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84)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85)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86)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여섯째, 2011년 이민법 제6조는 이민신청서 혹은 시민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와 위장결혼(shame marriage)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와 같이 형법의 위반과 이민제도의 오용(misuse of immigration kemudahaan with criminal threat)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388]

일곱째, 2011년 이민법 제6조에서는, 1999년 이민법 제9조에서와 같은 주관적인 보안상의 이유보다 행정 및 형법의 집행을 통한 법의 강제의 측면에 더욱 중심을 두는 안보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국가안전보장에 근거한 이민원칙을 반영한 2011년 이민법 제6조는 1992년 이민법 제9조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지만 행정상의 법적 강제절차 및 이민관련 벌칙규정의 측면에 있어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389]

여덟째, 2011년 이민법 제6조의 선별 정책원칙이 반영된 다른 경우로, 국제범죄나 초국가적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을 넓은 의미의 인도네시아 영토(expanded territory of indonesia)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절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조직범죄 및 초국가적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관심은 범죄적 약물의 위험성에 발맞추어 밀입국 범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390]

아홉째, 무거운 형사제재의 요청, 이민국 공무원 혹은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 위협이 되는 범죄 행위의 증가에 대한 우려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은 물론, 외국인들의 기록의 진실성과 관련 있는 보증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민법의 위반대상이 확대되고 있다.[391]

---

387)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88)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89)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90)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91)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2.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강제추방/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특별한 국제적인 협력은 없다. 그러나 양국 상호간 초국가적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국의 시민권자와 관련된 국제 협약은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초국가적 범죄 및 국제적 범죄와 관련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이민법상 강제추방 관련 내용과 규제 및 상호협력 관련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92]

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2007년 법률번호 42(law number 42 year 2007)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비준하였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두 나라가 은행, 금융 및 기타 다른 범죄와 관련된 범죄자들, 범죄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것에 협조할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또한 다른 범죄인 인도 조약들과는 구별되는 이 조약만의 특징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393]

나. 범죄목록

구체적인 범죄종류별 목록은 없지만,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제2조 제1항에(article 2 paragraph (1))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최소 1년에 해당하는 자유형 혹은 그 이상의 엄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양 당사국의 모두의 법률로서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394]

---

392)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93)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94)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다. 범죄인 인도 청구의 거부

이 조항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4조 제2항(article 4 paragraph (2))에 규정되어 있다.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해당 범죄의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영토 내에서 유무죄가 선고가 있거나 심리절차(조사절차)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되어야 한다. 더하여 범죄인인도 청구가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정치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절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395]

라. 시민권자 스스로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시민권자가 자신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경우에 있어 그 재량권과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나 만일 이러한 요청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유 재량권에 기초하여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396]

마. 이중범죄원칙(Dual Crime Principles) 적용의 예외

이중범죄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자가 세금, 관세, 통화관리 혹은 다른 자금 관련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세금 혹은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또는 청구국의 법과 유사한 세금, 관세 및 환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397]

---

395)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96)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바. 사형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조약에는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거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398]

사. 단순 범죄인 인도(Simple Extradition)

이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인도 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 혹은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인도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경우, 피청구국은 지체없이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인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99]

아. 수감자 송환(Transfer of Prisoners)

수감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수감자가 이미 형선고를 받았고, 적어도 6개월의 형기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허용된다. 수감자 송환에 관한 조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과의 범죄인인도 조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400]

자. 범죄인 인도의 연기

범죄인 인도의 연기와 관련한 조항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범죄인 인도 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범죄인인도가 청구된 범죄이외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 피청구국에서 조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조사절차를 마칠 때까지 또는 그의 재판 일부 혹은 전부가 끝날 때까지 그 인도를

397)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98)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399)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400)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연기할 수 있다.[401]

차. 당사국의 관할(territory)

조약당사국의 관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402]

3.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강제추방과 범죄인 인도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

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요청절차

영미법체계(Anglo-Saxon legal system)를 따르는 국가와 대륙법 체계(Continental European legal system)를 준수하는 국가 간의 차이가 거론되기도 한다. 영미법체계(common law)에 따르면 인도 청구는 반드시 증거(tools evidence)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대륙법체계(civil law)에 따르면 인도를 청구할 때 마다 증거(evidence tools)를 갖출 필요는 없고, 인도청구 된 자의 신원에 대한 설명과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청구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이면 충분하다. 범죄인 인도청구 조건에 있어 이러한 차이는 범죄인 인도의 이행에 관한 문제점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403]

나. 시간 도과의 원칙과 시간 경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lapse of time with the principle of passage of time)

인도네시아의 법률은 시간의 도과(lapse of time)를 수용하는 한편, 시간 경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passage of time)을 고수하는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범죄를 위한 인도청구의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시간은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의 차이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401)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402)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403)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이행에 있어 확실히 장벽일 수 있다.[404]

다. 사법절차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은 국가의 법원 결정과정에 대한 사법적 제약이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범죄인 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국가는 여전히 단시간 안에,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철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405]

라. 이민법에 대한 무지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의 이민규제들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여전히 한국인들에 의한 이민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406]

4.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 관련 제안

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관계 강화의 필요성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역시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좀 통합되거나 긴밀한 지역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가 사이의 외교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양국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양국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한 사법적 협력관계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미래를 포함한 현재부터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

404)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405)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406) The Head of The Deportation Section, Mr. Sembayan, The Directorate of Immigration Control and Action of Republik Indonesia, Personal Interview. Jakarta, August 3, 2017.

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있지만 중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지역적 관계나 범죄지를 달리하면서 발생하는 다국적 초국가적 범죄의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원활한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시아의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다 국가가 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양국의 이민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화의 필요성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국의 이민법에 대한 소개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국은 각국의 이민법에 대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각 국에 각각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당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과 규범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제6장

시사점과 과제

김경찬(Kim, Kyoung Chan)

제6장

시사점과 과제

제1절 중국 강제추방 관련 시사점

중국은 이민과 통합된 중국이민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국적법,[407]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중국공민출입경관리법, 호적등기조례, 외국인 중국 영주 심사관리방안 등 여러 관련 법률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통합이민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과 건의가 제기[408]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강제추방은 반간첩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 중국치안관리처벌법, 중국국경외 비정부단체의 국경내 활동관리법, 측량법 등 행정법에서의 규정과 함께 형법상 범죄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과 형법상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중국의 강제추방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행정적 강제성격과 형법상 형벌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행정법상 강제추방은 행정법상 규정위반으로 범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고 형법상 형벌적 강제추방은 범죄와 관련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형법상 강제추방은 예를 들면 국가안전에 피해를 입히거나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국민의 민주권리를 침해하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강탈죄, 상해죄, 월경죄, 절도죄, 여성 또는 아동의 유괴죄, 공공질서 문란죄, 사기죄, 개인정보 불법취득죄 등과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강제추방의 담당기관으로 행정법상 출입경관리법과 치안관리처벌법, 중국국경외의 비정부 단체 경내활동 관리법, 중국측량법의 경우 대부분 공안이 담당하고

407) https://wenku.baidu.com/view/638fcb7aa26925c52cc5bf32.html (검색일:2017.11.1.)
408) https://wenku.baidu.com/view/d9b5bfef58fb770bf68a55c3.html (검색일:2017.11.1.)

있고, 중국 방진·재해경감법의 경우 국무원 지진 사업담당부서로 책임부서를 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방 담당기관으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강제추방의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법상 구제는 행정재심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되며, 형사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진행되고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지방각급인민법원에 제기하고 상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장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을 것이다. 강제추방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방과 관련한 체포와 구속 및 구금과 관련하여서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규정의 일반범죄와 관련한 내용에 따라 체포, 구속, 구금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 및 마카오와의 관계에서도 하나의 국가로 파악하지 않고 출입경의 경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범죄에 대한 규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만과 홍콩 및 마카오 지역으로 추방하더라도 역시 중국 대륙에 근접해 있어 추방의 의미가 없거나 다시금 중국대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입국과 관련하여서 형법상 강제추방을 당한 후 재입국 기간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논의와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을 무국적자로 인식하고 표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추방과 관련한 지정국가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관련 추방자를 가능하다면 북한으로가 아닌 제3국으로의 추방[409] 등을 공동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09) 이와 관련하여서 한국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른바 고문이 가능한 국가나 인권보호가 취약한 국가로의 추방은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ate Moss, Balancing Liberty and Security, (Palgrave macmillan, 2011), 31)

또한 한국인의 범죄인 송환과 관련하여서도 비교적 많은 수의 도피범죄자가 송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범죄인의 범죄수익과 범죄자산의 환수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통합된 중국이민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참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필리핀 강제추방의 시사점

필리핀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한국의 범죄 도피자가 도피하는 국가이며,[410] 도피한 범죄인 중 한국으로 송환되는 범죄인은 중국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411]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점은 범죄 도피자는 범죄 후 도피하는 국가로 필리핀을 선호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찰과 필리핀의 경찰 및 이민국은 비교적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많은 수의 범죄인을 한국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치안 상황이 지역에 따라 양호한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앙헬레스와 같은 우범지역도 있으며 필리핀 경찰이나 이민국이 수많은 외국인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에 한국 경찰은 필리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여 필리핀 경찰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한국 도피범죄자를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와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412]으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재국 내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살인·납치·강도 등) 수사 공조와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주재국 내 한국인 도피사범 송환업무 지원,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및 기타 경찰청 지시사항[413]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이카 등과 협력하여 과학수사, 범죄예방, 사이버 범죄수사, 치안컨설팅 등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414]

410)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411)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412) 경찰청 훈령 제831호 (2017.5.31.)
413)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담당관의 직무)
414) 경찰청 보도자료, 2015.2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이어 베트남에도 2015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였고 한국에도 베트남 데스크를 설치하여[415] 상호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견 협력기관은 국제적 범죄나 도피범죄인 송환 등 관련한 문제에 대응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보교류와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아시아 지역에도 한국과 공동으로 상호 협력기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은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필리핀 이민법에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03년 인신매매금지법, 시민권보유와 회복법, 1950년 외국인 등록법 등 여러 관련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강제추방 당한 사람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이어 미국, 인도, 한국, 대만 등의 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416]

필리핀에서 강제추방당한 한국인과 관련하여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경찰청 인터폴계를 통하여 현황과 사례를 일정부분 파악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체계적인 파악과 현황통계, 사례 검토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인과 관련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하고 검토해 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강제추방 관련 사례는 필리핀 이민국의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검토하였는데, 한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한 범죄로는 주로 살인 및 탈주, 강도상해, 온라인 신용사기, 금융피라미드 사기, 필리핀 이민법 위반, 공공의 안전질서 위반 등이 주요 해당 범죄였고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외에도 밀렵이나 뇌물, 경제범죄로 인하여 강제추방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필리핀 이민국은 처음에 관세청 소속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노동부로 이전하였고, 그 후 현재와 같은 법무부 관할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이민국은 이민국장위원회와 특별청문위원회가 강제추방과 관련한 주요결정을 하며 그 이외에 행정과, 재정

---

415) 경찰청 보도자료, 2015.12.17. 경찰청 베트남 데스크에는 베트남어 경찰관 2명, 베트남 공안부의 코리안 데스크에는 한국어 구사하는 베트남 경찰관 4명 근무

416) Jocelyn R. Uy, "140 illegal aliens deported in 2011 -BI report", Inquirer(online), December 26,2011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ILok-dY-gQsJ:m.inquirer.net/globalnatio

관리과, 이민통제과, 증명 및 감시과, 관리청보체계과, 정보과, 항만운송과, 법무과, 외국인등록과 등으로 세부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 강제추방의 주요사유로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 제37절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사유로는 부도덕한 범죄, 마약금지법 위반, 성매매, 정부나 헌법기관을 무력이나 폭력을 통한 전복 행위와 관련된 경우, 정부반대하거나 불신하고 공무원을 공격 또는 암살과 관련된 행위, 재산의 불법적 파괴 등과 관련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강제추방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약식 추방명령과 자발적 강제추방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입국금지와 관련하여서도 필리핀 이민법 제29절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이 입국당시 합법적으로 입국이 되지 않은 경우 강제추방의 사유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필리핀의 강제추방은 대체적으로 고소나 고발, 예비심문, 특별검사의 사건기록서 발부, 이민국 위원회에 의한 임무명령서 발부를 통한 조사, 체포 또는 구금, 특별청문위원회 결정, 이민국 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강제추방의 이의와 항소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이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 출입국 관리법에도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제추방을 포함한 출입국 관리법이나 이민관련 필요한 규정이나 법률은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치안상황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하는데, 한국 경찰은 범죄인의 송환과 관련하여서 비교적 원활한 업무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필리핀으로 이주하거나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필리핀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 관련 내용을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리핀에서 강제추방 되는 한국인의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관련 현황과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며 관련 문제점들을 소개하여 한국인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리핀의 강제추방 관련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도 일정부분 한국의 강제추방 절차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 이민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통합이민법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의 시사점

중국과 필리핀은 한국의 범죄자가 가장 많이 도피하는 국가이자 도피한 범죄인이 가장 많이 송환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도피하는 범죄인 수가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범죄는 여러 국가에 걸쳐 범죄지를 이동하거나 범죄 거점지역을 바꾸어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아시아 초국가적 범죄의 거점지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417] 그 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의 거점지역 이동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강제추방은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각각 34명 정도이며 그 해당 사유로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는 체류기간 도과와 불법적 체류가 주요 원인으로 방문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비자와 부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개인의 일정이나 비자관련 내용을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자나 체류와 관련한 내용과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 담당기관으로는 법무인권부 소속의 출입국관리총국, 출입국 통제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에서의 형벌 선고와

417) http://kr.people.com.cn/n3/2017/0817/c203281-9256641.html (검색일:2017.11.2.)

그 집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체류하는 경우에도 강제추방이 될 수 있음을 2011년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 제75조에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리법에서 관련 범죄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통제는 행정적 관리와 지역관리의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관리팀을 통한 관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은 처음 정보수집과 소재파악에서부터 시작하여 WASDAKIM 분야의 공무원에 의해 추적되고 출입국 관리 당국에 보고되며 출입국 관리당국은 일정한 검토와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어 필요한 경우 소환장과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출두와 조사가 진행되며 범죄여부와 질서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행정처분이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강제추방 절차도 함께 결정된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에도 강제추방 관련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서 절차적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소결정이 내려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류되거나 강제추방이 진행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제추방은 비사법적 영역으로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며 불복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인터폴 적색수배의 경우 강제추방의 사유로 파악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납치, 학대, 인질, 아동범죄, 은행강도, 차량절도, 신분증명서 위조, 여행증명서 위조, 조직범죄, 테러범죄, 마약, 무기거래, 화기불법거래, 인신매매, 민간항공기 위협범죄, 화폐위조, 범죄수익 및 범죄자산 은닉, 자금세탁 등등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사법당국은 비교적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시아의 범죄가 초국가적 현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다국가간 협력체계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양국가간의 강제추방을 포함한 이민법과 이민규정 및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관련 과제

1. 현황과 사례의 파악과 검토

현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한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파악과 현황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한국 경찰청에서는 인터폴을 통하여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정보교환을 하고 관련 현황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도 외국에서 한국인 관련 강제추방 현황 및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지 강제추방 담당기구와 필요한 업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황과 사례 및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경우, 외국의 강제추방 담당기관이 공표하는 통계나 사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거나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해당 강제추방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제추방을 당하는 한국인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이며 체계적인 정보를 통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거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간 일정한 논의와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강제추방과 공동의 범죄대응

범죄와 관련한 강제추방과 관련한 강제송환은 경찰청 인터폴계에서 주로 관련 현황 파악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한국의 많은 도피범죄자가 도피하는 국가이자 또 가장 많은 도피범죄자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국가이며 범죄인 송환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북한인은 무국적자로 인식되고 불법 외국인으로서 다시금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점[418]은 한국과 다시금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외국인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제3국으로의 추방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18) World Report, Human Right Watch, 2017, p.458

중국의 강제추방은 형법과 그 외 반간첩법, 출입국관리법, 지진방지와 재난경감 관련법, 치안관리처벌법, 측량법 등 개별 행정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로 공안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필리핀은 행정법과 이민법에서 기본적으로 강제추방을 규정하고 있고 필리핀 이민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인도네시아는 역시 이민법에서 강제추방관련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총국과 출입국 통제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국의 법률적 내용이 공통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각국의 법률체계와 담당기관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업무처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앞으로 공동의 논의와 관점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초국가적 범죄 또는 다 국가에 걸친 범죄의 거점지역을 활용되기도 하며 인도네시아는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범죄, 인신매매, 돈세탁, 마약범죄 등 국제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마약범죄, 보이스 피싱범죄[419],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420] 돈세탁 등의 범죄는 손쉽게 근절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의 범죄현상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확대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의 기회와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상대국가가 어떤 국가인가에 따라 국가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논의점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도 글로벌 기업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국가간 협력과 함께 그 국가에 기반하고 있는 국내 또는 국외 산업체 또는 기업체와도 함께 정보공유와 대응의 파트너십을 해당 국가의 정부와 함께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421]

한편 독일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이민자에 대한 지역 경찰의 신속한 파악과 대응이

---

419) 김경찬· 정군남· 김창준· 현송학,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참조

420) 김한균· 고려대학교 사이법센터,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참조

421) Larry Clinton, *Cybersecurity Social Contract,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Commons, A Comprehensive Approach for International Security, Gorgetown University Press*, 2012, p.196

미국이나 영국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422] 국제적인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도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체계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 출입국 관리소 단속요원 또는 이민국 경찰인력으로 적절한지와 관련하여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423][424]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그 외 아시아 지역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은 어느 개별 국가의 노력이나 어느 개별법령의 대응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그 외 아시아의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존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법, 범죄수익 자산몰수법 등은 물론이고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검토와 공동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민법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

중국의 강제추방은 행정법상 강제추방과 형법상 강제추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합된 이민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며, 한국 역시 출입국 관리법과 국적법, 난민법 등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통합된 이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통합된 이민법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국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 이민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필리핀은 일정한 이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강제추방과 관련한 사항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유로 범죄와 관련성이 주로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추방 당하는 한국인은 체류기간도과 또는 방문목적 외의

422) Dita Vogel, William F. McDonald, Bill Jordan, Frank Düvell, Vesela Kovacheva and Bastian Vollmer, Police Cooperation in Internal Enforcement of Immigration Control: Learning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Immigration, Crime and Justice, (JAI Press, 2009), 205-206

423) 출입국 관리소 단속요원이나 이민국 경찰의 인력은 기존 경찰인력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으며 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24) Dita Vogel, William F. McDonald, Bill Jordan, Frank Düvell, Vesela Kovacheva and Bastian Vollmer, Police Cooperation in Internal Enforcement of Immigration Control: Learning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Immigration, Crime and Justice, (JAI Press, 2009), 208

활동 등의 사유로 강제추방이 되기도 한다.

중국은 강제추방 관련 절차가 출입국 관리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형사소송법의 일반내용에 따르고 있으며 한국 역시 관련 절차를 출입국 관리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강제추방 관련 절차를 이민법에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관련 절차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 관리법에 관련 절차를 가능한 상세하게 규정하여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강제추방 관련 변호인의 도움의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지원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으로 여행할 경우에 강제추방과 이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핸드폰 메시지로 긴급한 경우 필요한 연락처가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각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일정한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제추방을 포함한 필요한 각국의 출입국 관련법과 이민법의 핵심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 출입국 관련법, 이민법, 난민법 등과 관련하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아시아 각국이 공동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면 이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기간 미래의 일일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도 일정한 통합된 표준 이민법 내용과 체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통합된 생활권으로 거주와 이전이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결 론

김경찬(Kim, Kyoung Chan)

제1장

결 론

한국은 출입국 관리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범죄대응과 억제에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많으며 범죄수익 환수의 국제협력과 관련한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 간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강제추방이 범죄인 인도의 방식이나 범죄 대응의 대안적 방법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방 관련 사례와 현황이 보여주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강제추방은 범죄인 인도로서의 방식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강제추방 또는 강제퇴거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점도 있고 유사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관련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다양한 행정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거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절차도 외국인의 이민이나 거주 또는 여행과 관련하여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에 중국 역시 통합된 이민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중국의 강제추방 대상자 중에 국적불명의 경우는 대부분 북한인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강제추방이 다시 북한으로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425] 강제추방 대상자의 추방국과 관련한 논의를 중국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강제추방이 각 국가의 주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각 국가 역시 일정한

425) 농르풀망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요청될 뿐만 아니라[426] 지역 국가 간의 공동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이민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강제추방과 관련하여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강제추방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규정은 정부령으로 보완하고 있는데,[427]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인을 강제추방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강제추방이 사실상 범죄인 인도의 보완기능과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물론 왜곡되지 않은[428] 정확한 현황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429]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동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범죄인 인도뿐만 아니라 범죄인 송환을 위한 강제추방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원활한 공동 범죄 대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강제추방 불복절차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은 일반 행정법 절차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 이민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서도 변호인 선임권과 법적 불복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지역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위험에 있는 경우에 강제추방 관련 법적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법률서비스도 현지의

---

426) T. Alexander Aleinik off & Vincent Chetai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T·M· C· Asser Press, 2003), 7

427) 2011년 법률 제6호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103조

428) Daniel Wilsher, Immigration Detention, (Cambridge, 2012), 270

429)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과 강제추방 및 사이버 테러, 테러, 인신매매, 살인, 온라인 사기, 돈세탁, 그 외 이민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가 강제추방을 당하는 외국인이 주로 범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범죄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외국인의 전체적인 현황과 구체적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검토가 각 국가 관련기관이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인터폴에서 범죄를 중심으로 한 강제추방 현황과 범죄인 송환이 검토되고 다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외국인의 강제추방에 대한 현황과 실태가 각 국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안전과 자유보장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왜곡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강제추방관련 구금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나 테러와 관련되어 안전을 위한 경우 등과 달리 그 외의 사유로 구금되는 경우와는 구별되고 차별화 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일정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공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430]

강제추방과 관련한 보석이나 항소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분산된 법체계를 통합하려는 중국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등을 통합하여 통합된 한국의 이민법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강제추방의 현황과 사례, 담당기관과 법제 등을 소개하고 살펴보았으며 강제추방과 출입국 관리법 및 이민법 체계가 국가마다 일부분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국가의 출입국 관리법이나 이민법은 법체계의 차이는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정책적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431]

---

430) Tom K.Wong, Right, Deportation, and Detention in the Age of Immigration Contro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110-111

431) 출입국 관리법과 이민법이 현재의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의 한계와 문제점(많은 시간의 소요, 국가별 사법체계의 상이성, 신속한 범죄인 소재파악의 어려움, 범죄수익의 환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역시 현행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 공동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중국 역시 초국가적 범죄대응이나 부패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법이나 이민법에 대한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75조에는 외국에서 범한 범죄인을 강제송환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하여 강제추방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범죄수익 또는 범죄자산과 관련한 (현재로서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의 법률적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충분한 점이 많겠지만) 특별절차 또는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로 인한 강제추방의 경우 해당 범죄인은 추방되겠지만 범죄수익이나 범죄자산은 그대로 남아 후속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추후에 추방된 범죄인이 다시금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정당한 재산은 또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지만 범죄수익과 범죄자산에 대한 검증절차가 누락될 경우 범죄인의 강제송환은 실질적인 범죄대응에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강제추방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민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관련 정보와 내용이 원활하게 제공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중국과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의 기초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법제 내용을 소개하고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민법과 강제추방 관련 정책이나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정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해당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역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필리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양국간 관련 담당기관의 상호협력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자간의 강제추방에 대한 공동논의의 기회와 시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양 국가간의 강제추방 관련 정보와 내용이 해당 국가가 부끄러워하는 통계와 현황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어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거나 종합적인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고 강제추방 관련 법제의 활용을 위한 공동논의와 인권문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국제 인터폴을 통한 한국 경찰의 국제적 협력과 노력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코리안 데스크를 통한 국가 간 범죄대응의 상호협력은 많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외 국가에도 코리안 데스크의 활용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적용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각 대사관과 영사관은 인터폴과 함께 강제추방 관련 사건과 법률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양국 또는 여러 국가 사이의 담당기관이 함께 공동논의를 통하여 협력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합된 이민법 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공동논의와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비교적 발전된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게 범죄대응과 관련 기술지원과 법률서비스 협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범죄대응과 치안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432] 아시아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이 유럽지역의 셍겐협약(Shengen Agreement)이나 두블린 협약(Dublin Agreement) 또는 유럽의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과 같은 지역간 또는 국가간 이동과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자간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433]으로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아시아 지역 주변 각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상황 및 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논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아시아인의 교류와 이동에 따른 범죄와 관련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는 공동의 협의가 출입국 관리법 및 이민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교류와 이동이 증가하고 생활이 통합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통합이민법 과제는 유럽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장기간의 공동문제 인식과 공동논의가 진행된 후에 점차적으로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아시아 개별 각국에 대한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법과 형법상의 관련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현황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다국적 범죄의 공동대응의 한계 또는 강제추방 필요성, 인권침해 문제의 지속적인 발생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통합적 이민법 논의로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

432) 북유럽 등지의 경찰협력의 성공은 다양한 국가의 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권협력체(Passport Union)를 구성하거나 북유럽 경찰과 세관협력, 북유럽 경찰학교 등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지역의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ren Eline Kleiven, Nordic police cooperation, "Cross-Border Law Enforcement, Routledge, Reg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European", Australian and Asia-Pacific Perspective, (2012): 63-66

433) Nicholas de Genova, The Deportation Regime, (Duke University Press, 2010), 92

참고문헌

1. 중국문헌

赵秉志主编.刑法总论.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6年，第四版

于志. 驱逐出境不属于刑罚[J]. 政治与法律,1985,(03):14.

陈浩铨. 驱逐出境是行政强制措施[J]. 政治与法律,1986,(05):35.

艳蓉. 驱逐出境是一种刑罚方法[J]. 政治与法律,1986,(02):48.

李伟芳 ,王正超. 驱逐出境仅是一种刑罚吗?[J]. 政治与法律,1986,(06):62.

赵永琛. 论驱逐出境——兼论我国驱逐出境制度的完善[J]. 公安大学学报,1991,(04):41-45.

庞仕平. 建议修改和完善我国的驱逐出境制度[J]. 法学杂志,1995,(01):43-44.

胡建淼,林艺聪. 行政驱逐出境若干基本问题探析[J]. 法学,2007,(11):73-79.

杜邈. 驱逐出境刑的司法适用[N]. 检察日报,2008-10-29(003).

林艺聪. 驱逐出境制度:类型、标准与整合[J]. 浙江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2008,(02):100-107.

赵春玮,朱斌斌. 行政性驱逐出境制度研究[J]. 中国青年政治学院学报,2010,(04):139-143

蔡雅奇, 从理论分析与实践适用看驱逐出境, 检察日报2013年 第 2页.

贾佳, 驱逐出境刑的现状及完善. 人民论坛, 2014(26): 第254-256页

周明, 驱逐出境制度辨析. 华北水利水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4(05): 第110-113页

田刚, 我国中国驱逐出境制度的冲突与调适. 人民检察, 2016(17): 第17-21页

2. 해외법령

Administrative Code of the Philippines of 1987

Commonwealth Act No.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Act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1 of 2013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10

Law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Number 6 of 2011 Concerning

Immigration
Letter of Implementation No.20, s 1972
Number 29 of 2015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perations Order No. SBM-20014-016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무원의 해안(海岸)과 국경의 중점 지역 개방과 개발 지원 관련 약간의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支持沿边重点地区开发开放若干政策措施的意见)[국발(国发)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할데 관한 의견(关于依法惩治性侵害未成年人犯罪的意见)
중국공민의 타이완 지역 내왕 관리법(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
중국공민이 사적인 사유로 홍콩지역이나 마카오지역 내왕에 관한 임시적 관리방법(中国公民因私事往来香港地区或者澳门地区的暂行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境外)의 비정부 단체가 중국 국경내 활동에 관한 괸리법(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反间谍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 관련 법(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지진방지와 재난경감 관련법(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
중화인민공화국 방진, 재해경감법(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화인민공화국 측량 관련법(国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 검찰원, 공안부, 안전부, 사법부의 외국관련 사건처리와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外交部、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安全部、司法部关于处理涉外案件若干问题的规定)
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
행정재심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

3. 한국법령

한국 출입국관리법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4. 논문 및 저널

김경찬, “중국의 범죄수익 자산몰수 관련 문제점과 한중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4
김경찬· 정군남· 김창준· 현송학,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김한균· 고려대학교 사이법센터,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이규창, "외국인 추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67쪽
이호진, “필리핀 법제와 문화”, 학영사, 2005, 10쪽
Abdullah Sfahriful, Memperkenalkan Hukum Keimigrasian, Jakarta; Grafika Indonesia, 2005
Ajat Sudrajad Havid, Tinjauan terhadap Status Kependudukan Orang Asing di Indonesia, Skripsi, Jakarta: Akademi Imigrasi, 1976
Ameil J.Joseph, *Deportation and The confluence of violence within Forensic Mental Health and Immigration System*, Palgrave macmillan, 2015
Daniel Wilsher, *Immigration Detention*, Cambridge, 2012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Surat Terkumpul, Jakarta: Direktorat Imigrasi, 1976

Herlin Wijayanti, Hukum Kewarganegaraan dan Keimigrasian, Malang: Bayumedia Publishing, 2011

Dita Vogel, William F. McDonald, Bill Jordan, Frank Düvell, Vesela Kovacheva and Bastian Vollmer, *Police Cooperation in Internal Enforcement of Immigration Control: Learning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Immigration, Crime and Justice*, JAI Press, 2009

Joel P.Trachman, Multilayered Migration Governance, *The promise of partnership, Coherence and the regime complex for international economic migration*, Routledge, 2010

Kamus Besar Bahasa Indonesia, Tim Penyusun Kamus Pusat Bahasa, ed. 3, cet. 2, Jakarta, Balai Pustaka, 2002

Kate Moss, *Banlancing Liberty and Security*, Palgrave macmillan, 2011

Larry Clinton, *Cybersecurity Social Contract,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Commons, A Comprehensive Approach for International Security*,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2

Maren Eline Kleiven, Nordic police cooperation, Cross-Border Law Enforcement, Routledge, Reg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European, *Australian and Asia-Pacific Perspective*, 2012

Michael K. Addo, *The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artinus NIJHOFF, 2010

M.Iman Santoso, Perspektif Imigrasi dalam Pembangunan Ekonomi dan ketahanan Nasional

Moh Arif, Keimigrasian di Indonesia Suatu Pengantar, Pusat Pendidikan dan Latihan Pegawai Departemen Kehakiman, 1997

MadeWidnyani,GustiAyu,EksistensiAreaImigrasiPadaTempatPemeriksaanImigrasi DiIndonesia,Jurnal Magister Hukum Udayana, Vol5 No. 1 Tahun 2016

Nicholas de Genova, *The Deportation Regime*, Duke University Press, 2010

Operational Manual of the 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 Number: F-336.IL.02.10 YEAR 1995

Pembangunan Vol. 7 No.5 Tahun 1977

Petrus Ndalu, Pengawasan terhadap Orang Asing yang Bertempat Tinggal di Indonesia, Jakarta: Lukita, 1980

Ramadhan K.H, Abrar Yusra, Lintas Sejarah Imigrasi Indonesia,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Departemen Hukum dan HAM, RI, 2005

Rob Dickinson, *Examining Critical Perspectives on Human Right*, Cambridge, 2012

Santjaja, Himpun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tentang Masalah Orang Asing, Jakarta: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1979

Sihar Sihombing, Hukum Imigrasi, Bandung: Nuansa Aulia, 2009

Soepomo, Sistem Hukum di Indonesia Sebelum Perang Dunia II, Jakarta: Cipta Karya, 1963

Sri Setianingshih Suardi, Prosedur Deportasi di Indonesia, Junal Hukum dan

T. Alexander Aleinik off & Vincent Chetai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T· M· C· Asser Press, 2003

Tamar Meisels, *The Trouble with Terror*, Cambridge, 2008

Tom K.Wong, Right, *Deportation, and Detention in the Age of Immigration Contro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World Report, Human Right Watch, 2017

경찰청 보도자료 (2017.1.16)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법무부,2010),『외국인 중 국가별 강제퇴거 현황』

출입국 연감 (법무부,2015)

5. 인터넷 기사

손진석, 중국 찾는 관광 1위는 한국, 중국의 수입 1위도 한국,『조선일보』, 2017년 3월5일

중국 쓰촨 경찰, 인도네시아로 넘어간 '보이싱피싱' 범인 58명 검거,『인민망(한국어판)』, 2017년 8월 17일

7월 외국인 관광객 40%급감-- 중국인 관광객 70%'뚝',『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Imigrasi Pontianak Akan Deportasi Tiga Warga Negara Malaysia, *Antartak* (online), October 4, 2016

Imigrasi Mataram deportasi 35 warga Tiongkok, *Antartak*(online), March 4, 2016

Bureau of Immigration, '2700 Aliens barred from Entering RP', July 26, 2017

Bureau of Immigration, ' BI barred 9,000 Aliens from Entering RP in 2016', January 27, 2017

Bureau of Immigration, 'BI clarifies policy on blacklisting of foreign nationals', November 22, 2014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of Indonesia, 169 Negara Resmi Dibebaskan dari Visa untuk Kunjungan ke Indonesia

Ferdinand G. Patinio, ' DI deports Chinese woman fraudster', *Philippines News Agency*(online), June 19 2017

'Indonesian Ministry Threatens to Deport Leonardo DiCaprio', *The Tempo* (online), March 31, 2016

'Japanese Documentary Filmmakers Deported from Indonesia', *Indosurflife* (online), May 17, 2017

Jocelyn R. Uy, '140 illegal aliens deported in 2011 –BI report', *Inquirer*(online), December 26,2011

Juliet C. Revita, 'Chinese fugitive arrested in Davao City', S*unstar Manila*(online), July 15, 2017

Australian Expert's passport seized in Indonesia, he gave evidence in cyanide murder case, *News.com*(online), September 7, 2016

514 foreign pedophiles barred in last two years, *The Manila Times*(online), July 17, 2016

Michale Bachelard, Techer deportations yet another overreaction by Indonesian authorities, *The Sunday Morning Herald*(online), June 5, 2014

Over 2700 aliens barred from entering PH in H1 2017, *Philippine News Agenc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online), July 26, 2017

Rishi Iyengar, Indian Ganster Chhota Rajan Lands in New Delhi After Indonesia Deportation, *Time*(online), November 15, 2015

Ryan General, 'The Philippines is Deporting 1318 illegal Chinese Immigrants', *Nextshark*(online), November 29, 2016

Tetch Torres, 'Philippines deported 603 foreigners in 2012', *Inquirer*(online), January 01, 2013

6. 인터넷 홈페이지

필리핀 이민성 http://www.immigration.gov.ph/ (2017.11.09)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 (2017.11.6)

필리핀 고시·공고 http://www.officialgazette.gov.ph/ (2017.11.9)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law about the deportation of foreign countries : mainly focused on China, Philippine and Indonesia

Kim, Kyoung-cha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legal conditions of the deport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China, Philippine and Indonesia including the cases and the statistics about their removal.

The crimes such as voice phishing, drug, internet frauds and human trafficking in Asian countries have the phenomenons of the systematization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The establishe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criminal extradition have the limitation on the crime occurrence and the prevention because they take long time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d make some other ways to prevent the crimes in Asian countries. The collaborative action about the deportation in immigration law and the Asian convention of the crime prevention can be discussed.

The legal systems to interpret and enforce regulations including the law about the deportation and extradition of these countries are different, It brings the difficulties to deal with the crimes effectively occurred in Asian countries.

Although the economic and human exchange are expanded among Asian countries, the Asian countries have not tried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and the difficulties.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three countries: China, Philippine and Indonesia.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legal research towards other Asian countries like Malaysia, Brunei, Cambodia, Myanmar,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The result of the research need to be shared with legal entities and people as related countries

in Asia.

The untoward circumstances and difficulties about the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ies are from the various languages, the diverse religions and economic differentials. Nevertheless, it is not impossible for Asian countries having the same criminal phenomenon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find the cooperative ways through having the common realization and joint confrontation toward the Asian stability that could not deal with only its own criminal policy.

부록

중국의 강제추방 관련 사례

[사례 1] 김○○ 강도사건[434]

피고인 김○○, 남성, 국정불명. 2004년 3월 29일 그는 강도죄로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에 의해 유기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년 2월 28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그 후, 강도죄(抢劫罪) 혐의로 2013년 12월 18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 30일 구속(逮捕)되었다.

2014년 2월 25일, 연길시 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은 강도죄를 범한 피고인 김○○을 연길시(延吉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에게 공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2013년 12월 18일 14시 30분경, 피고인 김○○은 연길시 (延吉市) 북산가(北山街)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두○○가 운전 중인 택시 뒷좌석에 탄 후, 연길시(延吉市) 하남가(河南街) 창성(昌盛) 주유소 부근에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한 후, 미리 준비해둔 가짜총기와 함께 언어적 위협을 행사하여 두○○의 인민폐 160위엔(元)을 갈취했다.

피해자 두○○는 피고인 김○○의 부주의를 틈타 차에서 뛰쳐나와 차량용 리모콘으로 차를 잠근 뒤, 주변에 있던 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고인 김○○는 차문을 열고 도망쳤으나, 조○○에게 붙잡혔다.

434)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吉林省延吉市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4) 연형초자(延刑初字:延_연길시,刑_형사판결, 初_1심판결, 字_문서번호) 제111호

1심법원은 피고인 김○○가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김○○는 형벌집행 후 5년 이내의 재범이기에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죄와 재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김○○는 법정에서 스스로 죄를 시인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감형했다.

피고인 김○○에 대해《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3조 강도죄, 제65조 재범, 제35조 강제추방 및《중화인민공화국형사형소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95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김○○는 강도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5년, 10,000위엔(元)의 벌금 및 강제추방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김○○ 밀입국·절도사건[435]

피고인 김○○, 남성, 국적불명. 밀입국(偷越国境罪) 및 절도죄(盗窃罪) 혐의로 2013년 9월 11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2013년 10월 11일 구속(逮捕)되었다.

연길시 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은 2014년 1월 21일 피고인 김○○를 밀입국 및 절도죄로 기소했다. 연길시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은 2013년 7월 28일 새벽에 피고인 김○○가 두만강을 건너 불법으로 중국 길림성 화룡시 (中国吉林省和龙市)로 밀입국한 것은 출입국경관리법규(出入国境管理法规)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중한범죄였다.

그 혐의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22조 규정을 위반한 밀입국죄로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피고인 김○○는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2013년 7월 28일부터 2013년 9월 초까지, 화룡시(和龙市) 남평진(南坪镇), 용성진(龙城镇), 팔가자진 (八家子镇) 등지에 있는 빈 집, 상점 및 주택가의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으며, 도난당한 물건의 가치는 인민폐 2,261위엔(元)이며, 도난당한 총액수는 2,924.50위엔(元)이었다. 그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4조 규정을 위반한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법원은 피고인 김○○가 출입국경관리법규(出入国境管理法规)를 위반한 밀입국한 죄로서 매우 중한 범죄이며,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 취득한 범죄로서 이를 밀입국죄와 절도죄로 구분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김○○는 법정에서 스스로 죄를 시인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감형했다. 피고인 김○○에 대해《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22조 밀입국죄, 제264조 절도죄, 제69조 병과형 (数罪

435)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吉林省延吉市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4) 연형초자(延刑初字) 제80호

并罚), 제35조 강제추방 및《중화인민공화국형사형소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95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김○○는 밀입국죄로 유기징역 6개월, 5,000위엔(元)의 벌금과 절도죄로 인한 유기징역 10개월, 2,000위엔(元)의 벌금 및 강제추방과 병과형으로 유기징역 1년 2개월, 벌금 7,000위엔(元) 및 강제추방 판결을 받았다.

[사례 3] 이○○ 밀입국·강도·고의살인·절도·무기밀매· 탄약소지 사건[436]

피고인 이○○, 남성, 국적불명. 고의상해죄로 2013년 7월 12일 형사구류형 (刑事拘留)을 받았으며, 밀입국죄(偷越国境罪), 강도죄(抢劫罪), 고의살인죄 (故意杀人罪)로 2013년 7월 18일 구속 (逮捕)되었다.

연길시 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은 연길시 검찰 형사소송(延检刑诉)(2013) 716호 기소서에 따라, 피고인 이○○는 밀입국죄(越国境罪), 강도죄(抢劫罪), 고의살인죄(故意杀人罪), 절도죄(盗窃罪), 무기밀매 및 탄약죄(走私武器, 弹药罪)로 2013년 11월 28일 기소되었다.

연길시 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은 피고인 이○○가 출입국경관리법규 (出入国境管理法规)를 위반한 밀입국 혐의로 매우 중한범죄이며, 그 혐의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22조 규정을 범한 밀입국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피고인 이○○는 불법·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으나, 의도치 않는 요인으로 범행을 완수하지 못해, 그 혐의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32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고의살인(미수)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피고인 이○○는 공공 및 개인자산을 무장강도 혐의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3조 규정에 따라, 강도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피고인 이○○는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산을 몰래 약탈한 혐의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4조 규정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피고인 이○○는 세관법규를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피해 불법소지, 무기 운반, 국경 외 탄약을 반출한 혐의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밀매 및 탄약소지죄 (走私武器, 弹药罪)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법원에 법에 따라 처벌을 요청했다.

---

436)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吉林省延吉市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3) 연형초자(延刑初字) 제772호

법원은 피고인 이○○가 출입국경관리법규(出入国境管理法规)을 위반하고, 밀입국한 혐의는 매우 중한범죄이며, 불법·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강탈하려 했으나, 의조치 않는 요인들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며,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탕니의 재산을 약탈한 액수 또한 비교적 컸고, 공공 및 개인재산을 약탈한 행위와 세관법규를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피해 불법소지, 무기 운반, 국경 외 탄약 반출한 행위는 밀입국죄, 고의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무기밀매 및 탄약죄로 구성된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기소한 죄명이 성립된다고 했다.

피고인 이○○는 이외의 원인으로 살인이 실현되지 못해 미수에 그쳐 이에 따라 가벼운 처벌 또는 감형할 수 있었다. 피고인 이○○ 법정에서 스스로 죄를 시인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 혹은 감형할 수 있었다. 피고인 이○○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22조 밀입국죄, 제232조 고의살인죄, 제263조 절도죄, 제264조 강도죄, 제151조 무기밀매 및 탄약죄, 제23조 범행미수(犯罪未遂), 제69조 병과주의(数罪并罚) , 제35조 강제추방 및《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95조 규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이○○는 밀입국죄로 유기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위엔(元), 고의살인죄로 유기징역 6년과 강제추방, 절도죄로 유기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위엔(元), 강도죄로 유기징역 10년 6개월 및 벌금 10,000위엔(元), 무기밀매 및 탄약죄로 유기징역 7년 및 벌금 10,000위엔(元), 병과주의로 유기징역 20년, 벌금 26,000위엔(元) 및 강제추방을 판결했다.

[사례 4] 배○○, 한○, 정○○, 송○○ 사기사건[437)]

피고인 배○○, 남성, 길림성연길시(吉林省延吉市) 출생, 현재 길림성연길시 (吉林省延吉市) 거주. 컴퓨터 정보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사기죄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逮捕) 되었다.

피고인 한○, 남성, 길림성용정시(吉林省龙井市) 출생, 현재 길림성용정시 (吉林省龙井市) 거주. 컴퓨터 정보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사기죄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逮捕) 되었다.

피고인 정○○, 한국국적, 호적지 한국 인천광역시, 길림성연길시 (吉林省延吉市) 거주. 컴퓨터 정보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사기죄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逮捕) 되었다.

피고인 송○○, 남성, 한국국적, 호적지 한국 대전광역시, 길림성연길시 (吉林省延吉市) 거주. 컴퓨터 정보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사기죄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逮捕) 되었다.

길림성연길시인민검찰원(吉林省延吉市人民检察院)은 피고인 배○○, 한○, 정○○, 송○○을 사기죄로 2014년 7월 1일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4년 12월 9일 1심판결 후, 연길시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에 항소하였으며, 2015년 5월 12일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은 사실이 명백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했다.

연길시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은 2013년 3월경 피고인 배○○, 한○, 정○○(한국국적, 도주), 尹○○(도주)와 연길시(延吉市) 십여개의 포르노채팅 작업장에서 사

437)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吉林省延吉市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5) 연형초자(延刑初字) 제388호

전계획을 한 후, 한국인 직원을 상대로 "조건부 계약(条件约会)" 방식인 사기행각을 실행하여, 누적된 사기액수가 한화로 5억 9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고발했다.

법원은 배○○, 한○, 정○○, 송○○는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허구사실을 꾸며내 타인의 재산을 취득했으며, 그 액수 또한 거대하여, 그 혐의를 사기죄로 구성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배○○, 한○, 정○○, 송○○은 재판 과정 중 스스로 죄를 시인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감형했다.

피고인 배○○, 한○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6조 사기죄, 제25조 공범죄 규정, 피고인 정○○, 송○○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6조 사기죄, 제25조 공범죄, 제35조 강제추방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배○○은 사기죄로 유기징역 5년과 벌금 20,000위엔(元), 피고인 한○은 사기죄로 유기징역 5년과 벌금 20,000위엔(元), 피고인 정○○은 사기죄로 유기징역 4년과 벌금 10,000위엔(元) 및 강제추방, 피고인 송○○은 사기죄로 유기징역 4년과 벌금 10,000위엔(元) 및 강제추방 판결을 받았다.

[사례 5] 왕○○ 계약사기 사건[438)]

상소인(원심 피고인) 야○○○(정식명칭: 왕○○), 남성, 1982년 5월 25일 출생, 국적 일본, 여권번호: TH02*****, 호적소재지는 일본 신내천현(神奈川县) 상막원시(相漠原市) 중앙수향전명(中央水乡田名) 3-5-32, 현재주거지는 혼춘시(珲春市) 용호1구(龙虎一区) ○동 ○라인 ○○○호. 계약사기죄(合同诈骗罪) 로 2013년 12월 30일 재구류되었으며, 2015년 5월 27일 체포되었다.

연길시인민법원(延吉市人民法院) 1심에서는 원심피고인 야○○○가 계약사기 (合同诈骗罪)를 범했다고 판결되었으며, 2015년 6월 8일 형사판결로서 원심 피고인 야○○○는 이를 불복하고, 법원에 2심을 항소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길림~훈춘시 국가고속철도(吉图珲段高铁) 건설 시, 도문야구유한공사(图们野口石材有限公司)이 들어섰는데, 피고인 야○○○는 왕○○와 중고차 매매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 2대 굴삭기, 1대 지게차(모델명: 대우(大宇)220-5, 류공(柳工) 922D, 류공(柳工) 855) 및 야구석재유한공사 (野口石材有限公司) 명의 재산인 도문시물가국(图们市物价局) 수단을 계약했으며, 도문시인민정부(图们市人民政府)과 보상협의를 체결하고, 보상금 1,267,499.50위엔 (元)을 편취하였다. 종합 평가 후, 계약된 차량과 가격은 총 1,267,499.50위엔 (元)이었다.

2013년 5월 6일, 도문철도건설(图们铁建)은 피고인 야○○○ 사기 사건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도문공안국(图们公安局)에 신고했다. 도문시공안국(图们市公安局)은 피고인 야○○○와 관련된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라고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야○○○은 2013년 5월 8일 자발적으로 도문시(图们市) 경제범죄수사팀 (经侦大队)에 가서 자수하였으며, 게다가 편취한 보상금 1,267,499.50위엔(元)을 이체방식으로 도문시인민정부(图们市人民政府)에게 반환했다.

---

438)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 형사재정서(刑事裁定书) (2015) 연중형종자(延中刑终字:延_연길시, 中_중급인민법원, 刑_형사판결, 终_종심판결, 字_문서번호) 제77호

1심 법원은 피고인 야○○○는 도문시인민정부(图们市人民政府)가가 도문야구 석재유한공사(图们野口石材有限公司)에게 광산을 징벌했을 때, 허위로 준부한 수단을 통해 보상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액수 또한 거대하여, 그 행위는 이미 사기죄에 구성된다. 본 사건 침범된 객체는 공공 및 사유재산의 소유권이며, 경제적 계약관리질서를 침범하지는 않아, 때문에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죄명이 불성립하여, 반드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했다.

피고인 야○○○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은 야○○○가 허위사실을 수단으로 도문시인민정부(图们市人民政府)의 재산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그의 무죄변론은 불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야○○○가 자수한 행위와 더불어 전액을 반환한 점을 보아,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사기죄로 피고인 야○○○는 유기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8,000위엔(元) 및 강제추방 판결을 받았다.

원심 피고인 야○○○의 항소에 따르면, 그 공사를 대표하여 사기계약을 실시한 행위는 계약사기죄에 구성되며, 단위범죄(单位犯罪)에 해당하고, 그 아내 연○○는 허위자료를 준비했다. 사건 후 자수하고, 스스로 죄를 인정한 태도는 양호했으며, 전액을 반환한 점을 미루어 보아, 원심에서의 무거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로 요구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1년 길림~훈춘시 국가고속철도(吉图珲段高铁) 건설 시, 도문야구 유한공사(图们野口石材有限公司)를 고용했으며, 원심 피고인 야○○○는 ○○와 중고차매매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2대 굴삭기, 1대 지게차(모델명: 대우(大宇)220-5, 류공(柳工) 922D, 류공(柳工) 855) 및 야구석재유한공사 (野口石材有限公司) 명의 재산인 도문시물가국(图们市物价局) 수단을 계약했고, 도문시인민정부(图们市人民政府)과 보상협의를 체결하고, 보상금 1,267,499.50위엔(元)을 편취하였다. 종합 평가 후, 계약된 차량과 가격은 총 1,267,499.50위엔(元)이었다.

2013년 5월 6일, 도문철도건설(图们铁建)은 피고인 야○○○ 사기 사건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도문공안국(图们公安局)에 신고했고, 접수를 받은 도문시공안국(图们市公安局)은 야○○○에게 전화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건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야○○○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의 모친 야○○의 권유로 2013년 5월 8일에 편취한 보상금 1,267,499.50위엔(元)을 이체방식으로 도문시인민정부(图们市人民政府)에게 반환했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2심 법원은 원심 판결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죄상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고, 형량이 합당하며, 소송절차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25조 제 1항,《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6조 사기죄, 제67조 자수, 제35조 강제추방 규정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에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사례 6] 장○○, 진○○, 손○○ 밀입국 방조 사건[439)]

피고인 장○○, 여성, 한국 국적, 거주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현재 길림성(吉林省) 연길시(延吉市). 밀입국 조직을 구성한 죄(组织他人偷越国境罪)로 인해, 2013년 3월 9일 형사구류되었으며, 밀입국 방조죄(运送他人偷越国境罪)로 같은해 4월 15일 체포되었다.

피고인 진○○, 남성, 1962년 7월 27일 길림성(吉林省) 화용시(和龙市) 출생, 한족, 호적지 길림성(吉林省) 화용시(和龙市), 현재 거주지 길림성(吉林省) 화용시(和龙市). 강도죄(抢劫罪)로 1994년 12월 1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延边朝鲜族自治州)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의 판결에 따라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5년 6월 24일에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 또한 부녀유괴죄 (拐卖妇女罪)로 2009년 4월 25일 요녕성(辽宁省) 철령시(铁岭市)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기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년 4월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 현재 밀입국 조직 구성죄(组织他人偷越国境罪)로 2013년 3월 9일 형사구류되었으며, 밀입국 방조죄(运送他人偷越国境罪)로 같은 해 4월 15일 체포되었다.

피고인 손○○, 남성, 길림성(吉林省) 화용시(和龙市) 출신, 현재 거주지 길림성(吉林省) 화용시(和龙市). 밀입국 조직 구성죄(组织他人偷越国境罪)로 2013년 3월 9일 형사구류되었으며, 밀입국 방조죄(运送他人偷越国境罪)로 같은 해 4월 15일 재구류(取保候审)되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4일 보석(取保候审) 절차를 재 신청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피고인 장○○는 사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 김○○(남성, 한국 기독교 목사, 도주)의 지시에 따라, 그의 남편 진○○와 함께 2013년 1월~2월간 화용(和龙) 택시기사 피고인 손○○와 안도(安图) 택시기사 장○○(다른 사건으로 처리)를 사주하여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长白县) 국경

439)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吉林省延吉市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3) 연형초자(延刑初字) 제405호

지대를 김○○, 강○○1, 강○○2, 로○○, 장○○(12세 미만), 이○(12세 미만), 최○○(12세 미만), 권○○(12세 미만) 8명의 밀입국 북조선 (朝鲜籍偷渡人员)들을 4차례 왕래 후, 연길시(延吉市) 진학가(进学街) "동방아파트(东方公寓)" C동, 하남가(河南街) "오교화단지(五交化小区)" 2동에 숨기고, 기회를 틈타 청도(青岛) 등지에서 운남국경(云南边境)으로 운송하여 한국으로 밀입국했다.

그 사이, 피고인 장○○는 김○○에게 한화 1,450만원(약 인민폐 70,000위엔(元) 가량)의 밀입국 비용을 받았고, 밀입국 북조선 김○○의 딸 강○○3(한국국적, 행정처벌 및 보호감호 출국처분(监护出境))으로부터 한화 600만원(약 인민폐 30,000위엔(元) 가량)의 밀입국 비용을 받았으며, 그 중 피고인 손○○는 인민폐 30,000위엔(元) 가량을 받고, 장○○과 인민폐 20,000위엔(元) 가량을 배분하였으며, 이외 인민폐 10,000위엔(元)은 장○○를 통해 북조선 불법인(朝鲜不法人员)에게 지불했다.

2013년 3월 8일, 피고인 장○○는 진○○에게 연길(延吉)공항으로 가서 김○○가 파견한 한국 "국민일보" 기자 유○○(보호감호 출국처분(监护出境))를 마중하여, 연길시(延吉市) 진학가(进学街) "동방아파트 (东方公寓)" C동 16층 1호로 데리고 가서 밀입국 북조선(朝鲜籍偷渡人员)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3년 3월 9일, 연변주(延边州) 국경수비 조사관은 연길시(延吉市) 진학가(进学街) "동방아파트(东方公寓)"에서 6명의 밀입국 북조선(朝鲜籍偷渡人员) 들을 체포했으며, 연길시(延吉市) 하남가(河南街) 오교화단지(五交化小区)에서 피고인 장○○, 진○○ 및 2명의 밀입국 북조선(朝鲜籍偷渡人员)을 체포했다. 동일 14시경, 연길시(延吉市) 건공가(建工街) 금강성(金刚城) 목욕탕에서 피고인 손○○를 체포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피고인 장○○, 진○○, 손○○는 국가 유관 출입국경관리제도에 위반하고, 8명의 밀입국자들을 4차례 운송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21조, 제25조 규정에 위반되는 혐의로 밀입국 방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했으며, 피고인 진○○는 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며 법원에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 진○○가 사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 김○○(남성, 한국 기독교 목사, 도주)의 지시에 따라, 그의 남편 진○○와 함께 2013년 1월~2월간 화용(和龙) 택시기사 피고인 손○○와 안도(安图) 택시기사 장○○(다른 사건으로 처리)를 사주하여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长白县) 국경지대를 김○○, 강○○1, 강○○2, 로○○, 장○○(12세 미만), 이○(12세 미만), 최○○(12세 미만), 권○○(12세 미만) 8명의 밀입국 북조선 (朝鲜籍偷渡人员)들을 4차례 왕래 후, 연길시(延吉市) 진학가(进学街) "동방아파트(东方公寓)" C동, 하남가(河南街) "오교화단지(五交化小区)" 2동에 숨기고, 기회를 틈타 청도(青岛) 등지에서 운남국경(云南边境)으로 운송하여 한국으로 밀입국했다.

그 사이, 피고인 장○○는 김○○에게 한화 1,450만원(약 인민폐 70,000위엔(元) 가량)의 밀입국 비용을 받았고, 밀입국 북조선 김○○의 딸 강○○3(한국국적, 행정처벌 및 보호감호 출국처분(监护出境))으로부터 한화 600만원(약 인민폐 30,000위엔(元) 가량)의 밀입국 비용을 받았으며, 그 중 피고인 손○○는 인민폐 30,000위엔(元) 가량을 받고, 장○○과 인민폐 20,000위엔(元) 가량을 배분하였으며, 이외 인민폐 10,000위엔(元)은 장○○를 통해 북조선 불법인(朝鲜不法人员)에게 지불했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장○○, 진○○, 손○○가 국가 유관 출입국경관리제도에 위반하고, 8명의 밀입국자들을 운송한 행위는 밀입국 방조죄에 구성된다고 인정한다. 공소기관(公诉诉机)이 기소한 죄명은 성립한다. 피고인 장○○와 진○○는 피고인 손○○등을 사주하여 8명의 밀입국 북조선(朝鲜籍偷渡人员)들을 4차례 국경을 왕래한 후, 연길시(延吉市)에 은닉하고, 이외 의도치 않은 원인들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3명의 피고인은 4차례 밀입국 북조선(朝鲜籍偷渡人员)들을 운송했으며, 비록 "여러 차례(多次)" 기준에 성립하나, 모두 동일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밀입국 방조를 위해 사전 준비작업과 밀입국을 위한 사람들을 집합시켰으나, 사건 발생 후 실제로 밀입국을 이행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운송을 실시한 범행에 적합

하지 않다고 했다.

공동범죄 중, 피고인 장○○, 진○○는 주요한 역할을 한 주범이며, 피고인 손○○는 부차적인 역할을 행한 종범(从犯)으로 가벼운 처벌 혹은 감형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 진○○는 형벌집행 완료 후 5년 이내 재범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죄 및 재범으로 중한처벌에 해당한다. 피고인 장○○, 진○○, 손○○는 법정에서 스스로 죄를 시인하여, 이를 감안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장○○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21조 제1항 밀입국 방조죄, 제23조 범죄미수, 제25조 공동범죄, 제26조 주범, 제35조 강제추방 및《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95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진○○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21조 제1항 밀입국 방조죄, 제25조 공동범죄, 제23조 범죄미수, 제26조 주범, 제65조 재범 및《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95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손○○은《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21조 제1항 밀입국 방조죄, 제23조 범죄미수, 제25조 공동범죄, 제 27조 종범, 제72조 집행유예, 제73조 집행유예 및《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9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장○○는 밀입국 방조죄로 강제추방한다.
2. 피고인 진○○는 밀입국 방조죄로 유기징역 3년, 벌금 20,000위엔(元) 선고한다.
3. 피고인 손○○는 밀입국 방조죄로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위엔(元) 선고한다.
4. 압수된 사건에 연루한 30,000위엔(元)은 몰수하고, 국고에 상납한다.

[사례 7] 진○○ 마약 불법소지 사건[440]

피고인 진○○, 여성, 베트남의안성(越南义安省) 경류현(琼流县) 경림(琼林) 마을 사람으로, 마약 불법소지죄(非法持有毒品罪)로 2014년 5월 27일에 구류(羁押)되었으며, 같은해 6월 26일 형사구류(刑事拘留)되었으며, 같은 해 7월 9일 체포되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피고인 진○○가 마약 불법소지죄로서 기소하였으며, 공소기관은 2014년 5월 27일 11시경 고주시(高州市) 석고(石鼓) 파출소가 고주시 (高州市) 석고진(石鼓镇) 남화대로(南华大道) 석고호텔 402호실에서 조사 진행 시,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피고인 진○○를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흰색물질의 1통(小包)을 압수했다고 기소했다. 검사결과, 흰색물질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甲基苯丙胺) 성분으로 순 중량 17.25g이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피고인 진○○가 법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마약 메트암페타민(甲基苯丙胺)을 불법소지한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마약 불법소지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했으며,《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172조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며,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진○○는 공소기관의 기소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기에 법원에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27일 11시경, 고주시(高州市) 석고(石鼓) 파출소가 고주시 (高州市) 석고진(石鼓镇) 남화대로(南华大道) 석고호텔 402호실에서 조사 진행 시에 침실에서 흰색물질 1봉지와 3통(小包) 압수하였으며, 검사 결과 작은 봉지에 있던 흰색물질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甲基苯丙胺) 성분으로 순량 17.25g이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

440)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광동성무명시무남구인민법원(广东省茂名市茂南区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5) 무남법형초자(茂南法刑初字) 제149호

의하면, 작은 봉지에 흰색물질은 그 방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 진○○가 소유한 물건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진○○는 형법규정을 위반했으며, 마약을 불법을 소지한 행위는 마약 불법 소지죄에 구성되며, 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단기 징역형(拘役) 또는 강제단속관리(管制)에 해당하며, 벌금은 양형(量刑)의 정도에서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진○○가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죄명에 성립한다고 기소했다.

피고인 진○○는 재판에 회부한 이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진실되게 진술한 점을 보아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양호하여, 법에 따라 정상참작하여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다. 피고인 진○○는 베트남 국적으로 중국국경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아 강제추방이 마땅하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48조, 제35조, 제52조, 제5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진○○는 마약 불법소지죄를 범한 혐의로 유기징역 1년, 벌금 인민폐 3,000위엔(元)과 형이 만료된 이후 강제추방된다.
2. 압수된 마약류 메스암페타민(甲基苯丙胺) 17.25g은 몰수하고, 국고에 상납한다.

[사례 8] 육○ 고의상해죄 사건[441)]

본 사건의 본래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절강성(浙江省) 온주시(温州市) 녹성구 (鹿城区)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이다.

상소인(원심 피고인) LU○○○(중문명: 육○)이다. 본 사건은 2015년 4월 24일 재구류(取保候审)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9일 재차 재구류(取保候审)되었다.

절강성(浙江省) 온주시(温州市) 녹성구(鹿城区)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은 원심 피고인 육○를 고의 상해죄 사건으로 기소하였으며, 2016년 3월 31일 온녹형초자 (温鹿刑初字; 온주시 녹성구 형사 원심판결) 제1683호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 피고인 육○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법에 의하여 합의법정을 구성하였으며, 질문에 따라 피고인의 심문을 거쳐,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분별하여, 심리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미 심리는 종결되었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다. 2015년 4월 21일 23시경, 피고인 육○는 온주시(温州市) 녹성구(鹿城区) 빈강가(滨江街) 도신전원(道新田园) 8단지 8동 24층 통로에서 동네 소소한 일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2401호 피해자 허○와 발생한 폭언과 폭행이 발생했다. 그 사이, 육○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긴 손전등으로 허○를 찌르고 때렸으며, 이로 인해 허○의 두상과 다리에 상해를 가했다. 검사결과, 피해인 허○는 외력에 의해 그의 오른쪽 정강이 하단부분이 골절되었으며, 오른쪽 비골두(腓骨头) 결연골절(撕脱性骨折), 오른쪽 이마 및 두상 후면부 두피혈종, 두상부분에 4.0cm 길이의 상처, 오른쪽 하지에 1.3cm 길이의 상처로 부상 정도는 경상(轻伤) 1급으로 판정했다.

법원은 또한 사건 다음 날 2시경, 피고인 육○의 소변을 추출하여 현장에서 검증 및 재차 검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甲基苯丙胺)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마약을 복용한

441)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절강성온주시인민법원(浙江省温州市中级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6) 절강성03형종 00589호(浙03刑终00589号)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다가 같은 해 4월 22일 온주시공안국 (温州市公安局) 녹성구(鹿城区) 본 행정국(分局处行政)에서 12일 구류(미집행)했다.

원심법원은 고의 상해죄로서 피고인 육○에 대해 강제추방을 선고했다.

원심 피고인 육○ 및 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및 변호했다. 피해자 부상 결과와 상해 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며, 증인 황○와 석○는 육○를 구타했으며, 증언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며, 상술한 증거가 최종 확정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원심은 허○의 하부 부상정도가 육○의 상해 행위와 연계시킬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으며, 공안기관(公安机关)은 사건 처리는 편향성이 존재하고 형평성 결여가 존재하다고 했다.

게다가 육○는 자수하였으며, 평소 태도가 양호하며, 마약과 피해행위가 없었으며, 온주(温州) 본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여러 경제분쟁(经济纠纷)이 있어, 원심판결에서의 강제추방은 부당하다고 원심 번복 혹은 재심을 요청했다.

2심을 통해 최초 사실 및 증거와 원심판결에서의 인정이 모두 일치하다고 심리하였으며, 법원은 확정했다.

2심법원은 상소인 육○가 사소한 일로 무기를 가지고 타인 신체를 상해하여 경상을 입혔으며, 그 행위는 고의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육○는 피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후 자신이 범한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에 따라 자수에 해당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부족해 이를 감안하여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의 친족은 중국 내에서 생활하지 않고, 현재 임시거주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지역사회 교정으로 받아들이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외 그는 마약투약자로 강제추방 판결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 원심 판정은 정확하며, 재판절차가 합법적이다.

육○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34조 제1항, 제35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제225조 제1항 제(1) 규정에 다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사례 9] 범○○, 황○○, 고○○, 무○○ 유괴사건[442)]

피고인 범○○(음역), 남성, 1994년 2월 9일 출생, 호적지 베트남.

피고인 황○○(음역), 남성, 1990년 4월 25일 출생, 호적지 베트남.

피고인 고○○(음역), 남성, 국적불명, 1990년 7월 17일 출생 보고(自报), 호적지 베트남.

피고인 무○○(음역), 남성, 1977년 12월 31일 출생, 호적지 베트남.

상위 열거된 피고인은 2015년 8월 3일 마약투입으로 공안기관(公安机关) 본 행정국(处行政)에서 15일 구류되었다. 2015년 8월 18일 유괴죄(绑架罪)로 형사구류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4일 체포되었다.

광동성(广东省) 산두시(汕头市) 금평구(金平区)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은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2015년 6월 13일, 피고인 범○○는 불법입국으로 산두시(汕头市) 공안국(公安局) 징해(澄海) 본국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2015년 7월경, 피고인 범○○는 재차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중국 내로 밀입국했다.

2015년 4월 초, 피고인 범○○은 피해자 농○에게 5명의 베트남 국적 노동자를 소개했는데, 이후 5명의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은 행방을 감추어서 원한을 지녔다. 2015년 7월 26일 오전, 피고인 범○○는 피해자 농○를 유인하여 광동성(广东省) 조주시(潮州市)에서 유흥을 즐겼으며, 피해자 농○을 임대주택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무○○, 황○○, 고○○는 함께 농○를 묶고, 구타하며, 농○의 목에 날카로운 비수로 위협하고 사진을 찍어 피해자 농○의 친족에게 보내, 몸값 20,000위엔 (元)을 요구했다.

---

442) 광동성산두시금평구인민법원(广东省汕头市金平区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6) 월 0511형초(粤0511刑初) 306호

2015년 7월 28일 저녁, 피고인 범○○, 황○○, 고○○, 무○○는 베트남 국적 제3자 "아○"는 피해자 소○과 3명의 베트남 국적 친구(남성 2명, 여성 1명)의 임대주택을 빼앗아, 당일 오후 10시경, 농○, 소○ 및 이외 2명의 베트남 국적 남성은 조주시(潮州市)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겨졌으며, 소○를 구타했으며, 소○의 친구에게 50,000위엔(元)을 요구했다. 2015년 7월 31일 저녁, 피해자 소○의 친구들은 피고인 범○○ 등에게 강요당해 19,000위엔(元)을 지급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관련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고인 범○○의 행위를 밀입국(偷越国境罪) 및 유괴죄(绑架罪)로 구성하여 인정했으며, 피고인 황○○, 고○○, 무○○의 행위는 유괴죄(绑架罪)로 구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239조, 제3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피고인 황○○은 공을 세운 사람(有立功表现)으로 법에 따라 경한 처벌을 한다.

피고인 범○○, 황○○, 고○○, 무○○는 기소한 사실 및 죄명에 대해 이의가 없다.

피고인 범○○의 변호인은 피고인 범○○이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양호한 점과 납치에 가담했으나, 사회적 위해성 및 악한 본성이 비교적 적기에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제기했다.

피고인 황○○의 변호인은 피고인 황○○가 공을 세웠으며, 게다가 초범이며,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양호하여, 피고인 황○○에 대해 경 혹은 경감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건의했다. 피고인 고○○의 변호인은 피고인 고○○가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양호하고, 죄를 뉘우치며, 범행 경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경하며, 범행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어, 사회위행성 역시 크지 않고, 제 3자에게 유괴에 가담을 유인함으로써 원인을 일으켰고, 유괴죄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황에 부합하여, 법에 다라 피고인 고○○는 경감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건의했다.

피고인 무○○의 변호인은 피고인 무○○가 종범(从犯)으로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양호하여, 법에 다라 경한 혹은 경감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심리한다:

1. 피고인 범○○의 밀입국한 사실

피고인 범○○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越南社会主义共和国) 국적인이다. 2015년 6월 13일, 피고인 범○○은 불법입국으로 산두시(汕头市) 공안국(公安局) 징해(澄海) 본국에 의해 강제추방된다. 2015년 7월경, 피고인 범○○는 재차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중국 내로 밀입국하여, 광동성(广东省) 산두시(汕头市)에서 일한다.

2. 피고인 범○○, 무○○, 고○○, 황○○의 타인 유괴 사실

2015년 7월, 피고인 범○○은 재차 중국 국경 내 불법 진입 후, 광동성 (广东省) 조주시(潮州市)에 와서, 5명의 베트남인을 데리고 마찬가지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 동족 농○에게 소개하고, 산두시(汕头市) 징해구(澄海区)에서 일을 하도록 안배한다.

그러나 농○는 후에 피고인 범○○에게 소개받은 5명의 베트남인이 행방을 감추고, 피고인 범○○에게 "사례비(好处费)"를 받지 못해, 원한을 품는다. 2015년 7월 26일 오전, 피고인 범○○는 피해자 농○와 함께 징해구(澄海区)에서 광동성(广东省) 조주시(潮州市)로 유흥을 즐겼으며, 피해인 농○를 데리고 조주시(潮州市) 상교구(湘桥区) 봉신(凤新)거리 연운(莲云)촌 전향궁전(前乡宫公厅) ×× 항(巷) 베트남 동족 "아○"(구체적인 상황 불분명, 도주)의 임대주택으로 가서, 이와 같이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 황○○, 고○○, 무○○ 및 "아○"와 함께 농○를 묶어, 구타하고, 피해자 농○를 위협하여 배상하게 한다.

그 사이, 각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농○를 손으로 구타하고, 후에 각목, 철근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했으며, 또한 농○의 목에 날카로운 비수로 위협하고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농○의 가족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몸값 20,000위엔 (元)을 요구했다. 피해자 농○은 강압에 의해 징해(澄海)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 이○에게 전화를 하여, 그녀에게 몸값을 보내라고 한다.

2015년 7월 28일 저녁, 베트남국적 제3자 "아○"(구체적인 상황 불분명, 도주)는 베트남인 소○와 3명의 베트남 국적 친구(남성 2명, 여성 1명)를 위에서 언급한 임대주택으로 유인하여, "아○"와 피고인 범○○등인은 같은 이유로 소○등을 유괴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의한다. "아○"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베트남 국적 여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범○○, 무○○, 황○○, 고○○은 소○와 이외 2명의 남자를 위에서 언급한 임대주택에서 제압한다. 당일 저녁 10시경, 피고인 황○○, 고○○, 무○○ 등인은 한 대의 "택시"를 빌려 피해자 농○, 소○ 및 이외 2명의 베트남 국적 남자를 조주시(潮州市) 상교구(湘桥区) 춘광채조(春光蔡厝) ××항(巷) ××동 ××호 임대주택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제압하였으며, 소○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통해 현금 50,000위엔(元)을 요구한다.

그 후, 소○와 동행한 2명의 베트남 국적 남성은 도주했으며, 피고인 범○○ 등인은 피해자 소○, 농○를 조주시(潮州市) 상교구(湘桥区) ××로 ××항(巷) ××동 ××호의 임대주택으로 이동하여, 4명의 피고인 및 "아○"은 소○를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또 옷걸이 혹은 칼로 계속해서 구타한다.

7월 31일 저녁, 피해자 소○의 친구들은 4명의 피고인 및 제3자가 지정한 "이○○"의 중국공상은행 (中国工商银行) 계좌로 인민폐 19,000위엔(元) 송금한다. 2015년 8월 2일 새벽, 공안기관(公安机关)은 조주시(潮州市) 상교구(湘桥区) 한 여관에서 피고인 황○○를 체포하고, 잇따라 황○○를 공안기관(公安机关)으로 인솔하여 조주시(潮州市) 상교로(湘桥路) 신분항(新奋巷) 6골목(六横巷) 1호 4층에서 피고인 범○○, 무○○를 체포하고, 피해인 농○, 소○를 구출하고, 현장에서 개조한 리볼버권총(转轮手枪)을 압수하고, 탄알 4알, 비수, 큰 칼, 전기총, 메스암페타민, 신축성 있는 막대기 등의 물품을 압수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피고인 범○○가 밀입국한 죄로 기소한 행정처벌 후, 1년 이내 재차 중국 국경 내 밀입국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이에 대해 인정한다. 피고인 범○○, 황○○, 고○○, 무○○가 공모

하여 피해자 농○와 소○를 폭력 및 위협으로 제압하여 2명의 피해자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이에 대해 인정한다.

피고인 범○○는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출입국경관리법규 (出入境管理法规)를 위반하여 밀입국한 것은 중한 범죄로서 사회관리 질서를 해가 되는 행위로 밀입국죄(偷越国境罪)로 구성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피고인 범○○, 황○○, 고○○, 무○○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이용하여 위협하여 그 범행은 시민 인권을 침범하는 행위로서 유괴죄로 구성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피고인 범○○, 황○○, 고○○, 무○○의 유괴죄 경위는 비교적 가볍기에 법에 의하여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범○○, 황○○, 무○○는 국적이 명확하고, 외국인 범죄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부가형 강제추방을 적용한다.

피고인 범○○, 황○○, 고○○, 무○○는 공동범죄 중, 적극적으로 범행을 가했으며, 모두 손으로 구타, 위협 및 2명의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상당히 범행을 추진했으며, 공동주범으로 법에 의하여 참여한 행위에 따라 모든 범죄를 처벌한다. 피고인 황○○는 재판 회부 후 공안기관(公安机关)과 동행범을 포획하는데 협조하여, 그가 세운 공이 있어, 법에 따라 경감한 처벌을 한다.

피고인 범○○는 수죄(数罪)로 법에 따라 병과주의(数罪并罚)로 처벌한다.

피고인 범○○, 황○○, 고○○, 무○○는 자신의 죄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피고인 황○○의 변호인은 피고인 황○○가 세운 공을 제기하여, 피고인 황○○에게 가벼운 처벌을 건의했으며, 이유가 성립되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피고인 무○○의 변호인은 피고인 무○○가 종범이라고 제기한 이유는 성립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4명의 피고인 변호인은 각 피고인들의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양호한 점을 제기하여, 경한 처벌을 건의하는 변호의견에 대해 이규가 성립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39조 제1항, 제322조, 제69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4항, 제68조, 제67조 제3항, 제35조와 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의 《자수처리와 공을 세운 것과 관련하여 약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의 구체적 적용(关于处理自首和立功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제5조,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의 《국경관리를 위해하는 형사안건 처리에 관해 약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적용 (关于办理妨害国(边)境管理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범○○는 밀입국죄로, 유기징역 6개월과 벌금 인민폐 1,000위엔(元), 유괴죄로 유기징역 7년과 벌금 인민폐 6,000위엔(元)을 선고한다. 총 유기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7,000위엔(元)을 선고한다. 유기징역 7년 3개월을 집행하고, 벌금 7,000위엔(元)과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2. 피고인 황○○는 유괴죄로 유기징역 5년 6개월, 벌금 인민폐 6,000위엔(元)과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3. 피고인 고○○는 유괴죄로, 유기징역 7년을 선고한다.
4. 피고인 무○○는 유괴죄로, 유기징역 7년, 벌금 인민폐 6,000위엔(元)과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사례 10] 범○○ 절도사건[443)]

피고인 범○○, 남성, 1996년 1월 25일 출생, 경족(京族), 소학문화(小学文化),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越南社会主义共和国) 국적, 호적지 베트남. 절도죄 혐의로 2016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운남성 하구 요족자치현 (云南省河口瑶族自治县) (이하 하구현(河口县)) 공안국에 잡혀, 동월 18일 형사구류형(刑事拘留)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1일 구속(逮捕) 되었다.

하구현인민검찰원(河口县人民检察院)은 피고인 범○○를 절도죄로 고소했으며, 201`7년 2월 4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16년 10월 17일 17시경, 피고인 범○○는 하구현향강(河口县香江) 가공식품매장(粮油店)에 진입해 계산대 내 인민폐 2,500위엔(元) 훔쳤다. 이러한 범행에 대해,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사건일지, 체포과정, 수사내용, 피고인 진술 등 증명할만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범○○는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몰래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비교적 큰 액수로, 그 혐의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4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범○○에게 절도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 피고인 범○○에 대해 유기징역 1년,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원에 건의했다.

피고인 범○○는 공소기관(公诉机关)에 기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시인한 점을 감안하여 가벼운 형을 요청했다.

법원은 심리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6년 10월 17일 17시경, 피고인 범○

443)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운남성하구요족자치현인민법원(云南省河口瑶族自治县人民法院)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2017) 운2532형초(云2532刑初) 14호

○은 "하구현향강가공식품매장(河口县香江粮油店)"으로 진입하여, 계산대 내 인민폐 2,500위엔(元)을 훔쳤다. 사건 발생 후, 도난당한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법원은 피고인 범○○는 불법소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했으며, 그 금액도 비교적 큰 액수로서, 그 혐의는 이미 절도죄에 해당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은 증거가 충분하여 절도죄에 성립한다고 혐의사실을 명백히 했다. 피고인 범○○은 사건 이후 죄에 대해 뉘우칠 뿐만 아니라, 불법 취득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았기에 법에 기반하며 가벼운 형이 될 수 있다.

공소기관(公诉机关)의 형량은 합당했으며, 법원 역시 이에 대해 수용했다. 국선 변호인(指定辩护人) 성○○는 "피고인 범○○는 비교적 큰 액수를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고 변호를 했으며, 재판사실과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이외 그 변호에 대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범○○는 베트남의 오랜 변경지역 거주민으로서, 양국(중국-베트남) 변경지역을 빈번하게 왕래했으며, 게다가 범○○는 범행을 저지름으로서 유기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았다.

따라서 범○○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5조 "강제추방(驱逐出境)"조항에 적용이 불가하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4조, 제67조 제3항, 제52조, 제5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범○○는 절도죄를 범한 죄로 유기징역 7개월과 인민폐 1,000위엔(元) 벌금으로 판결확정 후 15일 이내 납입한다.

[사례 11] 고(高) 모씨 절도사건[444]

피고인 고(高) 모씨, 남성, 1984년 3월 9일생, 현지 민행구(闵行区) 중춘로(中春路) XXX길 XXX골목 XXX번지 XXX호 임시 거주.

기소기관(公诉机关) 고소 혐의, 피고인 고(高) 모씨는 2015년 11월 22일 3시쯤, 상해시 연안 중로(上海市延安中路) XXX번지 MYST 술집 문 앞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위(魏)모씨가 맨 숄더백을 빼앗아 HSBC 및 농업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갔다. 그 후, 피고인 고 모씨는 훔친 카드로 상해 시 여러 곳에 설치된 ATM기에서 총 38,000위엔(元)을 인출했다.

2015년 12월 2일 17시쯤, 피고인 고 모씨는 상해시 서회구 홍매로(上海市徐汇区虹梅路) XXX번지 의념(衣念, 상해)패션 무역유한공사에서 경찰에게 체포된다. 법정에선 고 모씨는 상술된 범죄 모두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 위 모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면서 피해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도해 거액을 사용한 고 모씨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 고발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고인 가족의 도움으로 절도한 돈을 배상해줌으로써 피해자의 선처를 얻어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만 내려졌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주관적 악질이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또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

444)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정안구 인민법원 형사판결문(华人民共和国上海市静安区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6) 호0106형초85호(沪0106刑初85号)

선고된 강제 추방은 면하고 집행 유해만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법원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사유재산침해보호(保护公私财产不受侵犯)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6조 제1항, 제264조, 제196조 제3항, 제67조 제35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 고 모씨에게 유기징역 3년, 벌금 1만위엔(元),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사례 12] 하(何) 모씨1 절도죄[445)]

피고인 하 모씨1, 남성, 1989년 6월 12일생, 경족(京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적. 절도죄 혐의로 2016년 3월 31일 하구요족 자치현(이하 하구현의 약칭함) 경찰서에 체포된 후 그해 4월1일 하구현 경찰서에 형사 구속되어 있다가 그 달 16일에 체포되었다.

하구현 인민 검찰청(河口县人民检察院) 고소 내용: 2016년 3월 16일쯤, 피고인 하 모씨1는 하구현의 오래된 기차역 광장 철문(铁门)에서 전(田) 모씨의 빨간색 전동차(번호판:운(云)G31200)를 훔친 후 전동차를 베트남까지 끌고 가 타인에게 300위엔(元)을 받고 팔아버렸다. 그러나 도난사건 진상이 드러난 후 도난차량은 회수되어 차주에게 반환되었다.

하구현 발전개혁청(发展和改革局)감정에 의하면, 도난당한 전동차 가격은 1936위엔(元)에 달한다고 한다.

상술한 혐의대로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는 안건 등기서류(受案登记表), 협동 조사서류(协查函),체포 과정, 압류 결정문(扣押决定书), 압류 기록, 압류 목록, 물증사진, 증인 하 모씨2, 구운화(欧云花)의 증언, 피해자 전 모씨의 진술, 피고인 하 모씨1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해 사실은 증명하며 피고인 하 모씨1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범죄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4조 규정에 저촉되는 절도죄로 피고인 하 모씨1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피고인에게 1년 징역 구형 및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

445)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 자치현 인민법원 형사판결문(中华人民共和国云南省河口瑶族自治县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6)운2532형초77호(云2532刑初77号)

피고인 하 모씨1는 기소기관(公诉机关)의 혐의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며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다. 지정 변호인 담문(谭文)은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 고발한 피고인 하 모씨1의 범죄행위 혐의에 이견 없이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1. 피고인 하 모씨1는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후 범죄사실을 모두 진술하며 죄를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희망한다.
2. 피고인 하 모씨1가 훔친 전동차 값어치는 1936위엔 달하는 상당한 큰 금액이나 이미 전동차 주인에게 반환되었고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된 상황이다.

이에 변호인은 상술한 정황에 근거해 법정에서 피고인 하모씨1에게 6개월 징역 구형 및 벌금형 선고를 제안했다.

심의 결과: 2016년 3월 31일 16시쯤, 피고인 하 모씨1이 하구현의 오랜 기차역 광장 철문처(铁门处)에서 1936위엔에 상당한 전 모씨의 빨간색 전동차(번호판:운(云)G31200)를 훔쳐갔고, 사건이 드러난 후 도난당한 차량은 분실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인 하 모씨1은 몰래 타인 재물을 훔쳐 불법 점유했으며 훔친 재물의 액수도 상당하여 절도죄에 해당하고, 기소기관(公诉机关)의 범죄 혐의 사실이 명확하고 사실 증명 증거가 충분해 혐의 죄명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하 모씨1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후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훔친 전동차를 도난당한 주인에게 돌려준 점을 참작해 가벼운 처벌을 제안한 기소기관(公诉机关)의 형량을 법원에서도 받아들였다.

지정 변호인 담문(谭文)은 “피고인 하 모씨1는 체포된 후 자신의 죄를 순수히 인정하고 훔친 전동차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점을 감안해 6개월 징역 구형”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법정 심문 조사에 밝혀진 사실과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 법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본 사건의 피고인 하 모씨1는 베트남 국적에 가족 거주지가 중국 국경에 근접해 있고 양국 간 국민의 왕래가 빈번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5조에 규정된 "강제추방"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64조, 제67조 제3항, 제52조, 제53조와 제64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 하 모씨1에게 6개월 유기징역, 벌금 1000위엔에 처한다. 판결 발효 후 15일 내로 벌금을 납부한다.

[사례13] 황(黃)모씨의 446)공공질서 문란죄 사건(寻衅滋事案)

피고인 황 모씨(자가 신청(自报), 남성,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거주민, 초등 학력, 호적지: 베트남, 현재는 광동성 사회시(广东省四会)에 거주.

본 사건 피고인은 2015년 7월 20일 붙잡혀, 2015년 7월 21일 사회시 공안국에 형사 유치, 같은 해 8일 7일 체포된다.

광동성 사회시 인민검찰청 고소: 2015년 7월 20일 15시 50분 정도, 피고인 황모씨는 마약투약으로 환각상태에 빠지자 누군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쫓아온다고 느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조(刁) 모씨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올라 타 조 모씨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조 모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운전석 아래로 떨어뜨린다.

조 모씨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차를 남강공업원(南江工业园) '순상 타이어 교체샵(顺翔补胎店)' 뒤 주차장으로 운전해 갔고 그곳에서 조 모씨는 차에서 내려 타이어 교체샵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 황씨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조씨를 뒤쫓아 가 맥주병으로 조씨의 둔부를 내리쳐 조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혔다.

그 후 황씨는 순상 타이어 교체 샵(顺翔补胎店)' 으로 뛰어 들어가 공구 스패너로 샵에 있던 주(朱) 모씨의 목을 졸랐다. 그때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설(薛) 모씨가 방문을 잠겨버리려 하자 스패너를 든 황씨는 바로 달려가 발로 방문을 열어 진입해 설씨의 목을 잡고 방 탁자 위에 있던 지오니(金立)핸드폰을 손에 넣었다. 주씨와 그의 아들 이 모씨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 이 모씨가 피고인을 꽉 붙잡아 외부 유흥(维兴)호텔로 끌고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 황 모씨를 제압하고 그에게서 지오니 핸드폰을 찾아

446)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사회시 인민법원 형사판결문(中华人民共和国广东省四会市人民法院刑事判决书, 2015)조사법형초자 제422호(肇四法刑初字第422号)

냈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 조 모씨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한다.

기소기관(公诉机关)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 황 모씨는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타인을 구타하고 타인 재물을 마음대로 강제 갈취 및 훼손했으며 이런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 293조 규정에 저촉되고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관련 증거 충분하기 때문에 공공질서 문란죄로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고발했다.

또한, 서면 자료, 가격 감정 결과, 증인 증언, 현장 감정 기록, 신원 기록, 피고인 진술 등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피고인 황 모씨는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 고소한 혐의 죄명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해당 기관에서 자신에게서 지오니 핸드폰은 찾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심의 결과: 2015년 7월 20일 15시 50분 쯤, 마약 흡입으로 환각상태에 빠진 피고인 황 모씨는 누군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한다고 느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조 모씨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난입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조씨가 핸드폰을 운전석 아래로 떨어뜨렸다.

조 모씨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차를 남감공업원(南江工业园) '순상 타이어 교체 샵(顺翔补胎店)' 뒤 주차장으로 운전해 갔고 그때 조 모씨는 차에서 내려 타이어 교체 샵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 황씨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조씨를 뒤쫓아 가 맥주병으로 조씨의 둔부를 내리쳐 조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혔다.

그 후 황씨는 순상 타이어 교체 샵(顺翔补胎店)' 으로 뛰어 들어가 공구 스패너로 샵에 있던 주(朱) 모씨의 목을 졸랐다. 그때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설(薛) 모씨는 바로 방문을 잠겨버리자 황씨는 스패너를 들고 바로 달려가 발로 방문을 열어 진입해 설씨의 목을 잡고 방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지오니(金立)핸드폰을 손에 넣었다. 주씨

와 그의 아들 이 모씨가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이 모씨가 피고인을 꽉 껴안아 붙잡고 외부 유흥(维兴)호텔로 끌고 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황 모씨는 제압당했고 그에게서 지오니 핸드폰을 찾아냈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 조 모씨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한다.

법원 판단: 피고인 황 모씨는 국가 법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다. 이런 행위는 공공질서 문란죄에 해당한다.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 고발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죄목을 채택한다. 피고인 황 모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황 모씨의 핸드폰 관련 해명은 심의 조사 후 사실에 부합할 경우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인 황 모씨의 지정 변호인은 피고인 황 모씨가 초범이고 사실대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가벼운 처벌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심의와 논거 자료가 충분하면 채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황 모씨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 경내로 들어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 집행이 완료되면 강제 추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293조, 제67조 제3항, 제35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공질서 문란죄를 범한 피고인 황 모씨에게 1년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 집행 후 강제 추방한다.

[사례14] 김(金) 모씨의 강도사건[447]

피고인 김 모씨, 국적 불명. 과거 강도죄로 2004년 3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日被延边朝鲜族自治州中级人民法院)에서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년 2월 28일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강도죄 혐의로 2013년 12월 18일 형사 구속되어 2013년 12월 30일에 체포되었다.

연길시 인민검찰청은 "2013년 12월 18일 14시 30분 쯤, 피고인 김 모씨가 연길시 북산거리(延吉市北山街) 옛날 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두(窦)모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연길시 하남거리(延吉市河南街) 창성 주유소 근처까지 가면서 장난감 소총으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160위엔(元) 갈취했다."는 죄목으로 피고인을 고발했다.

2013년 12월 18일 14시 30분 쯤, 피고인 김 모씨는 연길시 하남거리 창성 주유소 근처에서 체포된다.

연길시 인민검찰청은 피고인 김 모씨가 불법적인 수단과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3조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도죄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따라서 상습적 재범인 피고인 김모씨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65조 규정에 근거해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며 이에 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제청했다.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 고발한 범죄 사실에 피고인 김모씨는 법정 심의과정에서 이의 없이 인정했다.

심의 결과: 2013년 12월 18일 14시 30분 쯤, 피고인 김모씨는 연길시 북산거리

---

447) 길림성 연길시 인민법원 형사판결문(吉林省延吉市人民法院刑事判决书, 2014) 연형초자 제111호(延刑初字第111号)

옛날 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두 모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타고 연길시 하남거리 창성 주유소 근처까지 갔을 때, 기사를 협박해 차를 세우게 한 후 사전에 준비한 장난감 총으로 기사를 위협해 160위엔을 갈취했다.

피해자 두 모씨는 피고인이 부주의한 틈을 타 택시에서 내려 차량 리모컨으로 차문을 잠겨버리고 근처에 있던 조(赵)모씨에게 도움을 청해 피고인 김씨가 차문을 열고 도주하려할 때 조 모씨에게 붙잡혔다.

사건 발생 후, 공안기관에서는 김 모씨가 갈취한 160위엔을 압수해 피해자 두 모씨에게 돌려주었다.

법원은 피고인 김모씨가 저지른 불법적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력으로 위협해 재물을 갈취한 행위는 강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공안기관이 고발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형벌 집행 만료 후 5년 내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다시 범한 상습범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에 피고인 김모씨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3조 강도죄, 제65조 재범, 제35조 강제추방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5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강도죄를 범한 피고인 김모씨는 유기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위엔,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사례15] 김○(金○) 강도사건[448)]

피고인 김○(조선 이름: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 남성, 자술: 1990년 12월 17일 출생, 조선족, 초등 학력, 농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양강도(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两江道) 거주함.

강도죄 혐의로 2013년 12월 5일 형사 구속되어 같은 해 12월 18일 체포되었다.

길림성 장춘시 인민검찰청 고발 혐의: 2013년 12월 4일 22시 경, 피고인 김○은 김모씨(다른 사건 처리)와 한패로 장춘시 관성구(宽城区) 숙소 11동 아래층에 단층방에서 김 모씨는 밖에서 잠복해 망을 보고, 김○이 피해자 증모씨 거처에서 절도를 범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해자의 Z575형 레노버 노트북 한 대, 말머리 형태의 곡도 한 자루를 훔쳐간 후 발견(감정 결과: 노트북 가격=2,506.00위엔, 곡도 가격=80.00위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저항하던 피고인 김○을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시민이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 공안기관 출동으로 체포되었다.

심의 결과: 2013년 12월 4일 22시 경, 피고인 김○과 한 패인 김 모씨(다른 사건 처리)는 장춘시 관성구 개폐 숙소 11동 아래층 단층방으로 갔다. 사전 모의를 거친 두 피고인 중 김 모씨는 방 밖에서 잠복하며 망을 보고, 김○은 피해자 증 모씨 거처로 가서 절도를 감행한다.

피고인 김○은 피해자 거처에서 Z575 레노버 노트북 1대, 말 머리형 곡도 한 자루를 훔쳐 막 그곳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귀가하던 피해자 증 모씨와 시민 진 모씨, 유 모씨에게 발견된다.

---

448)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문 2014년 장형2초자제00008(中华人民共和国吉林省长春市中级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4年长刑二初字第00008号)

이때 피고인 김○은 손에 있던 칼을 들고 방에서 원 내로 뛰어가 증 모씨와 주변 시민을 위협하며 저항했으나 증모씨, 진 모씨, 유모씨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해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도난당한 레노버 노트북 가격은 2,506.00위엔, 곡도 가격은 80.00위엔 정도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 김○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주지로 잠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쳤고, 타인에게 발견된 다음에도 현장에서 칼로 대중을 위협하며 체포에 저항했던 행위 모두 강도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 김○이 체포되지 않으려고 저항한 행위가 피해자 증 모씨 집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장소는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된 장소로 폐쇄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고인 김○의 행위는 주거침입 강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김○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재물 도난이나 타인에게 경상 이상의 피해를 초래하지 않아 강도 살인 미수(抢劫未遂)에 그쳐 기수범에 비해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9조, 제263조[강도죄(抢劫罪)], 제23조[실행 미수(犯罪未遂)], 제67조 제3항[사실 진술(如实供述)], 제52조[벌금액 확정(罚金数额的确定)], 제53조[벌금 납부(罚金的缴纳)], 제35조[강제 추방], 제47조[유기징역 형기 계산 및 환산(有期徒刑刑期的计算与折抵)] 및 〈최고인민법원 강도사건 심의의 구체적인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및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抢劫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강도죄를 범한 피고인 김○에게 유기징역 5년, 벌금 3천 위엔,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사례16] 칼 ○○·알렉산○○(卡尔○○·亚历山○○) 등 절도사건[449]

항소인(원심 피고인) 모모·카테○○(叶卡捷○○), 본 사건은 2014년 4월 21일 재구류 심리(取保候审)로 같은 해 8월 18일 체포된다.

항소인(원심 피고인)모모·알렉산○○, 본 사건이 2014년 4월 21일 재구류 심리로 같은 해 8월 18일 체포된다.

상해시 푸동 신개발지역(浦东新区) 인민법원에서 상해시 푸동 신개발지역 인민 검찰청에서 원심 피고인 모·카테○○, 모모·알렉산○○의 절도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심리한 후, 2014년 4월 20일 16시 30분 경, 피고인 카테○○와 알렉산○○는 상해시 푸동 신개발지구 육가취 서쪽길(陆家嘴西路)168호 정대광장(正大广场)의 헤린스모리스(海恩斯莫里斯, 상해) 상업유한공사 HM 의류매장으로 가서 HM브랜드 여성 신발 6컬레 및 니트 캐쥬얼 자켓, 머리띠 등 각종 의류 장식 41점을 절도했다. 가격 감정 결과 총 7,412위엔 정도이다. 두 피고인은 상술한 재물을 들고 HM 의류매장을 벗어난 후 보안의원에게 붙잡힌다.

피고인 카테○○, 알렉산○○는 본 사건 재판 법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진술한다.

원심에서 상술 사실 확인 및 법정 심문 대질 증거: 증인 유 모씨, 손 모씨, 유 모씨의 증언, 점검 기록(清点记录), 압류 결성서, 명세서, 반환 명세서, 사진, 가격 감정 의견서, 체포 과정, 여권 복사본, 경외 상주자 기본 정보, 학습증명 등, 피고인 카테○○와 알렉산○○도 법정에서 진술했었다.

원심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 카테○○와 알렉산○○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밀리에 공적/사적 재물 절도 및 해당 액수가 상당해 절도죄에 해당 한다 판단했다.

---

449)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문(中华人民共和国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刑事判决书, 2004) 호1중형종자제1792호(沪一中刑终字第1792号)

두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죄를 진술 및 자백한다면 위법으로 획득한 재물은 이미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상태이니 가볍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원심법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제1항, 제264조, 제25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제53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 카테○○에게 단기 6개월 징역(拘役)에 1천위엔 벌금형 및 강제추방을 선고했고, 알렉산○○에게도 단기 6개월, 1천위엔 벌금 및 강제추방을 선고했다.

항소인 카테○○, 알렉산○○ 및 변호인 모두 원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항소했으며 두 항소인은 유학생으로 중국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사유로 2심 법원에서는 강제추방만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해시 인민검찰청 제1분 지청은 법정에 출두해 원심 판결에서 두 외국인 유학생이 절도죄 사실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도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었고 재판 절차도 합법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방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2심법원에서 두 항소인의 범죄 경위 및 학업 상황과 연계해 법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건의했다.

법원은 조사한 사실 증명 및 증거가 원심판결과 동일하고 원심에서 열거한 사건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모두 원심에서 제시했던 대로 대질 등 법정 조사 과정을 거쳐 사실임을 증명했고 법원에서도 확인했다.

현재 본 사건의 논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원심 양형의 과중 여부

조사를 통해, 항소인 카테○○, 알렉산○○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의류매장으로 들어가 7,412위엔에 상당하는 의류장식을 절도했으며 절도 액수가 상당해 절도죄에

해당한다.

원심법원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진술 및 자백했고 훔친 장물도 모두 환수되어 두 항소인 모두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위엔으로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아 법정 양형 가중치에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카테○○, 알렉산○○ 변호인의 관련 항소 이유 및 변호 의견은 사실 및 법률적 증거가 부족해 법원에 채택되지 않았다.

2. 두 외국 항소인의 강제추장 선고 적용 여부

조사 결과, 항소인 카테○○와 알렉산○○는 본래 화동사범대학에서 중국어 연수중에 있었고 중국에서의 학업을 지속하길 원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형벌의 목적은 징계와 교육의 상호 결합으로, 양형 시 재판의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두 항소인의 범죄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제 추방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카테○○, 알렉산○○, 변호인의 항소 이유와 변호인 의견 및 검찰기관의 법정 의견 모두 합법적 근거로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항소인 카테○○와 알렉산○○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회사 재물을 훔쳐가 절도죄에 해당하나 본 사건의 경위와 두 항소인의 학업 지속 필요를 감안해 볼 때 강제추방 처벌은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 6조1항, 제264조, 제25조1항, 제67조 제3항, 제53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 225조 제1항/제2항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상해시 푸동 신개발 지역 인민법원(2014) 푸형초자 제2812호(浦刑初字第2812号) 형사판결 제1,2항 취소, 즉,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 카테○○는 6개월 징역, 1000위엔 벌금, 강제추방 선고 및 공범 알렉산○○의 6개월 징역, 1000위엔 벌금, 강제 추방 선고를 취소한다.
2. 절도죄를 범한 항소인 카테○○를 6개월 징역 및 1000위엔 벌금형에 처한다.
3. 절도죄를 범한 항소인 알렉산○○를 6개월 징역 및 1000위엔 벌금형에 처한다.

[사례 17] 켄○○ 마약 밀매 사건[450]

항소인(원심 피고인) 심○○(沈○○), 영문명 'Mike', 남성, 1977년 6월 14일 호남성 뇌양시(湖南省耒阳市) 출생, 한족, 중등학력, 프리랜서.

2013년 4월 27일 마약밀수 혐의로 형사 구속되고, 같은 해 5월 31일 체포되었다. 2015년 10월 25일 형양시(衡阳市)중급 인민법원에서 재구류 6개월 선고, 2016년 4월 23일 법원에 거쳐 재구류 12개월로 결정되었다.

원심 피고인 켄○○(UkaegbuKing○Chinonso), 남성, 1982년 2월 23일 출생, 국적: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로 약칭), 프리랜서.

마약 밀수죄 혐의로 2013년 4월 29일 형사 구속된 후 5월 31일 체포되었다. 현재는 호남성 형양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원심 피고인 나○○(罗○○), 여성, 1986년 3월 25일 광동성 광주시 출생, 한족, 고급직 수료, 무직. 마약밀매 혐의로 2013년 4월 29일 형사 구속, 5월 31일 체포됨. 2015년 10월 27일 향양시 중급 인민법원 재구류 6개월 선고 받음. 2016년 4월 23일 법원을 거쳐 재구류 12개월 선고 결정.

호남성 형양시 중급 인민법원 판결 인정: 피고인 켄○○는 2009년 7월27일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함,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피고인은 중국 내 체류했음.

2012년, 피고인 켄○○는 광동에서 피고인 나추의와 심○○을 알게 되었고, 켄○○는 나○○와 광동성 불산시 남해구 황기진 영흥남로(广东省佛山市南海区黄岐镇永红南路) 4항 22호, 기풍(岐丰)시장 B좌 808호, 국유 주택단지(国度风制小区) 5동 804호에

450) 중화인민공화국 호남성 최고인민법원 형사판결문(中华人民共和国湖南省高级人民法院刑事判决书,2015)호고법형제2종자제76호(湘高法刑二终字第76号)

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심○○은 켄○○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3년 초, 아프리카 국적의 흑인 'moss','ede'(기본 정황 불확실, 도주 중)가 켄○○를 찾아와 그들을 대신해 국외에서 중국으로 보내오는 마약 소포를 받아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켄○○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심○○에게 자신을 대신해 택배회사로 연락해 마약이 든 우편물 수취를 도와달라고 말하며 'moss', 'ede'요구대로 허위 우편물 주소, 수신인 이름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 우편물을 수령하라고 지시해준다.

켄○○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심○○에게 대가로 2000위엔을 대가로 제안하나 심○○은 4000위엔을 요구한다. 이에 'moss'에게 의견을 구한 후, 켄○○는 심○○ 제안에 동의한다.

그 사이, 나○○는 켄○○ 요구대로 마약 우편물을 찾을 때 허위 수신인 이름을 제공하고, 택배회사와 연락하며 우편물 배달 상황을 조회한 후 우편료를 지불한다.

2013년 3-4월, 켄○○, 심○○, 나○○는 상술한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우간다, 인도, 아이티, 방글라데시에서 중국으로 붙여오는 마약이 숨겨진 소포를 받아 광동 불산으로 전달했다.

수사기관은 배달 온 물품(사진, 자동차 부품, 컵받침 및 컵 받침 걸이, 합성섬유 여성상의 및 간이옷걸이)안에서 각각 대마 9335.2g, 코카인 329.56g(함량 64.4%), 헤로인 286.1g(함량 52.11%), 클로로퀸 297.3567g을 발견한다.

해당 법원에서는 상술한 사실 물증, 서면 자료, 증인 증언, 시청각 자료, 감정 의견 및 피고인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

이를 근거로 한 1심 법원의 판결:

1. 피고인 켄○○는 마약 밀수 및 마약 운반죄 혐의로 강제추방에 처한다.
2. 피고인 심○○은 마약밀수 및 마약 운반죄 혐의로 2년 6개월 유기징역, 1만 위엔 벌금형에 처한다.
3. 피고인 나○○는 마약밀수, 마약 운반 혐의로 2년 6개월 유기징역, 1만 위엔 벌금형에 처한다.
4. 수취한 마약 9335.52g, 코카인329.56g, 헤로인286.1g, 화학물품 클로로퀸 297.3567g은 몰수해 폐기처분한다.

호남성 형양시 인민검찰청 항소와 호남성 인민 검찰청 항소 지지 시 제기 내용: 켄○○의 마약 밀수 수량은 무기징역 선고 기준에 달하는데 1심에서 강제추방이라는 가벼운 양형만 선고했다.

심○○은 가짜 수령 주소지 및 수신자명을 제공하고 수차례 택배회사로 전화해 배송상태를 문의하며 마약 소포를 중국 내에서 전달 및 타인을 고용해 해당 소포를 수령하도록 처리했으니 마땅히 주범으로 인정해야 한다.

설령 심○○이 본 사건 해결에 중대한 도움을 줬다해도 다음 양형의 수준은 유기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로 선고될 것이다.

항소인 심○○의 항소 내용: 켄○○ 부탁으로 소포를 수령했을 뿐이고 그 소포 내용이 마약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를 요청한다.

원심 피고인 켄○○ 해명 내용: 소포 내 물건이 마약인 줄 알지 못했다. 켄○○ 변호인 변호 내용: 1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양형이 판결되어 원심 유지를 요청한다.

심의 결과: 원심 피고인 켄○○는 나이지리아 국민으로, 2009년 7월27일 비즈니스 비자로 중국 경내로 입국했고,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다.

2012년, 피고인은 광동에서 원심 피고인 나○○와 항소인 심○○을 알게 된다. 그 후 켄○○는 광동성 불산시 남해구 황기진 영흥남로 4항22호, 기풍시장B좌 808호, 국유 주택단지 5동 804호 등 세 곳에서 나○○과 함께 거주했다.

2013년 초, 아프리카 국적의 남자 'moss'(신분 불명, 도주 중)가 켄○○를 찾아와 해외에서 중국으로 붙여오는 마약을 대신 수령해줄 것을 제안하며 사례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 켄○○는 이에 동의한다.

중국어를 못했던 피고인은 심○○에게 도움을 청하며 건수마다 4000위엔을 보수로 주겠다며 그에게 우편물을 수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켄○○는 마약을 손에 넣게 위해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핸드폰 칩을 준비하고 그 중 일부를 심○○에게 범행 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켄○○가 택배 우편 정보를 수집해 오면 심○○에게 핸드폰을 통해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달하고, 문자를 받은 심○○은 가짜 수령지 주소지와 수취인 이름 등 정보를 제공해 우편물을 수령했다.

우편물 발송 후, 심○○은 전화로 배송 조회 및 택배회사와 연락해 여러 차례 우편물을 전달하고, 다시 심○○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했다. 그 사이, 켄○○는 나○○에게 우편물 배송 및 배송료를 조사하도록 했다.

2013년 3월~4월까지, 켄○○은 심○○과 함께 대마 9335.52g, 헤로인 286.1g, 코카인 329.56g 마약을 밀수 및 운반했다.

법원은 항소인 심○○, 원심 피고인 켄○○는 국가 마약관리 법규를 위반했으며, 마약 대마 9335.52g, 헤로인 286.1g, 코카인 329.56g을 밀수 운반한 행위 및 국가 마약관리 법규 위반, 3차 밀수, 마약 운반 행위 모두 마약 밀수/운반죄에 속한다.

공동범죄에서, 켄○○와 심○○은 메인 역할을 담당한 주범으로 범죄 전 과정에 참여한 죄목으로 처벌한다. 나○○은 보조적 역할로 종범에 해당해 가볍게 처벌한다. 심○○은 법정에 출두해 사법기관을 도와 켄○○ 체포에 협조했기 때문에 처벌을 감형 받을 수 있다.

심○○은 항소 시 '켄○○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고, 내가 우편물 내용이 마약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의했으며, 켄○○는 '우편물이 마약인줄 몰랐다'는 해명 이유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켄○○, 심○○ 우편물 전달, 우편 수령의 인수인계 방법으로 볼 때, 두 사람을 여러 차례 가짜 이름과 주소를 사용했고, 핸드폰 번호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은폐적인 고도의 인계방식으로 우편물을 전달 및 수령했다.

켄○○, 심○○이 사용한 우편물 전달, 수령 과정 중 태도로 볼 때, 2013년 4월 10일, 심○○이 황기 상업 보행 거리의 시대 PC방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갈 때, 켄○○가 심○○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에 경찰들이 많다고 말해주면 우편물을 포기하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핸드폰과 칩을 버려버렸다.

심○○이 전달해 수령한 우편물에서 모두 마약이 발견되었다.

켄○○가 심○○을 고용해 우편물을 전달하고 수령할 때 사용한 비용으로 볼 때, 심○○이 우편물을 전달하고 수령할 때마다 받은 4000위엔은 일반적인 위조품 이윤보다 훨씬 높은 액수이다.

본 사건의 다른 증거 인증 정황으로 볼 때, 나○○는 켄○○, 심○○ 둘 다 우편물 내용이 마약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켄○○, 심○○ 두 피고인 모두 해당 소포가 마약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입증한다.

사건 전체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켄○○, 심○○은 소포 내용이 마약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 본 항소 이유 및 켄○○의 해명은 성립될 수 없어 법원은 이를 기각한다.

호남성 형양시 인민검찰청 항소에서 호남성 인민검찰청 항소 지지 시 제시한 '컨○○가 밀수한 마약 수량은 무기징역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인데, 1심에서 켄○○ 피고인에게 강제 추방에 그친 가벼운 형만 선고되었다'라는 의견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호남성 형양시 인민 검찰청 항소와 호남성 인민 검찰청 항소지지 시 '심○○이 허위 수령지 주소와 이름을 제공하고, 택배회사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우편배송을 조회하면서 마약이 든 소포를 중국 경내에서 전달되도록 처리하고 타인을 고용해 마약 소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인물로 주범으로 간주된다고 제시한다.

이에 심○○이 본 사건 해결에 큰 공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양형 시 유기징역 7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선고를 받을 거라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 심○○은 공동 범죄에서 허위 수령지 주소 및 수신자 명을 제공하고 수차례 택배회사로 연락해 배송을 조회했고, 마약이 담긴 소포가 중국 경내에서 전달되고 타인을 고용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한 행위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

또한, 심○○이 밀수 운반한 마약의 수량이 방대해 사건 조사에서 보여준 공으로 처벌이 가벼워질 수는 있으나 1심 판결에서 유기징역 2년 6개월만 구형한 것은 법률 적용 오류에 속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항소 의견과 항소지지 의견이 성립되어 받아들이기로 한다. 심○○이 항소 시 제시한 "무죄 선고 요청"이유는 성립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로 양형을 선고했

으므로 판결 과정이 합법적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6조 제1, 3항, 제347조 제1항, 제3항(1)번, 제4,7조, 제26조 제1,4조, 제27조, 제68조, 제35조, 제64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225조 제1조(1),(2)번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항소인 심○○의 항소 기각, 호남성 형양시 중급 인민법원(2014)형중법형2초자제2호(衡中法刑二初字第2号) 형사판결에서 피고인 켄○○, 심○○의 죄명 선고 시 판결 및 피고인 나○○에 대한 판결과 금지품 몰수에 대한 판결을 유지한다.
2. 호남성 형양시 중급 인민법원(2014)형중법제2초자제2호(衡中法刑二初字第2号)형사판결 중 피고인 켄○○, 심○○에게 판결한 양형 부분은 파기한다.
3. 마약 밀수·운반죄를 범한 원심 피고인 켄○○에게 15년 유기징역에 재산 5만 위엔 몰수를 선고하고 강제추방을 추가로 명한다.
4. 마약 밀수 및 운반죄를 범한 항소인 심○○은 10년 유기징역 구형에 3만 위엔 벌금형에 처한다.

[사례 18] 라돌○·오마○·테비○(拉道○·奥马○·特维○) 451)마약 밀수, 매매, 제조사건

항소인(원심 피고인) 라돌○·오마○·테니○.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양푸구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상해시 양푸구 인민검찰청의 원심 피고인 라돌○/오마○/테비○의 마약 밀매 혐의 사건은 2015년 4월 23일 (2015) 양형초자제329호(杨刑初字第329号) 형사 판결되었다.

원심 피고인 라돌○/오마○/테비○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자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 법정을 구성하고 본 사건을 공개 법정 심리를 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인민 검찰청 제2분 지청에서 검사원 장 모씨를 대신해 법정에 출두할 검사원 양 모씨를 지정 파견했고, 항소인 라돌○·오마○·테니○ 및 변호인 왕양상(汪阳祥), 영어 통역사 상해 동방 번역센터의 정초(郑超)등이 법정소송에 참여했었으며 심리가 종결된 상태이다.

2015년 1월14일 20시 25분 경, 피고인 라돌○·오마○·테니○는 우체키·사무엘·안와거와 사전 모의 후 약속한 거래장소-상해시 서희구 운면로(徐汇区云锦路) 지하철 11호선 7번 출구에서 녹색 식물 1포를 200위엔에 우체○·사무○·안와○에게 매매한다.

라돌○/오마○/테비○가 그곳을 떠난 후, 인민경찰은 우체○·사무○·안와○를 체포하고 현장에서 상술한 녹색식물 1포를 수색 압수했다.

조사 결과, 녹색식물 순수 중량은 9.71그램이며, 그 중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다. 같은 해 1월16일 22시 50분 경, 인민경찰은 본 시내 정안구 교주로 신갑로(静安区胶州路新闸路)입구에서 피고인 라돌○/오마○/테비○를 체포해 수색 중 백색분말 1포, 마

451)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제2 중급 인민법원 형사 재정서(2015) 호2중형종자제493호(中华人民共和国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刑事裁定书 (2015) 沪二中刑终字第493号)

약 거래에 사용된 화웨이 핸드폰 1대를 수색해 압수하고 임시 거주지인 서회구 운면로 xxx롱 xxx번지 xxx호로 가서 식물1포, 분홍색 알약 3알, 백색 알약 2, 마약흡입 도구 3개 등을 수색해냈다.

조사 결과, 상술한 백색 분말은 순수 0.52그램이며 코카인 성분 검출, 알약 5개 총 중량은 2.01그램으로 카페인 성분 검출, 식물 중량 0.51그램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상해시 양푸구 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라돌○·오마○·테니○는 대마 등 마약을 매매했으며 해당 행위만으로도 마약 밀매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한 후 자신의 죄행을 사실대로 진술해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6조 제1항, 제347조 제 1항, 제4조, 제67조 제3항, 제35조, 제53조, 제64조 규정에 근거해, 마약밀매죄를 범한 피고인 라돌○/오마○/테비○에게 단기 징역형(拘役) 6개월에 강제추방, 1천위엔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위법 소득 200위엔은 추징하며 압수한 마약, 마약흡입 기구 및 범죄도구 핸드폰 1대 모두 몰수한다.

항소인 라돌○·오마○·테니○와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인에게 강제추방을 선고한 점은 부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번복을 건의했다.

상해시 인민검찰청 제2분 지청에서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인정한 마약밀매 범죄는 관련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확실한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합법적 법률에 따른 선고이고 양형 또한 적당하며 소송절차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항소인의 항소 이유 및 변호인의 변호 의견은 성립될 수 없어 2심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법원은 1심에서 판결한 라돌○·오마○·테니○의 마약밀매 범죄 성립은 명확한 사

실, 확실한 증거 충족으로 죄명 선고의 정확성에 따른 판결로, 해당 범죄의 사실, 성질, 사회적 위해 정도 및 범행 진술의 진실성 등 경위에 근거한 정당한 양형이고 강제추방 조치 또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법적 소송 절차에 따른 결과로 본다. 이에 라돌○·오마○·테니○의 항소 이유 및 변호인의 변호 의견 모두 거절한다.

상해시 인민 검찰청 제2분지청의 의견은 정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 소송법〉제225조 제1항 제(1)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항소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사례 19] 라시○·망○·카와○ 마약 밀수,매매, 운송, 제조 사건[452)]

피고인 라시○·망○·카와○는 마약 밀수 혐의로 2013년 12월 9일에 법에 따라 거주지 감시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10일에 형사 구속된 후 2014년 1월 14일에 체포된다.

절강성 항주시 인민 검찰청 혐의: 2013년 12월 9일 저녁, 피고인 라시○·망○·카와○는 인체 마약 소지(人体藏毒)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et688비행기를 타고 아디스아바바에서 항주 소산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피고인은 입국 시 통관 프리패스를 선택해 세관에 물품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항주 소산 공항 통관원은 피고인에게 가방과 신분증 제시를 요청해 조사한 후 밀수 단속 경찰관에 넘겨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 ct 촬영 후 피고인 복강 내 여러 이물질 영상이 존재함을 발견했고 당일 밤에서 다음날까지 피고인 체내에서 64개의 캡슐물체를 배출해냈다. 감정 결과, 상술한 과립물체의 순수 총량은 786.4 그램으로 마약 할로윈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캡슐은 타인이 정력제라고 줘서 먹은 약이지 마약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피고인 변호인도 협의를 받고 있는 기본 사실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견을 주장했다.

1. 마약 밀수죄는 행위자가 알고 있었거나 행위자가 해당 물질이 마약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해야 성립된다. 이에 기소기관(公诉机关)에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속아 마약 밀수에 이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하더라도 타인의 꼬임에 넘어가 지시에 따라

452)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항주시 중급 인민법원 형사판결문(2014) 절항형초자제 91호(浙杭刑初字第91号)

행한 행위로 종범에 해당하고, 마약은 객관적으로 사회유입 전에 압수되어 사회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의 범죄 인정 태도를 감안해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요청한다.

심리 조사 결사: 2013년 12월 9일 저녁, 피고인은 신체 마약 소지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을 가지고 et688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항주 소산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피고인이 입국 시 통관 프리패스를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에 어떠한 물건도 신고하지 않는다.

항주 소산 공한 세관원은 피고인의 가방과 신분증을 검사한 후 그를 밀수 경찰관에게 넘겨 병원으로 이동한다. 병원에서 시티 촬영 후 피고인 복강 내 다량의 이물질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그날 밤부터 다음날 까지 피고인은 체내에서 64개 캡슐을 배출해냈다.

감정 결과, 상술한 과립 순수 총량은 786.4 그램으로 헬로인 성분이 검출되었다.

기타 조사 결과: 항주 소산공항 세관 밀수국은 피고인에게 삼성 핸드폰 1대, 1700달러 등을 압수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섭취한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을 위반해 마약 헬로인을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한 행위는 마약 밀수죄가 구성되어 기소기관(公诉机关) 협의 죄명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하다는 변호 의견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밀수해 온 마약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는 사회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본 사건의 구체적 정황 등을 감안해 법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강제추방만(单处驱逐出境)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제347조 제1항, 제35조, 제64조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마약 밀수죄를 범한 피고인 라시디·망고·카와야에게 강제추방을 선고한다.
2. 항주 소산 공항 세관 마약밀수 분국은 미수 건으로 법원으로 이송된 피고인의 범죄 소득 1700달러를 추징하여 국고로 납부한다. 범죄 도구인 삼성 핸드폰 1대도 몰수한다.

[사례 20] 란○·월리○·캠○ 고의 상해죄 사건[453]

원 기소기관(公诉机关) 상해시 장녕구 인민검찰청(原公诉机关上海市长宁区人民检察院).

항소인(원심 피고인) 난 모씨.

상해시 장녕구 인민법원에서 상해시 장녕구 인민 검찰청에서 고소한 원심 피고인 난 모씨의 고의 상해죄 혐의 사건을 심리해 2014년 12월20일에 (2014)장형초자 제960호(长刑初字第960号) 형사 판결을 내놓았다. 원심 피고인 난 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 법정을 구성해 2015년 3월3일에 공개 법정을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상해시 인민 검찰청 제1분 지청에서 검사원 응방(应芳)을 파견했고, 항소인(원심 피고인) 난 모씨, 변호인 전패흠(钱沛鑫) 및 상해시 외사번역협회를 통해 초빙한 영어 통역사 조쟁영(赵峥嵘)이 함께 소송법정에 참여했으며 현재 심리는 종결된 상태이다.

원심 심리 결과: 2014년 5월 18일 새벽 1시 경, 피고인 난 모씨는 친구와 함께 상해시 장녕구 법화진로***번지 지평성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때, 해당 술집 직원인 갑 모씨와 을 모씨는 난 모씨 등 사람들이 술집 문 앞의 유리탁자를 파손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난 모씨 등 사람들과 대화 중 쌍방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난 모씨가 갑 모씨 얼굴부위를 치자 넘어지면서 두개골 내출혈 및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검사 결과 경상 피해를 초래했다.

2014년 6월27일, 피고인 난 모씨는 기소기관에 체포되었고 사건 발생 후, 난 모씨는 피해자 갑 모씨에게 7만 위엔을 배상하며 피해자의 선처를 구했다.

---

453) 상해시 제1 중급 인민법원 형사 재정문(2015) 호1중형종자제138호(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刑事裁定书 (2015) 沪一中刑终字第138号)

상술한 사실은 피해자 갑 모씨의 진술, 신원 기록, 증인을 모씨의 증언, 부상 진단서, 사법 검증 과학기술연구소 사법 검증센터의 검증 의견서, 화해 협의서, 양해서, 영수증 등 실증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 및 죄명을 모두 인정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난 모씨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상을 초래했고 이런 행위는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난 모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진술해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줘 피해자의 선처를 얻어내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제1항, 제234조 제 1항, 제67조 제3항, 제35조 규정에 근거해, 고의적 상해죄를 범한 피고인 난 모씨를 3개월 징역에 강제 추방을 선고한다.

난 모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도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상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적극적으로 배상해 상대방의 선처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적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감정서에 이견을 제시하며 항소인 난 모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는 고의성이 없으며 항소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상을 입히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비록 항소인이 피해자에게 경상을 초래하긴 했으나 항소인이 직접 타격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개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사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했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선처를 얻은 상황을 감안해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

상해시 인민 검찰청 제1분지청의 법정 의견: 원심의 사실 인정, 명확한 증거 충분, 범죄에 대한 성질 규정의 정확성으로 양형도 적당하고 소송절차도 합법적이다. 난 모씨의 항소 이유 및 변호인의 변호 의견은 증거 사실 검증 증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및 원심판결 유지를 제의한다.

법원은 항소인 난 모씨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경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원심 규정이 정확하다고 본다.

원심에서는 항소인 난 모씨의 고의적 상해죄 사실, 성질 규정, 사회적 위해정도, 사건 발생 후 법정 진술 태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배상의 적극성, 피해자의 선처 등으로 형량을 감경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월 징역에 강제추방을 선고한 판결은 적당한 양형이며 심판 과정도 합법적이었다.

항소인 난 모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감정서에 이견이 있으며 항소인의 고의적 상해 의도도 없었던 상황이고, 또한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경상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도 않아 피해자의 경상은 우발사건에 속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권위적 사법 과학기술 연구소 사법 감정 센터에서 피해자 상해 정도를 감정한 관련 절차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감정 과정도 규범 조건에 부합해 감정 의견에도 합법적 증거가 존재해 증명 효력 및 증명력을 갖추고 있어 채택되어야 한다.

변호인이 제시한 이견에는 사실과 법률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는다. 감정 의견서를 보면 갑 모씨는 타인에 의한 외부력에 의해 두개골 뇌출혈 및 골절 등을 통해 입은 경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항소인 난 모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해 넘어뜨렸기 때문에 당시 항소인의 타격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항소인 난 모씨는 성인으로, 자신의 주먹으로 사람을 칠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때려 피해자에게 경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주관적 고의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갑 모씨가 받은 상해는 항소인 난 모씨가 친 주먹으로 가한 상처는 아니지만 친 주먹에 넘어지면서 그 충돌로 초래된 상해이므로 이 또한 항소인이 휘두른 주먹에 의한 상해로 직접적 인과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상이 피해자의 주먹으로 인한 직접적 상해가 아니므로 본 사건은 우발사건에 속한다는 변호인의 변호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항소인에게 형 집행에 유예를 적용해달라는 항소인과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에 법원은 항소인이 피해자를 때려 경상을 입힌 후 도주했고 이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 악의와 신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항소인은 현재 상해에 고정 주거지가 없어 지역사회 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해 형 집행 유예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범죄에 대한 성질 규명이 정확하며 양형 및 법률 적용 등 모두 적절한 판결로 검찰기관에서 제의한 항소 기각 및 원심판결 유지 의견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1)번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한다.

항소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사례 21] 리○○ 불법 경영건[454)]

피고인 리○○(양○○라고도 불림)는 1967년 2월18일 생(이상 내용은 본인의 진술 내용으로 국적은 불명확).

기소 내용: 2015년 6월 22일 12시, 공안경찰이 티엔캉(镇康)현 난산청(南伞城)구 도로변 중국석유화학 주요소 옆에서 피고인 리○○가 고용한 삼륜오토바이에 난산청(南伞城)구의 누군가에게 판매하려고 준비해 둔 미얀마담배 10상자를 압수하였음. 압수 담배는 총 500개로 이 중 昔娥(미얀마 담배브랜드) 담배200 개、KABAUNG담배 200개、AFRICA 100개로, 확인 결과 압수한 담배 총액은 10.35만위엔에 달함.

이상 내용은 법정 심리 중 피고인도 인정하였으며, 입건 신청서, 입건 결정서, 체포 경위, 관할 지정 결정서, 불법 담배 사진, 압수 리스트, 변호 기록, 사진, 가격 검증 결정서, 증인 곽○○의 증언, 피고인 이○○의 신분에 관한 설명, 사건 정황 설명 등 증거가 충분함

법원은 피고인 리○○가 중국 담배판매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담배판매를 위한 경영허가증를 받지 않은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225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불법경영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기소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도 충분하므로 기소사실과 죄명이 일치함. 피고인 리○○는 체포즉시 담배는 자신의 소유이며 난산청(南伞城)구로 운반해 판매하려 했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67조3항에 의하여 감형함. 검찰은 리○○를 불법경영죄로 유기징역2~3년을 구형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벌금 관련 의견은 법률법규에 부합하여 채택되었음. 변호인은 피고인 리○○가 입건된 후 즉각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담배가 아직 중국 시장에 유통되지 않아 엄중한 피해를 끼치지는 않아 사회적 위해성이 적으므로 선처를 요청하였고, 동 요청 내용이 사실에

454) 운남성임창시임상구인민법원 형사판결문(2015)임형초자 제193호

부합하여 채택되었음. 피고인을 집행유예 및 강제추방하자는 변호의견은 법률법규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었음.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25조, 제67조3항, 제52조, 제53조,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이하와 같이 판결함

1. 피고인 리○○는 불법경영죄에 해당하므로 유기징역 6개월과 10,000위엔 벌금형에 처함
2. 압수한 미얀마 담배 500개는 몰수 처분함

[사례 22] 이○○, 최○○ 등 마약 밀수/판매/운반/제조 사건[455]

최초 기소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연태시인민검찰원(山东省烟台市人民检察院)

항소인(원심 피고인) 이○○, 한국 국적, 산동성 웨이하이시 'coa'회사 직원. 마약 불법 판매 혐의로 2012년 10월 27일 형사 구류된 후 같은 해 11월 30일 구속됨

항소인(원심 피고인) 최○○, 직업 무, 마약 불법 판매 혐의로 2012년 10월 26일 형사 구류된 후 같은 해 11월 30일 구속됨

항소인(원심 피고인) 주○○, 직업 무, 마약 흡입 협의로 2011년 9월 30일 15일 행정구류. 타인 마약 흡입 방조(容留) 혐의로 2012년 3월 10일 형사구류. 같은 해 3월 13일 보석 석방. 마약 불법 판매 혐의로 2012년 10월 26일 형사구류. 같은 해 11월 30일 구속.

원심 피고인 왕○○, 직업 무, 마약 불법 판매 혐의로 2012년 10월 26일 형사구류. 같은 해 11월 30일 구속.

원심판결 내용: 피고인 이○○, 최○○가 마약 불법 판매를 공모하고 각각 왕○○와 주○○를 가담시켰음. 2012년 10월, 이○○, 최○○, 왕○○, 주○○는 두 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총 228.32g을 불법 판매 하던 중, 128.32g은 현장에서 공안당국에 압수당함

원심법원은 피고인 이○○, 최○이 메스암페타민을 대량으로 불법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 왕○○도 메스암페타민 대량 불법 판매에 가담하였으므로 4명의 피고인 모두 마약 불법 판매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이 중 피고인 이○○가 주범이며, 입건 후 범죄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법에 따라 처벌함. 피고인 최○○는 주범으로 입건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공모자 체포에 협조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감형 처벌함.

피고인 주○○는 방조범으로 입건 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감형 처벌함. 피고인 왕○○는 방조범으로 법에 따라 감형 처벌함.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6조제1,3항,

455)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고급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4)노형2종자 제20호

제347조제1항, 제2항 1 项, 제7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4항, 제27조, 제67조제3항, 제68조, 제57조제1항, 제35조와 〈최고인민법원〉제5조에 따라, 피고인 이○○는 무기징역, 평생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10만엔(元)몰수, 강제추방에 처하고, 최○○는 유기징역 15년, 재산 5만엔(元) 몰수에 처하며, 피고인 왕○○는 유기징역 10년, 벌금 2만원(元), 피고인 주○○는 유기징력 12년, 벌금 3만원(元)에 처함

원심판결 후 공소기관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이○○는 '최○○, 왕○○, 주○○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마약 불법 판매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소하였음. 피고인 최○○는 '자신은 방조범으로서 입건 후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공모자 체포에 협조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형 처분을 원한다'는 이유로 상소.

피고인 주○○는 '자신이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공모자 체포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상소. 리○○의 변호인은 '侦查人员肖风와 이○○를 심문한 통역사가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심문 필기기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의 마약 판매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제기

2심재판시, 상소인 이○○는 최○○에게 마약을 제공한 적이 없고, 마약을 나눠 갖지 않았으며, 마약 불법 판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의 변호인은 '최○○, 주○○, 왕○○는 이○○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으며, 이 3명이 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며, 왕○○의 관련 진술은 최○○를 통해 통역, 진술된 것으로 전달된 증거에 속하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 상소인 최○○, 주○○는 상소장과 동일하게 진술

산동성 인민검찰원에 출정한 검사는 "동 사건의 혐의자 최○○, 왕○○, 주○○가 이○○의 마약 매매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상호 확인된 것이므로 이○○가 마약 매매의 주동자임을 입증 가능함. 최○○는 이○○의 지시를 받고 마약 매매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주범에 속함. 1심 판결은 이○○, 최○○가 마약 매매를 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도 명확/충분하므로 범죄가 성립되며 형량도 적정하고 재판 과정도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상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되, 상소인 주○○는 이○○체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법에 의해 형량을 감량할 것도 건의

2심 심리조사:

상소인 이○○와 상소인 최○○는 마약 밀매를 공모해 부당이익을 챙겼음. 최○○은 원심 피고인 왕○○의 마약밀매 가담을 유도했고, 이○○는 상소인 주○○의 가담을 유도하였음. 2012년 10월 17일경, 이○○는 26,000위엔(元)을 최○○에게 건네면서 메타암페타민을 구매해 매매하라고 시켰음. 최○○는 광동성 광저우시 李豪에게 연락해 메타암페타민 100g을 구매한 후 우편물에 숨겨 물류회사를 통해 산동성 옌타이시로 반입하였음.

왕○○는 마약이 든 우편물을 찾아 최○○과 차량에 동승해 마약을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이○○에게 전달. 이○○는 마약을 최○○, 왕○○, 주○○와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로 옮기고, 주○○가 구매자에게 연락한 후 상기 마약이 대부분을 "얼꺼(二哥)"、"김○○"、원○○ 등에게 매매하였고, 매매대금 약 3만위엔(元)을 이○○에게 건냈으며, 이○○는 대부분을 다시 최○○에게 건네 메타암페타민을 계속 구매해 매매하도록 시킴.

최○○은 2012년 10월 하순, 이○○로부터 받은 29600위엔(元)으로 다시 리○○로부터 메타암페타민 128.32g을 구매한 후 우편물에 숨겨 물류회사를 통해 산동성 옌타이시로 가져옴. 같은 해 10월 26일 오전, 최○○, 왕○○은 옌타이 항만사무국 3호문 부근에서 물류회사로부터 마약이 든 우편물을 찾다가 출동한 공안에 현장 체포되었고, 마약 128.32g을 압수당함

또한 상소인 주○○는 체포 당한 후 2012년 10월 27일 검찰들을 상소인 이○○의 근거지인 산동성 웨이하이시 훠쥐(火炬)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 리징밍두(丽景明都) 31-3-106호로 안내해 이○○를 체포하도록 협조

법원은 상소인 이○○, 최○○, 주○○, 원심피고인 왕○○가 메타암페타민을 사들

여와 다시 밀매한 행위는 모두 마약 불법 매매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동 4인은 2차례 메타암페타민 매매를 하였으며 총 매매량은 228.32g에 달하는바 법에 따라 처벌. 상소인 이○○은 원심에서 정치권 추가 박탈 및 형사처벌 판결을 받았으며, 심리결과 중국 형법이 열거하는 정치권리는 중국 헌법이 중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국적이므로 이○○의 정치권리를 박탈한다는 원심 판결은 부적절함.

이○○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것은 이○○를 강제추방 시키라는 판결과 상충됨. 상소인 주○○는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가 매매한 마약의 양, 공모활동 중 역할, 입건 후 범죄를 시인한 점 등의 사실과 범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 처벌함.

상소인 이○○, 최○○의 상소 이유와 이○○ 변호인의 변호의견은 모두 사실관계가 성립하지 안으므로 기각 처리함. 상소인 주○○의 상소이유는 사실과 부합하므로 인정함.

검찰의 기소내용, 상소인 이○○의 범죄사실, 상소인 최○○, 주○○의 형량 의견은 사실에 부합하고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인정. 원심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명확/충분하며 범죄 정의가 정확하고 재판과정이 합법적이며 상소인 최○○, 원심 피고인 왕○○에 대한 형량은 적합함.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225조1항(2),(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1,3항, 제25조1항, 제26조 1,4항, 제27조, 제67조3항, 제68조, 제347조1항, 2항(1), 제7항, 〈최고인민법원〉 제5조, 제7조, 〈최고인민법원〉제5조1항(3)의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

1. 연태시중급인민법원(烟台市中级人民法院)(2013) 烟刑一初字제82호 형사판결서 제1항, 4항 범죄인정부분, 제2,3항 범죄 양형 부분 유지. 즉, 피고인 이○○는 마약 매매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는 마약 매매죄에 해당하며, 피고인 최○○ 마약 매매죄에 해당해, 유기징역 15년, 재산 5만엔(元)몰수에 처하고, 피고인

왕○○은 마약 매매죄에 해당해 유기징역 10년, 벌금 2만엔(元)에 처함

2. 연태시중급인민법원(烟台市中级人民法院)(2013) 烟刑一初字제82호 형사판결서 제1항, 4항의 양형부분을 철회. 즉, 피고인 이○○를 무기징역에 처하고 평생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재산 10만엔(元)을 몰수하고, 강제추방함. 피고인 주○○는 유기징역 20년, 벌금 3만엔(元)에 처함.
3. 상소인(원심 피고인)이○○는 마약 매매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개인재산 10만엔(元)몰수에 처함
4. 상소인(원심 피고인)주○○는 마약 매매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10년, 벌금 3만엔(元)에 처함

[사례 23] 민○ 절도사건[456)]

최초 공소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조양구인민검찰원(北京市朝阳区人民检察院)

상소인(원심 피고인)민○(영문명 K0), 남, 32세(1981.11.28 출생),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국적, 절도죄 혐의로 2013년 9월 30일 구속, 같은 해 11월 6일 보석 석방, 2014년 4월 24일 재 보석 석방

북경시조양구인민법원(北京市朝阳区人民法院) 형사판결 내용:

피고인 민0는 2013년 9월 27일, 28일, 29일 간 북경시 차오양구 모 가게 콜롬비아 물품 전문매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콜롬비아 브랜드 WE3187-840형 오렌지색 오리털 점퍼 1개, PM1121-345형 녹색 오리털 조끼 1개, PM5415-028형 그레이색 오리털 점퍼 1개(상기 물품 가격은 총 4068.35엔(元))을 훔쳤음. 피고인 민○는 같은해 9월 30일 체포되었으며, 상기 장물을 입수 및 반환 하였음

1심 법원은 상기 사건의 증거로 피고인 민○의 진술, 증인 우○, 심○, 범○의 증언, 대질심문 기록, 현장 및 물증 사진, 소비 기록, 물품 발송 영수증, 피해재산 검증 결론서, 수사기록, 압수 및 반환 물품 리스트, 장물 수색 과정, 입건 과정 및 국적 신분 증빙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

상기 사실 관계 및 증거에 근거, 북경시조양구인민법원(北京市朝阳区人民法院)은 피고인 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였고, 액수가 커 절도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함. 피고인 민○이 범죄 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장물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된 점을 감안, 감형 처벌한다고 판결. 기존 판결은 피고인 민○에게 절도죄 혐의로 3개월 구속, 벌금 2천위엔(元), 강제추방(국외추방)에 처하였음

---

456)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제3중급 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4) 3중형종자 제00436호

민○의 상소 이유 : 범죄 내용이 경미하므로 집행유예, 강제추방 면제 희망
변호인의 변호 의견 : 민○의 범죄 내용이 경미하므로 집행유예, 강제추방 면제 희망

법원 심리 결과 : 1심 판결서에서 동 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나열한 증거는 1심 법원에서 심문대질하여 사실로 판명되었고 이를 인정함. 법원 심리기간동안 상소인 민0와 그의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법원은 1심 판결서에서 나열한 증거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증거도 확실 및 충분함

법원은 상소인 민○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몰래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고 절도 액수가 커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판결. 민○와 그 변호인이 민○의 범죄 내용이 경미하므로 집행유예, 강제추방 취소를 제기한 상소 이유와 변호 의견 관련, 민○이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치므로 집행유예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1심 법원이 사건 전체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 구속과 강제추방 판결을 내린 것은 합당함. 그러므로 민○이 제기한 상소이유와 변호인의 변호의견은 기각함.

1심법원은 민○의 범죄 사실, 특징, 내용, 사회에 미친 피해정도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범죄 인정, 법률 적용이 정확하고 양형내용도 적당하며, 재판 과정도 합법적이므로 이를 유지.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1)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함.

민○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사례 24] 농○○ 등 밀입국 사건[457)]

피고인 농○○, 남, 1991년생, 다이(岱依)족, 베트남사회주의공산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피고인 범○○, 남, 1985년생, 징(京)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 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피고인 등○○, 남, 1965년생, 요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 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피고인 황○○, 남, 1971년생, 다이(대의)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밀입국 혐의로 2014년 12월 23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 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24일 형사 구류, 2015년 1월 29일 구속

하구요족자치현인민검찰원의 기소 내용: 2014년 12월 23일 16시경, 피고인 농○○, 등○○, 황○○, 범○○, 이○○, 판○○(마지막 2명은 별도 입건 처리)는 중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협의끝에 베트남 라오지에성 멍캉현(老街省勐康县)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 경내로 밀입국 하기로 함.

당일 18시경, 피고인 농○○, 등○, 황○○, 범○○는 하구현(河口县)에서 하구현(河口县) 공안국 민경에게 체포됨. 상기 기소 내용 관련, 공소기관은 법원에 입건 등록서, 체표 경위, 호구 증명, 피고인 4명의 진술 내용을 제출하고, 피고인 농○○, 등○○1, 황○○, 범○○이 국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밀입국 하였으며, 범죄가 무겁고 〈중화인민

457)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자치현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5) 하형초자 제30호

공화국 형법〉제 320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피고인들은 밀입국죄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심리 결과: 2014년 12월 23일 16시 경, 피고인 농○○, 등○○1, 황○○, 범○○, 공범자인 이○○, 범○○(별도 입건 처리)는 출입국 수속 없이 중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 라오지에성 멍캉현(老街省勐康县)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하였음. 당일 18시 경 피고인 농○○, 등○○1, 황○○, 범○○은 하구현(河口县)에서 하구현(河口县) 공안국 민경에 체포되었음

법원 인정 내용: 농○○, 등○○1, 범○○, 황○○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관리법을 위반하고 밀입국한 범죄 행위가 엄중하고, 이들 모두 밀입국죄에 해당하며, 공소기관이 제기한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므로 죄가 성립됨. 동 사건은 공동범죄이며 주범과 방조범으로 구분되지 않음.

각 피고인은 입건 후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감형 처벌함. 동 사건의 피고인 4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거주지가 중국 국경에서 가깝고, 중국과 베트남 간 왕래가 빈번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조의 강제추방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322조, 제25조1항, 제67조3항, 제52조, 제53조, 제64조 규정에 따른 판결은 이하와 같음

1. 피고인 농○○은 밀입국 죄에 해당하므로 유기징역 10개월, 벌금 2000위엔(元)에 처하며 벌금은 판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 피고인 범○○은 밀입국죄에 해당하므로, 유기징역 10 개월, 벌금 2000위엔(元)에 처하며 벌금은 판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 피고인 등○○1은 밀입국죄에 해당하므로, 유기징역 10 개월, 벌금 2000위엔(元)에 처하며 벌금은 판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 피고인 황○○는 밀입국죄에 해당하므로, 유기징역 10 개월, 벌금 2000위엔(元)에 처하며 벌금은 판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사례 25]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458)]

최초 공소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광서장족자치구흠주시흠북구 인민검찰원 (广西壮族自治区钦州市钦北区人民检察院)

상소인 (원심 피고인) 배○○(외국명: BUIVANTRAN)

원심 판결 내용: 2013년 6월 5일 피고인 배○○는 광동(广东) 불산(佛山)시에서 곽○○(별도 입건)의 우링(五菱, 차 브랜드명) 승합차를 빌려, 다음날 오전 광서 동흥시(广西东兴市)로 감. 2013년 6월 6일 배○○는 추○○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한대를 가지고 동흥시(东兴市)로 와서 사람들을 불산(佛山)으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

추○○는 자신은 차가 없으므로 1300위엔(元)을 주고 양○○(별도 입건)의 진뻬이(金杯, 차 브랜드명) 승합차를 빌려 양○○와 광동(广西) 동흥시(东兴市)로 감. 배○○는 동흥(东兴)에 도착한 후, 북윤(北仑)강을 통해 월경해 베트남 망지에(芒街)로 돌아와 이미 약속해 둔 배○○, 곽○○, 사○○, 려○○, 려○○, 매○○, 류○○등 7명과 만나, 정○○와 밀입국을 하기로 한 사○○, 배○○, 진○○, 범○○, 설○○, 무○○ 등 6명, 베트남 망지에(芒街)에서 기회를 틈타 중국으로 밀입국한 장○○, 진○○ 등 2명도 배○○와 함께 중국으로 밀입국하였음.

17명은 당일 밤 11시 경 북윤(北仑)강에서 철조선(철로 만든 배)를 타고 중국 광시 동흥시(广西东兴市)로 밀입국 한 후, 양○○가 운전하는 진뻬이(金杯)승합차와 곽○○가 운전하는 우링(五菱)승합차를 타고 중국 광동 불산시(广东佛山市)로 이동. 양○○, 곽○○가 난베이(南北)고속도로 스탄(石滩)휴게소에 들렸을 때 공안에 체포됨

피고인 배○○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밀입국을 조직하였으며 그 행휘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8조제1항 규정에 위배되므로 타인 밀입국 조직죄에 해당. 배○○는 16명의 밀입국을 조직하였는바, 관련 인원이 많으므

458) 광서장족자치구 흠주시중급인민법원 형사 판결서(204) 인형이종자 제67호

로 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혹은 재산 몰수에 처함. 피고인 배○○의 범죄 사실, 특징, 경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반성하는 자세 등을 고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318조제1항(2), 제6조제1항, 제3항, 제35조, 제52조, 제53조, 제61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국경관리 형사사건에 대해 적용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제1조제2항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밀입국을 조직한 배○○는 유기징역 7년, 벌금 2만위엔(元), 강제 추방에 처함

배○○의 상소 내용: 원심의 사실 인정 오류가 있음. 자신이 인솔해 중국으로 들여온 인원은 7명의 베트남 친척이며, 원심에서 말한 16명이 아님. 원심 판결 형량 7년은 과중하므로 원심을 철회하고 유기징역 2년으로 감형해줄 것을 요청. 배○○의 변호인 역시 같은 의견 제출

흠주시(钦州市)인민검찰원 검찰은 "원심 판결 중 배○○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성립이 명확하고 양형이 적당함므로, 배○○의 상소이유와 변호인의 변호의견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심법원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주길 건의

심리 결과: 2010년 3월, 상소인 배○○는 베트남에서 중국 광동성 불산시 남해구(广东省佛山市南海区)로 불법 입국해 불법노동에 종사. 2013년 6월 1일, 배○○는 베트남에 있는 누나 배○○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중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망지에(芒街)에서 만나 같이 중국 광동(广东)에 와서 일하자고 하면서 밀입국비용은 중국에서 일을 해 번 돈에서 제하기로 하였음.

베트남에서 배○○, 곽○○, 사○○, 려○○, 려○○, 매○○, 류○○등 7명(모두 배○○의 친인척)은 같이 중국으로 밀입국해 불법노동을 하기로 결정. 같은 날 베트남인 정○○도 소식을 듣고 같은 방법으로 사0, 배○○, 진○○, 범○○, 설○○, 무○○등 6명이 배○○와 함께 밀입국하도록 조직. 2013년 6월 5일, 배○○는 광동 불산시(广东佛山市)에서 빌려온 곽○○(별도 입건)이 우링(五菱)승합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 광서 동흥시(广西东兴市)로 이동

2013년 6월6이, 배○○는 추○○(별도 입건)에게 전화로 연락해 밀입국 인원들을 불산(佛山)으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끌고 오라고 시킴. 추○○는 자신의 차가 없어 1300위엔(元)으로 양○○(별도 입건)의 차를 진뻬이(金杯)승합차를 빌려, 양○○와 함께 광서 동흥시(广西东兴市)로 이동. 배○○가 동흥(东兴)에 도착한 후, 북윤(北仑)강을 통해 불법 월경해 베트남 망지에(芒街)로 돌아갔고, 망지에(芒街)에서 사전에 연락해 둔 배○○, 곽○○, 사○○, 려○○, 려○○, 매○○, 류○○등 7명과, 정○○가 밀입국을 조직한 사○○, 배○○, 진○○, 범○○, 설○○, 무○○등 6명, 망지에(芒街)에서 중국 밀입국을 준비하던 장○○, 진○○ 등 2명과 함께 중국으로 밀입국하였음.

당일 밤 11시경 배○○등 17명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계인 북윤(北仑)강에서 철조선을 타고 중국 광시 동흥시(广西东兴市)로 밀입국한 후, 각각 배○○가 사전에 연락해 둔 양○○, 곽○○의 승합차를 타고 중국 광동 불산시(广东佛山市)로 이동. 양○○와 곽○○의 승합차에는 배○○등 17명이 타고 있었으며, 난베이(南北)고속도로 스탄(石滩)휴게소에서 공안에 체포됨

법원 판결 내용: 상소인 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관리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밀입국을 조직하였는바, 동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8조제1항 규정에 위배되어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에 해당. 배○○는 타인의 밀입국을 조직하였고, 관련 인원이 많으므로 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혹은 재산 몰수에 처함.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혹은 추가적으로 강제추방에 처할 수 있음. 배○○의 상소이유는 성립되지 않음 원심 판결은 배○○의 범죄사실, 특징, 범죄 경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유기징역 7년, 벌금 2만 위엔(元), 강제추방을 판결하였는바, 법률법규 내 감형처벌 한 것이며, 양형이 적당하므로 원심을 유지해야 함.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명확하며, 범죄 성립이 명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과정도 합리적이었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225조제1항(1)규정에 따라 상소는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례 26] 완○○ 절도 사건[459)]

피고인 완○○(피고인 자백) 남, 1983년7월1일생, 경(京)족, 베트남 국적. 절도죄 혐의로 2014년 5월 8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공안국에 체포, 같은 달 9일 형사 구류, 같은 해 5월 21일 구속.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瑶族自治县)인민검찰원의 기소 내용: 2014년 4월 15일 19시경, 피고인 완○○은 하구현(河口县) 환성로(环城路) 화석(华硕)컴퓨터 전문점에 가서 상점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화석(华硕)브랜드 노트북을 훔쳐 달아남. 피고인 완○○이 2014년 5월 8일 또다시 하구현(河口县) 환성로(环城路) 화석(华硕)컴퓨터 전문점에 갔을 때, 하구현(河口县) 공안국 민경에게 체포되었음. 도난당한 노트북 총이 2,650위엔(元)에 달한 것으로 확인 됨

심리 결과: 2014년 4월 15일 19시경, 피고인 완○○은 하구현(河口县) 환성로(环城路) 화석(华硕)컴퓨터 전문점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2650위엔(元)상당의 화석(华硕) 노트북을 훔쳐 달아남. 2014년 5월 8일 피고인 완○○가 또다시 환성로(环城路) 화석(华硕)컴퓨터 전문점에 나타났을 때, 하구현(河口县) 공안국 민경에게 체포되었음

법원 판결: 피고인 완○○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어기고 불법 점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쳤으며, 액수가 크므로 절도죄가 성립함. 공소기관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명확하며, 기소 죄명이 성립하므로 이를 인정함. 입건 후, 완○○이 범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감형 처벌함. 공소기관의 양형 의견을 인정함.

피고인 완○○는 베트남 국적으로 고련 법률법규에 따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후 강제추방 조치함. 회수하지 못한 도난된 노트북은 법에 따라 계속 피해금액을 추징함.

---

459)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자치현 인민법원형사판결서(2014) 하형초자 제80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제52조, 제25조, 제64조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함

피고인 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6개월, 벌금 2000위엔(元)(이미 납무)하며 형기 만료 후 강제추방함

회수하지 못한 노트북에 대해 관련 피해금액을 계속 추징함

[사례 27] 완○○의 타인 밀입국 조직 사건460)

피고인 완○○, 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대학 졸업, 무직,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 거주.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로 2014년 11월 4일 형사 구류, 같은 해 12월 11일 구속

길림성사평시인민검찰원(吉林省四平市人民检察院)의 기소 내용 2013년 4월~2013년 10월, 피고인 완○○불법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별도 입건)과 짜고 베트남 국적 미혼 여성 3명을 주베트남 중국대사관에서 L유형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한 뒤, 중국 내에서 미혼 남성과 만나 불법으로 중개료를 취득했음

2013년 8월, 피고인 완○○는 서○○(별도 입건)과 짜고, L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미혼증명서를 만들어 줌

2014년 10월 30일, 피고인 완○○는 베트남국적 미혼 여성 5명이 베트남 망지에(芒街)를 통해 수로로 광서성동흥(广西省东兴)항구 부근에서 밀입국하도록 조직했다가 공안에 체포 및 입건되었음

길림성사평시인민검찰원(吉林省四平市人民检察院)의 기소 내용: 피고인 완○○는 부당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려 외국인 여성의 밀입국을 조직하였으므로,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에 해당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심리결과: 2013년 4월~2013년 10월, 피고인 완○○는 부당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이○○(별도 입건)와 연락해 베트남 미혼여성 3명이 주베트남 중국대사관엣 L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입국 후 중국 내에서 미혼 남성과 만나게 해 수수료를 받아 챙김

460)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사평시 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5) 사형초자 제20호

2014년 10월 30일, 피고인 완○○는 베트남국적 미혼여성 5명이 베트남 망지에(芒街)에서 수로를 통해 광서성 동흥(广西省东兴)항구 부근에서 밀입국하도록 하다가 공안에 체포 및 입건 됨

심리 및 양측 대변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피고인 완○○가 베트남국적 미혼여성 3명이 관광비자를 받도록 도운 것이 출입국 문서를 편취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 완○○가 베트남 국적 미혼 여성 3명이 중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중국 남자와 만나 결혼하기 위함이며, 관광목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이라 속여 3명의 베트남 미혼 여성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출입국 증서를 편취한 행위에 속하며, 밀입국 행위에 속함. 피고인 완○○는 주베트남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주장라는 해명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각함

법원 판결: 피고인 완○○는 부당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비자를 편취하고 직접 입국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이 밀입국하도록 조직하였으며, 이는 중국 출입국관련규정을 어지럽혔으므로 그 행위는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다스려야 함. 피고인 완○○는 타인과 외국인 여성의 밀입국을 조직하여 공동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중 완○○는 주범에 속함.

피고인 완○○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제 추방조치가 가능함. 변호인 허경혜(许景惠)는 피고인 완○○를 감형처벌하고 강제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동 의견이 합당하므로 인정함.

공소기관은 완○○가 타인의 밀입국을 조직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충분하고 공소사실과 죄명 성립이 동일하다고 주장. 단, 피고인 완○○가 L비자를 소지한 베트남 여성 1명에게 미혼신분증을 만들어줬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증거도 부족하므로 기각.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80조[타인 밀입국 조직죄], 제67조 3항[자신의 범죄 자백], 제35조 [강제추방]등의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 피고인 완○○는 타인의 밀입국 조직죄로 강제 추방함

[사례 28] 색○○ 마약 밀수/매매/운반/제조 사건[461]

피고인 색○○(영문명: Sesay○), 혹은 마이크(영문명 Mike), 시에라리온 국적. 2013년 11월 1일, 동 사건 금화(金华)밀수단속 연안경비대 분국에 의해 형사 구류, 같은해 12월 6일 구속

절강성금화시인민검찰원(浙江省金华市人民检察院) 기소 내용 : 2013년 10월 피고인 색○○은 중국 이우국제상무성(义乌国际商贸城)에서 장사를 하는 김○○, 김○○에게 전화를 걸어 의류 샘플을 담은 소포가 외국에서 송부될 테니 김○○와 김○○가 잘 받아두라고 지시.

같은 달 24일 마약이 숨겨진 해외소포가 김○○에게 배달되었고, 우편 배달 번호는 EM956349600IN였음. 같은 달 26일 마약이 숨겨진 해외소포 김○○에게 배달되었고, 우편 배달 번호는 EM9563466651N였음.

상기 2개 소포가 도착한 후 밀수단속 연안경비대에 적발. 조사결과, 의류가 포장됨ㄴ 2개의 소포에는 마약이 들어 있었음. 우편배달번호EM956349600IN인 소포에는 헤로인 440.23g, 함량 30.9%가 들어 있었고, 우편배달번호 EM9563466651N인 소포에는 헤로인 420.88g, 함량 32.4%가 들어 있었음

2013년 10월 28일, 피고인 색○○는 중국 이우국제상무성(义乌国际商贸城)에서 장사를 하는 조0에게 전화를 걸어 샘플이 담긴 해외소포가 배달될 테니 잘 받아두라고 지시. 같은 달 30일 마약이 담긴 해외소포가 조○○에게 배달되었고, 우편배달번호는 DHL1971197830였으며, 추후 수사관에게 압수당했음.

당일 피고인 색○○은 광주(广州)발 이우(义乌)향 기차에 타고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소포를 받으러 조○○가 있는 곳을 찾았다가 체포됨. 조사 결과 소포 안에는

461)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금화시 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14) 절금형1초자 제26호

헬스기기 방석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으며, 확인 결과 코카인 99.45g인 것으로 확인됨

심리 결과: 2013년 10월 피고인 색○○은 중국 이우국제상무성(义乌国际商 贸城)에서 장사를 하는 김○○, 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샘플이 담긴 해외 소포를 대신 받아줄 것을 지시. 이와 동시에 이우국제상무성(义乌国际商贸城)에서 장사를 하난 왕○○에게 전화를 걸어 김○○, 김○○에게서 상기 소포를 받아와 광주(广州) 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 2013년 10월 24일, 김○○는 EM956349600IN번호의 소포를 수령하였고, 10월 26일 김○○는 EM9563466665IN번호의 소포를 수령. 그 후, 상기 소포는 압수당했음. 조사 결과 상기 2개 소포에 담긴 의류 치마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음

20113년 10월 28일, 피고인 색○○은 이우국제상무성(义乌国际商贸城)에서 장사를 하는 조○○에게 전화를 걸어 샘플이 담긴 해외소포를 대리수령해 줄 것을 요청 후, 10월 30일 조○○는 DHL1971197830번호의 해외소포를 수령하였으나, 동 소포는 밀수단속 연안경비대에 압수당함.

2013년 10월 31일 피고인 색○○는 광주(广州)발 이우(义乌)향 기차를 타고 조○○를 찾아가 마약을 수령하려다 체포됨. 조사결과 소포 내 헬스기기 방석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음. EM956349600IN번호 소포 내에는 헤로인 440.23g, 함량 30.9%가 숨겨져 있었고, EM9563466665IN번호 소포 안에는 헤로인 420.88g, 함량 32.4%가 숨겨져 있었으며, DHL1971197830번호 소포 안에는 코카인 99.45g이 숨겨져 있었음

사건 발생 후, 절강성금화시(浙江省金华市) 밀수단속 연안경비부서는 피고인 색○○의 삼성 휴대폰, 노키아 휴대폰 각 1대를 압수.

법원 판결: 피고인 색○○은 중국의 마약 관리 규정과 세관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세관 감독을 피해 마약을 밀수, 운반하였으므로 마약 밀수/운반죄에 속함. 공안기관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함. 피고인 색○○의 해병, 변호인의 변호의견은 법원이 조사한 사실 및 증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 피고인 색○○의 마약 밀수와 운반 적발 횟수가 여러 차례이나 아직 사회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과 동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미루어볼 때 색○○를 강제추방 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제347조제1항, 제35조, 제64조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함. :피고인 색○○은 마약 밀수 및 운반죄에 해당하므로 강제추방 함 .

[사례 29] 심○○ 절도 사건[462)]

피고인 심○○(영문명(○○, 중문명 관○○), 여, 1968년5월 26일 출생, xx국적, 여권번호xxxx. 절도죄 혐의로 2015년 2월 27일 체포, 다음날 형사 구류, 같은 해 3월 13일 구속

북경시조양구인민검찰원(北京市朝阳区人民检察院)의 기소 내용: 피고인 심○○은 2015년 2월 27일 12시경, 북경 수도국제공항 T3의 XX주류 및 담배 판매점, 선물용품점, 명품점 등에서 MEVIUS 담배, Dior 선글라스, SK-Ⅱ 화장수 등 6560위엔(元)상당의 20개 물품을 훔쳤고, 피고인 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장물은 모두 압수 및 환수 조치되었음.

북경시조양구인민검찰원(北京市朝阳区人民检察院)은 피해업체가 제출한 증거, 증언, 확인의견, 피고인의 자백 등 증거자료들을 법원에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심○○를 절도죄로 기소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64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제기

피고인 심○○은 기소사실 및 죄명에 대해 이견을 달지 않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크지 않고 주관적 악의가 많지 않으며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용서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해주고 강제추방은 하지 말 것을 요청

심리 결과: 피고인 심○○는 2015년 2월 27일 12시 경, 북경 수도국제공한 T3의 XX회사 담배주류판매점, 선물용품점, 명품점 등에서 MEVIUS 담배, Dior 선글라스, SK-Ⅱ화장수 등 6560위엔(元)상당의 20개 물건을 훔쳤음. 피고인 심○○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장물은 이미 압수 및 환수 처리되었음 피고인은 이미 피해 업체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법원 판결 내용: 피고인 심○○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 위반하고 불법 점유의 목

462)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조양구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5) 조형초자 제1491호

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였으며, 액수가 크므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함.

북경시조양구인민검찰원(北京市朝阳区人民检察院)의 기소 내용 중 피고인 심○○이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분명하므로 죄명이 성립됨. 피고인 심○○가 범죄 미수에 그쳤고, 입건 후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장물은 모두 압수 및 환수조치 되었으며 용서를 구했으므로 감형 처벌함. 변호인이 제기한 의견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인정함. 다만, 피고인을 강제추방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은 기각함

결론적으로, 피고인 심○○의 범죄 사실, 특징, 경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고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1항, 제264조, 제23조, 제67조3항, 제61조, 제52조, 제53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함: 피고인 심○○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구금 5개월, 벌금 2000위엔(元), 강제추방에 처함

[사례 30] 송○○, 정○○, 배○○, 한○○ 등 4명의 사기사건[463]

피고인 배○○, 남, 1979년 4월 7일 길림성 연길시(吉林省延吉市) 출생, 조선족, 중졸, 무직, 현재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吉林省延吉市公园街)에 거주. 컴퓨터 정보 데이터 불법 취득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죄 혐의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

피고인 한○○, 남, 1983년 11월 18일 길림성 용정시(吉林省龙井市) 출생. 조선족, 중졸, 무직, 현재 길림성 용정시 용문가(吉林省龙井市龙门街)에 거주, 길림성 연길시 북산가(吉林省延吉市北山街)에 거주.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죄 혐의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

피고인 정○○, 남, 1985년8월4일 출생, 한국 국적, 고졸, 무직, 호적은 한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住吉林省延吉市公园街) 거주.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 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죄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

피고인 송○○, 남, 1988년 4월 27일생. 한국국적, 고졸, 무직, 호적은 한국 대전광역시 중구.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吉林省延吉市公园街)거주.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취득혐의로 2013년 10월 14일 형사 구금. 사기혐의로 2013년 11월 19일 구속.

연길시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 기소 내요: 2013년 3월 피고인 배○○, 한○○, 정○○(한국국적, 도주중), 윤○○(도주중)은 연길시 10여개 음란채팅작업장에서 공모한 후, '조건식 만남'방식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음. 음란채팅작업장에서 인터넷상 카카오톡 등 채팅 도구를 이용해 한국인 여성과 남성의 채팅인척 속인 수 성매매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지정계좌(한국 불법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게 하였음.

---

463)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 형사판결서(2014) 연형초자 제377호

이 과정에서 윤○○는 한국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구해 그들에게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음. 정○○는 한국에서 불법카드를 구해 피해자들의 돈을 불법카드로 이체하면 그 돈을 즉시 출금하여 사전 합의 된 비율에 따라 자기 몫을 챙기고, 나머지는 배○○가 지정한 이○○의 계좌로 이체. 이○○는 돈의 출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환율 차익을 수취하였으며, 배○○의 지시에 따라 정○○로부터 돈을 받은 후 배○○가 지정한 금태○(金太○)의 공상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음.

배○○, 한○○가 관리하는 작업실은 음란채팅작업장에 정○○가 구매한 한국 불법카드번호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돈이 이체된 상황을 확인하고 정○○가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를 이체해온 상황을 확인. 동 작업실은 피고인 정○○, 피고인 송○○, '준호(도주중)'등이 있었으며, 정○○는 보증인 신분이었고, 정○○의 연락을 책임지고, 불법카드정보를 음란채팅장에 알려주고, 불법카드 내 자금 이체 상황을 확인. 2013년 8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송○○가 정○○를 대신하고 있었음. 최근 송○○의 노트부에 기록된 한국피해자는 1500명 정도이며 사기금액인 5억9천여만원에 달함

2013년 10월 12일 17시경, 공안기관은 길림성연길시공원가서좌소구 (吉林省延吉市公园街西座小区)부근 pc방에서 피고인 배○○를 체포하였고, 당일 13시경 연길시 북산가 명사원소구(延吉市北山街名仕苑小区)에서 피고인 한○○를 체포, 당일 15시경 연길시 공원가 하경가원(延吉市公园街河景家园)에서 피고인 정○○와 송○○를 체포하였음

연길시인민검찰원(延吉市人民检察院)은 피고인 배○○, 한○○, 정○○, 송○○가 불법 점유의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만들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수액이 거액에 달하는바, 동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66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명확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기소

심리 결과: 2013년 3월, 피고인 배○○, 한○○, 정○○(한국국적, 도주중) 윤○○(도

주중)은 연길시 10개의 음란채팅작업장에 연락해 '조건식 만남'방식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였음. 음란채팅작업장은 인터넷상 카카오톡 등 채팅도구를 이용해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이 채팅하는 것처럼 꾸미고 성매매를 한다며 상대방에세 지정계좌(한국 내 불법 카도) 돈을 이체하라고 시킴.

윤○○는 한국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고 그들에게 확인해주는 역할을 맡음. 정○○는 한국에서 불법카드를 사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해오면 즉시 돈을 인출해 사전에 얘기된 자기 몫은 떼고 나머지를 이○○에게 송금. 이○○는 돈의 출처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환율 차액만 챙기고 배○○의 지시에 따라 정○○쪽에서 받은 돈을 배○○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배○○, 한○○이 관리하는 작업장은 음란채팅작업장에게 정○○가 구매한 한국 불법카드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자 돈의 이체 상황을 확인하고, 정○○가 자신의 몫을 떼고 송금한 음란채팅작업장으로 송금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함.

동 작업실에는 피고인 정○○, 피고인 송○○, '준호'(도주중)등이 있었으며, 정○○는 보증인 신분이었고, 정○○와의 연락을 책임지고, 불법카드 정보를 음란채팅작업장에 공급하고, 송금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함. 2013년 8월부터 체포되기 직전까지 송○○가 정○○를 대신해 이 작업을 하였음. 최근 은행카드 명세내역 중 이○○로부터 배○○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38363위엔(元)임

2013년 10월 12일 17시경, 공안기관이 길림성연길시고원가서좌소구 (吉林省延吉市公园街西座小区)부근의 pc방에서 피고인 배○○를 체포하였고, 당일 13시경 연길시 북산가 명사원소구(延吉市北山街名仕苑小区)에서 한○○를 체포하였으며, 당일 15시경 연길시공원가하경가원(延吉市公园街河景家园)에서 피고인 정○○와 송○○를 체포하였음

법원 판결 내용: 피고인 배○○, 한○○,정○○, 송○○는 불법 점유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편취 액수도 거액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

해당. 공소기관이 기소한 죄명이 성립함. 피고인 배○○, 한○○, 정○○, 송○○가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였으므로 정상참작하여 감량처벌함.

피고인 배○○, 한○○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66조 사기죄, 제25조 공범죄 규정에 따라, 피고인 정○○, 송○○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66조 사기죄, 제25조 공범죄, 제35조 강제추방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판결함

1. 피고인 배○○, 사기죄, 유기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0위엔(元)
2. 피고인 한○○, 사기죄, 유기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0위엔(元)
3. 피고인 정○○, 사기죄, 유기징역 3년, 벌금 10000위엔(元), 강제추방
4. 피고인 송○○, 사기죄, 유기징역 3년, 벌금 10000위엔(元), 강제추방

[사례 31] ○○Humphrey 개인정보 불법취득 사건[464)]

상해시제일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一中級人民法院)은 2014년 8월8일 (2014)호일중형초자제127호(滬一中刑初字第127號) 형사판결을 내렸다. ○○Humphrey의 개인정보 불법취득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만위엔(元)과 강제추방을 병과했다. 형기는 2013년 7월10일부터 2016년 1월9일까지다.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교부하여 집행한다.

집행기관인 상해시 청포감옥(上海市青浦監獄)은 2015년 5월28일 (2015)호사감청감자제179호(滬司獄青減字第179號) 감형 건의서(減刑建議書)를 제출하고 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법원은 법에 의하여 합의정(合議庭:인민법원의 기본적인 재판 조직으로 고정불변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구성됨. 3인 이상의 법관, 또는 법관과 국민 배심원이 함께 재판)을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였고 현재 심리가 종결됐다.

집행기관은 범죄자 ○○Humphrey가 복역기간동안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죄자 행위 개조 규범을 준수하고 교육을 통해 교정 교화되었으며 복역 태도가 우수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제기했다. 범죄자 ○○Humphrey에 대해 강제추방 처분은 변화 없이 감형할 것을 건의했다. 심리를 통해 범죄자 ○○Humphrey가 복역기간동안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법률 법규와 교도소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을 통해 교정 교화되었음이 드러났다.

상술한 사실은 범죄자 ○○Humphrey의 범죄자백서, 교도소 규정 및 기율 준수 상황 설명서, 범죄자 점수 명세서, 범죄자 평가 감정서 등 증거로 증명됐다.

법원은 범죄자 ○○Humphrey가 형벌집행기간동안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 감형 조건에 부합하여 범죄자 ○○Humphrey에 대한 감형 및 강제추방 처분

---

464)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제일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一中級人民法院) 형사재정서(刑事裁定書) (2015)호일중형집자제1041호(滬一中刑執字第1041號)

불변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 제262조 2항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78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범죄자 ○○Humphrey에 대해 징역을 7개월 감형한다. 강제추방 처분은 불변한다.

[사례 32] 손○○ 고의상해 사건[465)]

최초 공소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위해경제기술개발구 인민검찰원(山東省威海經濟技術開發區人民檢察院)

상소인(원심 피고인): 손○○(영문명: SUNTSUNGHSUEH), 한국계 대만인, 여행증명서 번호는 T00800076. 산동성 위해시 환취구 온천진(山东省威海市环翠区温泉镇) 덕성건재유한회사(德盛建材有限公司)의 사장.2015년 4월24일 고의상해죄 혐의에 대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원심 판결은 다음의 내용을 인정했다. 2015년 4월4일 0시경 피고인 손○○와 친구 김○○(한국 국적)는 위해경제기술개발구 한국풍정가(韓國風情街) 청도생맥주광장(青島紮啤廣場)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이○○를 만나 이○○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이○○는 식당을 떠났다. 새벽 1시30분 경, 이○○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는데 손○○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쌍방은 말다툼을 하며 서로 잡아당겼다. 이○○가 넘어진 후 손○○는 이○○의 왼쪽 가슴을 발로 한 번 밟아 좌측 5~7번 늑골이 골절돼 경상2급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9일, 피고인 손○○는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7만위엔(元)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손○○가 사소한 일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여 경상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고의상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손○○는 범죄 후 자수를 하고 사실대로 범죄 사실을 진술하였다.

자수를 했으므로 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손○○가 적극적으로

---

465)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위해시 중급인민법원(山東省威海市中級人民法院)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2015)위형이종자제53호(威刑二終字第53號)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 제234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상해죄로 피고인 손○○를 강제추방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상소인 손○○가 사소한 일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여 경상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고의상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손○○는 범죄 후 자수를 하고 사실대로 범죄 사실을 진술하였다.

자수를 했으므로 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한다. 피고인 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한다. 손○○는 1심 판결에서 그에게 처벌한 강제추방이 잘못된 법률 적용이라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손○○가 제시한 여권과 여행증명서에 근거하여 그가 대만인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그에게 강제추방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률 적용이었다. 상소인의 상소 이유가 성립되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위해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 (2015) 위경기구형초자제110호(威經技區刑初字第110號) 형사판결의 피고인 손○○에 대한 정죄 부분 즉, 피고인 손○○가 고의상해죄를 지었다는 것은 유지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위해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 (2015) 위경기구형초자제110호 형사판결의 피고인 손○○에 대한 형량부분 즉, 피고인 손○○에 대한 강제추방 판결을 파기한다.
3. 상소인 (원심 피고인) 손○○는 고의상해죄를 지었으나 형사처벌은 면한다.

[사례 33] 도○○, 고(顧)○○, 고(古)○○ 여성, 아동 유괴·매매 사건[466]

피고인: 도○○. 남성, 1981년 11월9일 출생, 묘족, 운남성 마관현(馬關縣) 출신, 초졸, 농민. 여성, 아동 유괴·매매 범죄 혐의로 2014년 12월7일 하구요족자치현(河口瑤族自治縣) 공안국에 붙잡혔다. 같은 달 8일 형사구류(刑事拘留:형사 소송 중 구류. 법으로 정한 긴급한 상황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체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조치)됐고 2015년 1월14일 체포됐다.

피고인 고○○. 남성, 1996년 4월1일 출생, 운남성 마관현 출신, 초졸, 농민. 여성, 아동 유괴 매매 범죄 혐의로 2014년 12월7일 하구요족자치현 공안국에 붙잡혔다. 같은 달 8일 형사구류되었고 2015년 1월14일 체포됐다.

피고인 고(顧)○○. 남성, 1994년 출생, 묘족, 베트남 국적. 여성, 아동 유괴 매매 범죄 혐의로 2014년 12월7일 하구요족자치현 공안국에 붙잡혔다. 같은 달 8일 형사구류되었고 2015년 1월14일 체포됐다.

하구요족자치현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14년 12월5일 20시경, 베트남 국적의 남성 '아원(阿源)', '아부(阿富)', '아장(阿長)'(3인 별개 사건 처리)은 피해자 류○○, 농○○1, 농○○2 등 베트남 국적의 여성 세 명을 속여 하구현(河口縣) 팔자하(八字河) 중국-베트남 국경지대로 데려와 밀입국하고 피해자 세 명을 피고인 도○○, 고(顧)○○, '정'(별개 사건 처리)에게 넘겼다. 도○○, 고(顧)○○, '정'은 류○○, 농○○1, 농○○2를 하구 농장 14대(隊)의 도○○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데려가 피고인 고(古)○○를 불러 함께 감시했다. 구매자를 찾아 피해자 세 명을 팔고자 했으나 후에 공안 인민경찰(公安民警:공안부가 지휘하는 경찰)에 검거됐다. 상술한 기소에 대해 공소기관은 사건접수 기록서, 검거 경과, 호적증명서, 피고인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했다. 피고인 도○○, 고(顧)○○, 고(古)○○가 팔 목적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세 명을 유괴·매매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0조의 규정을 위반한

466)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雲南省) 하구요족자치현인민법원(河口瑤族自治縣人民法院) 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2015)하형초자제32호(河刑初字第32號)

것으로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보았다.

심리를 통해 다음의 내용이 밝혀졌다. 2014년 12월5일 20시 경, 베트남 국적 남성 '아원', '아부', '아장'(3인 별개 사건 처리)은 피해자 류○○, 농○○1, 농○○2 등 베트남 국적의 여성 세 명을 속여 하구현(河口縣) 팔자하(八字河) 중국-베트남 국경지대로 데려와 밀입국하고 피해자 세 명을 피고인 도○○, 고(顧)○○, '정'(별개 사건 처리)에게 넘겼다. 도○○, 고(顧)○○, '정'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 류○○, 농○○1, 농○○2를 하구 농장 14대의 도○○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데려가 가두고 피고인 고(古)○○를 불러 함께 감시했다. 구매자를 찾아 피해자 세 명을 팔고자 했다.

2014년 12월7일 피해자 류○○, 농○○1, 농○○2는 공안 인민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도○○, 고(顧)○○, 고(古)○○가 팔 목적으로 만 14세와 14세 미만의 베트남 국적 소녀 세 명을 유괴·매매한 행위는 모두 여성, 아동 유괴 ·매매죄를 구성한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한 죄목이 성립한다.

본 사건은 공동범죄로 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들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 안에 가두고 감시하였으며 공안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출할 때까지 구매자를 찾아 피해자를 팔아넘기려고 했었기 때문에 세 피고인이 본 사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상당하므로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하다.

각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한 후 모두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진술해 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위자가 팔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 아동을 보내거나 중간에서 연결하는 등 행위를 저지르면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가 성립된다. 본 사건의 세 피고인은 사전에 '정'이 그들에게 사람을 맞이하고 감시를 시킨 목적을 알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가둔 과정에서 세 피고인은 세 명의 피해자가 팔리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 고(顧)가 제기한 '여성을 유괴·매매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법률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번호 운(云)HQA640의 검은색 오토바이는 법정 심리 중 피고인 도○○의 소유 차량이며 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를 팔자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데려가 가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압수한 파란색 모터스쿠터와 파란색·흰색 무늬의 모터스쿠터는 각각 범행 도구로 쓰여 법에 의하여 몰수했다. 또한 압수했던 검은색 베이징자동차 사브 승용차 한 대, 검은색 흰색 무늬 접이식 승용차 열쇠 한 개, 흰색 평판 터치 스마트폰 한 대, 흰색 터치폰 한 대는 현재 상술한 물품과 본 사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고(古)○○는 베트남 국적이며 죄가 무겁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만기 석방 후 강제추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0조, 제25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64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도○○는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2. 피고인 고(顧)○○는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3. 피고인 고(古)는 여성, 아동 유괴·매매죄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만기 석방 후 강제추방한다.
4. 범행도구로 쓰인 차량번호 운(云)HQA640의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 엔진 번호 DJ9003416의 파란색 모터스쿠터, VIN(차량식별코드) LBJTCJ3A8DA195875의 파란색·흰색 무늬 모터스쿠터는 법에 의하여 몰수한다. 압수했던 베이징자동차 사브 승용차 한 대, 검은색·흰색 무늬의 접이식 승용차 열쇠 한 개, 흰색 평판 터치 스마트폰 한 대, 흰색 터치폰 한 대는 법에 의하여 피고인 도○○, 고(顧)○○에게 반환한다.

[사례 34] 유○○, 조○○ 절도사건[467]

원 공소기관: 상해시 황포구 인민검찰원(上海市黃浦區人民檢察院).

상소인:(원심 피고인) 조○○, 남성, 1988년 10월16일 출생, 상해시 포동신구(浦東新區) 잠시 거주.

원심 피고인: 유○○, 남성, 1986년 7월15일 출생, 상해시 황포구에 잠시 거주.

상해시 황포구 인민법원은 피해자 상○○의 진술에 근거하여 증인 안○○와 개○○의 증언, 사건 현장 사진, 폐쇄회로TV와 영상 캡처, 공안기관이 수거한 증거목록, 지불 명세, 장물 전동자전거 사진, 전자 등록 정보, 상해시 황포구 발전개혁위원회(發展和改革委員會)의 가격 감정 결론서 및 피고인 유○○, 조○○의 진술과 식별한 필기문서 등을 증거로 다음의 내용을 인정했다.

2016년 5월11일 3시 경, 피고인 유○○, 조○○는 본 시 금릉중로(金陵中路)와 보안로(普安路)의 교차로 횡단보도에 왔다. 유○○가 피해자 상○○가 이곳에 세워둔 로마의 휴일 72v20ah모델 전동오토바이(가격 감정을 통한 가치 2,159위엔(元))의 용머리 자물쇠를 부순 후 조○○는 이를 타고 유○○는 자신의 전동오토바이에 타 뒤에서 이를 밀면서 차량을 훔쳐 현장을 떠났다.

공안기관은 그날 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가 제공한 차량 위치 정보를 통해 두 명의 피고인을 검거했고 장물도 찾아냈다. 상해시 황포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유○○, 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함께 몰래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고 금액이 커 그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 본 사건은 공동범죄로 그 중 피고인 유○○는 공동범죄 중 주요한 역할을 한 주범이다. 피고인 조○○는 부차적인 역할을 한 종범으

467)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제이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二中級人民法院) 형사재정서(2016) 호02형종1069호(滬02刑終1069號)

로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두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사실대로 범행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제1항, 제26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과 제4항, 제27조, 제67조 제3항,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도죄로 피고인 유○○는 구역(拘役:단기간 동안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며 수죄병과 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000위엔(元)과 강제추방을 병과한다. 피고인 조○○는 구역 5개월에 처하고 벌금 1000위엔(元)과 강제추방을 병과한다.

상해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上海市人民檢察院第二分院)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서 인정한 상소인 조○○, 원심 피고인 유○○의 절도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바르게 법률을 적용했다. 형량이 적당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법원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2심 심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동일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상소인 조○○와 원심 피고인 유○○의 절도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바르게 법률을 적용했다. 형량이 적당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조사를 통해 상소인 조○○와 원심 피고인 유○○는 모두 공안 단계에서 유○○가 조○○에게 훔친 전동차가 유○○가 도둑맞은 차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차량이 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훔친 차량의 굴레는 잠겨져있었고 차량 자물쇠를 강제로 부순 후 조○○가 훔친 차량을 타고 앞에 가고 유○○는 자신의 전동차를 타고 뒤에서 발로 밀었다. 두 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차량을 밀고 갔다. 두 명의 진술과 행위는 조○○가 절도에 대해 분명히 인지했음을 설명한다. 원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에 따라 상소인 조○○에게 구역 5개월과 벌금 1000위엔(元), 강제추방을 병과한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다.

그러므로 상소인 조○○의 상소의견 및 그 변호인의 변호 의견을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해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의 의견은 올바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사례 35] 주○○, 반○○1, 오○○, 임○○2 등 도박장 개설 사건[468)]

원 공소기관: 절강성 온주시 녹성구 인민검찰원(浙江省溫州市鹿城區人民檢察院).

상소인(원심 피고인): 오○○.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 21일 체포되었다.

상소인 (원심 피고인): 임○○1.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같은 해 9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2014년 1월7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주○○. 고의상해죄로 2001년 4월10일 징역 6개월에 처했고 같은 해 9월9일 석방됐다.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5월2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6월7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반○○1.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임○○2.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이○○1.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등○○.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이○○3.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왕○○1.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팽○○.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21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이○○4.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

468)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浙江省溫州市中級人民法院)형사판결문(刑事判抉書)(2014)절온형종자353호(浙溫刑終字第353號)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13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2014년 1월7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김○○.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10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2014년 1월7일 체포되었다.

원심 피고인 사○○.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4월12일 입건되어 같은 달 14일 형사구류 되었고 같은 해 5월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원심은 다음의 내용을 인정했다. 2013년 3월 하순부터 4월까지 피고인 주○○, 반○○는 등○○1, 오○○(모두 별개 사건 처리)과 결탁하여 온주시 녹성구 탕가교남로 대자연가원(溫州市鹿城區湯家橋南路大自然家園) Z1동 101호에 역전 신홍성 보드·카드게임방(站前新鴻盛棋牌室)을 개설하고 타인들이 텍사스 홀덤 포커 형식으로 도박을 하도록 조직하고 '개평'을 받았다. 본 보드·카드게임방의 총 투자액은 600만위엔(元)이며 그 중 피고인 주○○가 50만위엔(元), 피고인 반○○1이 25만위엔(元)을 출자했다. 본 보드·카드게임방 안에서 현금을 충전하여 칩으로 바꿀 수 있고 도박 후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현금과 칩은 동등하게 교환이 이루어졌다. 본 보드·카드게임방은 모○○(별개 사건 처리)가 법정대표인을 맡았다. 피고인 오○○는 '교장(校長)'을 맡아 딜러 모집과 교육, 장소 관리를 맡았다. 또한 피고인 임○○2를 고용해 '교장 보조'를 맡겨 직원 출퇴근 관리, 당직 배정 등 일상 사무 처리를 돕게 했다. 피고인 임○○1를 고용해 손님에게 현금을 교환해줬다.

피고인 이○○2, 등○○, 이○○3, 왕○○1, 이○○1, 팽○○, 이○○4, 김○○를 고용해 번갈아가며 주(主) 딜러, 부(副) 딜러 및 케이지 캐셔를 맡기고 카드 정리, 개평 취득, 음료 제공, 손님 칩 환전 등을 하게 했다. 그 중 피고인 김○○는 4월 초에 떠났다. 같은 해 4월12일 23시 경, 양○○1, 구○○, 우○○, 해○○, 양○○2, 장○○3, 은○○, 전○○, 등○○2, 채○○, 장○○4, 주○○, 이○○5 등 16인은 본 보드·카드게임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공안요원에게 검거됐다.

현장에서 획득한 도박자금은 74645위엔(元), 개평 액수는 3815위엔(元)이었다.

같은 해 4월 피고인 사○○는 상술한 보드·카드게임방의 001실에서 타인들이 사천마작을 하도록 조직하고 개평을 취했다. 일부 개평은 보드카드 게임방에 상납했다.

같은 해 4월12일 23시 경 진○○1, 한○○, 장○○2, 진○○2, 진○○3, 진○○4, 하○○2 등은 상술한 방 안에서 도박을 하다가 공안요원에게 검거됐다. 현장에서 획득한 도박자금은 27300위엔(元), 개평 액수는 3000위엔(元)이었다. 검거될 때까지의 누적 개평 액수는 6000위엔(元)이었다.

원심 법원은 도박장 개설죄로 피고인 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0위엔(元)을 병과했다. 피고인 주○○에게는 징역 11개월15일과 벌금 20000위엔(元)을 병과했다. 피고인 반○○1에게는 징역 11개월과 벌금 20000위엔(元)을 병과했다. 피고인 임○○2, 임○○1, 이○○1, 이○○2, 등○○, 이○○3, 왕○○1, 팽○○, 이○○4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20일과 벌금 15000위엔(元)을 병과했다.

피고인 김○○에게는 구역 6개월과 벌금 8000위엔(元)을 병과했다. 도박죄로 피고인 사○○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0위엔(元)을 병과했다. 피고인 오○○에게는 강제추방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 반○○1, 오○○, 임○○2, 임○○1, 이○○1, 이○○2, 등○○,이○○3, 왕○○1, 팽○○, 이○○4, 김○○의 불법 소득 3815위엔(元)을 추징했다. 압수한 피고인 사○○의 불법소득 6000위엔(元)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상소인 오○○, 임○○1, 원심 피고인 주○○, 반○○1, 임○○2, 이○○1, 이○○2, 등○○, 이○○3, 왕○○1, 이○○4, 김○○가 결탁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행위는 도박장 개설죄를 구성한다. 원심 피고인 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도박한 행위는 도박죄를 구성한다. 원심 판결은 상술한 피고인 14명이 법정에 출두한 후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모두 가볍게

처벌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

그 중 임○○2, 임○○1, 이○○1, 이○○2, 등○○, 이○○3, 왕○○1, 팽○○, 이○○4, 김○○는 공동 범죄 중 부차적, 보조적 역할을 했으므로 종범이고 김○○는 범죄 참여 기간이 짧으므로 모두 가볍게 처벌한다. 주○○, 반○○는 공동 범죄 중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 모두 정상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한다. 사○○는 범죄 정황이 심각하지 않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주○○는 고의 범죄 전과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오○○는 가족이 모두 중국 국적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일과 생활을 하므로 오○○의 범죄 정황, 성질, 결과, 본인의 사정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강제추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양, 양육 책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오○○에 대한 강제추방은 적절하지 않다. 원심 판결에서 그에게 강제추방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고쳐야 한다.

원심 판결의 정죄는 올바르고 상소인 임○○1 및 동 사건 인원의 참여 시간, 범죄 정황,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내린 형량은 적당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오○○ 및 그의 변호사가 요구한 강제추방 부적용 의견은 성립하므로 받아들인다. 임○○1이 요구한 원심 판결 파기는 이유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호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3조 제2항과 제1항, 제25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제27조, 제72조 제1항과 제3항, 제73조 제2항과 제3항,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온주시 녹성구 인민법원 (2014) 녹형초자제143호 형사판결(溫鹿刑初字第143號刑事判決) 제1부터 14항, 제16, 17항을 유지한다. 즉, 도박장 개설죄로 피고인 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피고인 주○○에게 징역 11개월 15일과 벌금 20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피고인 반○○1에게 징역 11개월과

벌금 20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피고인 임○○2, 임○○1, 이○○1, 이○○2, 등○○, 이○○3, 왕○○1, 팽○○, 이○○4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20일과 벌금 1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피고인 김○○에게는 구역 6개월과 벌금 8000위엔(元)을 병과한다. 도박죄로 피고인 사○○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피고인 주○○, 반○○1, 오○○, 임○○2, 임○○1, 이○○1, 이○○2, 등○○, 이○○3, 왕○○1, 팽○○, 이○○4, 김○○의 불법소득 3815위엔(元)을 추징한다. 압수한 피고인 사○○의 불법소득 6000위엔(元)은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온주시 녹성구 인민법원 (2014) 녹형초자제143호 형사판결 제15항, 즉 피고인 오○○의 강제추방은 파기한다.

[사례 36] 오○○ 고의상해 사건[469)]

피고인 오○○: '오영청'이라는 이름도 씀. 남성, 1994년 베트남 출생, 묘족, 초졸, 2013년 3월5일 베트남에서 사회(四會)로 밀입국(이상 기본 인적사항은 모두 스스로 밝힘). 본 사건으로 인해 2013년 6월28일 형사구류 됐으며 같은 해 7월10일 체포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사회시 인민검찰원(廣東省四會市人民檢察院)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13년 6월26일 밤 22시경 피고인 오○○가 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말해 쌍방간에 갈등이 생겼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오○○가 재크나이프를 꺼내 이○○의 복부를 찔렀고 법의학 감정을 한 결과 중상이었다. 공소기관은 이에 피고인 오○○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중상을 입힌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의상해죄로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상응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심리를 통해 다음의 내용이 밝혀졌다. 2013년 6월26일 밤 22시경 피고인 오○○가 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말해 쌍방간에 갈등이 생겼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오○○가 재크나이프를 꺼내 이○○의 복부를 찔렀다. 그 후 피고인 오○○는 숙소에서 신고를 받고 온 공안 인민경찰에게 검거됐다. 법의학 감정을 한 결과 이○○의 상해정도는 중상이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오○○가 중국 법률을 무시하고 무기를 가지고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중상을 입힌 행위는 고의상해죄를 구성한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죄목이 성립되어 받아들인다. 변호인이 제기한 제1항 변호 의견에 대해 중산대학 법의학 감정 센터가 발급한 사법감정 의견을 따르면 피고인 오○○가 2014년 5월27일에 촬영한 x선 사진 감정 결과, 감정 의견으로 뼈 나이>19.5세로 나왔다. 피고인 오○○가 범행 시(2013년 6월26일)

469)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사회시 인민법원(廣東省四會市人民法院)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 (2014) 조사법형초자제54호(肇四法刑初字第54號)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이 됐음이 입증되어 해당 항의 변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이 제기한 제2,3,4항 변호 의견은 조사 결과 법적 증거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피고인 오○○는 범행 후 타인이 신고한 것을 알고 현장에서 기다렸고 검거 시 저항하지 않았으며 사실대로 범죄 사실을 진술해 자수에 해당되어 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 이○○가 본 사건 발생에 일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 오○○에 대해 정상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오○○는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형벌집행 완료 후 강제추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제2항, 제35조,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오○○는 고의상해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벌집행 완료 후 강제추방한다.

[사례 37] 장○○ 사기사건[470]

피고인: 장○○, 여성, 1989년 출생, 묘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적. 사기죄 혐의로 2015년 6월28일 형사구류 됐으며 2015년 8월4일 체포됐다.

운남성 몽자시 인민검찰원(雲南省蒙自市人民檢察院)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15년 6월19일 마○○와 '왕○○', '왕○○의 부인', 웅○○1, 웅○○2(모두 별개 사건 처리)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장○○를 속여 베트남에서 중국 금평현 마안저향(金平縣馬鞍底鄕)으로 데려와 결혼 사기를 조직하고 저질렀다. 2015년 6월20일 장○○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장○○와 마○○, 왕○○, 왕○○의 아내, 웅○○1, 웅○○2, '이○○'(모두 별개 사건 처리)는 피해자 왕○○2에게 혼인 사기를 쳐 왕○○2의 현금 18000위엔(元)을 편취했다.

심리를 통해 다음의 내용이 밝혀졌다. 2015년 6월19일 마○○는 타인과 결탁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장○○를 속여 베트남에서 중국 금평현 마안저향으로 데려왔다. 같은 날 마○○ 등은 함께 상의하여 혼인을 이용해 사기를 치기로 결정했다. 장○○는 찬성했고 돈을 받으면 서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2015년 6월20일 마○○ 등은 피해자 왕○○2의 형 왕○○3을 찾아와 그의 동생이 배우자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왕○○2와 왕○○3은 운남성 개구시 만모진(雲南省個舊市蠻耗鎮) 길에서 장○○를 봤고 왕○○2는 만족을 표했다. 그 후 피고인 마○○ 등은 왕○○2에게 18000위엔(元)을 요구했다. 피고인 장○○는 피해자 왕○○2와 왕○○2의 운남성 몽자시 지촌진(芝村鎮) 교두대채촌(橋頭大寨村)의 집에 갔다. 2015년 6월27일 피고인 장○○, 왕○○는 몽자시 공안국에 가서 신고하고 장○○가 유괴·매매됐다고 신고했다.

---

470)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몽자시 인민법원(雲南省蒙自市人民法院)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2016)운2503형초13호(雲2503刑初13號)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장○○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혼인 사기 방식을 써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고 금액이 크므로 그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죄목이 성립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 피고인 장○○는 타인과 상의한 후 적극적으로 사기범죄에 참여하여 주범과 종범을 구분할 수 없다. 피고인 장○○의 변호인이 제기한 피고인 장○○는 종범이라는 변호 의견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장○○는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와서 사건을 알렸고 사실대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술했으므로 자수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공소기관의 형량 건의가 적당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본 사건의 피고인 장○○는 베트남 국적으로 집이 중국 국경에 근접해있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대 사람들은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조 규정의 '강제추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제67조 제1항,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장○○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사례 38] 주○○, 이○○, 노○○ 밀입국 알선 사건[471]

피고인: 주○○, 남성, 1994년 8월13일 출생, 한족, 중졸, 중화인민공화국 귀주성 필절시(貴州省畢節市)출신, 무직, 귀주성 필절시 거주. 밀입국 알선 범죄 혐의로 2016년 9월4일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자치현(雲南省河口瑤族自治縣)(이하 '하구현') 공안국에 붙잡혔고 같은 달 5일 하구현 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됐다. 같은 해 9월30일 하구현 인민검찰원의 체포 비준을 받아 다음날 하구현 공안국이 체포를 집행했다.

피고인: 이○○, 여성, 1992년 10월12일 출생, 사포족, 고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 국적, 농민, 베트남 거주. 밀입국 범죄 혐의로 2016년 9월4일 하구현 공안국에 붙잡혔고 같은 달 5일 하구현 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됐다. 같은 해 9월30일 하구현 인민검찰원의 체포 비준을 받아 다음날 하구현 공안국이 체포를 집행했다.

피고인: 노○○, 여성, 1995년 7월7일 출생. 태족, 고졸, 베트남 국적, 농민, 베트남 거주. 밀입국 범죄 혐의로 2016년 9월4일 하구현 공안국에 붙잡혔고 같은 달 5일 하구현 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됐다. 같은 해 9월30일 하구현 인민검찰원의 체포 비준을 받아 다음날 하구현 공안국이 체포를 집행했다.

하구현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피고인 주○○, 이○○는 상의를 거친 후 주○○가 이○○, 노○○ 및 운○○(별개 사건 처리)를 중국 경내에 데려와 매춘 활동을 했다. 2016년 9월3일 피고인 주○○는 하구현에서 밀항하여 베트남 노가(老街)에서 이○○, 노○○, 운○○와 합류했다. 2016년 9월4일 주○○의 안배 하에 네 사람은 베트남에서 배를 타고 하구현 경내에 밀항했다. 출입국 심사를 피하기 위해 주○○는 택시를 준비해 이○○, 노○○, 운○○를 좁은 길에서 하구 동평(洞坪) 1호 터널 부근의 고속도로로 데려왔다. 주○○가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이들을 맞이한

471)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자치현 인민법원(雲南省河口瑤族自治縣人民法院)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2017)운2532형초5호(雲2532刑初5號)

후 주○○가 운전하여 이○○, 노○○, 운○○를 태우고 몽자(蒙自) 방향으로 달렸다. 만전(灣田)휴게소에서 공안 인민경찰에 검거됐다.

심리를 통해 다음의 내용이 밝혀졌다. 피고인 이○○와 노○○, 운○○(라○○, 별개 사건 처리)는 중국 경내에 밀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다. 피고인 주○○, 이○○는 상의를 한 후 주○○가 이○○, 노○○ 및 라○○를 데리고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9월3일 피고인 주○○는 하구현에서 베트남의 노가에 밀항하여 이○○, 노○○, 라○○와 합류했다.

2016년 9월4일 주○○의 안배 하에 네 명은 베트남에서 배를 타고 중국 하구현 경내에 밀항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하구 시내에 도착했다. 출입국 심사를 피하기 위해 주○○는 택시를 준비해 이○○, 노○○, 라○○를 좁은 길에서 하구현 동평 1호 터널 부근의 고속도로 옆으로 이동시켰다. 자신은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로 가 이들을 맞이했다. 주○○는 이들과 만난 뒤 이○○, 노○○, 운○○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몽자 방향으로 달렸다. 몽하(蒙河)고속도로 만전 휴게소에서 공안 인민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주○○가 국경(변경) 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밀입국을 알선한 행위는 밀입국 알선 범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이○○, 노○○는 국경(변경) 관리법률을 위반하고 출입국증서(出入境证件: 여권, 통행증 등) 없이 중국 경내에 출입했고 출입국심사를 피했다. 그 행위는 밀입국 범죄를 구성한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해 기소한 죄목이 성립한다.

세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한 후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진술했고 법정 심리 중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바르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한다. 피고인 이○○, 노○○는 밀입국 범죄의 공범이나 주범과 종범의 구분이 불가하고 이○○가 공동범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형량에서 차이가 난다. 피고인 이○○, 노○○는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집행유예와 구역에 처하며 관리 감독과 지역사회교정

은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이○○와 국선 변호인 담○○의 '피고인 이○○는 법정에 출두한 후 사실대로 범행사실을 진술했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으며 범죄 전과가 없다. 법원이 가볍게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는 변호 의견, 그리고 피고인 노○○와 국선 변호인 왕○○의 '피고인 노○○는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법정에 출두한 후 사실대로 고백했다.

또한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으므로 법원이 가볍게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는 변호의 견은 밝혀진 사실과 법률에 부합해 받아들인다. 기타 변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이○○, 노○○는 베트남 노가성(老街省), 전변성(奠邊省) 사람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중국 하구현의 강산과 맞닿아 있어 강제추방은 적합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8조, 제322조, 제25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주○○는 밀입국 알선 범죄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 발생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2. 피고인 이○○는 밀입국 죄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 발생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3. 피고인 노○○는 밀입국 죄로 징역 9개월과 벌금 1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판결의 효력 발생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사례 39] 주○○ 마약 운반 사건[472)]

피고인: 주○○, 남성,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 국적, 1988년 5월12일 출생, 사족(舍族), 초졸, 무직. 마약운반죄 혐의로 2016년 3월6일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자치현(雲南省河口瑤族自治縣)(이하 '하구현') 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 됐다. 같은 해 3월18일 하구현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얻어 다음날 하구현 공안국이 체포를 집행했다.

하구현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16년 3월6일 10시경, 피고인 주○○는 '아홍'(별개 사건 처리)과 베트남 국적의 모르는 남성 1명을 도와 헤로인을 운반했다. 피고인 주○○는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하구현 마황보(螞蝗堡)농장의 팔자하(八字河) 중국인민해방군 모 부대의 국경수비 중대 부근에서 검거됐다. 공안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몸에 있던 헤로인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찾아냈고 무게를 달아본 결과 순중량은 17.3g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하하니족이족자치주(哈尼族彝族自治州)(이하 '홍하주') 공안국 사법감정센터의 감정 결과, 검사를 보낸 물질에서 헤로인 성분이 검출됐다.

심리를 통해 다음의 내용이 밝혀졌다. 2016년 3월6일 10시경, 피고인 주○○는 '아홍'(별개 사건 처리)과 베트남 국적의 모르는 남성 1명을 도와 헤로인을 운반했다. 피고인 주○○는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하구현 마황보(螞蝗堡)농장의 팔자하(八字河) 중국인민해방군 모 부대의 국경수비 중대 부근에서 검거됐다. 공안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몸에 있던 순중량 17.3g의 헤로인을 찾아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주○○가 불법으로 헤로인을 운반한 행위는 마약운반죄를 구성한다. 법에 의하여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피고인 주○○의 마약운반죄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기소한

472) 중화인민공화국 운남성 하구요족자치현 인민법원(雲南省河口瑤族自治縣人民法院)형사판결문(刑事判決書)(2016)운2532형초71호(雲2532刑初71號)

죄목이 성립한다. 피고인 주○○가 법정에 출두한 후 사실대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점을 감안하여 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중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헤로인 10g이상 50g 미만 운반 시 징역 7년 이상과 벌금을 병과한다. 공소기관의 형량 건의가 적절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피고인 주○○는 헤로인 17.3g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주○○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운반했기 때문에 징역 7년을 선고해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했다. 피고인 주○○와 국선 변호인 담○○의 '피고인 주○○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법정에 출두한 후 사실대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술했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바르다. 법원이 가볍게 처벌해 징역 7년을 선고하길 바란다.'는 변호 의견은 밝혀진 사실, 법률과 서로 부합하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피고인 주○○는 베트남 노가성 연해방(越南老街省沿海坊)사람으로 변경지역 주민이다. 그러나 그는 죄형이 무겁기 때문에 형 만기 후 석방되면 강제추방을 해야 한다.

압수한 헤로인, 검은돈, 범행 도구인 오토바이는 법에 의하여 몰수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항, 제35조, 제67조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주○○는 마약운반죄로 징역 7년과 벌금 5000위엔(元)을 병과한다. 형 만기 석방 후 강제추방한다. 상술한 금액은 판결의 효력 발생 후 15일 내에 납부한다.
2. 피고인 주○○의 몸에서 찾아낸 헤로인은 17.3g으로 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상납한다. 범행 도구인 파도(波導: Bird)L1108 검은색 휴대전화 1대, 흑색전강의 QJ110-6모델 일반 이륜 언더본(엔진 번호:80026036, 차량 번호: 80026036, LBBXEH6098B297642), 검은돈인 현금 85위엔(元), 21만1천 베트남 동은 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이를 몰수하고 국고에 상납한다.

연구총서 17-AA-04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 진 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호정씨앤피 02-2277-4718
I S B N | 979-11-87160-50-2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